

벤처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2002. 12

김진수 · 김재진



序 言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건전하게 유지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산업의 저변을 형성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중소기업 중에서도 특히 기술·지식집약형 중소기업, 즉 벤처기업이 활성화됨으로써 고부가가치산업 중심으로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벤처기업은 우리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신기술의 개발과 확산에 기여함으로써 경제의 하부구조를 건전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성취욕구와 위험감수의 성향을 지닌 벤처기업가의 출현과 성공한 벤처기업의 등장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벤처기업의 창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업가 정신의 위축, 산학연대의 취약, 기술력의 부족, 사업아이템의 시장성 부족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의 활동이 미흡하며 조기에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코스닥시장과 M&A시장이 발달해 있지 않다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8월에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됨으로써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후 2000년 중반까지 한 차례의 벤처붐을 경험하게 되지만 벤처기업의 수익모델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자 코스닥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으며, 각종 비리사건이 시장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면서 벤처투자 분위기가 더욱 냉각되고 이에 따라 벤처시장이 더욱 더 위축되는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점을 인식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벤처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벤처기업 관련 지원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벤처기업 지원제도를 살펴보고, 벤처기업 지원제도의 활용실태를 조사하였으며, 벤처기업 지원제도의 유효성에 관한 실증분석을 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본원의 김진수 박사와 김재진 박사가 집필하였다. 저자들은 벤처기업 지원제도의 활용실태 조사를 위한 설문문의 구성, 표본의 설계 및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의 송준호 과장과 변태섭 사무관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 또한 벤처기업 지원제도의 활용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성실히 수행해 준 한국객립의 박병일 본부장, 최원석 선임연구원, 그리고 신상욱 연구원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있다. 또한 저자들은 본 보고서의 초고를 읽고 유익한 의견을 준 계명대학교의 김유찬 교수와 본원의 정재호 박사 및 익명의 두 논평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정리 및 통계처리에 수고한 심재진·이은경 주임연구원, 박승준 연구원, 장정순·오미순 연구조원, 그리고 교정을 맡아준 출판담당자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2년 12월

韓國租稅研究院

院長 宋 大 熙

<요약 및 정책시사점>

1. 주요 내용

가. 배경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건전하게 유지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대기업 못지않게 기술개발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벤처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벤처기업은 창조적 아이디어와 기술혁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국가경제의 기술개발기반을 강화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 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를 지닌다. 또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때문에 고용을 증대시키고 금융시장을 발전시키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벤처기업의 육성·발전은 균형적인 산업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와 같은 벤처기업이 활성화된다면 우리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신기술의 개발과 확산에 기여함으로써 경제의 하부구조를 건전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나라는 우리경제의 구조적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1997년 8월에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됨으로써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성장은 아직 초기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벤처기업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의 활동이 미흡하며 조기에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코스닥시장이 발달해 있지 않다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성취욕구와 위험감수의 성향을 지닌 벤처기업가의 출현과 성공한 벤처기업의 등장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점을 인식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벤처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벤처기업 관련 지원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벤처기업 지원제도를 주요 선진국의 벤처기업 지원제도를 비교·검토해 보았고, 다음으로 벤처기업 지원제도의 활용실태를 조사하였고, 마지막으로 벤처기업지원제도의 유효성에 관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나. 주요국의 벤처기업 지원제도

미국, 영국, 일본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중소기업청에서 벤처기업을 인정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벤처기업의 수를 알 수는 없으나 미국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1990년대 이후 이들 벤처기업들은 침체된 미국경제에 커다란 활력을 불어넣어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의 벤처산업 관련 일반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의 육성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SBIR제도와 같은 자금지원과 경영관리지원 및 출판사업 등에 국한되어 있다. 미국은 조세지원제도에서도 특별히 벤처기업을 직접적으로 우대하는 제도를 운용하지 않는 것이 특징적이다. 벤처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S법인제도를 통해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대신 해당 법인의 손익을 개인 주주에게 출자비율로 배분

해서 개인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는 정도의 지원에 그치고 있다. 그 대신 일반지원제도와 마찬가지로 S법인 주주에 대한 조세 지원제도와 적격 중소기업에 투·융자를 전문으로 하는 투자 회사와 투자신탁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과세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투자회사(SBIC), 투자조합 및 엔젤에 대한 조세지원을 함으로써 벤처산업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 미국의 벤처산업에 대한 지원제도는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환경 및 투자환경 조성과 중소기업, 투자회사, 투자조합, 엔젤 등의 주주나 투자자에게 지원을 함으로써 벤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간접적인 지원제도가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영국에서도 벤처기업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의 벤처산업국으로서 지위를 자리매김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은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는 달리 지원대상 벤처기업의 선정을 민간부문에 맡김으로써 시장원리를 최대한 존중하고 있다. 따라서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 역시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적 지원(정부대출, 정부투자 등)이 아닌 벤처기업의 창업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벤처기업의 대출액에 대한 정부보증제도, 정부 지원시책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창구 역할을 하는 비즈니스 링크제도, 기술지원을 위한 사이언스파크 설립, 벤처기업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및 벤처기업 스스로 직접금융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외시장의 운영 등 간접적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영국의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조세지원제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경감세율 적용과 부가가치세 과세특

례제도를 운용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서 미국의 경우와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다. 영국 역시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조세 지원 대신 벤처기업 투자자들을 위한 조세지원제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1994년부터 적격 미공개기업의 신규주식을 취득한 투자자들에 대한 세금우대제도인 ELS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1995년부터 적격 미공개기업에 투자하는 회사형투자신탁에 투자하는 개인에 대한 세금우대제도인 VCT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기타 주식매각이익을 미공개기업에 재투자하는 경우 과세이연을 인정하고 있으며, 미공개기업의 주식매각손실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도 실시하고 있다. 영국에서의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역시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투자자들의 투자환경 및 자금조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간접적인 지원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 매우 유사하다.

반면 일본의 경우 1995년 4월부터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과 유사한 「중소기업의창조적사업활동의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을 제정하여 벤처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원제도들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벤처기업 지원제도와 매우 유사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조세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 벤처기업 지원제도의 활용실태조사 결과분석

본 조사를 통해 살펴본 벤처기업의 일반지원제도 및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실태의 특징과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벤처기업의 일반지원제도 및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도가 매우 낮았다. 벤처기업의 중소기업 일반지원제도의 활용도는 6.4%였으며,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의 활용도는 7.3%였다. 벤처기업의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도는 6.0%였으며, 벤처기업의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도는 6.6%였다. 이와 같이 벤처기업 지원제도의 활용도가 매우 낮은 근본적인 이유는 지원제도가 매우 다양하며 지원제도마다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 및 조세지원제도의 정비 정도에 대해 3분의 2 이상의 벤처기업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벤처기업 지원제도의 활용도가 매우 낮다는 결과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벤처기업 지원제도가 복잡하여 이용하기가 어렵고 지원내용이 미흡하여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기업은 당연히 벤처기업 지원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셋째,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 및 조세지원제도에 대해서 과반수 이상의 벤처기업들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에 대해서는 53.6%의 벤처기업들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벤처기업의 조세지원제도에 대해서는 62.7%의 벤처기업들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넷째, 벤처기업 스스로 생각하는 일반지원제도 및 조세지원제도의 활용 제고방안은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요건을 완화해야 하는 것이었다.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요건을 완화하면 벤처기업은 당연히 지원제도를 더 많이 활

용할 것이다. 이 외에도 신청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제도의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다섯째, 다수의 벤처기업은 일반지원제도 및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제도를 단순화하고 지원내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벤처기업이 생각하는 일반지원제도 및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도 제고방안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지원대상 범위 및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내용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둘째, 신청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것이다. 셋째, 지원제도의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첫 번째 방안은 지원을 받는 벤처기업 입장에서는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좋다고 생각할 것이므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겠지만, 정책당국의 입장에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생각해서 신중을 기해야 할 사항이다. 두 번째 방안은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 및 조세지원제도를 단순화함으로써 이 제도들을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세 번째 방안도 벤처기업의 일반지원제도 및 조세지원제도 자체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은 아니지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라. 벤처기업 지원제도의 유효성에 관한 실증분석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에 대해 정부의 지원제도들이 벤처기업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고찰하기 위해 벤처기업 지원제도 활용실태 설문조사 결과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벤처기업의 규모가 일반지원제도 및 조세지원제도의 활

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법인기업일수록, 그리고 종업원 수가 많을수록 일반지원제도 및 조세지원제도를 잘 활용한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얻었다.

다음으로 일반지원제도 및 조세지원제도의 복잡성이 일반지원제도 및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일반지원제도의 경우는 개인기업이 법인기업보다 일반지원제도의 복잡성을 이유로 일반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얻었다. 조세지원제도의 경우는 예상한 결과를 전혀 얻을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일반지원제도 및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이 벤처기업의 이윤 창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정하였다. 벤처기업의 일반지원제도 및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도가 높을수록 기업의 이윤이 높다는 실증적인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벤처기업의 이윤은 일반지원제도 및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도와 정(+)의 상관관계가 없는 반면 매출액 규모나 수출액 규모와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벤처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이 기업의 경쟁력 제고나 이윤창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2. 정책시사점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우리나라 벤처기업 지원제도의 기본방향은 기술혁신에서 발생하는 외부성(externalities)을 보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구분하여 벤처기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하

는 벤처정책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벤처기업에 대해 직접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벤처기업이 많이 탄생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데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의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현행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 및 조세지원제도가 2005년 폐지되어야 함을 감안하면 현행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나치게 기울이기보다는 향후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구별없이 적용될 중소기업 일반지원제도를 단순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기업가정신이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창업 인프라의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대학·연구소의 창업보육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며, 중소·벤처기업 집적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이며, 사이언스파크의 효율적인 조성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 중에서 기술개발 및 기술인력에 대한 지원은 이 부문에서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장기적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은 일반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수준으로 낮추고 벤처캐피탈을 통한 간접 지원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기술력은 있으나 민간 벤처캐피탈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창업 초기의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투자를 하는 공적 벤처캐피탈회사제도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투자조합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규모 자체가 방대하여 작은 비중을 투자하여도 투자조합의 활성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연·기금의 적극적인 투자조합 참여가 필요

하다.

여섯째, 코스닥시장은 벤처기업들에게는 중요한 자금조달창구 역할을 하고 벤처캐피탈회사나 투자조합의 출자자에게는 이익실현을 하게 하는 자금회수처이므로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시장참여를 유도하고 코스닥시장의 제도를 선진화함으로써 코스닥시장을 건전하게 육성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벤처기업이 조세지원제도의 내용도 단순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벤처기업이 이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벤처기업의 창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동성의 제한으로 인한 자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지원 대상기업을 일반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가 장기적으로 축소되고 단순화되더라도 특히 기술개발부문과 기술인력부문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투자조합을 통해 벤처산업에 시중자금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벤처산업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도 투자조합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투자조합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투자조합 출자자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간을 확대하고, 소득공제 적용기간중 매년 동일한 비율을 공제하도록 하며, 적용대상이 되는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인수·합병과 관련한 과세제도를 시급히 정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적대적 기업인수를 통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그린메일 지급금에 대한 이자비용 공제, 그린메일 영수에 대한 과세 문제,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관련 과세문제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목 차

I. 서 론	23
II. 벤처기업의 의의	26
1. 벤처기업의 정의	26
2. 벤처기업의 특성 및 역할	31
3. 벤처기업지원에 관한 논의	34
III.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현황	38
1. 벤처기업의 실태	38
2. 벤처기업 및 관련 인프라의 문제점	49
IV. 우리나라의 벤처기업 지원제도	63
1. 일반지원제도	63
2. 조세지원제도	98
3. 최근의 벤처기업 관련 정책	118
V. 주요국의 벤처기업 현황 및 벤처기업 지원제도	127
1. 미 국	127
2. 영 국	142
3. 일 본	163
4. 시사점	186

VI. 벤처기업 지원제도의 활용실태조사 결과분석	190
1. 활용실태조사의 개요	190
2. 일반지원제도에 대한 활용실태조사 결과분석	195
3.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활용실태조사 결과분석	218
4. 요약 및 시사점	235
VII. 벤처기업 지원제도의 유효성에 관한 실증 분석 ...	240
1. 추정모형과 변수의 설명	240
2. 실증분석의 결과	246
3. 요약 및 시사점	254
VIII. 벤처기업 지원제도의 개선방향	256
1. 기본방향	256
2. 일반지원제도의 개선방향	261
3.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향	275
IX. 요약 및 결론	285
<참고문헌>	290
<부록 1>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실태 설문지	293
<부록 2>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실태 조사결과 ..	309

표 목 차

<표 II-1> 벤처기업 확인제도 요건 비교	29
<표 III-1> 벤처기업의 특성	38
<표 III-2> 벤처기업의 업종별 분포	39
<표 III-3>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40
<표 III-4> 벤처기업의 유형별 분포	41
<표 III-5> 지역별 분포	41
<표 III-6> 종업원 규모별 분포	42
<표 III-7> 자본금 규모별 분포	43
<표 III-8> 매출액 규모별 분포	43
<표 III-9> 기업의 성장단계별 분포현황	45
<표 III-10> 연령별 분포	45
<표 III-11> 학력별 분포	46
<표 III-12> 벤처기업의 유형별 경영성과	47
<표 III-13> 자금사정	48
<표 III-14> 국가간 창업 수 비교	49
<표 III-15> 벤처기업의 연구개발비 비교	52
<표 III-16> 주요국의 벤처캐피탈 규모 비교	54
<표 III-17> 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금융회사의 지원현황	55
<표 III-18> 코스닥시장과 거래소시장 비교	58
<표 III-19> 코스닥시장 및 거래소시장의 거래대금 및 거래량	59
<표 IV-1> 창업자금지원제도	65

<표 IV-2> 경영·구조개선자금 지원제도	69
<표 IV-3> 기술개발자금지원제도	72
<표 IV-4> 기타 자금지원제도	75
<표 IV-5> 신용보증지원제도	78
<표 IV-6> 스톡옵션 부여 및 행사 관련 내용	82
<표 IV-7>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원내용	86
<표 IV-8> 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상의 이점	88
<표 IV-9> 방송광고 지원내용	89
<표 IV-10> 일반수출입금융 지원내용	91
<표 IV-11> 수출기업화사업의 연차별 지원내용 및 세부내용	92
<표 IV-12> 판로 및 수출지원제도	94
<표 IV-13> 실험실공장 설치, 등록에 관한 지원내용	96
<표 IV-14> 기타 지원제도	97
<표 IV-15> 창업 중소기업·벤처기업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111
<표 V-1> 미국의 중소기업 비중	128
<표 V-2> 미국 벤처기업의 업종별 비중	129
<표 V-3> 벤처기업과 500대 기업의 비교	130
<표 V-4> 법인소득세의 세율	135
<표 V-5> 산업별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분포	143
<표 V-6> 기업 규모별 고용 비율 및 거래액 규모	144
<표 V-7> 영국의 종업원 규모별 사업체 수	145
<표 V-8> 영국의 산업부문별 투자대상기업	147
<표 V-9> 정부대출보증제도(SFLGS)의 변동추이	150
<표 V-10> SFLGS 이용 실태	151
<표 V-11> SBS 비즈니스링크 가입 기업 현황	152
<표 V-12> 과세이연제도 비교	162

<표 V-13> 일본의 중소기업 비중	164
<표 V-14> 중소기업창조활동촉진법 도(都)별 인정 기업 수	165
<표 V-15> 일본의 업종별 벤처기업 현황	166
<표 V-16> 창조적인 중소기업 창업지원 내용	170
<표 V-17> 창조기술연구개발비·지역산업창조기술연구 개발비	171
<표 V-18> 신용보증제도	174
<표 V-19> 벤처사업센터의 채무보증업무 내용	176
<표 V-20> 엔젤세제의 효과	185
<표 VI-1>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	193
<표 VI-2> 표본의 특성	194
<표 VI-3> 신용보증지원제도의 활용도	198
<표 VI-4> 판로·수출확대지원제도의 활용도	198
<표 VI-5> 판로·수출확대지원제도의 활용도	201
<표 VI-6> 기타 지원제도의 활용도	202
<표 VI-7> 표본 특성별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 정비 정도	204
<표 VI-8>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 활용때 도움 받은 경로	206
<표 VI-9>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 중 가장 도움이 된 제도	208
<표 VI-10>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가 효과가 없는 이유	209
<표 VI-11>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 개선방안	211
<표 VI-12> 벤처기업 지원제도 등의 정책지원제도의 경영도움 여부	213
<표 VI-13> 벤처기업 확인기준 강화 찬성이유	215
<표 VI-14> 벤처기업 확인기준 강화 반대이유	215
<표 VI-15> 벤처기업과 가장 밀접한 기관	217
<표 VI-16> 표본특성별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활용방식	219

<표 VI-17> 표본특성별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정비 정도 ..	227
<표 VI-18>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활용 때 도움받은 경로 ..	229
<표 VI-19>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중 가장 도움이 된 제도 ..	233
<표 VI-20>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효과가 없는 이유	233
<표 VI-21>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개선방향	235
<표 VII-1> 분석변수의 기초통계치	246
<표 VII-2> 모형(1)의 추정결과	248
<표 VII-3> 모형(2)의 추정결과	249
<표 VII-4> 모형(3-1)과 (4-1)의 추정결과	250
<표 VII-5> 모형(3-2)와 (4-2)의 추정결과	250
<표 VII-6> 모형(3-3)과 (4-3)의 추정결과	251
<표 VII-7> 모형(5-1)의 추정결과	252
<표 VII-8> 모형(5-2)의 추정결과	254

그림목차

[그림 III-1] 업력별 분포	44
[그림 III-2] 코스닥, 벤처 및 종합주가지수 변화추이	60
[그림 VI-1] 금융지원제도의 활용도	196
[그림 VI-2] 기술인력지원제도의 활용도	200
[그림 VI-3] 입지지원제도의 활용도	201
[그림 VI-4]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의 정비 정도에 대한 응답결과	203
[그림 VI-5]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의 활용 정도	205
[그림 VI-6] 벤처기업 일반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이유	207
[그림 VI-7]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 활용 제고방안	210
[그림 VI-8] 벤처기업 확인제도 폐지 동의 여부	212
[그림 VI-9] 벤처기업 확인기준 강화 찬반 여부	214
[그림 VI-10] 벤처기업 관련 기능과 역할 강화가 필요한 기관	217
[그림 VI-11] 일반적인 조세특례 지원제도의 활용도	220
[그림 VI-12] 투자촉진 지원세제의 활용도	221
[그림 VI-13] 재무구조개선 및 구조조정 지원세제의 활용도	222
[그림 VI-14] 지방 이전 촉진 지원세제의 활용도	223
[그림 VI-15] 창업벤처 중소기업 지원세제의 활용도	224
[그림 VI-16] 공장설립시 부담금 감면제도의 활용도	225
[그림 VI-17]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정비 정도에 대한 응답결과	226

[그림 VI-18]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활용 정도	228
[그림 VI-19]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이유	231
[그림 VI-20]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효과 정도	232
[그림 VI-21]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활용 제고 방안	234

I. 서 론

우리나라가 1997년 말 경제위기에 봉착하면서 고환율, 고실업, 고물가, 저성장 등과 같은 파국을 갑자기 맞게 된 원인을 규명하려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러한 경제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사회구조가 공업화 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변화됨에 따라 새로운 패러다임의 경제정책과 경영방식이 요구되었으나 경제리더들이 이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하였다. 또한 과거 기업의 성공전략이 미래에는 실패전략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행태인 양적성장, 차입경영, 저기술, 저부가가치산업 및 제품 등에 집착하여 국가경제를 붕괴상황으로까지 몰고 갔다는 주장이 많았다¹⁾. 다시 말하면, 정부주도의 양적인 성장과정에서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가 자원배분의 편중을 심화시켰고, 또한 재벌기업이 외부차입에 의존하여 과도하게 사업확장을 한 결과 핵심역량을 키우지 못한 채 부실화되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었고, 이에 따라 금융기관도 부실화되었다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우리 경제는 새로운 국제 경제 환경에 적합한 경쟁수단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경제시스템상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의 선진국형 산업구조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경제의 부실을 초래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건전하게 유지·발전되기 위해서는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일

1) IMF 경제위기의 원인에 대해서는 삼성경제연구소(1998) 참조.

못지않게 산업기반의 저변을 형성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강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하청수준에 머물 것이 아니라 대기업에 대한 비교우위를 살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기술·지식집약형 중소기업, 즉 벤처기업이 활성화됨으로써 고부가가치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벤처기업은 우리 경제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신기술의 개발과 확산에 기여함으로써 경제의 하부구조를 건전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1990년대 10여년 동안 지속되었던 미국의 경기 활황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1980년대 미국은 장기적 경기침체 속에서 ‘일본 및 신흥공업국’에 대한 경쟁력 열세로 세계경제의 정상자리를 내주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시작한 기업조직에서부터 산업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리스트럭처링을 통한 감량경영 및 사업구조조정 단행과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에 힘입어 경제상황과 산업경쟁력이 회복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1990년대 들어 최고의 호황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되었다.

이러한 미국경제에서의 벤처기업 성과에 자극을 받아 세계 각국은 벤처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지원방안이 모색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경제의 구조적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벤처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1997년 8월에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됨으로써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후 2000년 중반까지 벤처붐에 의해 시중의 유동자금이 벤처로 유입되면서 버블이 형성되었다. 특히 코스닥 내 벤처지수는 1999년 초에 비해서 8배 이상 폭등하는 버블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그 후 벤처기업의 수익모델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자 코스닥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으며, 각종 비리사건이 시장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면서 벤처투자 분위기가 더욱 냉각되고 이에 따라 벤처시장이 더욱 위축되는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었다.

엄청난 벤처붐을 경험하였지만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성장은 아직 초기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직도 성공한 벤처기업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과 엔젤의 활동이 미흡하며 조기에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코스닥시장이 발달해 있지 않다. 또한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기관, 관련법·세법 등 제도가 아직도 완전히 정비되어 있지 않아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성취욕구와 위험감수의 성향을 지닌 벤처기업가의 출현과 성공한 벤처기업의 등장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관점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벤처기업과 그에 관련된 인프라의 문제점 및 벤처기업 지원제도의 활용실태를 파악하여 벤처기업 지원제도를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제 I 장의 서론에 이어 제 II 장에서는 벤처기업의 의의를 검토해 보았고, 제 III 장에서는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해 보았으며, 제 IV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벤처기업 지원제도를 살펴보았다. 제 V 장에서는 주요국의 벤처기업 현황 및 지원제도를 살펴보았다. 제 VI 장에서는 벤처기업 지원제도의 활용실태를 설문조사하여 그 결과를 분석해 보고, 제 VII 장에서는 벤처기업 지원제도의 유효성을 실증분석해 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제 VIII 장에서는 우리나라 벤처기업 지원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제 IX 장에서는 요약 및 결론을 제시하였다.

II. 벤처기업의 의의

1. 벤처기업의 정의

‘벤처기업’을 영어로 직역하면 ‘venture firm’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venture firm’이라고 하면 ‘벤처기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벤처캐피탈회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이라고 하면 장래성은 있으나 자본과 경영기반이 취약한 기업에 대하여 기업설립 초기단계에 자본참여를 통하여 위험을 기업가와 공동으로 부담하면서 자금, 경영관리, 기술지도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높은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금융활동을 말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벤처캐피탈리스트(venture capitalist)’라고 지칭하며, 벤처캐피탈리스트가 회사인 경우에는 ‘venture capital firm(이를 줄여서 ‘venture firm’이라고도 함)’이라고 한다. 그런데 주요 선진국에서는 벤처기업이 중소기업과 별개로 존재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벤처기업을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주요 선진국들이 생각하는 벤처기업을 굳이 정의한다면 ‘벤처캐피탈리스트의 투자대상이 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벤처캐피탈협회(National Venture Capital Association)는 벤처캐피탈리스트의 투자대상이 되는 기업을 ‘venture backed company’라고 부르기도 하며, 영국의 벤처캐피탈협회(British Venture Capital Association)는 ‘private equity backed company’라고 부르기도 한다.

다른 주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경우도 공식적으로 벤

처기업을 정의하고 있지 않다. 다만 1995년에 「중소기업의창조적 사업활동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에 의한 지원대상을 벤처기업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지원대상기업은 특정중소기업자와 새로운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및 이를 사업화 하는 중소기업자 등이다. 특정중소기업자는 ① 제조업, 인쇄업, 소프트웨어업, 정보처리서비스업에 속하는 창업 5년 미만의 자, ② 매출에 대한 시험연구비 비율이 3%를 초과하는 자, ③ 매출에 대한 시험연구비 비율이 3%를 초과하는 창업 5년 미만의 자 등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벤처기업 육성이라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1997년 8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²⁾. 벤처기업의 정의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이 개정된 2002년 11월을 기준으로 크게 달라졌다. 2002년 11월 이전에는 벤처기업을 ① 벤처투자기업, ② 연구개발투자기업, ③ 특허기술(신기술)투자기업, ④ 기술평가기업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각 아래의 ①~④에 해당하는 업체로 정의해 왔다.

- ① 벤처투자기업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그리고 한국 벤처투자조합의 투자³⁾총액이 당해 기업 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이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인수총액이 당해 기업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기업
- ② 연구개발투자기업 : 최근 사업연도의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인 기업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 2002년 8월에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2002년 11월 14일 개정됨에 따라 11월 15일 이후부터는 그 동안 운영되어온 벤처기업 확인제도보다 강화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3) 투자란 주식·무담보 전환사채 또는 무담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 ③ 특허기술(신기술)개발사업 : 다음 각 항목의 권리·신기술 또는 지식을 이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으로서 신기술에 의해 생산된 제품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50% 이상인 기업
- 특허권·실용신안권(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중인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술을 포함함)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입된 기술로서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 대상인 고도기술
 - 기술이전촉진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기술거래소를 통하여 이전받은 기술
 - 다른 법률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의하여 개발된 신기술 또는 지식
- ④ 기술평가기업 :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기술성 또는 사업화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창업중인 기업이거나 자체개발한 기술을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
 - 의장권(의장등록출원중인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술을 포함함)을 이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
 - 위의 ③에 해당하는 권리·신기술 또는 지식을 이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으로서 사업화의 정도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

한편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 2002년 8월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11월에 개정됨에 따라 현재는 좀더 강화된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종전까지 운영되어 오던 벤처기업 확인제도와 2002년 11월부터 새롭게 변경하여 운영되는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비교하면 다음의 <표 II-1>과 같다.

<표 II-0> 벤처기업 확인제도 요건 비교

유형	구제도 확인요건	신제도 확인요건
벤처투자기업	○ 벤처캐피탈의 주식, CB, BW 인수금액이 자본금의 20% 이상인 기업	○ 벤처캐피탈의 주식인수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인 기업 ○ 확인신청일 직전 6개월 이상 투자비율을 유지할 것
연구개발기업	○ 연간 R&D비율이 업종별 5~10% 이상인 기업	○ 연간 R&D비율이 업종별 5~10% 이상인 기업 ○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신기술기업	<특허기술(신기술)개발기업> ○ 다음 기술에 의한 매출이 총매출액의 50% 이상인 기업 - 특허권, 실용신안권 - 공공기관 이전기술 - 외투법에 의해 도입된 기술 - 정부출연, 용자, 인증기술 <기술평가기업> ○ 다음항목에 대해 기술성 및 사업화능력을 인정받은 기업 - 의장권 - 차체개발기술 - 기타 신기술개발기업의 요건에 미달하는 기업	○ 다음 기술에 의한 사업이 벤처평가기관으로부터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특허권 - 공공기관 이전기술 - 조세감면 대상 고도기술 및 외투법에 의해 도입된 기술 - 정부출연개발사업에 의한 기술

자료 : 중소기업청.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벤처기업의 유형은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및 신기술기업(과거의 기술평가기업을 통합) 등 3개 유형으로 분류되며,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려는 기업은 기본적으로 혁신능력 평가점수가 50점 이상이 되어야 하고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① 벤처투자기업 : 벤처캐피탈의 주식인수 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이어야 하며, 확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벤처캐피탈이 6개월 이상 그와 같은 투자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또한 투자의 범위에는 용자형태로 운영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제외되고 벤처캐피탈이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 ② 연구개발기업 : 과거에 연구개발투자가 매출액 대비 5~10%인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었으나, 최소연구개발비의 개념이 추가적으로 도입되어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동시에 만족하여야만 한다. 다만 창업 후 3년 미만인 기업은 이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창업 1년 이내 기업의 경우에는 2분기의 연구개발비가 2,5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 ③ 신기술기업 : 과거 벤처기업 확인시 대상이 되었던 실용신안권, 인증기술 등이 제외되었으며, 기술에 의한 매출이 총 매출액의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벤처기업 평가기관의 평가로 대신하게 되었다. 또한 과거 대상항목이 되었던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에 의해 도입된 기술은 '조세감면이 되는 고도기술 및 외국인 투자유치촉진법에 의해 도입된 기술'로 변경되고 '정부출연 및 용자, 인증기술'은 '정부출연 개발사업에 의한 기술'로 대체되었다.

이 외에도 새로운 벤처기업 확인제도에는 벤처기업 확인취소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다. 거짓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와 확인 이후 6개월 이상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된다. 또한 휴업 등으로 3개월 이상 기업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와 대표자 등이 기업재산을 유용한 경우 등의 사유로 벤처기업협회가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취소를 건의하는 경우에도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된다. 벤처기업 확인유효기간은 벤처투자기업의 경우 1년이며, 연구개발 및 신기술기업은 2년으로 제한된다.

2. 벤처기업의 특성 및 역할

벤처기업의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적인 중소기업보다도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앞선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첫째, 벤처기업의 창업자는 뛰어난 지적 능력과 고도의 전문기술을 지닌 고학력 기술자 출신이 많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과감한 도전의식과 예리한 판단력을 바탕으로 한 모험정신이 있으며, 위험감수 성향을 보이고 있다. 둘째, 벤처기업의 창업동기는 기업, 대학 또는 연구소 등 이전 직장에서 습득한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따라서 벤처기업은 기초과학이 발달하고 전반적인 기술수준이 높아 사업화 내지 기업화할 수 있는 대상 기술이 많은 국가에서 번창하게 된다. 이것은 미국에서 벤처기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셋째, 벤처기업은 고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며,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한다. 벤처기업은 고도로 전문지식을 집약하고 연구개발과 디자인개발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높고 기술 및 연구인력의 구성비가 매우 높다. 넷째, 벤처기업은 동태적이고 수평적인 인간 중심의 경영조직 구축을 통해 창조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인적 경영자원을 축적하고 있다. 전 직원이 공동체를 이루어 공개경영과 인간 존중의 이념을 가지고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많다. 다섯째, 벤처기업은 고성장 분야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정제품의 전문화에 주력한다. 여섯째, 벤처기업은 벤처캐피탈이나 엔젤의 왕성한 활동을 필요로 하며, 이들의 지원을 받고 있는 첨단기술 집약 지역

과 이에 인접한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기업이 많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벤처기업은 기본적으로 고부가가치 기업, 신기술기업, 기술집약기업, 모험기업 등의 개념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벤처기업의 특성을 요약해 본다면, ‘위험부담은 크지만 성공하면 기대수익이 큰 독자적인 신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왕성한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신규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신생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벤처기업의 이러한 특성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벤처기업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벤처기업은 기술수준 제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 벤처기업은 종래의 개량형이나 모방형의 기술개발보다는 획기적인 기술개발을 시도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요 기술의 혁신적 변화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높다. 또한 벤처기업은 컴퓨터·전자, 통신·생명공학 및 의료사업 등 첨단기술 분야에 집중적으로 진출하고 있어 정보화사회의 기반기술을 개발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⁴⁾.

둘째, 벤처기업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시킨다.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정부기술혁명,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디지털혁명, 생명공학혁명 등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국민경제와 산업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이른바 지식경제, 인터넷경제, 디지털경제 등으로 지칭되는 신경제(new economy)에 맞는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산업환경하에서 벤처기업의 주요 활동분야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의 전통산업 대신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기술집약적 하이테크 분야가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지식경제 시대에 적합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선도할 수 있다. 또한 벤처기업은 대규모 자본이

4) 산업연구원(1998), p. 34.

나 시설이 아닌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통해 산업발전을 이끌어 나가며, 기존 산업에 비해 훨씬 높은 R&D 투자를 통해 기술집약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다. 결국 선진국에 비해 고비용과 저효율이라는 기존 산업의 멍에를 극복하고,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저비용과 고효율을 추구할 수 있는 벤처기업의 발전을 토대로 21세기가 요구하는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가능하다.

셋째, 벤처기업의 육성은 벤처캐피탈을 비롯해 금융부문의 확대와 전체 자본시장의 발전을 가져온다. 미국의 경험을 통해 보듯이 벤처의 발전과 금융산업 및 자본시장의 발전은 동시에 일어난다. 한국에서도 벤처의 발전과 더불어 벤처캐피탈의 발전, 코스닥의 성장, 제3시장의 대두, 엔젤이나 투자조합의 활성화 등과 같은 금융 및 자본시장의 양적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벤처기업은 기존의 제조기업과 달리 기술 혹은 아이디어를 기업경쟁력의 원천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부동산이나 물적 담보를 요구하던 금융기관의 관행을 깨뜨리고, 성장가능성을 염두에 둔 미래가치에 따른 투자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선진 금융시스템의 발전을 촉진하게 된다.

넷째, 벤처기업은 신규고용 창출 및 전직 인력의 흡수에 의하여 고용을 유발시키는 효과를 가져 온다. 벤처기업은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 분야에서의 성장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아웃소싱을 통한 관련 산업 파급효과가 크며, 새로운 관련 분야의 시장수요를 증대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보다 고용유발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벤처기업의 고용창출효과는 양적인 고용비중 증대에 못지않게, 질적인 고용구조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예를 들어 능력위주의 인재활용이라는 벤처기업 문화의 특성에 따라 학력이나 신분에 의해 결정되는 사회분위기를 척결하고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촉발하

고 있다. 또한 이러한 벤처문화가 대기업 부문으로 파급되어, 최근에는 대기업들도 과거의 연공서열식 지급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있으며, 우수 인력을 확보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능력을 중시하고 업적에 따라 성과를 보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섯째, 벤처기업은 제품 차별화를 통해 국제수지 개선 및 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킨다. 벤처기업은 무엇보다 기술력에 경쟁기반을 두고 제품 차별화를 시도함으로써 고부가가치 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을 획득하고 수출증대에도 기여하게 된다. 또한 벤처기업에 의한 신기술 상업화는 기술수준의 향상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경제 전체의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즉, 재료비·인건비·에너지 절약 등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불량률 감소, 공정 단축 및 자동화 등에 의해 생산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효과를 거둠으로써 국내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⁵⁾.

3. 벤처기업 지원에 관한 논의

우리나라는 1997년 8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운용함으로써 선진 외국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벤처기업 지원제도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 벤처기업 지원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의 최적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진수·김재진(2000)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의 최적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시장실패의 요

5) 산업연구원(1998), p. 35.

인들이 벤처기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양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들고 있다.

첫째, 금융시장에서는 위험회피적 성향으로 인해 주로 기존 대기업에 대한 자금제공을 선호하는 반면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제공을 꺼리게 된다. 이는 신기술의 상업화가 쉽지 않고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서 사업의 실패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벤처기업의 특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효용이 반영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벤처기업의 높은 자금조달비용은 상품시장에서 대기업과의 불공평한 경쟁으로 이어지며, 기술집적 및 고부가가치산업이라는 벤처기업의 특징으로부터 유발되는 이로운 외부효과는 결과적으로 벤처기업의 투자량이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게 만들기 때문에 시장실패의 원인이 된다. 특히 벤처기업의 기술집적은 학습효과라는 외부효과를 창출하여 여타기업으로 하여금 이전보다 더 높은 생산성을 요구하고 고품질의 제품을 개발하게 함으로써 시장의 일부를 잃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셋째, 특정 벤처기업이 개발한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혁신으로 인한 부가가치가 단기적으로 해당 기업의 수익으로 귀속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격하락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귀속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개별 기업의 수익성을 하락시키게 된다.

이러한 벤처기업의 특징들은 궁극적으로 벤처기업의 수익을 사회적 수익보다 낮게 하여 벤처기업으로 하여금 투자의욕을 저하시키게 만든다. 따라서 이러한 벤처기업 특성에 따른 외부효과를 교정함으로써 벤처기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자는 것이 벤처기업과 관련한 각종 지원제도의 가장 큰 정책목표라 할 수 있다. 벤처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벤처기업에 대해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 이외에도 벤처기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 벤처기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벤처캐피탈 등을 통

한 간접지원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OECD(1996)는 두 가지 측면에서 벤처기업을 포함한 벤처캐피탈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⁶⁾. 첫째, 비효율적인 금융시장 때문에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시장의 불충분한 유동성이나 잘못된 방향의 유동성 등으로 인해 충분한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조건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어야 한다. 둘째, 공공 편익을 위해서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벤처기업이 고용창출과 장기성장을 위한 기술의 진보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주장과는 달리 성소미(2001)는 벤처정책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⁷⁾. 우선 시장형성의 초기단계에서 해야 할 벤처캐피탈의 활성화, 투자자 및 벤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벤처 관련 주체들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이미 잘 완수하였다고 벤처정책을 평가하였다. 향후 정부의 벤처정책은 투자, 융자, 조세감면 위주의 직접지원은 빠른 속도로 축소하고 벤처산업의 자생력 배양을 위해 정부역할을 빠른 시일 내에 시장기능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벤처산업으로의 투자자금이 초과공급 상태의 징후를 보이고 벤처버블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정부가 공공벤처펀드를 통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김진수·김재진(2001)은 성소미의 주장이 장기적으로 볼 때 타당하지만, 2000년 중반까지의 한 차례의 벤처붐의 성격을 규명해 볼 때 단기적으로는 정부정책의 급격한 전환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⁸⁾. 한 차례의 벤처붐은 벤

6) OECD(1996), p. 4.

7) 성소미(2001), p. 205.

처기업이 알차게 성장하면서 그 결과로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현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나라 경제의 회복과 나스닥시장에의 동조화 현상에 의해 코스닥시장이 가파른 주가상승을 보이면서 벤처기업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던 현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코스닥시장이 조정을 보이게 되면 언제라도 벤처기업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으며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도 침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는 기술집약적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구조가 구축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김진수·김재진(2001)은 벤처정책을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전환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을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수준으로 낮추고 벤처캐피탈을 활성화함으로써 이를 통한 간접 지원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8) 김진수·김재진(2001), p. 103.

Ⅲ.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현황

1. 벤처기업의 실태⁹⁾

가. 우리나라 벤처기업 개관

2002년 11월말 현재 우리나라 벤처기업 수는 약 9,106개사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2년 10월 발표된 「벤처기업 경영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들이 평균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 수는 약 31.6명이고 평균 매출액은 65.6억원에 이르고 있다.

2002년 11월 말 현재 벤처기업의 업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제조업이 5,915개사로 전체 벤처기업의 6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정보처리 및 소프트웨어 분야의 벤처기업은 전체의 27.2%인 2,476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연구개발서비스 분야가 290개사로 전체의 3.2%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외 건

<표 III-1> 벤처기업의 특성

구 분	기업수	종업원(평균)	자본금(평균)	매출액(평균)
규 모	9,106개사	31.6명	15.1억원	65.6억원

자료 : 중소기업청(2002 b, d).

9) 벤처기업의 분포현황 중 유형별, 업종별, 지역별 분포는 「벤처기업 현황(2002. 11)」 자료를, 그리고 규모별, 업력별 분포와 벤처기업 경영실태 및 창업자 특성 등의 내용은 「벤처기업 경영실태조사 결과(2002. 10)」 및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결과(2001. 8)」 자료를 토대로 정리하였다.

설 및 유통, 농업 및 수산업 및 기타 업종의 벤처가 4.7%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분포 결과를 통해 보는 바와 같이 아직까지는 제조업에 기반을 둔 벤처기업의 비중이 큰 편이지만, 정보통신 및 소프트웨어로 대표되는 유망산업 벤처들의 약진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한편 중소기업청이 2002년 10월 발표한 벤처기업 경영실태조사 결과(유효표본 6,023개)에 따르면 벤처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65억원으로 전년대비 29% 이상 증가하였으나 경상이익률은 3.3%로 전년보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의 매출액 증가율과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율을 동일한 업종의 중소기업 및 대기업과 비교하면 아래의 <표 III-3>과 같다. 벤처기업(제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2000년의 35.2%에서 2001년 21.7%로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2001년의 경우 중소기업이 3.4%, 대기업이 0.8% 매출액 증가율을 기록하였던 것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국민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01년도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 역시 중소기업이 2.2%, 대기업이 -0.6%를 기록한 데 반해 벤처기업은 5.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III-2> 벤처기업의 업종별 분포

(단위: 개, %)

구분	제조업	정보처리 S/W	연구개발 서비스	건설 운수	도소매업	농·어·임·광업	기타	계
업체 수	5,915	2,476	290	176	114	20	115	9,106
비 중	65.0	27.2	3.2	1.9	1.3	0.2	1.3	100.0

자료 : 중소기업청(2002, d).

<표 III-2>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단위: 개, %)

		벤처기업(제조)	중소기업	대기업
매출액 증가율	2000년	35.2	12.5	16.7
	2001년	21.7	3.4	0.8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	2000년	6.6	3.3	0.3
	2001년	5.1	2.2	-0.6

자료 : 한국은행(2002).

나. 벤처기업의 세부실태

1) 분포 현황

① 유형별 분포

우리나라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¹⁰⁾에서 벤처기업을 정의하고 있으며, 특히 벤처기업 인가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목적으로 벤처기업 지정을 받기 위해 자격 없는 기업들의 불법행태가 빈번해지게 되면서,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 확인을 보다 철저하게 하기 위하여 법률개정을 통해 더욱 엄격한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은 이미 앞의 제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2002년 11월 말 현재 벤처 지정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수는 9,106개사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2년 11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벤처기업 확인 유형별로 벤처기업의 분포를 살펴보면 <표 III-4>와 같다. 가장 많은 벤처기업

10) 동법은 1997년 8월 28일 공포되었으며, 1997년 10월 1일(시행령은 1997년 10월 25일 공포 및 시행)부터 시행되고 있다.

<표 III-4> 벤처기업의 유형별 분포

(단위: 개사, %)

구 분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신기술기업	합 계
업체 수	1,180	1,324	6,602	9,106
비 중	13.0	14.5	72.5	100.0

자료 : 중소기업청(2002, d).

은 신기술기업으로 6,602개사이고 전체 벤처기업의 72.5%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은 연구개발기업이 1,324개 업체로 14.5%를 차지하며, 벤처투자기업이 1,180개사로 13.0%를 차지한다.

② 지역별 분포

2002년 11월 말 기준 벤처기업의 지역별 분포를 <표 III-5>에서 살펴보면, 벤처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 지역이 3,928개(43.1%)로 벤처기업 수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경기지역이 2,235개(24.5%), 인천지역이 438개(4.8%)로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벤처기업이 전체의 72.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의 지역은 아직까지 미미한 상태이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벤처기업은 대전·충남지역이 637개사로 전체 벤처기업의 7.0%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대구·경북지역으로 544개 업체로 전체 벤처기업의 6.0%를 차지한다.

<표 III-5> 지역별 분포

(단위: 개사, %)

구분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계
업체 수	3,928	446	544	192	637	2,235	438	79	210	99	282	16	9,106
비 중	43.1	5.0	6.0	2.1	7.0	24.5	4.8	0.9	2.3	1.1	3.0	0.2	100.0

자료 : 중소기업청(2002, d).

③ 규모별 분포

「2002년도 벤처기업 경영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벤처기업의 평균 종업원 수는 2000년의 28.3명에서 2001년에는 31.6명으로 약간 증가하였으며 동 조사의 당시인 2002년 상반기에는 32.1명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1년 8월에 발표된 중소기업청의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에 따르면 2000년 말 기준 벤처기업의 종업원 규모별 분포는 아래의 <표 III-6>에서 나타나듯이 101인 이상인 업체는 6.8%에 불과한 반면 5~30인 업체는 전체의 63.2%를 차지해 전반적으로 종업원 규모면에서 소규모임을 알 수 있다¹¹⁾.

또한 2000년 말 기준 자본금 규모별로 보면, 100억원을 초과한 업체가 3.9%인 반면, 1~5억원인 업체가 28.2%, 1억원 이하인 업체가 1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까지는 자본금 규모가 다소 영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1999년 평균 자본금 규모가 23.7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1998년 및 1999년을 기준으로 조사된 평균 자본금 규모가 각각 7억원 및 19.9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크게 증대하였다고 할 수 있다.

<표 III-6> 종업원 규모별 분포

(단위: 개사, %)

구 분	4인 이하	5~30인	31~50인	51~100인	101인 이상
업체 수	442	4,852	1,084	775	522
비 중	5.8	63.2	14.1	10.1	6.8

자료 : 중소기업청(2002, b).

11) 동 조사는 2001년 3월 말 기준 확인된 벤처기업 9,978개 중 예비창업기업을 제외한 9,364개사를 대상으로 하여 2001년 4월부터 7월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실시하였으며, 종업원 규모별 분포는 이에 응답한 7,675개사를 대상으로 하여 조사된 것이다.

<표 Ⅲ-7> 자본금 규모별 분포

(단위: 원, 개사, %)

구 분	1억이하	1~5억	5~10억	10~50억	50~100억	100억 이상
업체 수	845	2,068	1,426	2,321	379	289
비 중	11.5	28.2	19.5	31.7	5.2	3.9

자료 : 중소기업청(2002, b).

<표 Ⅲ-8> 매출액 규모별 분포

(단위: 원, 개사, %)

구 분	1억 이하	1~5억	5~10억	10~50억	50~100억	100억 이상
업체 수	747	1,387	893	2,358	835	967
비 중	10.4	19.3	12.4	32.8	11.6	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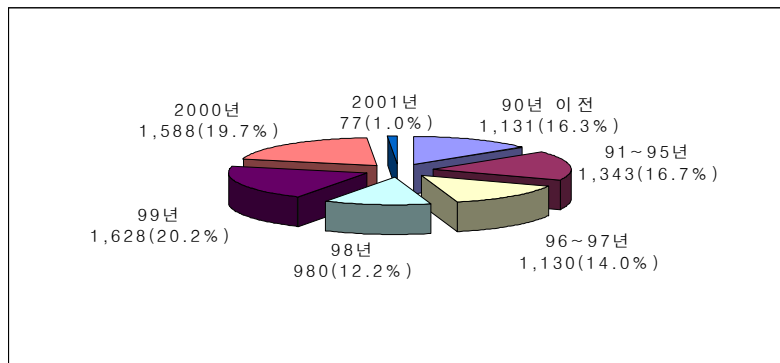
자료 : 중소기업청(2001).

또한 <표 Ⅲ-8>에서와 같이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2001. 8)」에 나타난 2000년 기준 매출액 규모별 벤처기업의 분포를 살펴보면, 100억원을 초과한 업체가 13.5%인 반면, 10~50억원인 업체가 32.8%, 5~10억원인 업체가 12.4%, 1~5억원인 업체가 19.3%, 1억원 이하인 업체가 10.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업체당 평균 매출액 규모는 50.03억원으로, 1999년의 평균 46.9억원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④ 업력별 분포

창업연도에 따라 벤처기업을 구분해 보면, 1998년 이후에 창업한 벤처기업의 비율이 전체의 53.1%로, 최근 3년간 신규 창업한 기업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1년에 창업한 신생 벤처기업이 전체 벤처기업 수의 1%에 불과한 것은 창업 이후 벤처 확인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

[그림 III-1] 업력별 분포



자료 : 중소기업청(2001).

업력이 5년 이내인 기업의 비율은 전체의 61.3%에 이르고 있는 등 성장단계별로 볼 때 성장기에 있는 기업이 많아 벤처기업의 매출액 증가 등이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⑤ 벤처기업의 성장단계

「2002년도 벤처기업 경영실태조사 결과」에 나타난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분포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표 III-9>와 같다. 창업기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은 2000년 조사시 13.5%에서 2002년 조사시에 7.2%로 감소하여 벤처기업의 창업이 감소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매출액 발생단계라고 할 수 있는 초기성장기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이 각 연도에 있어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기성장기에 해당하는 기업은 2000년 조사시에 45.8%를 차지하였으나 2002년 조사결과에서는 53.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조사결과 고도성장기에 해당하는 기업도 32.1%, 성숙기 기업 2.9%, 정체기 기업은 4.2%로 나타나 과거 조사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표 III-9> 기업의 성장단계별 분포현황

(단위: %)

조사 연도	창업기	초기성장기	고도성장기	성숙기	정체기
2000년	13.5	45.8	33.0	2.9	4.9
2001년	11.0	49.2	31.2	2.7	5.9
2002년	7.2	53.7	32.1	2.9	4.2

자료 : 중소기업청(2002, b).

결국 지난 몇 년간의 조사결과를 통해 볼 때 벤처기업군이 전반적으로 창업초기 성장단계의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서 향후 벤처산업의 성장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창업자 특성

① 성별·연령별 특성

「2002년도 벤처기업 경영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벤처기업의 창업 당시의 창업자 연령은 30대가 50.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0대가 34.9%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회적 통념상 20대들도 상당수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그 비율은 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업종별로는 정보통신서비스 분야에서는 20대 및 30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제조업 분야에서는 40대의 창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여주고 있다.

<표 III-10> 연령별 분포

(단위: %)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창업연령	6.0	50.2	34.9	7.6	1.4

자료: 중소기업청(2002, b).

한편 창업자의 성별 분포를 보면, 남성이 93.6%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은 6.4%로 아직은 전체 창업비율 측면에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여성벤처협회가 창설되는 등 여성들의 벤처기업 창업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 2001년의 조사결과 여성 벤처창업자의 비율이 3.3%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증가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② 학력별 분포

「2002년도 벤처기업 경영실태조사 결과」에 나타난 벤처기업 창업자의 학력별 분포는 <표 III-11>에서 보는 바와 같다. 벤처기업 창업자들의 학력은 학사 48.7%, 석사 22.1%, 기타 15.2%, 박사 13.9%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석·박사 이상 고학력 학위 창업자의 비율은 약 36%를 차지하고 있는데 1999년의 경우 동 비율이 22%였으며, 2001년의 조사 결과 33.8%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몇 년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알 수 있다.

<표 III-11> 학력별 분포

(단위: %)

학 력	박 사	석 사	학 사	기 타
비 율	13.9	22.1	48.7	15.2

자료: 중소기업청(2002, b).

3) 벤처기업의 경영실태

①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 벤처기업들은 국민경제지표 및 경영성과 측면에서 일반기업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벤처기업이 우리나라 국민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벤처기업들은 일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 비해 매출액 증가율,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 등 재무적 성과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이는 벤처기업의 우수성을 반영하는 결과로도 볼 수 있지만, 벤처기업들이 일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 비해 창업 초기단계에 있는 기업이 많은 데도 일부 원인이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2002년도 벤처기업 경영실태조사 결과」에 나타난 벤처기업의 유형별 경영성과를 비교해 보면, 매출액 증가율 측면에서 모든 유형의 벤처기업이 전년도에 비해 높은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벤처캐피탈의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가율은 무려 62.5%에 이르고 있으며, 증가율이 가장 낮은 신기술개발기업의 경우도 16.1%의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

<표 III-12> 벤처기업의 유형별 경영성과

(단위: 백만원, %)

확인 유형		벤처캐피탈	연구개발	신기술개발	기술평가	계(평균)
매출액	2000	4,016	4,125	4,365	5,304	4,748
	2001	6,525	5,148	5,066	6,958	6,189
	증가율	62.5	24.8	16.1	31.2	30.3
경상이익	2000	29	231	316	321	270
	2001	309	-264	412	265	218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	2000	0.7	5.6	7.2	6.1	5.7
	2001	4.7	-5.1	8.1	3.8	3.5

자료 : 중소기업청(2002, b).

러나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은 매출액 증가율이 가장 낮은 신기술개발기업이 8.1%로 가장 높게 나타나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한편 연구개발기업의 경우 매출액은 전년대비 24.8%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은 -5.1%로 나타나 연구개발기업에 포함되는 정보통신서비스 및 첨단 제조업종 부문에서 경영성과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② 자금사정

또한 「2002년도 벤처기업 경영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시점에 있어서의 벤처기업의 자금사정에 대한 인식이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이 46.2%, 좋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이 34.2%를 나타내어 전반적으로 벤처기업의 자금사정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2001. 8)」의 결과,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이 44.3%에 달하고 자금사정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13.2%에 불과했던 점을 상기하면 2002년 들어 벤처기업들의 자금사정이 매우 크게 향상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표 III-13> 자금사정

(단위: %)

조사연도	어려움	보통	좋음
2001년	44.3	42.5	13.2
2002년	19.6	46.2	34.2

자료 : 중소기업청(2002, b).

2. 벤처기업 및 관련 인프라의 문제점

가. 벤처기업 창업기반 하부구조의 미비

우리나라에서 벤처기업의 창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업가정신의 위축, 산학연대 취약, 기술력 부족, 사업아이템의 시장성 부족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벤처기업의 창업기반 하부구조가 전반적으로 미비되어 있는 상태이다.

우리나라 창업기업의 수를 <표 III-14>에서 살펴보면 미국, 일본과 비교해서 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창업기업의 수는 1995년에 1만 7,245개였는데 이는 같은 해 미국의 77만 206개에 비해 2.2%, 일본의 9만 5,000개에 비해서는 18.2%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2001년의 경우 우리나라의 신설법인 수는 3만 9,609개로 1995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늘어나기는 했으나 여전히 미국 및 일본에 비해서는 크게 뒤지는 수준이다. 인구 수를 고려하는 경우 1995년에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 천명당 창업기업의 수는 0.8개로 미국의 5.8개에 비해 13.8%, 일본의 1.4개에 비해 57.1% 수준에 불과하였다. 2001년의 경우에는 인구

<표 III-14> 국가간 창업 수 비교

	미국(95)	일본(93)	한국(01)
신설법인 수(개, A)	770,206	95,000	39,609
경제활동인구(천명, B)	132,304	66,140	22,181
인구천명당 창업 수(A/B)	5.8	1.4	1.8

주 : 1995년의 경우 한국의 신설법인 수는 17,245개, 경제활동인구는 20,326천명으로 경제활동인구 천명당 창업 수는 0.85개에 불과하였다.

자료 : 중소기업청.

천명당 1.8개로 1993년 일본의 1.4개 수준을 능가하고 있으나 10년 동안 일본의 변화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비교는 무의미하다. 이와 같이 창업기업의 수가 매우 적은 환경하에서는 그만큼 벤처기업의 탄생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벤처기업 수는 2002년 11월 기준 9,106개에 불과하다. 미국의 경우 새로 창업되는 연간 70만개에 달하는 기업 중에서 80% 정도가 생명공학, 소프트웨어, 미디어·통신, 반도체, 의료기기 등 첨단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많은 벤처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을 대변해 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한 해에 약 1,500개의 새로운 벤처기업이 창업되고 있으며 전체 벤처기업의 수는 3~4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벤처기업의 출현을 저해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벤처창업자들이 높은 위험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지닌 신기술·신사업에 도전하도록 기업가정신을 북돋우는 정책의 부재를 들 수 있다.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경영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므로 이를 극복하고 벤처기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에의 몰입과 개인적 희생의 감수, 높은 성취욕구, 창의성, 리더십 등과 같은 기업가정신의 발현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최근 기업가정신은 사업을 통한 신분상승의 한계, 물질적 성취의 한계효용체감, 저속성장 등 여건변화에 따라 급격히 위축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더욱이 1997년 말 경제위기 이후 기업가에게 집중된 사회적 비판과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등 경영환경의 악화와 더불어 사업실패가 곧 인생실패라는 인식도 모험투자를 통한 왕성한 기업가정신의 발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각종 정책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개별기업 중심의 직접적인 지원은 오히려 기업가정신을 저해하는 역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것이며 정부지원에 기대지 않고 기업가정신이 충만한 지적 자본가들(intellectual capitalists)이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점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벤처기업들이 창업과 관련된 각종 행정적 절차 및 규제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점을 애로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벤처기업이 특유의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사업활동을 자유롭게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규제완화, 공정경쟁 촉진, 금융시장 효율화 등 유·무형의 기반하부구조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산학연대의 기반이 극히 취약하다는 점도 벤처기업의 출현을 저해하는 요인의 하나로 지적할 수 있다. 벤처기업은 자원능력이 부족하므로 국내외 기업과는 물론 대학, 국공립연구소 및 민간연구소 등과 다양한 제휴전략을 통해 경쟁우위를 높일 수 있는 길을 터주어야 한다. 대학, 연구소 등은 배태조직으로서 창조적인 기술인력의 양성과 더불어 기초과학 연구를 통해 새로운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식기반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대만의 신죽단지 등은 산학협력이 벤처기업 창업의 원동력이 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대학과 연구소가 기술개발지원기관으로만 활용되어 온 까닭에 이들이 수행한 연구결과가 상업화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대학이나 국공립연구소의 경우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상용화를 개인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법적으로 규제되고 있어 창업시 신분상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대학과 연구소에서 개발한 기술이 산업계로 연계되는 메커니즘이 갖추어지지 않아 개인의 연구논문 형태로 새로운 기술이 발표되더라도 기업에 이전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향이 높다는 것도 커다란 문제점이다. 이처럼 기술의 공급적

인 측면에서 기반하부구조가 미비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벤처기업의 생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배태조직의 양적·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의 마련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벤처기업이 탄생하기 어려운 원인을 한 가지만 더 지적하면 연구개발투자의 규모가 너무 작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1997년 2.6%, 1999년 5.8%, 2000년 6.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전체기업 평균 연구개발비 비중을 크게 앞서고 있지만 아직도 절대적인 규모에서는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업체당 평균 연구개발비는 1999년의 경우 2.6억원, 2000년의 경우 3.6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¹²⁾.

<표 III-15> 벤처기업의 연구개발비 비교

	벤처기업			전체기업			미국의 벤처기업 (89~93년 평균)
	1997	1999	2000	1997	1999	2000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2.6	5.8	6.8	2.35	2.10	2.02	- -
종업원 1인당 연구개발비(달러)	8,148 ¹⁾			-			16,000 ³⁾
평균 연구개발비/자본금(%)	15.2 ²⁾			-			17 ³⁾

주 : 1) 2000년 기준이며 당해 연도 평균환율인 1달러=1,130원을 적용함.

2) 2000년 기준임.

3) 1994년 기준 벤처캐피탈 지원을 받은 1,800개 기업 중 조사응답 500업체.

자료 : 중소기업청.

12) 2001년에 중소기업청이 실시한 「2001년도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0년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업체당 평균 연구개발비는 3.6억원, 평균 종업원 수는 39.1명, 평균자본금은 23.7억원, 평균매출액은 53.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1인당 연구개발비는 2000년을 기준으로 할 때 8,148달러 수준으로 이미 1990년대 초에 16,000달러에 이르는 미국 벤처기업의 2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적은 연구개발비 투자는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국제경쟁력 배양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의 시급한 과제로서 장기적이고 대규모의 연구개발투자 확대가 요청되고 있다.

나. 취약한 벤처캐피탈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회사는 1986년 부산창업(주)가 최초로 설립됨으로써 시작되었다. 1990년대 후반에 들어와 벤처캐피탈회사는 크게 증가하였는데, 1996년 54개에 불과했던 벤처캐피탈회사가 2000년에는 147개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최근 벤처기업에 대한 열기가 침체되면서 2002년 9월 기준으로 132개사로 감소한 실정이다¹³⁾. 벤처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러한 역할을 벤처캐피탈이 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은 아직도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 벤처캐피탈은 벤처캐피탈이 발달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그 규모가 매우 작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벤처캐피탈은 절대규모는 물론 GDP에 대비한 상대적인 규모에 있어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다음의 <표 III-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기준 우리나라 벤처캐피탈의 절대규모는 18

13) 1974년 설립된 한국기술진흥(주)를 최초의 벤처캐피탈회사로 간주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기술진흥(주)를 포함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투자비율이 낮아 벤처캐피탈회사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표 III-16> 주요국의 벤처캐피탈 규모 비교

(단위: 십억달러, %)

	미국	일본	한국	호주	영국
벤처캐피탈규모 (A)	92.3	14.8	1.8	0.8	3.8
GDP (B)	9,873	5,111	427	391	1,458
GDP대비 (A/B)	0.9	0.29	0.4	0.2	0.3

주 : 일본은 1998년 자료, 호주는 1999년 자료이며 나머지 미국, 한국, 영국은 2000년 자료임.

자료 : NVCA, BVCA,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억달러로 미국의 923억달러에 비해 2% 수준에 불과하며, 1998년 일본의 벤처캐피탈 규모인 148억달러에 비해서도 12% 수준에 머물고 있다. GDP에 대비한 벤처캐피탈의 상대적인 규모도 우리나라가 0.4%에 불과해 미국의 0.9%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영국의 경우 GDP 대비 벤처캐피탈의 규모가 0.3%에 불과한데 이는 1996년에 GDP 대비 벤처캐피탈 규모가 1%에 이른 것을 정점으로 매년 낮아지는 추세에 따른 결과이다. 이와 같은 벤처 캐피탈의 규모 축소현상은 미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둘째, 벤처캐피탈회사제도가 이원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관할기관이 서로 달라서 일관성 있는 벤처기업 지원책을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회사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두 종류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벤처캐피탈회사의 관할기관이 중소기업청과 재정경제부로 나누어짐에 따라 벤처캐피탈 관련 법체계가 복잡하게 되고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책의 일관성이 미흡하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창업투자회사에 비하면 벤처캐피탈회사로서의 기능은 부족한 편이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금융사는 <표 III-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금 운용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경우 2000년 기준으로 총지원금액에서 주식투자와 전환사채 인수

<표 III-17> 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금융회사의 지원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지 원 현 황			투자비율(A/B)
	투자금액(A)	융자금액	계(B)	
창업투자회사	27,324	1,367	28,691	95.2
신기술금융사	11,558	12,271	23,829	48.5
합 계	38,882	13,638	52,520	74.4

주 : 2000년 기준임.

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투자에 해당하는 지원실적의 비중이 회사분과 조합분을 합하여 95.2%에 이르러 벤처캐피탈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경우는 총지원금액에서 주식투자와 전환사채 인수 등 투자에 해당하는 지원실적의 비중이 48.5%로 나타나 창업투자회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비록 최근에 이르러 신기술금융사의 투자비중이 확대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신기술금융사는 창업투자회사에 비해 벤처캐피탈로서의 역할 수행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투자조합을 통한 자금조달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벤처캐피탈회사는 차입금이나 자기자본의 확충에 의해 자금을 조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무이자외의 자금을 개인, 일반법인, 기관투자가 등으로부터 폭넓게 조달할 수 있는 투자조합을 통한 자금조달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투자조합의 결성이 활발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투자조합을 통한 자금조달이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투자조합의 결성이 활발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투자조합의 투자수익률이 낮기 때문이었다. 투자조합의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었던 요인으로는 그 동안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벤처기업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점과 벤처캐피탈업무에 대한 경험 부족, 투자기업의 증권시장에의 상장 또는 등록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 등 여러 가지가 있다. 1999년 이후 한때 코스닥시장의 활황으로 인하여 코스닥시장의 등록기업에 투자했던 벤처캐피탈회사나 투자조합이 높은 투자수익을 올리게 되면서 투자조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도 하였으나 투자조합의 투자결과는 장기간에 걸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주식투자를 하여 단기간에 투자성과를 얻을 수 있는 뮤추얼펀드에 비해서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엔젤의 활동이 미흡하다. 우리나라에서도 1999년 이후 벤처붐이 조성되면서 벤처기업의 수가 급격히 증가한 바 있으나, 벤처기업을 위한 자금지원 실태를 보면 전통적으로 벤처캐피탈 내지 정부의 다양한 지원기금 등 제도적 자금이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자금만으로는 벤처기업의 엄청난 자금수요, 특히 창업 초기의 자금수요를 충족하는 데는 역부족이므로 개인 여유자금의 산업자본화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개인의 여유자금이 산업자본화되고 있음을 볼 수는 있으나, 아직도 경영자와의 혈연, 지연, 학연 등의 관계에 의해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자금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본이 아니라 부채로서 이자부담이 있으며 단기에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창업 초기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다섯째, 기관투자가의 투자조합에 대한 참여가 저조하다. 투자조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지만, 1987년 이후 1997년까지 기관투자가의 출자액은 총출자액의 10.7%에 불과할 정도로 기관투자가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참여는 저조하였다. 기관투자가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연·기금, 공제조합, 보험회사 등 장기자산 운용기관인 기관투자가

가 각 기관의 자산운용에 관한 규정에 의해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엄격히 제한받았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투자조합은 기관투자자로부터 외면을 받아 왔다. 더욱이 1997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기관투자자가 투자조합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는 등 여러 가지 법적인 뒷받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투자자의 투자조합에 대한 참여는 아직까지 활발하지 않다. 그 이유는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투자조합의 평균 투자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연·기금 등 장기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에 적합한 투자조합이 투자위험을 이유로 각 기관의 자산운용에 관한 규정에 의해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다.

다. 코스닥시장의 미성숙

코스닥시장은 거래소시장의 상장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벤처 및 중소기업의 비상장 유가증권에 대하여 시장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여 중소기업의 육성을 돕는다. 이와 같이 자본시장을 차별화하는 것은 거래소시장이 성숙한 대기업 위주의 시장으로서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다산다사의 특성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의 유통시장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코스닥시장은 우리 경제가 1997년 말 발생한 금융위기와 1998년의 극심한 경기침체로부터 빠른 회복을 보이면서 1999년 1년 동안 눈부신 성장을 하게 되었다. 코스닥시장은 <표 III-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9년 말 시가총액이 1998년 말에 비해 12.5배나 증가하였다. 또한 1999년 1년 동안의 거래량은 1998년에 비해 180배, 거래대금은 388배나 증가하였던 것이다.

<표 III-18> 코스닥시장과 거래소시장 비교

(단위: 개, 백만주, 십억원, %)

		회사 수	자본금	시가총액	거래량	거래대금
1998	코스닥시장(A)	331(114)	5,407.8	7,892.2	0.7	5.5
	거래소시장(B)	748	54,865.6	137,798.5	97.7	660.4
	비율(A/B)	44.3	9.9	5.7	0.7	0.8
1999	코스닥시장(A)	453(173)	13,061.5	98,704.4	126.3	2,133.7
	거래소시장(B)	725	78,090.4	349,504.0	300.1	4,564.7
	비율(A/B)	62.5	16.7	30.4	42.1	46.7
2000	코스닥시장(A)	604(244)	15,128.3	29,015.8	283.9	1,139.2
	거래소시장(B)	704	84,929.9	188,041.5	306.2	2,602.2
	비율(A/B)	81.6	17.8	15.4	92.7	43.8
2001	코스닥시장(A)	721(353)	14,735.2	51,818.1	366.7	1,529.4
	거래소시장(B)	689	82,755.4	255,850.1	473.2	1,997.4
	비율(A/B)	104.6	17.8	20.3	77.5	76.6
2002.11	코스닥시장(A)	834(383)	14,679.5	43,310.7	286.0	865.3
	거래소시장(B)	684	108,519.1	298,407.5	985.2	2,451.2
	비율(A/B)	121.9	13.5	14.5	29.0	35.3

주 : 1) 당해연도 연말 기준이며, 2002년도는 11월말 기준임.

2) 거래량 및 거래금액은 당해 연도 및 당해 월 일평균임.

3) () 안은 벤처기업 숫자임.

자료 : 증권거래소 및 KOSDAQ 인터넷 통계자료.

이와 같은 추세는 2000년에도 이어져 일시적이지만 거래대금과 거래량에서 거래소시장을 능가하는 상황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표 III-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2월 8일 코스닥시장의 거래대금은 4조 8,789억원으로 거래소시장의 3조 5,749억원을 앞질렀으며, 2월 17일에는 거래량에 있어서도 코스닥시장은 2억 1,925만주를 기록하여 거래소시장의 2억 1,242만주를 앞질렀다.

<표 III-19> 코스닥시장 및 거래소시장의 거래대금 및 거래량

(단위: 십억원, 만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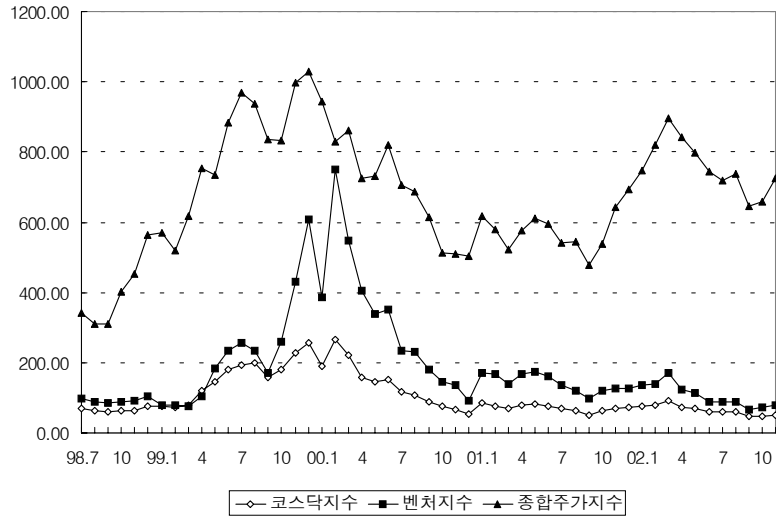
	코스닥시장			거래소시장		
	주가지수	거래금액	거래량	주가지수	거래금액	거래량
2000. 2. 8	233.65	4,878	21,786	961.22	3,574	22,949
2000. 2. 17	262.37	5,229	21,925	897.52	3,226	21,242
2002. 11. 29	51.90	963	31,955	724.80	2,588	71,333

자료: 증권거래소 및 KOSDAQ 인터넷 통계자료.

코스닥시장이 이렇게 급성장을 하게 된 요인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경제위기 이후 경기의 회복과 금리의 하락 등 경제여건이 점차 개선됨에 따라 주식이 최상의 투자대상으로 대두되었다. 둘째, 미국 나스닥시장의 활발한 주가상승은 소위 신경제(new economy)의 결과로 인식되었으며, 이와 맞물려 우리나라의 코스닥시장도 거래소시장에 비해 더욱 활성화되었던 것이다. 셋째, 정부가 1999년 5월 4일 코스닥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코스닥시장의 등록여건과 운영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세제지원을 마련하는 등 코스닥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다음의 [그림 III-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3월 10일 코스닥 지수가 292.55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2년 11월 말 현재 코스닥지수는 51.90에 불과한 상태이다. 결국 1999년 및 2000년 초까지 나타났던 우리나라 코스닥시장의 눈부신 성장은 그후 지속적인 침체국면으로 인하여 한 때의 불에 그치고 만 것이다.

[그림 III-2] 코스닥, 벤처 및 종합주가지수 변화추이



1999년 말 453개였던 코스닥시장 등록기업의 수는 2000년 말 604개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29조원을 약간 상회하는 데 그쳐 1999년 말 시가총액 98조 7천억원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그후 코스닥시장의 등록기업은 계속 증가하여 2002년 11월말 현재 834개에 달하고 있지만 시가총액은 43조원에 불과하여 453개사가 등록되었던 1999년 말의 시가총액 98조 7천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2001년의 전반적인 증권시장 침체에서 벗어나 2002년 이후에는 우리나라 거래소 시장이 다시 어느 정도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2002년 11월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 코스닥시장의 일평균 거래량은 약 2억 8,600만주, 일평균 거래금액은 약 8,650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각각 거래소시장 일평균 거래량의 29%, 일

평균 거래대금의 35%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코스닥시장이 엄청난 폭락을 경험하게 된 요인들을 몇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2000년 이후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어 경제위기 이후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원유가격이 급등, 반도체가격의 폭락 등 대외적인 여건이 악화되었으며, 경기하강과 아울러 자금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대내적인 여건도 악화되는 현상에 따라 코스닥시장도 지속적인 침체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둘째,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음에 따라 투자자들이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다.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이 원칙보다는 재량에 의해 진행되는 측면이 강했고, 공적자금의 투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공공기업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가 강경투쟁을 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던 점도 전반적인 증권시장 침체의 원인이 되었다.

셋째, 코스닥시장이 동조화되어 움직이는 미국의 나스닥시장이 2000년 3월부터 폭락하기 시작하였는데 NYSE에 비해 나스닥시장이 상대적으로 더 하락하게 되면서 이를 구경제에 대한 신경제의 패배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이와 같은 세계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지면서 우리나라의 벤처분도 일시적인 현상으로 인식되어 코스닥시장의 침체에 일조하게 된 것이다.

넷째, 몇 차례 연이어 발생한 주가조작사건이 벤처기업과 코스닥시장에 심각한 상처를 주었다는 점이다. 코스닥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무너짐에 따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도 급격히 감소하게 되어 벤처산업 전체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코스닥시

장은 최근 몇 년간 한 차례의 폭등을 경험한 이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들의 자금조달시장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벤처캐피탈 등 자금공급원의 자금회수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다.

IV. 우리나라의 벤처기업 지원제도

1. 일반지원제도¹⁴⁾

벤처기업의 육성은 고용증대 및 국제수지 개선을 이룰 수 있으며 현재의 경제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1997년 8월 제정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벤처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가. 금융지원제도

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제도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금융사와 같은 벤처캐피탈과 엔젤 투자자들에 의한 직접금융지원과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간접금융지원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벤처캐피탈 등에 의한 직접금융 지원은 이미 앞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정부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간접금융지원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창업자금 지원제도

현재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자금 지원제도로는 중소·벤처창업자금 지원, 우수 신기술 지정 지원 및 기업은행의

14) 중소기업청 벤처넷 참조.

창업자금 지원사업 등이 있다.

가) 중소·벤처창업자금 지원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벤처기업가 정신을 가진 우수창업자를 발굴·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아이디어, 신상품, 신기술 등을 사업화하려는 예비창업자나 창업기업이 필요로 하는 창업자금(Startup Financing)을 지원하고 있다.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의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지원한도는 동일기업 당 10억원(운전자금의 경우 5억원)이다.

나) 우수 신기술 지정·지원사업

본 사업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특허, 실용신안, 컴퓨터프로그램 등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도 자금력이 부족하여 사업화를 못하는 기술인력 및 중소기업에게 기술의 구현에서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진적이고 혁신적인 개념에 기초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특허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컴퓨터프로그램 등 지적재산권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아직 제품화되지 않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설립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동 사업은 특히 사업화 가능성,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실용성이 높고 정보통신산업 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여도가 큰 기술을 대상으로 하여 공모를 통하여 우수신기술을 발굴·지정하여 S/W기술의 경우 건당 1억원 이내¹⁵⁾의 개발비를 지원함으로써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성공한 자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사업화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15) H/W기술은 1.5억원 이내.

다) 기업은행의 창업자금 지원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과 저변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창업과 창업 이후의 경영활동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벤처기업이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신기술보육사업 지원업체, 고부가가치 영위업체 및 수출품·수입대체 소재부품생산업체, 수도권 이외의 지방소재업체 등을 우선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운전자금은 1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2억원 이내에서 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다.

<표 IV-0> 창업자금 지원 제도

종 류	지 원 대 상	개 인	일 반 중 소	벤처 기 업	지 원 한 도
중소·벤처 창업자금	· 창업 준비중인 개인자 ·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인 중소기업	○	○	○	· 시설자금 10억원 · 운전자금 5억원
우수신기술 지정, 지원 사업	· 제품화되지 않은 기술을 보유한 개인 · 설립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	○	○	· 건당 1억원 (S/W 기술)
기업은행 창업자금	· 벤처기업 및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 정밀화학 등 고부가가치 영위기업 · 수도권 이외 지방소재업체 등	△	△	○	· 운전자금: 1억원 · 시설자금: 2억원

주 : ○ : 우선적용 여부 관계없이 지원대상

△ : 지원대상에는 포함되나 우선적용대상 아님.

× :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자료 : 중소기업청 벤처넷 자료를 재정리.

2) 경영·구조개선자금 지원제도

경영·구조개선자금 지원제도에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일반금융기관의 벤처기업 지원자금, 정보통신설비 구입 및 시설개체비 지원 등이 있다.

가)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사업¹⁶⁾

동 사업은 중소기업의 운영자금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지원내용에 따라 일반경영안정자금과 특별경영안정자금으로 구분된다. 일반자금 지원에서는 원부자재 구입, 완제품 제조, 국내외 판로개척, 기술 및 경영혁신, 개발기술의 사업화, 시설도입 후 초기가동, 정보화 촉진 등 일상적인 기업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지원범위로 한다. 특별자금은 재해, 구조조정 등의 특정사유¹⁷⁾로 일시적인 자금수급불균형 상태에 처한 기업 중 자금 지원시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 자금 지원을 하게 된다. 지원대상에는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영위(전업률 30% 이상)하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 중 수출유망기업,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기술력 및 품질 우수기업, 성장유망기업¹⁸⁾ 등이 포함되며, 업체당 연간 5억

16) 2002년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의 지원규모는 일반자금 2,100억원, 특별자금은 300억원이다.

17) ① 연간 매출액의 5% 이상에 상당하는 받을 어음의 부도, 외상매출금 또는 수출대금의 미회수가 발생하는 경우 ② 거래선의 변경 또는 국내외 경제여건의 급변등에 의한 연간 매출액이 전년대비 10% 이상 감소한 경우 ③ 수해 등 천재지변 또는 대형사고로 인하여 연간 매출액의 5% 이상에 상당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 ④ 기타 거래금융기관의 구조조정, 거래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장기 노사분규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노동자가 기업을 인수하여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경우

18) ① 수출유망기업에는 연간 매출액 중 수출액의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 등이 포함된다.

원을 한도(매출액에 따라 차등)로 하고 있다.

나)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사업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와 경영혁신을 위한 시설자금 및 구조조정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영체질을 강화하려는 사업이다.

우선 시설자금지원이란 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생산설비를 구입·개체하거나 혹은 정보화 촉진을 위해 시스템 및 설비를 개체하려는 경우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으로는 '①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기업, ②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영위기업, ③ 벤처기업, ④ ①~③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으로 다른 중소기업이 제조한 시설재를 구매하여 설치하려는 기업'이 포함된다. 그리고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에 대해서도 시설자금의 30% 이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으로 구조조정지원자금이란 시설자금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①내지 ③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 인수, 합병 등의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하거나,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의 사업 전환을 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¹⁹⁾.

② 성장유망기업이란 중소기업청 선정 월드컵상품 생산 유망중소기업, 중소기업공동상표 참여기업, 지역특화산업 참여기업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을 의미한다.

19) ① 인수·합병 혹은 기술 및 설비 등의 인수 등을 통해 구조를 개선하려는 경우 소요되는 자금

- 다른 기업이 보유중인 생산설비를 이양 받는 경우 생산설비가액
- 법원, 성업공사, 금융기관의 경매(공매)물건을 낙찰받은 경우 경락가액
- 다른 기업이 개발한 기술과 제조·판매권리를 양수받는 경우 양수가액
- 중소기업간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경우 인수가액
-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데 소요되는 제반비용

② 2년 이상 가동중인 중소기업이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사업 전환하는 경우 소요되는 시설자금

한편 지원한도는 소요자금의 100% 이내로 업체당 연간 총20억 원 이내(다만 장치산업의 경우 30억원까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다) 일반금융기관의 벤처기업 지원자금

벤처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하여 일반금융기관(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 간의 협약에 의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보증서 발급을, 은행은 벤처기업 용자지원 재원을 조성하여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벤처기업, 우수기술보유기업, 신기술사업자, 유망중소기업, 은행추천 우수기술보유기업 및 수출기업 등이 그 대상이다. 지원규모는 동일기업당 100억원을 한도로 운전자금의 경우 연간 매출액의 3분의 1 범위 내, 시설자금은 당해시설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라) 중소 지식기반서비스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2002년부터 새로이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지식정보화시대의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동시에 안정적인 내수기반을 마련하고자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식기반 서비스업(전업률 30% 이상)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특히 수출기업, 벤처기업, 20인 이하 소기업, 여성기업, IT화 지원업체로 선정된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있다. 지원범위는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또는 연구개발비, 시장개척비용 등에 대해 동일기업당 10억원(운전자금 5억원)을 한도로 대출해 주고 있다.

③ 중소기업을 인수하여 회생시키고자 하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서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에 등록된 회사의 기업인수 자금

<표 IV-1> 경영·구조개선자금 지원제도

종 류	지 원 대 상				지 원 한 도
		개인	일반 중소	벤처 기업	
경영안정 자금지원	·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수출유망중소기업 · 벤처기업 및 기술력 등이 우수한 기업 · 성장유망기업	×	○	○	· 운전자금 5억원
구조개선 자금지원	·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기업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영위기업 · 벤처기업 · 그 밖의 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이 제조한 시설재를 구매하여 설치하려는 기업	×	○	○	· 시설자금 20억원 이내(장차산업의 경우 30억원) · 초기가동비 명목의 운전자금: 시설자 금의 30%
벤처기업 자금지원	· 벤처기업 · 우수기술보유기업 및 신기술사업자 · 유망중소기업 및 수출기업	×	×	○	100억 한도 내에서 · 운전자금: 연간 매출액의 1/3, · 시설자금: 당해 시설 소요자금
중소 지식기반 서비스업 육성자금지원	· 지식기반 서비스업(전업률 30% 이상) 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지원대상	×	×	○	· 시설자금: 10억원 · 운전자금: 5억원
정보통신설비 구입 및 시설 개체비 지원	· 지원신청 제한 없음 (단, 중소기업 우대)	×	○	○	· 설비소요자금의 80% 범위내 (20억원 한도)

주 : ○ : 포괄적인 지원대상 또는 우선지원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지원사
업에서는 우선지원대상

△ : 지원대상에는 포함되나 우선적용대상 아님.

× :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자료 : 중소기업청 벤처넷 자료를 재정리.

마) 정보통신설비 구입 및 시설개체비 지원사업

정보통신 분야의 연구개발 또는 산업의 정보화 추진을 위한 설
비구입비 및 시설개체비 지원을 통하여 산업정보화를 촉진함과
아울러 산업체의 기술력 향상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우대)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다. 지원신청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한 설비구입 및 시설개
체, 멀티미디어기기(방송·영상기기) 구입, 공장자동화(전산화)의

추진을 위한 H/W, S/W의 구입, 정보화 추진을 위한 유무선통신망(LAN, CALS 등을 포함) 구축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의 80% 범위 내에서(20억원 한도) 지원하고 있다.

3) 기술개발자금 지원제도

기술개발자금 지원사업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출연사업)

산업기술 수요조사를 통하여 찾아낸 공통핵심기술 분야와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집중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분야에 정부가 개발사업비의 3분의 2까지 기업에 대해 지원하고, 개발결과가 기술적 및 사업적으로 성공하면 정부가 지원한 자금의 50% 이내²⁰⁾를 개발 완료 후 5년 안에 상환하는 사업이다. 대상 분야는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 벤처기업기술개발사업,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첨단대형기술개발사업, 연구기획사업 등이며, 매년 1월부터 4월까지 대상 분야별로 공고 후 기업, 연구법인 및 각종 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원신청을 받아 선정하게 된다. 지원규모는 총기술개발 비용의 75% 이내(과제당 최고 3억원 이내)이며, 참여기업은 총기술개발 비용 중 정부출연 이외의 나머지 부분을 부담²¹⁾하게 된다.

나) 산업기반기술개발용자사업

첨단기술개발사업,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성공과제 또는 특허 등의 실용화를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을 통하여 기술개발 능력

20) 창업후 7년 이내 중소기업은 30% 이내

21) 현물부담이 가능하나, 최소한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은 기술개발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상기 분야의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정보통신 분야 기업 및 기업과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연구기관이며, 특히 중소·벤처기업과 정보통신부의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중 그 성과(매출실적)가 높은 기업에 우선지원하고 있다.

<표 IV-2> 기술개발자금지원제도

종류	지원대상	개인	일반 중소	벤처 기업	지원한도
산업기반기술 개발사업*	· 공통핵심기술개발, 벤처기업기술개발, 중기 거점기술개발, 국제공동연구개발, 첨단대형 기술개발사업, 연구기획사업	×	○	○	· 기술개발 비용의 75%(3억원 이내)
산업기반기술 개발융자사업	· 지원대상에 대한 제한 없음. · 지원 분야가 산업기반 기술개발사업의 완료 과제 및 특허기술 등의 실용화 사업과 첨단기술개발사업으로 한정	×	×	○	· 소요자금의 80%까지 융자 (30억원 이내)
중소기업기술 혁신개발사업*	· 제조업을 영위하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코스닥 미등록 중소기업 · 소프트웨어업, 공업디자인서비스업, 창업 및 보육센터 입주기업	×	○	○	· 전체 개발사업비 의 75% 범위 내 (혁신기술 1억5천 만원, 일반기술 1억원 이내)
정보통신산업 기술개발사업*	· 정보통신 분야 기업 및 기업과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연구기관	×	△	○	· 총개발비의 50% 이내
환경 분야 기술 연구 개발 사업	· 기술개발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 혹은 중소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者 · 벤처기업	△	△	○	· 총개발사업비의 75% 이내 (최고 3억원)

주 : 1) *는 출연사업을 의미함.

○ : 포괄적인 지원대상 또는 우선지원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지원
사업에서는 우선지원대상

△ : 우선지원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지원사업에서 지원대상에는
포함되나 우선지원대상 아님.

× :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자료 : 중소기업청 벤처넷 자료를 재정리

기술개발 수행기업으로 선정되면 연구개발비는 출연형태로 지원된다. 정부의 지원규모는 총개발비의 50% 이내에서 이루어지며, 기술개발 수행기업이 총개발비의 나머지 50% 이상(현금으로 10% 이상)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기술개발 수행기업은 과제 종료후 개발성과의 활용시 정하여진 기술료(순매출액의 2%)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마) 환경 분야 기술연구개발사업

낙후된 국내 환경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국내 환경기준을 조기 달성하고 지구환경문제 등 환경으로 인한 무역마찰을 최소화하는 한편, 선진국 수준의 기술진입을 위하여 대기, 수질, 상하수도, 폐기물 등을 중점 개발토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기술개발능력(연구인력 및 시설 등)을 보유한 중소기업 혹은 중소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와 벤처기업에게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G7환경공학 기술개발사업, 공공기반 기술개발사업, 벤처형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경유차량 저공해 기술개발사업 등을 지원대상 분야로 한다. 지원범위는 총개발사업비의 75%(최고 3억원) 이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4) 기타 자금지원

가) 중소기업 개발기술 사업화자금

기술성,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여 기술력 중심의 지식기반 산업구조로의 이행을 촉진하려는 목적하에 지원되고 있다. 따라서 사업화 가능한 기술개발에 성공한 중소기업²³⁾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²⁴⁾을 대상으로, 업체당 5억원

23) ① 최근 3년 이내 중기청 시행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

(운전자금 3억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 중소기업 협동화자금지원

다수 중소기업이 입지문제 해결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생산시설, 공해방지시설, 창고 및 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유통산업 관련업,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3개 이상의 중소기업(창업일로부터 1년 미만인 업체는 참가업체 수의 2분의 1 범위 이내)이 함께 필요로 하는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영위 업종에 대한 조건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지원우대를 해주고 있다. 자금 지원에 있어 3개 이상의 중소기업 중 추진주체와 참가업체를 구분하여 지원규모를 달리 적용하고 있다. 건물·부지매입비, 임차보증금, 건축공사 및 기계시설 설치비 명목으로 사용되는 시설자금의 경우, 추진주체는 50억원, 참가업체는 40억원 이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며, 운전자금에 있어서는 추진주체의 경우 10억원 이내, 참가업체에 대해서는 5억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판로개척, 원자재 구매, 기술개발, 상표개발 등을 위해 필요한 협업화 자금의 경우, 추진주체는 30억원 이내, 참가업체는 20억원 이내이다.

공(완료)한 중소기업 ② 선정기술을 최근 1년 이내에 사업화하려는 Inno-Biz 선정업체 ③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기술평가 확정 등록이 3년 이내인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 중소기업 ④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결과물이 제품화가 가능한 중소기업.

- 24) ① 운전자금 : 개발기술 및 특허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구입비용, 시장개척비용, 추가개발비 등, ② 시설자금 : 개발기술을 활용한 제품양산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설비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금.

<표 IV-3> 기타 자금지원제도

종류	지원 대상	개인	일반 중소	벤처 기업	지원 한도
		중소기업 개발기술 사업화자금	·사업화 가능한 기술개발에 성공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 협동화 자금지원	·3개 이상의 중소기업(제조업, 제조 업 관련 서비스업, 유통산업 관련업,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반드시 영위) ·3개 이상의 벤처기업(영위업종 관계 없음)	×	△	○	·시설자금:50억(40억) ·운전자금:10억(5억) ·협업화자금:30억원 (20억)

주 : ○ : 포괄적인 지원대상 또는 우선지원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지원사
업에서는 우선지원대상

△ : 우선지원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지원사업에서 지원대상에는 포함
되나 우선지원대상 아님.

× :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자료 : 중소기업청 벤처넷 자료를 재정리.

나. 신용보증지원제도

정부는 벤처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벤처기업의 보증 및 보험
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에 대한 보증지원은 신용보증과 기술보증으로 나누어지는데, 여기
에서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의하여 지원되는 보증에 대해서만 살
펴보기로 한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벤처기업육성특별법에서 정
하고 있는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기술 등에서 벤처기업에 해당하
는 기업에 대해서도 보증지원을 하고 있다.

1) 벤처 창업평가 특별보증제도

기술력이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촉진을 위하여 우수한 기

술력 및 아이템을 토대로 창업하는 창업자에게 기술성 및 사업성을 엄격히 평가하여 기술력을 담보로 신용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기술력이 있는 예비창업자들의 창업 또는 창업기업의 기반구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중소기업청의 벤처기업 창업자금(IBRD자금) 지원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제도로서 우수한 기술, 아이템을 사업화 과제로 창업하는 자(창업후 7년 이내인 창업기업 포함)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우수창업자 발굴을 위한 추천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동 제도에 의한 지원을 신청하게 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센터에서 기술성 및 사업성을 엄격히 평가하여 보증서를 발급하게 되면 대출금융기관에서 적정 지원금액을 대출하게 되는 제도로서 지원한도는 동일기업당 5억원(운전자금은 3억원) 한도이다.

2) 사전평가 보증예약제도

예비 창업기업에 대한 사전평가 보증예약제도는 벤처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지원체제로서 기술창업계획, 아이템 및 보유기술에 대한 사업성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창업초기단계의 필요자금에 대한 보증지원 가능금액을 사전에 확정하여 보증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의 지원대상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미만의 기업으로서 벤처기업, 자연계 대학교수 및 기술사, 연구기관 근무 과학기술분야 연구원, 대학생 창업경연대회 수상자, 창업보육센터에서 추천하는 입주기업 또는 우수졸업기업 등이다. 지원규모는 기술개발자금, 사업화자금, 원자재구입자금 등의 운전자금인 경우 5억원 이내이며, 사업장 마련자금 및 기계설비구입자금 등의 시설

자금인 경우에는 3억원 이내이다. 동 제도 또한 우수창업자의 발굴을 위하여 추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센터의 사업성 평가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하는 제도이다.

3) 금융기관 협약 벤처 특별보증제도

금융기관 협약 벤처 특별보증제도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전액보증지원제도와 부분보증지원제도가 있다. 먼저 전액보증지원제도는 벤처기업에 대한 우선적 보증전담기관인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기술력이 높은 벤처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하여 기술우대보증 대상기업에 포함하여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 절차간소화를 통해 적기에 신속하게 보증지원하는 제도이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벤처기업과 협약기관과 별도로 정하는 우수기술 보유기업(기술우대보증대상기업)이 지원대상이며 보증대상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금융기관(23개 은행)의 벤처기업육성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등 정책자금이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부분보증지원제도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하여 벤처기업 우선보증 지원 전담기관인 기술신용보증기금과 금융기관에서 대출 및 보증의 상호 책임분담을 통해 보증지원하는 제도이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상 벤처기업,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상 신기술사업자, 제조업 영위 우량중소기업 및 컴퓨터관련 유망중소기업, 은행이 추천하는 우수기술 보유기업 또는 수출기업이 지원대상이며,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금융기관(10개 은행)의 벤처기업육성자금 등을 보증대상으로 하여 동일기업당 100억원 이내에서 보증하고 있다.

<표 IV-4> 신용보증지원제도

종 류	지 원 대 상	개인	일반 중소	벤처 기업	지 원 한 도
벤처창업평가 특별보증제도	· 우수한 기술, 아이템을 사업화 과제로 창업 하는 자 · 창업한 지 7년 이내인 창업기업	○	△	△	· 시설자금: 5억원 · 운영자금: 3억원
사전평가 보증 예약제도	·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미만의 기업	○	×	○	· 시설자금: 5억원 · 운영자금: 3억원
금융기관 협약 벤처 특별보증 제도	· 기술신보의 전액보증제도: 벤처기업	×	×	○	· 기업당 100억원 이내 보증
	· 기술신보의 부분보증제도: 벤처기업 및 신 기술사업자, 제조업 영위 우량중소기업 및 컴퓨터관련 유망중소기업, 은행 추천 우수 기술보유기업 또는 수출기업	×	△	○	
기술우대 보증제도	· 벤처기업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평가한 우량 기술기업 · 첨단기술 중소기업, 기술 및 품질인증기업, · 산자부의 일류화상품 승인업체, · 정통부의 우수신기술(IT)마크 지정업체 등	×	△	○	· 운전자금: 6억원 이내
회사채 발행 보증제도	· 설립 한지 3년 이상 경과한 업체로서, · 최근 1년간 매출액이 15억원 이상인 기업, · 최종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의 현존하 는 순자산액이 2억원 이상인 업체	×	○	○	· 발행보증액: 5천만원

주 : 1) *는 출연사업을 의미함.

○ : 포괄적인 지원대상 또는 우선지원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지원제
도사업에서는 우선지원대상

△ : 우선지원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지원사업에서 지원대상에는 포함
되나 우선지원대상 아님.

× :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자료 : 중소기업청 벤처넷 자료를 재정리.

4) 기술우대보증제도

기술우대보증제도는 기술력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기업 또는 각
종 기술개발자금 관련 정책자금을 배정받는 경우 그 기업에 대한

여 기술력 위주로 신용조사와 보증심사의 절차를 간소화(간이심사)하여 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적기에 신속히 자금이 대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기업은 벤처기업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평가한 우량 기술기업, 첨단기술중소기업, 기술 및 품질인증기업, 산업자원부의 일류화상품 승인업체, 정보통신부의 우수신기술(IT)마크 지정업체 기타 기술상 수상기업 등이다. 보증대상자금은 산업기반자금, 정보화촉진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각종 기술개발 배정자금이며, 운전자금에 대해서 6억원까지는 간이심사를 적용하고 있다.

5) 회사채발행보증제도

동 제도는 중소·벤처기업이 소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기업이 부담하는 회사채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설립 후 3년 이상이 경과한 업체로서 최근 1년간 15억원 이상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최종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의 현존하는 순자산액이 2억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동 제도에 의한 보증을 위해서는 2년 이상의 상환기간과 5천만원 이상의 발행금액을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조달한다는 회사채 발행요건이 지켜져야 한다.

다. 기술인력지원제도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그 동안 고급기술인력들이 대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고, 산·학·연 협력시스템의 기반 취약 등으로 인해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벤처기업에 우수인력들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

를 시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시책은 교수·연구원 등의 휴직·겸직제도,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 스톡옵션제도 등이다.

1) 교수·연구원 등의 휴직 및 겸직제도²⁵⁾

정부는 기술력 있는 우수인력의 벤처기업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교수와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의 임원으로 근무할 경우 휴직을 허용하고 있다. 휴직대상은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포함)의 교원(부설 연구기관의 연구원 포함)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이며,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임용기간중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또한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교원 및 연구원은 겸직이 허용되고 있다. 겸직대상은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포함)의 교원(부설 연구기관의 연구원 포함) 및 정부출연기관의 연구원이며, 벤처기업의 임직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교수 및 연구원은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

정부는 연구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병역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벤처기업도 이 제도를 통하여 기술개발능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우수 기술인력을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즉 1998년 개정된 「병역법」시행령에 따르면 벤처기업의 기술개발능력을 뒷받침할 우수 기술인력의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부설연구기관에 대하여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신청 및

25) 이에 대한 근거법률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이다.

지정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함과 동시에 대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벤처기업의 전문연구요원은 의무종사기간(2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벤처기업으로 전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 가능한 대상자는 석사 이상의 학위취득자로서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서 종사하는 자 및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으로서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 중 기업부설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자이다. 이들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대상자가 벤처기업에 5년 이상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병역의무를 대체하게 된다.

3) 외부인력에 대한 스톡옵션제도

동 제도는 벤처기업에 우수한 연구 및 경영인력의 공급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의 스톡옵션²⁶⁾대상을 현행 당해 법인 임직원 이외에 교수·연구원, 대학·연구소 등 법인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스톡옵션 부여 대상자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스톡옵션 부여가능 기업은 거래소 상장 또는 코스닥 등록을 하지 않은 벤처기업이며, 이들이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총한도는 주식총수의 50% 이내이다(<표 IV-6> 참조).

벤처기업 임·직원 또는 외부인력이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

26) Stock-Option(주식매수선택권)이란 회사가 그 임직원들에게 일정량의 회사주식을 발행당시 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일종의 인센티브(유인보상)제도이다. 즉, 회사가 임·직원에게 일정기간 내에 자기회사의 주식을 사전에 약정된 가격으로 일정수량 만큼 매수할 수 있는 권리(Stock Option)를 주는 제도를 말하는데, 회사는 동 제도를 활용하여 회사와 임·직원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임·직원들의 주인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선택권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 중 연간 3천만원 한도 내의 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표 IV-5> 스톡옵션 부여 및 행사 관련 내용

스톡옵션 부여대상	개 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법인 임·직원(최대주주·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제외) - 대학(전문대학, 산업대학 포함)의 교원(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원 포함) - 정부출연 연구기관(원자력연구소, 원자력안전기술원, 과학기술평가원 포함)의 연구원 - 변호사,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세무사, 산업 또는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 연구기관(민법에 의하여 설립)의 연구원
	법 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포함) - 정부출연 연구기관(원자력연구소, 원자력안전기술원, 과학기술평가원 포함) -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산업 또는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 연구기관
스톡옵션 부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자기주식의 교부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와의 차액(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현금 또는 당해법인의 주식으로 교부(Stock Appreciation Rights)
행사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주식매수)할 것(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직 또는 재임하여야 함) * 당해법인 임·직원 중 2년이 경과한 후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3월 이내에 행사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결의한 날로부터 행사만료시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유효

자료 : 중소기업청 벤처넷 자료를 재정리.

라. 입지지원제도

1) 창업보육센터 운영

창업보육센터란 기술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장소 및 시설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창업자 또는 창업예비자에게 개인 또는 공동 작업장 등의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함과 아울러 경영·세무 및 기술지도 등의 지원을 통하여 창업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성장을 유도하여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중소기업청은 현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2에 의거하여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가지고 있으나 사업화 능력이 미흡한 예비창업자 및 신규창업자의 입주공간 확보를 위해 대학 및 연구소 등에 창업보육센터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벤처창업의 활성화를 돕고 있다. 또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가) 창업보육센터 설치자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법인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우선 창업보육 대상자 입주 전까지 ① 10인 이상의 창업보육 대상자가 입주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 ② 연건평 500㎡ 이상 규모의 사업장 ③ 창업보육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실험기기, 계측기기 등 공동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밖에 전문인력을 3인 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가 창업보육 사업에 적합해야 한다.

창업보육센터 설치자에 대해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지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건립비를 10억원 한도 내에서 출연하고 있으며, 1

개 센터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5년 동안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창업보육센터 사업목적의 취득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취득세 면제, 재산세·종합토지세 50% 감면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등의 세제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나)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창업보육센터 입주자는 벤처 및 기술집약형 업종의 창업자(창업일로부터 1년 이내) 및 예비창업자로 제한된다. 입주기간은 2년 이내이나, 보육센터 운영주와 입주자 간 협의하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들이 보육센터를 통해 제공받고 있는 지원내용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우선 작업장, 범용제조시설, 실험기기, 자료실, 사무설비 등 창업에 필요한 제반시설이 지원되는 것은 물론, 경영·기술 및 세무에 관한 상담과 행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으로 대학 또는 연구기관 안에 설치·운영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도시형 공장 설치자)은 공장등록이 허용된다²⁷⁾. 이외에도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입주기업에 대한 판매알선 및 홍보를 지원하고 있으며, 졸업기업에 대한 창업 및 기술개발자금 지원 등에 있어서도 우대하고 있다.

2) 벤처기업 집적시설

벤처기업 집적시설은 교통, 정보·통신, 연구, 금융 등의 기능이 집중되어 기업 경영 여건이 우수한 도시에 벤처기업이 집단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 빌딩 등을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 각종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도심의 벤처 입지공간 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27)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의3.

가) 벤처기업 집적시설 내 입주기업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자금 및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금지원에는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을 통한 입주비용 및 협동화사업을 통한 입주비용 지원이 있으며, 세제상 지원은 대도시지역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세 3배중과 및 재산세 5배중과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²⁸⁾.

나) 벤처기업 집적시설 설치자

벤처기업 집적시설 설치를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전용면적 1500㎡ 이상 확보하거나,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는 전용면적 1200㎡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단 기존건물은 지정 후 1년 이내에, 신축중인 건물은 사용승인 후 1년 이내에 입주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둘째, 면적의 70% 이상을 6개 이상의 벤처기업이, 나머지 면적은 벤처기업 지원시설이나 관련시설²⁹⁾이 차지하여야 하며, 셋째 공동휴게실 및 회의실이 구비되어야 한다.

벤처기업 집적시설 설치자에 대해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지원 내용을 보면, 국공유재산의 수의계약 및 임대를 허용하고 있으며, 건축금지 지역에 대해서도 보다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각종 부담금의 면제 및 조세감면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표 IV-7> 참조).

28) 「지방세법」 제280조.

29) ① 지원시설 : 창투자, 상담회사, 창업보육센터, 은행,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업부설연구소. ② 관련시설 : 벤처기업과 관련이 있는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지원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업무시설·벤처기업의 업무활동을 위해 필요한 회의장·전시장·공동이용장비실 등 공동용시설과 벤처기업의 인력교육 및 양성에 필요한 시설.

<표 IV-6>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원내용

국공유재산의 수의 계약 및 임대	국공유재산의 수의계약 및 임대 허용	벤처기업특별법 제19조
건축금지 지역에 대한 특례	녹지지역 및 전용주거·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건축 허용	벤처기업특별법 제22조
각종 부담금의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부담금(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 · 과밀부담금(수도권정비법 제12조): 건축비의 5~10% · 농지전용부담금(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 공시지가의 20% · 산림전용부담금(산림법 제20조의3): 공시지가의 20% · 농지조성비(농지법 제40조): 농림부장관 결정 고시 · 대체초지조성비(초지법 제23조): 농림부장관이 결정 고시 · 대체조립비(산림법 제20조의2): 산림청장이 결정고시 	벤처기업특별법 제22조
조세감면	·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 감면	지방세법 제276조
미술장식설치 의무 면제	· 건축비의 1%	벤처기업특별법 제22조
기타	* 기존건축물의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용도 전환시: 교통유발 부담금 면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 감면	

자료: 중소기업청 벤처넷 자료를 재정리

3) 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는 창업자가 제조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계획입지(국가, 지방, 농공 단지)가 아닌 개별입지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 산림, 환경, 토지이용관련법 등에 의해 개별적으로 받아야 할 복잡한 인·허가 사항을 일괄 의제처리토록 함으로써 인·허가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공장설립을 지원하는 입지에 대한 승인제도이다. 이에 따라 동 제도 이용시 공장설립과 관련한 행정절차의 간소화는 물론 공장건립으로 인한 부담금이 사안별로 감면되는 이점이 나타나는

데, 이러한 특징은 특히 ‘공장설립 승인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더욱 분명해진다³⁰⁾.

<표 IV-8>에서 보면, 현재 공장설립과 관련된 제도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설립 승인제도’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로 대별된다. ‘공장설립 승인제도’는 공장설립에 관한 일반절차로서 창업자, 중소기업자, 대기업자 등의 대상과 공장신설, 증설 등의 형태에 대한 제한 없이 적용되는 반면 ‘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는 중소기업 창업자의 공장신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절차에 해당된다. 따라서 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의 경우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의제처리되고 개발부담금 및 전용(농지, 산림)부담금이 감면되나, 공장설립 승인제도에 의하는 경우에는 의제처리가 되지 않고 개별법의 절차에 따라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며, 부담금이 감면되지 아니한다.

대신 동 제도는 중소기업 창업자의 공장설립을 지원하는 특별제도이기 때문에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당해 토지 및 공장건축물은 5년간 매매, 임대(일부임대 포함)가 제한되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 창업자의 공장설립을 지원하는 특별제도인 관계로 사후관리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한편 동 제도의 지원신청대상은 창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자로 자기명의의 공장등록증이 없고, 제조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로 한정된다.

30) 현재 공장설립과 관련된 제도로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설립 승인제도’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로 대별된다. ‘공장설립 승인제도’는 공장설립에 관한 일반절차로서 창업자, 중소기업자, 대기업자 등의 대상과 공장신설, 증설 등의 형태에 대한 제한 없이 적용되는 반면 ‘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는 중소기업 창업자의 공장신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절차에 해당된다.

<표 IV-7> 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상의 이점

내 용	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	공장설립 승인제도
행정절차의 간소화	의제처리됨	의제처리되지 않고 개별법 절차에 따라 국토이용계획 변경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부담금 감면	100% 면제	부담금 감면되지 않음
「개발이익환수법」에 의한 개발부담금		
	50% 감면	부담금 감면되지 않음

자료 : 중소기업청 벤처넷 자료를 재정리

마. 판로 및 수출 지원제도

중소·벤처기업의 판로 및 수출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은 크게 7가지로 구분된다.

1) 일반판로 지원

가) 방송광고 지원

벤처기업의 광고시장으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 한국방송광고공사, KBS, MBC, SBS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이미지 제고 및 신기술개발제품에 대한 판로 지원을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기 광고중인 벤처기업 제외)으로 하며, 지원내용은 <표 IV-9>와 같다. 즉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TV 및 라디오 광고에 대한 광고료를 정상가격의 30%를 적용한다. 광고

<표 IV-8> 방송광고 지원내용

(단위: 만원)

구	분	정상가격	벤처기업 적용가격
광고료 지원	TV	5,000만원/월	1,500만원/월
	라디오	1,000만원/월	300만원/월
광고료 지급		현금 또는 6개월 기한 어음 등	→ 평균 6개월 이내 기한어음(금융기관의 지급보증필요)

주 : 방송광고의 내용은 상품광고만 가능하며, 기업 PR, 대리점 모집광고등에 준하는 광고는 제외.

자료 : 중소기업청 벤처넷 자료를 재정리.

료 지급은 선광고 후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광고료 지급방식에 있어서도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받아 평균 6개월 이내 기한어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나) 인터넷 제품 홍보

정부는 벤처기업의 홈페이지와 생산제품 카탈로그를 제작하여 인터넷에 수록함으로써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벤처기업 제품을 국내외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액을 재정에서 지원하며, 지원내용에는 홈페이지 제작수료, 수록업체 개별 홈페이지 주소 및 인터넷 e-mail 계정부여, 수록업체 판로개척 및 해외홍보를 위한 지원과 각종 관련정보 제공, 인터넷 활용을 위한 교육 실시 등이 포함된다. 본 사업의 선정대상은 특히 기술력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결정되며, 특히 벤처기업, 특허, 실용신안 등록업체, 자기상표 등록업체, KS, JIS, UL 등 국내외 공인규격 획득 및 GQ, ISO, 100PPM 등 국내외 품질인증업체 및 수출촉진 긴급지원사업 대상업체를 우선 선정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 해외유명규격 인증획득 지원

L/C개설, 원자재 구매자금지원 등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인증마크 미획득으로 인해 수출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강제인증마크인 CE(유럽공동체), CCIB(중국), GOST(러시아)마크 등 해외인증마크³¹⁾ 획득을 지원함으로써 수출기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지원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이며, 특히 L/C개설 등 수출여건은 갖추었으나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인증마크가 없어 수출할 수 없는 중소기업체를 우선지원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지원규모는 인증신청(예비신청), 기술지원(컨설팅), 제품시험분석 및 수정·보완, 공장심사비용 등 인증획득비용의 70%에서 정부가 지원한다.

2) 수출 지원

가) 일반수출입금융 지원

수출물품 생산업자에 대하여 물품선적 전에 생산자금, 원자재구입자금 등 필요한 소요자금을 지원하는 원화자금 대출제도이다. 지원내용을 지원자금과 용자대상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표 IV-10>과 같다. 한편 용자방법은 각 자금별 신용장기준 또는 실적기준방식 중 업체가 편리한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³²⁾, 향후 변

31) 지원대상 인증분야 : UL(미국), CSA(캐나다), CE(유럽공동체), GOST(러시아), FCC(미국), CCIB(중국), JIS/T(일본), VDE(독일), QS-9009(미국), QAS(호주), NEMKO(노르웨이), SEMKO(스웨덴), TUV(독일), KEMA(네덜란드)

32) ① 신용장 기준금융 : 과거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된 소정의 용자한도 내에서 당해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수출신용장 등 건별 용자대상증빙을 근거로 매건별로 용자받는 방식이다. ② 실적기준금융 : 수출용원자재 사전확보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과거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된 소정의

<표 IV-9> 일반수출입금융 지원내용

용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신용장, 선수출계약서(D/A, D/P조건) 또는 외화표시 물품공급계약서에 의하여 물품을 수출하거나 국내에 공급하고자 하는 자 · 내국신용장(Local L/C)에 의하여 수출용 완제품 또는 원자재를 국내에서 제조가공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자 · 과거 수출실적이 있는 자
자금 종류(용도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자금 : 수출용완제품 또는 원자재를 직접 제조 가공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 원자재 금융 : 수출용원자재를 해외로부터 수입하거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구매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자료 : 중소기업청 벤처넷 자료를 재정리.

경도 가능하다. 다만, 실적기준 방식에서 신용장기준방식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수출실적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 후에, 신용장기준에서 실적기준으로 변경시에는 기지급된 융자금 상환시 허용된다.

나) 수출자금 지원

시중은행의 무역금융 이용에 애로가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고 안정적 경제발전을 도모하려는 지원사업이다. 수출계약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특히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수출유망 중소기업을 우대지원하고 있다. 지원범위는 15억 한도 내에서 수출계약(L/C, D/A,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에 따른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소요비용을 수출계약액의 90%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융자한도 내에서 수출신용장 등과는 관계없이 임의로 융자받는 방식을 말한다.

<표 IV-10> 수출기업화사업의 연차별 지원내용 및 세부내용

구분	지 원 내 용	세 부 내 용
1차 연도	단기 무역실무 교육 및 자료제공	· 전문기관(중소기업개발원)에 단기 무역실무교육 위탁 및 자료제공(교육비 및 자료지원비 전액지원)
	해외시장조사 및 관련바이어 명단 공개	· 목표시장에 대하여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수 출대상품목 중심으로 심층적인 해외시장조사 및 관련 바이어 명단 제공(조사비 전액지원)
	카탈로그 제작지 원 및 해외배포	· 외국어판 홍보 카탈로그 제작 지원 · 해외바이어 및 KOTRA 해외무역관에 배포(제작비 일부 및 배포비 일부지원)
	제품/포장/시각 등 디자인개발 지원	· 제품/포장/시각 등 디자인 개발 지원 ·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 및 개별 전문디자인기관 이용(디자인개발비 일부지원)
	무역전문인력 알선	· 기업 실정에 맞는 전문인력을 알선기관을 통하여 소개 및 지원
	기타 업체별 해외 마케팅 지원	· 독자적인 수출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업체별 실 정에 적합한 수출업무지원 · 인콰이어리 회신발송, 번역 등 수출관련 사업 지원 · 대상업체 수시 방문상담 · 상기 외에도 대상업체에서 희망하는 지원에 대해 수용 가능시 적극지원
2차 연도	수출기업화 해외 세일즈단 파견	· 수출기업화 대상업체 시장개척단 파견 ※ 파견지역: 아시아, 중남미, 유럽지역(파견비 일 부 지원)
	유관기관 시장개 척단 참가 지원	· 지자체 및 유관기관 주관 시장개척단 참가비 일부 지원
	해외전시회(박람 회) 참가 지원	· 개별 업체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 유관기관 주관 및 개별 해외전시회 참가비 일부지원
	한국상품 홍보 (Korea Trade) 지 광고계재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기업 및 상품홍보 · 한국상품홍보지(Korea Trade)를 통한 수출상품 광 고계재(광고비 전액지원)

자료 : 중소기업청 벤처넷 자료를 재정리.

다) 수출기업화사업

수출 가능성은 있으나 수출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선정, 2년

간 기초단계부터 밀착 지원함으로써 해외진출 능력을 제고하고 수출에 대한 자신감과 자생력을 확보토록 유망수출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의 선정대상은 중소기업 중 최근 1년간 직수출 실적이 미화 100만달러 이하인 제조업체로서 제조업 전업률이 50% 이상인 업체를 기준으로 하며, KOTRA 주관하에 2년간 지원을 받는다. <표 IV-11>에 의하면 지원 1차연도에는 단기 무역실무교육 및 자료제공, 해외시장조사 및 관련 바이어 명단 공개, 카탈로그 제작 지원 및 해외배포, 제품/포장/시각 등 디자인 개발지원, 무역전문인력 알선 및 기타 업체별 해외 마케팅 지원 등이 이루어지며, 지원 2차연도에는 수출기업화 해외 세일즈단 파견, 유관기관 시장개척단 참가 지원, 해외전시회(박람회) 참가 지원 및 한국상품 홍보(Korea Trade)지에 광고 게재 등의 지원을 하게 된다.

라) 수출신용보증 특례

수출자가 제조, 원자재 구매를 위한 무역금융 등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대출받고자 하는 경우, 수출보험공사가 이를 연대보증함으로써 수출자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을 촉진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중소·중견기업(30대 계열기업군 소속업체 제외)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이들이 신용장(L/C)을 수취한 경우에는 생산, 원자재구매 등에 소요되는 무역금융 전액에 대해, 신용장(L/C)이 없는 경우에는 업체별 보증한도(중소기업 30억원)³³⁾ 내에서 지원한다.

마) 벤처기업 수출보험 특별우대 지원

앞서 수출보험공사의 연대신용보증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

33) 신용장(L/C)이 없는 경우의 업체별 보증한도가 종전(중소기업 20억원)에 비해 50% 상향조정되었으며, 신설업체에 대해서도 최대 3억원까지 보증하고 있다.

<표 IV-11> 판로 및 수출지원제도

	종 류	지 원 대 상	개인	일반 중소	벤처 기업
	방송광고지원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 (기 광고중인 벤처기업 제외)	×	×	○
판로 확대	인터넷 제품 홍보	<우선 선정업체>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 · 특히, 실용신안 등록업체 및 공동브랜드 등 자기상 표 등록업체 · NT, KT, EM마크 등 신기술 인증제품 · KS, JIS, UL 등 국내외 공인규격 획득 및 GQ, ISO, 100PPM 등 국내외 품질인증업체 · 수출촉진 긴급지원사업 대상업체 <기타 선정업체> · 수출 적합상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품질에 비하 여 인지도가 낮고 경영상태가 취약한 기업 · 해외지사 및 전시판매장 개설 등 해외판로개척을 위하여 노력중인 업체	×	△	○
	해외유명규격 인증획득지원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	○
	일반수출입급 융지원	· 수출물품 생산업자	×	○	○
	수출자금 지원	· 수출 중소기업	×	○	○
	수출신용 보증	· 중소·중견기업(30대 계열기업군 소속업체 제외)	×	○	○
수출 지원	벤처기업 수출 보험우대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 · KOTRA, 수출보험공사, 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중 소기업 · 은행, 신보, 기술신보,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자체 등이 지정한 업체	×	△	○
	수출기업화 사업	· 중소기업 중 최근 1년간 직수출 실적이 미화 100만 달러 이하이고, 제조업 전업률이 50% 이상인 업체	×	○	○

주 : ○ : 포괄적인 지원대상 또는 우선지원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지원사
업에서는 우선지원대상

△ : 지원대상에는 포함되나 우선적용대상 아님.

× :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자료 : 중소기업청 벤처넷 자료를 재정리.

용기관의 자금지원을 촉진하는 것 외에, 특히 벤처기업 등 유망중소기업에 대해 수출보험의 정책적 우대 지원을 통해 수출저변의 확대와 둔화되는 수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이다. 수출보험우대 지원대상은 벤처기업 및 KOTRA·수출보험공사·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중소기업 등이며(<표 IV-12>참조), 이들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일반중소기업에 대한 15% 할인 이외에 추가적으로 10%의 보험료가 할인되고 있다. 또한 보상시 보험가 지급에 있어서 대기업(60%)보다 높은 80%의 지급률이 적용되고 있으며, 보험금 지급에 걸리는 시간도 대기업보다 훨씬 단축된 2~3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다.

바. 기타 지원

1) 소자본 주식회사 설립지원

지식기반을 갖춘 젊은 세대 및 교수·연구원 등의 창업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식회사의 설립자본금을 인하함으로써 주식회사 형태로의 창업을 촉진하는 지원제도이다.

벤처기업창업자(예비벤처기업), 벤처기업(개인기업) 및 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예비벤처기업을 확인받은 자가 지원대상이 되며, 이들이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2천만원 이상이면 된다. 이처럼 벤처기업이 소액자본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법원에 법인설립등기 신청시 벤처기업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2)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공장등록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설치·운영중인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

벤처기업의 실질적인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등록을 지원하고 있다.

공장등록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운영중인 창업보육센터 내에 입주한 벤처기업으로, 수질, 소음, 공해 등이 적은 도시형 공장으로서 공장 종류를 제한하고 있다.

3) 실험실공장 설치, 등록

교수 또는 연구원의 벤처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 안에 실험실공장 설치 및 공장등록 허용하는 지원제도이다. 실험실에 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자와 설치 가능한 장소는 <표 IV-13>과 같다.

<표 IV-12> 실험실공장 설치, 등록에 관한 지원내용

실험실공장 설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원(연구원 포함) · 국·공립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원 및 광주과학기술원 포함)의 연구원 · 정부출연연구기관¹⁾의 연구원 · 전문생산기술연구소²⁾의 연구원 · 대덕연구단지에 입주한 연구기관(기업부설 연구소 포함)의 연구원
실험실공장 설치 가능한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실험실 · 국·공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실험실 ·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실험실 · 「대덕연구단지관리법」에 의하여 대덕연구단지에 입주한 연구기관의 실험실

주 :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2)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 규정에 의함.

자료 : 중소기업청 벤처넷 자료를 재정리.

4) 기술담보제도 및 가치평가제도

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 기술을 담보로 하거나 혹은 그 기술에 대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이를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우선 기술담보제란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여 담보로 설정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제도로 산업기술평가원에서 주관하고 있다. 다음으로 기술가치평가제는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로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기술담보 혹은 가치평가의 대상이 되는 기술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한 지적재산권 및 KT, NT, EM 등 보유기업의 기술로 제한한다.

<표 IV-14> 기타 지원제도

종 류	지 원 대 상	개인	일반 중소	벤처 기업
		소자본 주식회사 설립지원	· 벤처기업창업자(예비벤처기업) · 벤처기업(개인기업) · 지방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예비벤처 기업을 확인받은 자	○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공장등록	·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 벤처기업	×	×	○
실험실공장 설치, 등록	· 각종 교수 또는 연구원	○	×	×
기술담보제도 및 가치평가제도	· 벤처기업	×	×	○

주 : ○ : 포괄적인 지원대상 또는 우선지원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지원사업
에서는 우선지원대상

△ : 지원대상에는 포함되나 우선적용대상 아님.

× :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자료 : 중소기업청 벤처넷 자료를 재정리.

위의 네 가지 지원제도 외에도 벤처기업에 대한 국제거래 관련 계약, 무역분쟁 해결, 기술도입 등의 국제거래 관련법률 상담 지원 및 대학·연구기관 또는 개인 소유의 특허권 등³⁴⁾을 벤처기업에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2. 조세지원제도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및 「지방세법」 등에 광범위하게 마련되어 있다. 조세지원의 내용은 중소기업 전반에 대한 조세지원, 창업 및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벤처투자자 관련 조세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중소기업 전반에 대한 지원³⁵⁾

1)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조세특례

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³⁶⁾

세법상 중소기업에 대하여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

34) 출자대상기술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기타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

35) 중소기업청, 「2002년도 중소기업지원시책 합동설명회 자료」, 2002. 1. 중소기업청 벤처넷, 「벤처기업지원제도」 중 조세지원제도 참조.

36) 2002년도 세법개정에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의 대상업종이 기존 15개 업종에서 9개 업종을 추가하여 총28개 업종으로 확대되었으며, 특히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10%의 세액공제가 인정된다. 기존의 의료업의 경우는 개인의원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액 상당액을 감면하며(단 다른 투자세액공제와 중복적용 불가능), 이러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수도권 소재 소기업 및 지식기반산업의 중기업의 경우³⁷⁾: 소득세·법인세 20% 감면
2. 수도권외의 지역소재 중소기업 : 소득세·법인세 30% 감면
3. 수도권 소재 여부 관계없이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은 10% 감면

나)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³⁸⁾

중소기업이 구매대금을 환어음·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기업구매전용카드 또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중소기업 외의 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함), 2002년 12월 31일까지 결제하거나 사용 또는 이용하는 분에 대하여는 다음의 금액을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한다.

$$\text{공제세액} = (\text{환어음} \cdot \text{판매대금추심의뢰서 결제액} + \text{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액} + \text{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지급금액} - \text{약속어음의 금액}) \times 0.5\%$$

* 공제세액은 산출세액의 10% 한도

37) 지식기반산업 : 엔지니어링산업, 연구 및 개발업, 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 관련업.

수도권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으로 서울, 경기, 인천.

소기업 : 중소기업 중 상시종업원수가 제조업은 100명, 광업·건설업·운수업은 50명, 기타 업종은 10명 미만인 기업.

38) 2002년도 세법개정에서는 동 제도의 적용기한을 2005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대신 공제율을 0.3%로 축소하였다.

다)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 7조의 3)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지원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세원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2003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금액의 0.5%를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함)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라)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등(조세특례제한법 제8조)³⁹⁾

내국인이 2003년까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무자동화기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를 중소기업에게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경우(특수관계자간 지원거래는 적용대상이 아님), 기증자는 기증한 설비의 가격 또는 설비 가격에서 양도가액을 차감한 가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수증자인 중소기업은 기증받은 설비의 가격 또는 설비의 가격에서 양수가액을 차감한 가격을 익금에 불산입한다.

마)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2)

2002년까지 주권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중소기업이 사업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사업손실준

39) 그러나 동 제도의 이용실적은 2001년의 경우 1건, 200만원에 불과할 만큼 적용실적이 미미하고 지원의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어 2002년도 세법개정에서는 폐지하였다.

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상장일·협회등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의 30%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바) 적자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3)⁴⁰⁾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은 결손금을 '직전과세연도'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하여 직전연도에 납부한 법인세·종합소득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사) 최저한세 우대(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각종 소득공제, 비과세 및 세액공제 등으로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는 사업자의 발생을 막고자 시행되고 있는 최저한세 적용에 있어, 대기업은 과세표준의 15%를 산출세액으로 하지만, 중소기업은 12%로 보다 우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아)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앞서 살펴본 다양한 중소기업 세액공제 규정⁴¹⁾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 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경우,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간(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7년)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이월공제할 수 있다.

40) 동 제도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이며, 2002년도 세법개정에서 일몰시한의 도래로 인하여 폐지되었다. 그러나 동 제도 폐지에도 1년간 소급공제 또는 5년간 이월공제는 가능하다.

41)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 제1항·제2항, 제94조

자)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 배제(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⁴²⁾

법인의 경우 세액감면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 자본전입이나 이월결손금보전에 사용하여야 하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개인기업과 동일하게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의무를 폐지한다. 다만, 감면세액상당액을 2년 이내에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5년 이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중소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지원

이 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촉진을 유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가) 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세법상 중소기업⁴³⁾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

42)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감면세액에 대한 사후 관리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당초 도입취지와는 달리 실질적인 기업 재무구조 개선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주주배당과 자금운용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측면이 있어서 2002년도 세법개정에서 폐지되었다.

43) 중소기업의 범위(조세법 시행령 제2조) :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① 제조업,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 관련업,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처리업,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 배급업에 한함),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카지노, 관광 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함) 및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이 중 「」에 해당하는 업종은 2002년부터 추가된 것임).

도까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 전자상거래설비,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설비(POS) 및 정보보호시스템설비의 신규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려는 투자준비금을 사업용 자산가액의 20%까지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나)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세법상 중소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용 자산 및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정보보호시스템설비(단 중고품 투자는 제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3%를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 중소기업 정보화지원(IT)사업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2)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청 등으로부터 정보화를 위한 설비투자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당해 투자금액을 지원받은 과세연도⁴⁴⁾에 전액 손금 산입한다(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

라)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⁴⁵⁾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②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1천명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4) 2001년 12월 29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45) 동 제도는 2002년도 세법개정에서 SCM(공급망관리), CRM(고객관계 관리) 등의 대상설비항목이 추가되었으며,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이 5%에서 7%(ERP도 7%)로 확대되었다.

첨단기술설비, 전자적기업자원설비(ERP), 전자상거래설비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5%(ERP는 10%, 대기업은 3%)가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된다.

3) 기술·인력개발 지원

중소기업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지원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조업, 연구 및 개발업, 건설업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에 규정한 중소기업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수입금액의 3%(기술집약적 산업 및 자본재산업은 5%) 범위 내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나) 연구,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⁴⁶⁾
중소기업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 1) 중소기업의 기술, 인력개발비용이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거나 2) 기술, 인력개발비용의 15%를 공제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⁴⁷⁾

46) 2002년도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직전 4년간 평균 발생액 초과액으로 세액 공제를 받게 될 경우 초과액의 50%가 아닌 40%로 축소된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당해연도 발생액의 15% 세액공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47) 대기업인 경우, 1)의 초과금액 50%만을 적용한다.

다)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⁴⁸⁾

2003년 12월 31일까지 기술·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을 기업화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당해 투자금액의 10%까지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라)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기술비법 등을 보유한 내국인이 보유기술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기술이전소득에 대해 법인세·소득세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반대로 특허권·실용신안권·기술비법 등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함)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공제한도 10%)한다.

4)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가)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세 등의 이월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19조, 제120조)⁴⁹⁾

부동산업·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시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통합법인에게

48) 동 제도는 2002년도 세법개정에서 공제율을 7%로 축소하였으나 지난 11월 개최된 국민경제자문회의 결과 2003년 6월까지의 현행 10%의 공제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49)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개선계획 등에 의한 출자전환 등에 대한 등록세 면세제도는 2002년도 세법개정에서 폐지되었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물론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다.

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⁵⁰⁾

제조업·광업·건설업 기타 세법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으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 법인전환소기업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39조)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법인으로 전환한 소기업의 경우, 법인 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4년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손금불산입의 경우(제135조~제137조)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1. 제135조 :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2. 제136조 :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의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3. 제137조 : 소비성 서비스업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라) 수도권외 지역 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내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세법이 정하는 방법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으

50) 동 제도와 관련하여 정부는 2002년도 세법개정에서 법인전환을 유도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사치성 서비스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였다.

로 공장시설을 이전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 후 3년간 100%를, 그 다음 5년간은 50%를 소득세·법인세 감면 및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에 대해 비과세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이외 법률에 의한 과세특례

가) 특정물품의 면세(관세법 제93조)

중소기업이 해외구매자의 주문에 따라 제작한 기계·기구가 당해 구매자가 요구한 규격 및 성능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험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나) 관세의 분할납부(관세법 제107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기계 및 설비류에 대해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다) 접대비 손비범위 우대(법인세법 제25조, 소득세법 35조)

내국법인의 접대비의 손비 인정에 있어 대기업은 1,200만원까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800만원까지로 우대하고 있다.

라) 분납기한 우대(법인세법 제64조)

내국법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마) 반기납부 허용(소득세법 제128조)

상시고용원이 10인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세무서에 신청하여 승인을 얻는 경우 분기별 납부방법을 반기별 납부로 변경해줌으로써 소규모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줄여 주고 있다.

바) 사업소세 면제(지방세법 제249조)

종업원 수가 50인 이하인 영세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종업원 할을 적용하여 사업소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나. 창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⁵¹⁾에 대한 조세지원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해주는 세액공제(면제 또는 감면)와 부담금감면 외에 이들 기업의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스톡옵션 관련 조세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1)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창업중소 및 창업벤처중소기업⁵²⁾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등의 국세감면과 취득세·등록세 등의 지방세 감면을 제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51) 조세지원대상 규정에서 벤처기업은 우리말로 신기술사업, 기술집약형 기업, 지식집약형 중소기업, 연구개발형 기업 등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52) 창업중소기업이란 수도권지역 이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을,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창업 후 2년 이내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말한다. 이들 기업의 범위는 제조업·광업·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방송업·엔지니어링사업·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 대해 창업일(벤처기업확인일) 이후 최초 소득발생연도부터 6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

나) 등록세 면제 및 중과배제(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지방세법 제280조 제3항)

창업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세액감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벤처기업확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다. 또한 대도시지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등록세 3배중과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창업기업의 법인설립등기 또는 창업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예비벤처기업)도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하는 법인설립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다.

다) 취득세 면제 및 중과배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지방세법 제280조 제3항)

창업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세액감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벤처기업확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그리고 대도시지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등록세 3배중과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라)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창업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세액감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창업일 또는 벤처기

업확인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 그리고 대도시지역 내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재산세 3배 증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마) 인지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9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가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용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통장·계약서 등의 서류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해준다.

바)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해 비과세·세액면제·감면·공제 등의 조세감면을 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법」에 의거 세액감면분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창업중소기업 등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 및 벤처기업 전용단지에서 창업하는 벤처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취득세 또는 등록세 등의 세액감면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세액감면액의 20%)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창업보육센터 사업자에 대한 조세지원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세액감면대상에 창업보육센터⁵³⁾ 사업자를 포함하여 창업 중소·벤처기업의 창업비용 절감을 지원하고 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사업자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를 말하

53) 창업보육센터란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 및 장소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이다.

며, 이들에 대한 세액감면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 당해 사업에서 최초 소득발생연도부터 6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

나)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지방세법 제280조 제4항)

창업보육센터 운영자가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다.

다)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지방세법 제280조 제4항)

창업보육센터 운영자가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를 감면하고 있다.

<표 IV-15> 창업 중소기업·벤처기업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조세지원 내용	창업 중소기업·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	○
취득세·등록세 면제	○ ¹⁾	○ ²⁾
재산세·종합토지세 50% 감면	○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
인지세 면제	○	×

주 : 1) 사업용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가 면제되며, 법인설립 등기시는 등록세만 면제.
 2)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면제.

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
 창업보육센터 운영자의 취득세·등록세 등의 세액감면에 대하여
 는 농어촌특별세(세액감면액의 20%)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창업중소기업의 공장설립시 부담금 감면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공장을 설립하는 경
 우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공장설립을 원활히 하고
 있다.

가) 개발이익부담금 감면(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
 업자는 공장설립시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농지전용부담금 및 산림전용부담금 감면(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 산림법 제20조의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
 업자는 건설교통부가 고시하는 공시지가의 20%에 상당하는 농지
 전용부담금 및 산림전용부담금의 50%를 감면한다.

4) 스톡옵션 관련 조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 제3항)

창업중소·벤처기업의 임직원 또는 외부인력이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
 함으로써 얻는 이익(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 중 연간 3천만원 한도 내의 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임직원 등이 매

수한 주식을 당해 벤처기업이 코스닥 등록 후에 양도하는 때에는 그 양도차익(양도가액 - 매수가액)에 대하여 비과세한다⁵⁴⁾. 또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그 종업원 등이 이를 행사함에 따라 그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창업법인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법인세법 제52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벤처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

1) 창업투자회사의 조세지원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여성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벤처캐피탈회사)에 대하여 조세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벤처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가)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항)

벤처캐피탈회사가 창업자(신기술사업자 포함)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나)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3항)

벤처캐피탈 회사가 출자로 인하여 창업자(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54) 임직원 등이 매수한 주식을 당해 벤처기업의 코스닥 등록 전에 양도하는 때에는 그 양도차익(양도가액 - 매수가액)에 대하여 세율 10%로 과세한다.

다) 벤처캐피탈회사의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조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제3항)

중소기업창업회사가 창업자, 벤처기업에게 투자하거나,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에게 투자 또는 용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투융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① 투융자금액⁵⁵⁾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투융자금액에서 투융자손실준비금잔액을 차감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투융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자는 투융자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때 그 손실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투융자 손실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며, 투융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투융자손실금과 상계하고 남은 잔액은 그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으로 산입한다.

라)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게,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한다.

55) 투융자금액이란 창업투자회사의 경우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서 당해 과세연도에 양도한 주식의 당초 취득금액과 이미 용자한 금액에서 당해 과세연도에 회수한 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마) 지방세법상 특례(지방세법 제138조)

대도시지역 내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설립되는 경우 등록세 3배중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벤처캐피탈 투자조합에 대한 조세지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벤처캐피탈 투자조합)에 대하여 조세지원을 강화하여 민간자금의 벤처산업 자금으로의 유입을 촉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가) 투자조합 출자자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거주자 및 벤처캐피탈회사가 벤처캐피탈투자조합을 통해 창업자(신기술사업자 포함)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을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양도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4항)

2003년 12월 31일까지 벤처캐피탈 투자조합이 창업자(신기술사업자 포함)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즉, 투자조합의 출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 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하게 된다.

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 원천징수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5항)

2003년 12월 31일까지 벤처캐피탈 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 및 배당소득으로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 신탁수익의 분배금(소득세법 제17조 제5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라)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에게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한다.

3) 개인투자자에 대한 조세특례

벤처기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엔젤), 창업투자조합 및 엔젤투자조합 출자자에 대하여 각종 조세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창업·육성에 필요한 투자자금의 유입을 촉진하고자 한다.

가) 투자자금에 대한 종합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거주자인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함)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개인(엔젤)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4.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4) 기관투자자에 대한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기관투자자에 대하여 조세지원을 강화하여 벤처산업 자금으로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제도이다.

가) 기관투자자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2항)

기관투자자⁵⁶⁾가 벤처캐피탈 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자(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2001년 12월 31일까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기타 조세특례

가)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10조 제1항, 시행령부칙

56)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를 말한다.

제6조).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자금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그 출자 또는 투자와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출자 또는 투자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출자 또는 투자하는 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법인에 한함)에 출자하는 경우
- ②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는 경우
- ③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출자하는 경우
- ④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최근의 벤처기업 관련 정책

정부는 최근 코스닥시장이 침체되고 IT산업의 성장이 둔화되면서 벤처투자 흐름에 악순환이 발생하여 벤처창업 및 벤처투자 등 실물부문의 경제활동이 급격히 위축되었다고 보고, 이러한 악순환 구조와 시장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그간 육성해 온 벤처 생태계의 성장기반을 크게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2년 11월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를 개최하고 「벤처기업 재도약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이 방안은 그 동안 벤처비리 등으로 인하여 위축된 벤처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벤처기업 재도약을 위한 건전한 토양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청은 2002년 11월 벤처투자 부문의 활성화를 위

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기반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벤처캐피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하였다.

가. 벤처기업 재도약 방안⁵⁷⁾

1) 벤처기업의 건전화 및 신뢰회복 기반 마련

새로운 벤처확인제도는 벤처평가의 실질심사는 민간평가기관의 책임하에 운영하되, 정부는 형식적인 절차와 평가기관 관리에만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벤처기업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혁신능력점수를 현재 50점에서 오는 2005년까지 60점대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회사재산 유용 등 불법·부당기업 및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은 벤처확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재 벤처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사후관리 및 혁신능력평가 지표조정 등을 단계적으로 민간단체에게 위탁할 예정이다. 그리고 벤처기업협회 등의 윤리위원회를 본격 가동하여 부실기업의 취소건의 등 민간자율규제 기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며, 건전 벤처문화 창달을 위해 ‘벤처 clinic 프로그램’ 및 벤처 CEO를 대상으로 윤리교육 등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2) 벤처창업 촉진 및 지원체계의 내실화

창업보육센터의 신규 건립은 가급적 지양하고, 기존 창업보육센터의 확장을 통한 생산형 보육센터의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창업보육센터의 재정자립화를 위한 책임경영제를 도입하는 한편, 창업보육센터에 매니저 고용을 의무화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57) 벤처활성화위원회(2002) 참조.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성공률 제고를 위해 제품시험 검사비용, 공동 A/S망 설치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수의 창업보육센터 운영성과를 연구실적에 반영하고, 근무일수 산정시 예외인정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에 대한 생산 및 사무공간 공급을 확대하기로 하였는데 도심 민간빌딩의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을 확대하고, 유휴 공공시설을 post-BI로 활용하는 방안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에 대하여는 해당지역에 소재해 있는 벤처기업촉진지구 및 테크노파크 입주시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3) 벤처캐피탈의 활력회복 및 투자여력 확충

벤처캐피탈 제도의 개선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이 2002년 11월 22일 「벤처캐피탈 제도개선 방안」을 따로 마련하여 발표하였는데 다음 절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4) 벤처기업의 기술혁신 인프라 구축

벤처기업의 기술혁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18개 부처 및 투자기관의 연구개발지원 비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현재 13% 수준(5,500억원)에서 2005년 20%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정부출연 기술개발사업을 통한 벤처기업을 유도하기 위해 벤처확인 요건에 106개 정부출연 기술개발사업을 포함시키고, 이 사업의 일정액을 업력 3년 이내의 창업기업에 우선 지원해 기술혁신형 창업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산학협동체계를 강화해 대학 내 산학협력사업을 전담하는 산학협력단을 별도 법인으로 설치하고 기술이전을

담당하는 ‘학교기업’ 설치도 허용키로 했다. 그리고 대학기술이전 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 2005년까지 250개 대학과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축하기로 했으며, 2003년 중에 국내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관련 자원을 체계화하기 위한 「기술자원 종합 D/B」구축을 완료하기로 하였다.

5) 정부조달시장을 통한 신시장 창출 및 구매확대

2003년부터 국방물자를 대상으로 시행할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2004~2007년에는 200개 조달품목에 1조 1,500억원 규모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또한 2004년부터는 동 제도의 대상기관을 조달청·수자원공사 등 정부출자기관과 공공연구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공공구매제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2003년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6) 벤처기업의 수출 및 해외시장 개척 강화

미국·중국 등 주요 수출국에 설치·운영중인 「해외지원센터」를 현지화·특성화하여 초기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벤처수출제품의 현지유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003년 상반기 중에 미국의 보스톤에 수출부품 물류창고 및 A/S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며, 벤처 수출품의 불편신고 접수 및 구매상담 등을 위해 인도의 뉴델리에 「벤처 공동 call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그리고 해외진출 벤처기업의 성공가능성 제고를 위해 2003년 중 1억달러 규모의 「Global Star Fund」를 결성하기로 하였으며, 중소·벤처기업의 무역을 전담으로 대행하는 수출대행전문회

사(EMCs) 지정제도를 시행하기로 하고, 2002년 내에 10개 정도를 지정하기로 하였다.

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⁵⁸⁾

1) 벤처투자 회수촉진을 위한 secondary market 조성

정부는 창투사의 투자자산을 전문적으로 인수해 주는 secondary market을 조성함으로써 다양한 회수기회를 제공하고 회수진망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2년 중 secondary fund로 「프리코스닥 유동화펀드」를 벤처특별법상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형태로 하여 500억원 규모로 출범하고 내년부터 확대 조성하기로 하였다. 또한 벤처캐피탈협회 내에 「벤처캐피탈 구주투자정보망」을 개설하여 창투사 보유주식의 거래를 위한 「호가중개시스템」 구축할 예정이다. 「벤처캐피탈 구주투자정보망」은 위에서 언급한 「프리코스닥 유동화펀드」와 연동하는 등 구주거래 활성화를 통해 벤처캐피탈 투자주식 유통 전용시장으로의 발전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2) 재정출자 방식의 합리적 개편(Fund of Funds 설립)

투자조합 출자에 있어 민간의 역할 확대 및 벤처캐피탈 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출자방식의 다양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벤처캐피탈 제도개선 방안」에서는 정부의 재정출자 방식으로 Fund of Funds에 대한 간접출자방식을 일부 도입하기로 하였다. Fund of Funds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형태로 2003년 6월

58) 중소기업청(2002, c), 참조.

까지 500억원 규모의 KEIF(Korea Entrepreneurship Investment Fund)를 설립하여 운용하기로 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규모확대를 통해 한국의 대표적인 Fund of Funds로 육성할 예정이다.

3) 유한회사 형태의 새로운 벤처캐피탈제도 도입

정부는 또한 유한회사 형태의 새로운 벤처캐피탈제도를 도입하여, 펀드매니저의 투자실적 및 책임소재를 강화하고, 전문 벤처캐피탈리스트 중심의 선진화된 투자환경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유한회사 형태의 벤처캐피탈제도 도입방안으로서 몇몇 파트너가 펀드결성에 필요한 최소 자본금 (펀드규모의 1~2%)으로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당해 유한회사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하여 펀드를 결성·운영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현행 창업지원법에 따르면 창투자만 투자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므로 우선 벤처특별법상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형태로 시범운영하되 시범사업 추진 후 문제점을 보완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03년에서 2004년 기간 중 창업지원법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4)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한 기반조성

벤처캐피탈에 대한 투자자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벤처캐피탈협회에 설치된 윤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벤처캐피탈 윤리강령」을 제정·보급하는 한편 벤처캐피탈리스트 윤리교육 강화 등 벤처캐피탈의 도덕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또한 법령 내용의 이해부족에 따른 위법행위 예방을 위해 투자

시 점검해야 할 법령사항을 정하고, 이를 표준 체크리스트로 제정·보급하여 창투사 준법성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벤처기업협회와의 협력 증진을 통해 지방의 우수 벤처기업 발굴 및 투자추천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전자보고시스템 중 투자실적 등 통계를 활용토록 하여, 벤처캐피탈 투자동향의 상시 공개 등 정보공개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5) 지속가능한 벤처투자 인프라 구축

정부는 2002년 7월에 벤처캐피탈 관련규정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는 규정의 상당부분에 대하여 규제완화 및 국제기준에 대한 부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었다. 앞으로도 시장원리에 따른 투자 실현을 위한 규제완화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시장상황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에 유리하다면 보다 자유로운 투자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련규정 개선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안정적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투자조합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연기금, 보험, 금고 등 장기투자재원을 꾸준히 개발하기로 하였으며, 재정자금 출자원칙을 확립하기로 하였다.

다. 최근의 벤처정책에 대한 평가

최근에 발표된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강화, 벤처기업 제도약 방안, 그리고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은 벤처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활로를 모색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강화하게 된 것은 그 동안 각종 비리사건이나 주가 조작사건에 관련되는 벤처기업이 많아지면서 벤처기업

에 대한 불신이 초래되었기 때문이다. 즉,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강화함으로써 벤처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는 것이다. 강화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벤처투자기업의 경우는 벤처캐피탈의 주식인수 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에 확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벤처캐피탈이 6개월 이상 그 투자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되었으며, 투자의 범위에는 용자형태로 운영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제외하고 벤처캐피탈이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만 해당되도록 하였다. 둘째, 연구개발기업의 경우는 연구개발투자가 매출액 대비 5%이어야 한다는 조건에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되었다. 셋째, 신기술기업의 경우는 실용신안권, 인증기술 등이 제외되었으며, 기술에 의한 매출이 총 매출액의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벤처기업 평가기관의 평가로 대신하게 되었다. 넷째, 거짓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와 확인 이후 6개월 이상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하도록 하였으며, 휴업 등으로 3개월 이상 기업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와 대표자 등이 기업재산을 유용한 경우 등의 사유로 벤처기업협회가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취소를 건의하는 경우에도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강화는 정부가 뒤늦게나마 벤처기업 확인기업 수의 증가가 바로 벤처산업의 발전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기술력이 있거나 수익모델이 있는 기업만을 벤처기업으로 인증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즉, 정부의 벤처기업정책은 양적인 성장에 더 이상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질적인 성장에 주력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벤처기업 제도약 방안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은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종료될 예정인 2005년 이후에 시장기

능에 의해 운영될 것에 대비하여 정책자금 등 직접지원 기능은 가능한 지양하고 창업보육 및 지원기능 강화, 벤처캐피탈의 유동성 확충, 기술혁신 능력 배양 및 국내 신시장 및 수출시장 개척지원 등 벤처인프라 확충에 주안점을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두 방안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면서도 가능한 벤처기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고, 또한 벤처창업, 벤처캐피탈, 기술혁신, 시장창출, 수출지원 등의 부문에서 벤처 인프라의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는 타당한 방향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벤처 인프라를 구축함에 있어서 벤처캐피탈의 역할이 더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장기적으로 정부에 의한 금융지원과 조세지원은 시장을 왜곡하고 벤처기업의 역량 축적에 장애가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시장에서 투자자금이 시장원리에 의해 벤처기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벤처캐피탈은 고위험을 감수하고 고수익을 기대하면서 시장원리에 의해 벤처기업에 투자를 해야 하므로 민간에 의해 소유되고 민간에 의해 운용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벤처캐피탈은 자금의 회수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술력만을 가진 초기의 벤처기업 보다는 이미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기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한 벤처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기술력만을 가진 초기의 벤처기업에 대해 벤처캐피탈이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V. 주요국의 벤처기업 현황 및 벤처기업 지원제도⁵⁹⁾

1. 미 국

가. 중소·벤처기업 현황

1) 중소기업 현황

미국의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은 중소기업을 제조업의 경우 독립하여 소유·경영되고 해당 사업분야에서 시장지배적이 아닌 기업으로서 중소기업 시책별로 별도로 설정된 양적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종업원 수 500인 미만의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

<표 V-1>에 의하면 2000년 현재 중소기업의 수는 581만여개로 전체 기업 수 583만여개의 99.7%에 해당하며 중소기업의 종업원 수는 6,800만명으로 전체 1억 1,802만명의 57.5%에 달한다. 또한 미국의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규고용창출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민간부문 전체 생산의 51%를 담당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서 중소기업이 미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59) 본장의 내용 중에서 주요국의 벤처기업 지원제도 부분은 김진수·김재진(2000)과 김진수·김재진(2001)을 수정, 보완하였다.

<표 V-1> 미국의 중소기업 비중

(단위: 천개, 백만명)

		1988	1991	1995	2000
기업 수	중 소 기 업	4,941.8 (99.7)	5,037.0 (99.7)	5,353.6 (99.7)	5812.1 (99.7)
	대기업	12.8 (0.3)	14.0 (0.3)	15.4 (0.3)	17.0 (0.3)
	합 계	4,954.4 (100.0)	5,051.0 (100.0)	5,369.1 (100.0)	5829.1 (100.0)
종업원 수	중 소 기 업	47,914,723 (54.5)	49.0 (53.1)	52.7 (52.5)	68.0 (57.5)
	대기업	39.9 (45.5)	43.3 (46.9)	47.7 (47.5)	50.2 (42.5)
	합 계	87.8 (100.0)	92.3 (100.0)	100.4 (100.0)	118.2 (100.0)

주 : 1) 중소기업은 종업원수 500인 미만인 기업으로 하였음.

자료 :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2) 벤처기업 현황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중소기업청에서 벤처기업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벤처기업이 정확하게 정의되고 있지 않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벤처캐피탈의 투자대상이 되고 있는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간주하고 있다. 미국에서 민간 벤처캐피탈의 지원을 받고 있는 벤처기업의 수는 2000년 말 현재 5,458개에 불과하다.

이들 벤처기업의 업종별 분포도를 살펴보면 <표 V-2>와 같이 전체 벤처기업 중 온라인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2.3%로 가장 크다. 다음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산업이 20.8%로 그 뒤를 잇고 있으

<표 V-2> 미국 벤처기업의 업종별 비중

(단위: %)

온라인 산 업	컴퓨터소 프트웨어	통신	의료/ 보건	기 타 제조품	소비재	생명 공학	반 도 체 기타전자	컴 퓨 터 하드웨어	산 업 에너지
32.3	20.8	10.7	9.4	9.5	4.7	4.0	3.9	2.6	2.0

주 : 1999년 말 현황임.
자료 : NVCA(2000).

며, 통신산업이 10.7%, 의료 및 보건산업이 9.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기타 제조품(9.5%)와 소비재(4.7%)와 같은 비기술분야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투자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OECD에 따르면 미국의 벤처기업은 1990년대 이후 침체된 미국 경제 전반에 커다란 활력을 불어넣어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를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⁶⁰⁾.

첫째, 높은 고용증대효과를 가져왔다. 미국의 벤처기업은 1991~1995년 사이에 연평균 30%의 신규 고용증가율을 보인 반면, 500대 기업은 연평균 4% 고용감소를 보이고 있어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창업 후 6년된 벤처기업의 평균 종업원 수는 282명으로 상당히 큰 규모이며, 고급인력인 엔지니어와 과학자가 전체 노동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도 벤처기업이 59%로 15%대에 머물고 있는 500대 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미국의 산업발전 및 경쟁력 향상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자본금 대비 평균 연구개발투자비의 비중은 벤처기업이 17%로 500대 기업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며, 종업원 1인당 연구개발투자비도 1만 6천달러로 500대 기업의 2배에 달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 벤처기업의 평균 성장률은 35%로, 이는 미

60) OECD(1996, a), pp. 39~51.

국경제 전체의 5.1%, 독일의 5.3%, 일본의 2.6%, 그리고 미국 500대 기업의 2.1%를 훨씬 앞지르는 것이다.

셋째, 수출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수출증가율을 살펴보면 1992년 11%에서 1994년 57%로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투자액 1달러당 수출금액은 500대 기업과 비교하여 4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V-3> 벤처기업과 500대 기업의 비교

(단위: %, 달러)

	벤처기업	500대 기업
종업원 중 엔지니어, 과학자의 비율	59	15
평균 연간 신규고용 증가율(91~95)	34	-4
평균 R&D/자본금(89~93)	17	13
평균 종업원 1인당 R&D(89~93)	16,000	8,000
기업성장률(90~94)	35	2.1

주 : 1) 1994년 기준 벤처캐피탈 지원을 받은 1,8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이중 500여업체의 응답결과를 토대로 한 자료임.

자료 : OECD(1996, a), p. 40.

나. 벤처산업 관련 일반지원제도

미국정부는 중소기업의 육성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1953년에 중소기업청을 설립하였는데, 이 기관의 주요 업무는 자금지원, 경영관리지원, 출판사업 등이다. 먼저 자금지원은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제도, 중소기업투자회사(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에 의한 지원, 채무보증 및 소액융자 등이 있다. 경영관리지원은 퇴직경영자의 서비스단체(Service Corps of Retired Executive), 중소기업개발센터(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 등이 있다⁶¹⁾.

1) SBIR제도

SBIR제도는 첨단기술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제도로써 1982년의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Act)」에 따라 신설되었는데, 연간 10만달러 이상의 연구개발지출이 있는 정부기관이 자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미 항공우주국(NASA)를 비롯한 11개의 연방정부기관이 자금출연대상으로 되어 있다. 1991년까지는 각 기관의 연간 연구개발예산의 1.25%를 중소기업이 충당하도록 하였으나 1992년 1.5%로 증액되었으며 1996년부터는 2.5%로 인상되었다. 이에 따라 1993년 6억 5천만달러였던 SBIR예산이 1996년에는 12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SBIR제도는 3단계로 구분되어 있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아이디어의 기술적인 이점과 실현가능성을 심사하여 최고 10만달러의 보조금을 교부하고, 시제품의 제작이 시작되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최고 75만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상업화가 진행되는 세 번째 단계에서는 자금제공은 하지 않으나 벤처캐피탈 등 민간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통상적으로 신청된 건수의 10%가 심사를 통과하여 SBIR자금을 받게 되고 이 중에서 40~50%가 두 번째 단계를 진입하며, 다시 상업화 단계에는 69%가 진입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2) 융자프로그램(Loan Programs)

민간 금융기관이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

61) 산업연구원(1998), p. 105.

용자 분야에서 연방정부 차원의 SBA용자프로그램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원이 전적으로 일반회계에 한정되어 있어 재정상 제약을 받는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로 인해 직접용자프로그램은 1982년 거의 폐지되어 소수민족사업자, 퇴역군인사업자 등 특정 집단을 위한 제도만 남아 있으며 현재는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시 보증을 해주는 용자보증프로그램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대표적인 용자프로그램으로는 특정 목적에 관계 없이 지원되는 일반사업 자금대출(7(a) loans)을 들 수 있다. 이는 신규 사업자금과 공장 확장, 설비구입, 운전자본 조달, 재고자산 또는 부동산 취득 등에 소요되는 다양한 장·단기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사업 자금대출은 중소기업청과 민간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조용자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대부자들은 용자를 승인한 다음 중소기업청의 보증을 받아 용자를 제공하게 된다. 하지만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은 민간부문의 용자에 대해 7만달러까지만 보증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보증 비율은 10만달러 이하의 용자인 경우 80%, 10만달러를 초과하는 용자에 대해서는 75%로 설정해 놓고 있다. 이자율은 우대대출 금리에 2.75%를 가산한 범위 내에서 용자를 신청한 중소기업과 대부자간의 협상을 통하여 결정된다. 용자기간은 운전자본은 10년, 고정자산은 25년이다.

3) 엔젤자본 전자망(ACE-Net : Angel Capital Electronic Network)

미국에서는 엔젤에 의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 엔젤은 잠재적 엔젤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 미국 내의 인

식이다. 미국에서 자산이 100만달러 이상인 세대는 약 500만명으로서 이러한 잠재적 엔젤을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과제라고 보고 있다.

이에 미국에서는 1995년 중소기업을 위한 백악관회의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1996년 10월 30일 클린턴 대통령이 직접 엔젤자본 전자망(ACE-Net : Angel Capital Electronic Network)의 설립을 공포하였으며 현재는 중소기업청 Office of Advocacy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 ACE-Net는 동태적인 성장기업에 25만~500만달러를 투자하려는 엔젤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전국적인 규모의 네트워크로서 인터넷을 통해 지역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미국 전역에 소규모 지분투자를 희망하는 벤처기업과 비즈니스 엔젤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여기서 투자액을 25만~500만달러의 범위로 한정된 것은 이러한 규모의 자금은 신생기업가가 자체적으로 조달하기는 어려운 반면에 민간 벤처캐피탈회사의 평균 투자액에는 훨씬 못미쳐 자본시장에 공백이 생겼기 때문이다. 따라서 ACE-Net는 자본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자본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탄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자본시장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큰 편이다. 매년 30만개의 성장기업과 5만개의 창업기업들이 주식자본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의 총액은 60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벤처캐피탈회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은 연간 3천개를 넘지 못하며 이들의 수혜액도 100억달러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 상황을 감안하여 ACE-Net는 기존의 지역 네트워크들이 지닌 비공식성과 비효율성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청의 협조하에 인터넷을 통해 양질의 투자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현재 활동중인 엔젤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엔젤들도 쉽게 투자기회에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엔젤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ACE-Net는 대학, 주정부에 속한 4개 비영리 조직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사이트는 뉴햄프셔대학의 벤처연구센터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다. ACE-Net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청과 함께 ACE-Net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4개 비영리 조직의 네트워크에 등록하고 중소기업자금 차입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벤처기업에 투자하려는 엔젤은 기업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가까운 네트워크 운용자로부터 패스워드를 부여받아 등록하면 되는데, 이때 투자자는 순자산이 100만달러를 넘어야 하며 연간소득도 20만달러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다. 벤처산업 관련 조세지원제도

1)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가) 법인세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에서는 사업체를 보통법인(C Corporation), 소규모법인(S Corporation), 조합(Partnership), 개인사업주(Sole Proprietorship)의 4가지 사업형태로 구분한다. 이 4가지 형태 중 세법상 보통법인이 가장 엄격한 취급을 받는데 법인세가 법인소득에 대해서 과세되어진 후 주주에게 분배된 배당에 대해 개인차원에서 소득세가 적용되며, 법인세 산정시에도 손급에 산입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나머지 3개 사업형태는 사업단계에서 위와 같은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법인소득세(Corporation Income tax)는 소득법

<표 V-4> 법인소득세의 세율

(단위: 달러, %)

소득 범위	세율
50,000 미만	15
50,000 이상 75,000 미만	25
75,000 이상 100,000 미만	34
100,000 이상 335,000 미만	39
335,000 이상 10,000,000미만	34(평균세율)
10,000,000 이상 15,000,000미만	35
15,000,000 이상 18,333,333 미만	38
18,333,333 이상	35(평균세율)

자료 : CCH(2001).

위에 따라 15%, 25%, 34%, 35~38%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담의 경감을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주의 법인세 적용시 연방의 법인소득을 손급에 산입하고 있다.

나) S법인제도

S법인제도는 1958년에 도입된 제도로써 S법인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미국 법 혹은 주법의 적용을 받는 내국법인⁶²⁾으로, 구성 주주들이 미국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신탁기금으로 제한된다. 이때 법인 당 총 주주 수는 35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한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한 법인만이 S법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제한된 조건 때문에 우선주의 발행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S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 분배 청구권 등과 같은 자

62) 은행, 보험회사, 내국세법에 의해 별도의 우대조치를 받고 있는 수출기업 등을 제외한 내국기업만이 해당된다.

익권⁶³⁾이 동일하게 행사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각 주주간 S법인의 손익배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의결권 등과 같은 공익권이 다르게 행사될 수 있는 주식은 발행할 수 있다.

S법인의 조건을 갖춘 기업은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S법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나, 반면에 주주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S법인의 자격을 포기할 수 있다. 한편 S법인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나 3년 연속 소극적(passive) 투자소득⁶⁴⁾이 법인 총수입의 25%를 초과할 경우에는 S법인의 자격이 자동적으로 취소된다.

S법인제도에 대한 조세지원은 법인에 대한 과세혜택과 주주에 대한 과세혜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S법인제도는 일정한 규모 이하의 소규모 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대신 해당법인의 손익을 개인 주주에게 출자비율로 배분하여 개인소득세를 과세하는 제도이다. 즉, S법인은 패스스루(pass-through entity)로 자본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고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단, S법인의 소극적 투자소득이 회사 총수입의 25%를 넘을 경우 초과된 부분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2) 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

가) S법인의 주주에 대한 조세지원

S법인에 출자한 주주 개인에 대하여는 S법인의 손익을 출자비율별로 주주에게 안분된 손익과 주주 개인의 통상소득을 합산 과세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배제하고 있다. 즉, 통상적으로 법인에 대

63) 자익권이란 주주의 개인적 재산이익을 나타내는 권리로서 이익배당 청구권, 잔여재산 분배청구권, 신주인수권, 주권교부 청구권, 주주의 명의개서 청구권 등이다.

64) 로열티, 임대료, 배당, 이자, 유가증권의 매매익 등을 말한다.

한 주식투자는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이익배당시 부과되는 배당과세, 또한 이익이 유보된 경우 주주가 주식을 매각할 때 실현되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등에 의해 이중으로 과세되고 있다. 그러나 S법인제도에서는 원칙적으로 법인세와 S법인의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없으며, 이중과세를 시정하기 위한 주식 취득가액의 조정도 실시되기 때문에 S법인 주주의 세후 투자이익은 다른 기업에 대한 투자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투자한 S법인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주주에게 배분된 손실금과 주주 개인의 다른 소득을 합산하기 때문에 주주 자신이 부담하게 될 소득세가 경감되어 결국 투자리스크가 감소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나) 중소기업투자회사(SBIC)의 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

적격 중소기업에 대한 투·융자를 전문으로 하는 투자회사와 투자신탁회사에 투자할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은 1958년에 제정된 「중소기업투자법(Small Business Investment Act)」에 의거, 중소기업 투·융자 전문 금융기관인 중소기업투자회사(SBIC: 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의 설립을 허가하고 있으며, SBIC에 투자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세금우대 적용을 받게 된다.

첫째, 주식매각익 과세경감이다. 법인 이외의 납세자가 SBIC 주식에 투자하고 5년 이상 보유한 후 매각할 경우 발생한 주식매각익의 50%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다(IRC 제1202조). 둘째, 주식매각손과 통상소득의 합산이다. 1958년 세제 개정시 도입된 제도로서 SBIC에 투자한 납세자는 동 주식의 매각시 발생한 매각손을 통상손실로 인정받아 주식매각손 전액을 납세자의 통상소득과 합산할 수 있다(IRC 제1242조). 셋째, SSBIC(Specialized SBIC) 투

자에 대한 특례제도이다. 부동산업, 트러스트, 조합, 그리고 S법인을 제외한 납세자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매각하여 매각이익을 실현하고 60일 이내에 SSBIC의 주식이나 파트너십 지분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금액을 초과하는 매각대금만이 과세대상이 된다. 이러한 금액의 한도는 연간 5천달러와, 전년도까지 과세가 연기된 주식매각익과 합산하여 50만달러 중에서 적은 금액이 된다. 별도신고를 하는 부부의 경우 2만 5천달러와 전년도까지 과세가 연기된 주식매각익과 합산하여 25만달러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제한된다. 그리고 C법인의 경우 이 한도액은 25만달러와, 전년도까지 과세가 연기된 주식매각익과 합산하여 100만달러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제한된다(IRC 제1044조).

다) 미공개기업 주식매각 손실 과세특례

주식매각손은 개인별 연간 3천달러를 한도로 통상소득과 합산할 수 있다. 단, 공제하고 남은 부분은 다른 매각익과 합산이 가능하다. 그러나 1958년에 특정 중소기업 주식의 매각손은 동 한도를 넘는 큰 금액까지도 통상소득과 합산할 수 있는 세금우대제도가 도입되었다⁶⁵⁾.

주식매각손 과세특례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조건은 첫째 동 과세특례제도가 적용되는 주식을 발행한 직후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의 합계액이 100만달러 이하의 내국기업일 것, 둘째, 주식매각손이 발생하기 직전 5년 동안 로열티, 임대료, 배당금, 이자수입 및 유가증권 매매익의 합계가 총수입의 50% 미만을 차지하여야 한다. 단, 설립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은 설립부터 주식 매각시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65) 산업연구원(1998), p. 119.

주식매각손 과세특례 대상이 되는 적격 중소기업의 설립 또는 증자시 주식을 취득한 개인이 그 회사 주식의 매각으로 입은 손실은 5만달러(부부 공동신고인 경우에는 10만달러)를 한도로 통상소득과 합산할 수 있다.

라) 주식매각 이익 과세특례

법인이 아닌 납세자가 주식매각 이익을 실현한 경우 보통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되고 있으나 적격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나서 매각할 경우에는 주식매각이익의 50%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 특례제도를 도입하였다(IRC 제1202조).

적격기업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재무장관이 정한 의무제출 보고서를 세무당국과 주주에게 제출하고 있는 내국기업으로 총자산이 5천만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둘째, 총자산의 80% 이상을 적격사업에 투자하며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자회사 주식은 제외)과 부동산(적격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은 제외)의 합계가 총자산의 10% 이하인 기업이어야 한다. 셋째, 주식발행을 전후하여 1년 동안 자기주식의 환매비율이 전체 발행주식의 5% 이하인 기업이어야 한다. 또한 주식 발행 전 2년 내 과세특례대상 주식을 인수한 개인투자자나 관계자로부터 자기주식을 환매하지 않은 기업이어야 한다.

이들 적격기업이 1993년 8월 10일 이후 발행한 주식만이 주식매각손 과세특례대상이다. 또한 투자자가 주식발행시 직접 또는 인수업자를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만 과세특례제도가 적용되며, 유통시장에서 이차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과세특례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투자자는 상기 적격기업의 주식을 5년 이상 보유한 후 매각시

발생한 주식매각이익의 50%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단, 비과세되는 금액의 한도는 당해연도에 매각된 주식취득가액의 10배 또는 1천만달러에서 전년도까지 비과세된 적격 주식의 매각이익 누계액을 차감한 잔액 중 큰 금액이 적용된다.

마) 엔젤에 대한 조세지원

적격 중소기업⁶⁶⁾이 발행한 주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매각할 경우, 주식매각이익의 50%를 비과세한다(IRC 제1202조). 비과세 금액의 한도는 다음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 ① 당해연도에 매각된 주식취득가액의 10배
- ② 1천만달러에서 전년도까지 비과세된 적격주식의 매각누계액을 차감한 잔액

주식매각 과세특례대상이 되는 적격 중소기업의 설립 또는 증자시에 주식을 취득한 개인이 동 주식의 매각으로 입은 손실은 통상소득과 합산하도록 한다. 합산한도는 5만달러로 제한하되 부부 공동신고인 경우에는 10만달러까지 허용된다.

3) 중소기업투자회사(SBIC)에 대한 조세지원

1958년 세제 개정시 도입된 제도로서 IRC 제1243조에서는 SBIC가 전환사채의 전환권에 따라 받은 주식에서 발생한 손실을 통상손실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66) 적격 중소기업은 총자산이 5천만달러 이하이면서 총자산의 80%를 ① 법률·엔지니어링·설계·예술·컨설팅·스포츠·금융서비스 등 종업원의 명성이나 기술이 자산인 사업, ② 은행·보험·리스·투자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 ③ 농업, ④ 호텔·모텔·음식점 및 이와 유사한 사업 이외의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4) 투자조합에 대한 조세지원

미국의 벤처산업이 오늘날처럼 성장하여 미국 경제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미국의 연방세법이나 주법에서 조합을 통한 자금조달이 원활할 수 있도록 조합의 설립규정을 완화하고 세제상 인센티브를 조합에 제공함으로써 조합 설립의 활성화를 꾀하였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조합을 법인과는 다른 또 하나의 기업형태로 정의하고 있다.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요건이 까다롭고 공식적인 조직이지만, 조합의 경우에는 설립이 단순하여 비공식적인 면을 선호하거나 가족기업 또는 전문업종의 경우에 자주 이용하는 기업의 형태이다.

미국에서는 연방세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인 Subchapter K에서 기본적으로 도관이론을 근간으로 하고 있음에 따라 투자조합은 수익이 주주에게 배당될 때 이중과세되는 일반법인과 달리 도관으로서의 성격 때문에 이중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원은 조합소득이 실제로 분배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자신의 출자지분에 해당되는 조합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소득세 측면에서 조합이 갖는 중요한 특징은 조합은 여러 가지 수입, 소득과 손실, 공제 등이 조합원에게 흘러 들어가는 도관으로서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IRC 제701조). 예를 들어 조합이 비과세이자나 자본이득을 실현했다면 이러한 소득항목들은 조합원이 조합의 출자지분에 준하여 배분받는 것으로 보아 조합원에게 소득세가 부과된다(IRC 제704조).

또한 조합의 손실은 개인조합원에게 인계되기 때문에 투자자는 다른 과세소득을 상쇄하기 위하여 조합의 손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공제는 경기침체와 같은 비금전적인 지출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공제손실을 동반한 현금의 실질적인 분배가 있을 때 명백한 유인효과가 있게 된다.

조합원에 대한 이러한 공제는 세 가지 제한이 있다(IRC 제704조). 첫째는 조합이 입은 손실의 배분에 대한 공제는 손실이 발생한 회계연도 말에 각 조합원지분의 조정된 기초가액까지만 허용되고 조정된 기초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 초과분이 다시 조합에 환급되는 회계연도 말에 공제가 허용된다. 두 번째는 제한된 예외조항으로 공제는 조합원의 자본출자분과 조합에 유보된 순소득분, 그리고 조합의 상환부채의 합을 초과할 수 없다. 세 번째는 소극적인 손실제한 규정으로서 소극적 활동으로부터 입은 손실을 그런 행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크기만큼만 제한하는 조항이다.

2. 영 국

가. 중소·벤처기업 현황

1) 중소기업 현황

영국에서는 종업원 수가 250명 미만인 사업체를 중소기업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2000년 현재 이들 중소기업이 공공기업을 포함한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9.8%에 이르고 있다. 중소기업 중에서는 종업원이 50~249명에 이르는 중간규모의 기업이 광산업, 제조업 등의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에도 못 미치는 비중을 보이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 및 거래액 규모를 기준으로 영국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위상을 살펴볼 수 있다

(<표 V-6> 참조). 영국의 중소기업은 전체 종업원의 55.1%를 고용하고 있으며, 거래액(turnover) 규모 역시 전체 거래액의 약 절반수준인 51.1%의 점유비를 보이고 있다. 산업별 중소기업 분포를 살펴보면, 부동산업 등의 서비스산업, 건설업, 도·소매업 및 제조업종의 순으로 높은 구성비를 보이고 있고, 산업별 종업원의 고용비율 역시 부동산업 등 서비스산업과 건설업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도·소매업종의 중소기업보다는 제조업종 중소기업에서 더 많은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의 업종별 거래액에 있어서는 유통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도·소매업이 전체 중소기업 거래액의 19.2%를 차지하여 가장

<표 V-5> 산업별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분포

(단위: 개, %)

산업 유형	계	중소기업	%			대기업
			자영업	1~49	50~249	
전산업	3,722,610	3,715,865 (99.8)	69.6	29.5	0.7	6,745 (0.2)
농업, 임업, 어업	190,390	190,375 (100.0)	69.2	30.7	0.1	15 (0.0)
채석 및 광업	3,720	3,615 (97.2)	57.0	36.3	3.9	105 (2.8)
제조업	332,085	329,685 (99.3)	62.2	34.5	2.5	2,400 (0.7)
건설업	678,515	678,215 (100.0)	81.8	18	0.2	300 (0.0)
도소매업	536,040	535,045 (99.8)	51.3	47.8	0.8	995 (0.2)
숙박 및 식음료업	157,310	157,005 (99.8)	34.3	64.6	1.0	305 (0.2)
교통 및 통신업	228,075	227,635 (99.8)	80.6	18.6	0.6	440 (0.2)
금융 중개업	59,040	58,690 (99.4)	70.7	27.7	1.0	350 (0.6)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826,125	825,160 (99.9)	69.6	29.8	0.5	965 (0.1)
교육	111,035	110,965 (99.9)	89.9	9.7	0.4	70 (0.1)
건강 및 보건	207,375	206,815 (99.7)	75.3	23.5	1.0	560 (0.3)
기타 서비스업	392,900	392,660 (99.9)	79.3	20.4	0.3	240 (0.1)

주 : 2000년 기준임.
자료 : SME(2001).

높은 비중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부동산, 제조업, 광업, 건설업의 순으로 높은 구성비를 보이고 있다.

한편 건설, 금융 및 도·소매 산업 등을 제외한 제조업에서 업종별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분포를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표 V-7>과 같다⁶⁷⁾. 우선 전체 중소기업체 수는 17만 975개사로 이

<표 V-6> 기업 규모별 고용 비율 및 거래액 규모

	고용 비율(천명)					거래액 규모(£)				
	계	자영업	1~49	50~249	250~	계	자영업	1~49	50~249	250~
전산업	22,132	13.5	30.1	11.5	44.9	2,033,728	7.4	29.8	13.9	48.9
농업, 임업, 어업	467	40.8	54.2	0.0	0.0	26,099	25.0	68.1	*	*
채석 및 광업	239	1.3	4.3	0.0	0.0	96,560	5.4	4.1	*	*
제조업	4,191	6.0	23.1	21.2	49.7	482,927	1.8	15.5	16.4	66.3
건설업	1,576	37.5	38.5	8.4	15.5	127,033	17.9	41.1	13.9	27.1
도소매업	4,509	7.5	34.0	9.2	49.2	696,663	5.8	36.4	13.9	43.9
숙박 및 식음료업	1,621	5.3	40.9	8.8	45.0	50,131	4.7	41.6	9.7	43.9
교통 및 통신업	1,596	13.0	17.4	8.1	61.5	150,944	5.6	21.4	10.5	62.5
금융중개업	1,080	4.3	9.6	6.1	799.0	-	-	-	-	-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3,271	19.6	37.2	12.5	30.6	253,532	15.0	41.6	18.4	25.0
교육	267	40.1	28.9	*	*	8,786	27.0	40.1	*	*
건강 및 보건	2,157	8.9	24.1	8.2	58.8	71,987	5.1	23.5	6.9	64.4
기타 서비스업	1,159	29.1	36.3	9.4	25.2	69,067	18.3	34.2	10.5	37.0

주 : 1) 2000년 기준임.

2) 금융 중개업에서 총거래액(turnover) 규모는 다른 산업과의 비교기준으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으로 표시하였음.

3) 업종별로 기업공개를 회피하는 기업이 20개 이상인 경우, 데이터의 유용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이를 ‘*’으로 표시함.

자료 : SME(2001).

67) 기업규모 구분시 영국 중소기업청(SME)에서 중소기업의 기준을 ‘종업원 250명’ 이하로 정하고 있으며, 통계청에서는 제조업 기업의 규모를 구분하는 경우에 ‘200명’으로 하고 있다.

중 중소기업의 비중은 약 98%인 16만 7,535개사이다. 그리고 중소기업 제조업의 업종별 비중은 인쇄 및 출판업, 조립금속제품업에서 각각 17.9%, 17.6%의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전체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2%를 점하고 있는 대기업(종업원 200인 이상)의 경우에는 음식료·담배제조업 및 기계·장치업종에서 18.3%와

<표 V-7> 영국의 종업원 규모별 사업체 수

(단위: 개, %)

업종	중소기업(1~199명)		대기업(200명 이상)		계
	기업수	비중	기업수	비중	
음식료품, 담배	10,070	6.0	630	18.3	10,700
직물	5,640	3.4	125	3.6	5,765
신발, 의복	5,970	3.6	80	2.3	6,050
가죽제품	995	0.6	20	0.6	1,015
목재 및 나무제품	8,445	5.0	25	0.7	8,470
제지 및 종이제품	2,760	1.6	100	2.9	2,860
인쇄 및 출판	30,010	17.9	235	6.8	30,245
석유 및 석탄	265	0.2	25	0.7	290
화학제품	4,075	2.4	290	8.4	4,365
고무 및 플라스틱	7,525	4.5	195	5.7	7,720
비금속제품	6,740	4.0	115	3.3	6,855
금속제품	2,465	1.5	115	3.3	2,580
조립금속제품 (기계 장비 제외)	29,470	17.6	175	5.1	29,645
기계 및 장치	13,625	8.1	315	9.2	13,940
사무, 회계용 기계	1,280	0.8	50	1.5	1,330
전기, 전자	5,605	3.3	205	6.0	5,810
통신, 방송장비	2,625	1.6	135	3.9	2,760
의료 및 정밀기기	4,875	2.9	100	2.9	4,975
자동차	2,630	1.6	235	6.8	2,865
기타 운송장비	2,270	1.4	130	3.8	2,400
기타 제조업	20,195	12.1	140	4.1	20,335
계	167,535	100.0	3,440	100.0	170,975

주 : 2001년 기준임.

자료 : UK National Statistics(2002).

9.2%라는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인쇄 및 출판업종 역시 중소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에서와 마찬가지로 약 7%의 비교적 높은 구성비를 보이고 있다.

2) 벤처기업 현황

영국에서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벤처기업을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영국의 벤처캐피탈협회(British Venture Capital Association)은 벤처기업을 private equity backed company라고 부르고 있다. 즉, private equity⁶⁸⁾의 지원을 받는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은 1979년 「중기재정 및 경제정책」을 수립하면서, 민간기업에 최적의 경제활동 여건을 제공하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본격적으로 벤처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영국에서는 1995년부터(1999년 제외) 2000년까지 private equity의 지원을 받는 기업이 매년 증가하였다. 영국에서는 소비재 관련업 및 제조업 등을 제외한 컴퓨터 관련 산업, 전자 산업 및 공업 기자재 업종 등의 비중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특히 <표 V-8>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말 현재 ‘총연간 private equity’의 38%를 자국 산업에 투자하고 있다. 그 결과 영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의 벤처산업국일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가장 산업이 발달한 국가로 자리잡고 있다. 아울러 1984년 이후 2000년까지 private equity의 지원을 받은 누적 기업 수는 총 17,619개사이다.

68) 영국의 경우, private equity란 미국의 벤처캐피탈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에서 private equity는 주로 지분매입과 관련된 MBO, MBI 관련 자금지원을 의미하고 벤처캐피탈은 성장초기단계에 있는 업력이 짧은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영국에서는 이들을 구분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표 V-8> 영국의 산업부문별 투자대상기업

(단위: 개)

업종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1984~2000 ²⁾
소비재	226	190	243	115	112	142	3,496
컴퓨터	83	80	108	164	258	242	2,020
전자	51	37	53	59	48	73	996
공업 기자재	152	207	138	168	86	24	2,047
의료/보건/생명공학	68	71	100	106	133	180	1,179
통신	31	24	34	42	35	232	696
에너지	20	15	27	16	17	15	257
교통	64	32	50	22	9	24	676
건설	61	36	30	40	31	35	766
금융	26	26	57	23	17	35	592
기타	75	190	145	126	147	71	2,121
제조업 및 농업 등	173	152	131	241	216	109	2,488
전체 ¹⁾	1,030	1,060	1,116	1,122	1,109	1,182	17,619

주 : 1) 연도별 전산업에 대한 투자기업 수.

2) 1984~2000 기간 동안 각 산업별로 투자된 누적 기업 수.

자료 : BVCA(2001).

이와 같이 벤처기업에 대한 private equity의 꾸준한 자금 지원으로 벤처기업은 고용이나 경기 진작에 있어 영국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⁶⁹⁾.

우선, 고용에 있어서 private equity의 지원을 받고 있는 벤처기업의 총 고용인원은 270만명으로, 이는 영국 민간부문 전체 고용인구의 1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69) www. bvca. co. uk, "Key Facts about Private Equity in the UK", 2001.

1995년부터 2000년 동안 영국기업의 연평균 고용증가율은 2%인 반면 벤처기업의 평균 고용증가율은 29%에 이르고 있으며, FTSE 100대 기업 혹은 FTSE Mid-250대 기업보다 3배 이상 높은 고용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벤처산업이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1995~2000년 동안 벤처기업의 벤처기업 증가율은 FTSE 100대 기업의 2배 이상인 27%이다. 또한 전체기업의 수출증가율과 투자증가율이 각각 4.4%와 8.8%인 데 비해 벤처기업의 경우는 27%와 24%인 것으로 나타나 영국의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⁷⁰⁾

나. 벤처산업 일반지원제도

영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하되 지원대상 벤처기업의 선정을 민간부문에 맡김으로써 시장원리를 최대한 존중하고 있다. 따라서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 역시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적 지원(정부대출, 정부투자 등)이 아닌 벤처기업의 창업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벤처기업의 대출액에 대한 정부보증제도, 정부 지원시책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창구 역할을 하는 비즈니스링크제도, 기술지원을 위한 사이언스파크 설립, 벤처기업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및 벤처기업 스스로 직접금융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외시장의 운영 등 간접적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70) PriceWaterHouseCoopers, *The Economic Impact of Venture Capital in the UK : Venture Backed Companies Provide a massive impetus to the economic performance and global competitiveness of the UK* 1999. 상반기.

1) 정부보증제도

1981년부터 영국의 통상산업성(DTI :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정부대출보증제도(SFLGS : Small Firm Loan Guarantee Scheme)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 적격대출신청(Qualified Loans Request)을 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제공한 대출의 일정 비율을 보증하는 제도로 대출받은 기업은 정부가 보증한 대출금에 대해 2년~1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상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SFLGS는 제도가 도입된 1981년 이후 6차례에 걸쳐 보증금액 및 보증에 따른 프리미엄과 이자율이 변동되었으며, 현행 정부대출보증제도는 1993년 7월 이후 시행된 6단계 수정안을 토대로 하고 있다. <표 V-9>의 대출보증제도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보증비율의 경우 업력이 2년 미만인 기업은 10만파운드의 대출금에 대해 70%까지, 업력이 2년 이상인 기업은 25만파운드의 대출금에 대해 85%까지 보증받을 수가 있다. 특기할 만한 점으로는, SFLGS는 대출받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의 지분에 투자(Equity Investment)를 해야 한다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가 없는데 이와 같은 특징이 다른 나라의 유사 제도와 구별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자본이 부족한 잠재적 대출자들의 금융제약을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개인적인 의무가 결여됨으로써 높은 채무불이행의 리스크를 안게 된다. 따라서 동 제도의 시행당국인 DTI는 이를 해결하고자 중소기업에게 은행에 지불하는 정상이자 이외에도 정부보증비용으로서의 프리미엄을 DTI에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프리미엄은 <표 V-9>에서 보듯이 고정이자율 대출의 경우 연간 0.5%, 변동이자율 대출은

연간 1.5%를 적용하고 있으며, 보증금액에 한해서만 부과하는 것이 아닌 대출액 전부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해 최근 정부보증제도(SFLGS)가 활용되고 있는 실태를 살펴보면 <표 V-10>에서 보는 바와 같다. 2001년 현재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보증건수는 4,512건으로 전년 대비 5.4% 증가한 반면, 총보증금액은 1억 9,600만 파운드로 전년 보다 약 5% 감소하였다. 이러한 2001년의 보증실태는 대출보증건수에 있어 전년 대비 4.5% 감소하고, 금액은 약 10% 증가한 2000년의 보증추이와는 정반대되는 모습이다. 한편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대출보증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보증비율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9.2~45.6%(건수 기준)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채무불이행 금액 비중은 전체 보증금액 대비 18.9~22.8%로 보증건수를 기준으로 한 불이행률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V-9> 정부대출보증제도(SFLGS)의 변동추이

변동 단계	적용 시기	보증비율(%)	프리미엄(%)
I	6/81~5/84	80	3
II	6/84~2/84	70	5
III	1/85~3/86	70	5
IV	4/86~3/89	70	2.5
IV	4/89~6/93	70	2.5
V	7/93~현재	70 or 85	1.5 or 2.5

자료 : DTI(2001).

<표 V-10> SFLGS 이용 실태

(단위: 건, 백만파운드, 파운드)

구 분	1999	2000	2001 ¹⁾
총보증건수	4,482	4,279 (-4.5) ²⁾	4,512 (5.4)
총보증금액	188.8	206 (9.1)	195.9 (-4.9)
평균보증금액	42,124	48,142 (14.3)	43,418 (-9.8)
채무불이행 건수	2,042	1,818 (-11.0)	1,770 (-2.6)
채무불이행 금액	43.14	38.95 (-9.7)	41.09 (5.5)
평균불이행 금액	21,126	21,424 (1.4)	23,215 (8.4)

주 : 1) 2001년은 잠정치임.

2) ()는 전년 대비 비중.

자료 : DTI(2002).

2) 사업부문의 지원

영국의 벤처기업 지원제도 중 독특한 사항으로 비즈니스링크(business link)제도⁷¹⁾와 science park를 들 수 있다⁷²⁾. 우선 비즈니스링크는 연구개발형 기업이나 창업기업에 대해 영국 전역에서 제공되는 정부차원의 서비스로서, 경영에 필요한 광범위한 정보는 물론 수출 및 자금조달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해 주고 있다. 현재 비즈니스링크를 관할하는 주체는 SBS(Small Business Service)이며, 이 기구는 2000년 4월부터 중소기업의 입장을 대변하여 왔고 특히 소기업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에서 운영을 시작하였다. 2001년 4월 현재 SBS의 감독하에 운영되고 있는 비즈니스링크 네트워크는 45개이며, 이 네트워크에 가입하여

71) 비즈니스링크는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및 경영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주식회사로 영국의 통상산업성(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주로 출자한다. 비즈니스링크 설립 후 3년간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해당 기업이 기반을 쌓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72) 대한상공회의소(1998), p. 76.

서비스를 받고 있는 기업 현황은 <표 V-1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에 따르면 비즈니스링크로부터 필요한 정보 및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정책 등을 이용하는 데, 중간기업(50인~249인) 및 대기업(250인 이상)이 비즈니스링크에 가입하는 비중은 50%가 넘는 반면 종업원 50인 이하의 비교적 소규모 기업은 4%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비즈니스링크 가입기업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사이언스파크(science park)⁷³⁾는 창업기업에 대한 입지 제

<표 V-11> SBS 비즈니스링크 가입 기업 현황

(단위: 개, %)

종업원 수	가입 비중 ¹⁾	가입기업 수	총 기업수
0 명	0.3	6,386	
1~9명	3.6	41,641	2,324,340
10~49명	18.5	28,866	1,165,450
50~249명	50.9	12,322	156,235
250명~	55.9	3,763	24,185
미 상	n.a	9,570	6,735
계	n.a	102,548	3,676,945

주 : 1) 2000년 기준임.

2) 가입비중은 종업원 규모별 총기업 대비 가입기업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 DTI(2002).

73) 1950년대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며, 영국에서는 1970년대 초반 캠브리지 사이언스파크가 처음이다. 198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증가하면서,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사이언스파크를 대표할 수 있는 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로 인해 1984년 UKSPA(UK Science Parks Association)가 설립되었다.

공 및 학교, 연구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기술관련 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며, 영국 사이언스파크협회(UKSPA:UK Science Parks Association)는 이러한 science park를 대표하는 기구이다. science park의 설립주체는 대학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일부의 경우 지방정부나 민간기업의 재정지원으로 설립되기도 한다. 2000년 현재 UKSPA의 소속으로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science park는 48개이며, 추가적으로 해외 science park 7개, 사업 제휴를 목적으로 하는 12개의 science park가 있다. 앞으로 2005년까지 UKSPA에 가입하는 science park는 100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3) 인력부문의 지원

앞서 언급한 영국 각 대학 중심의 science park는 벤처기업의 대학 연구결과를 이용한 사업화뿐만 아니라 이들 대학을 졸업한 고급인력들에 대한 벤처기업의 접근을 쉽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의 보조금을 매개로 한 전문연구인력의 중소기업 활용 및 산학협동 촉진시책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중소기업이 자사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원을 이용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CBP(College-Business Partnerships)나, 대학이나 연구소의 개발기술을 이용한 사업화에 대하여 50%까지 자금을 지원하는 링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 벤처산업 관련 조세지원제도

1)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가) 법인세 인하

1998 회계연도까지 영국의 법인세율은 법인소득이 120만파운드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 31%의 일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30만파운드 미만의 법인소득에 대해 21%의 경감세율이 적용하였다. 또한 30만파운드에서 120만파운드의 법인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액의 1/40을 감면해 줌으로써 법인소득증가에 따른 한계세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는 이른바 슬라이딩 세율(sliding rate)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1999 회계연도부터 법인소득 150만파운드 이상에 대해서 30%의 일반 법인세율을 적용하게 되었으며, 30만파운드 미만의 법인소득에 대해 경감세율도 20%로 인하하였다. 30만~150만 파운드의 법인소득에 대해서는 슬라이딩 세율이 계속 적용되고 있다. 또한 2000 회계연도부터는 중소기업을 위해 1만파운드 이하의 법인소득에 대해서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나) 부가가치세 인하

중소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현재 연간 매출액이 54,000파운드 이상인 기업은 17.5%의 단일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반면 연간매출액이 52,000파운드에 미달하는 것이 확실시 되는 중소기업은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없도록 하고 있다.

2) 벤처기업 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

1979년에 등장한 보수당 정권은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장기

간에 걸친 불황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벤처 및 중소기업 육성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위해 세금우대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초부터 미공개기업(unlisted corporation) 주식의 매각손과 개인 주주의 통산소득 합산제도(1980년), 미공개기업에 대한 신규 주식투자 소득공제제도(1981년) 등이 잇달아 도입되었다. 이후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영국정부는 각종 세금우대제도를 확충하여, 1993년에는 상장주식 등의 매각익을 미공개기업의 주식에 재투자할 경우 과세이연하는 제도를 도입하였고, 1995년에는 중소기업투자신탁회사를 통한 간접투자에 대해서도 세금우대제도를 적용하였다. 아울러 1998년에는 이와 같은 영국정부의 의견을 반영하는 대대적인 벤처캐피탈 관련 세제지원 개정이 이루어졌다.

가) Enterprise Investment Scheme(EIS)

EIS란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세무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적격 미공개기업이 발행하는 신규주식을 취득한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금우대제도이다. EIS는 1981년 세제개정시 중소기업에 대한 주식투자의 경우 1만파운드를 한도로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Business Start-Up Scheme이 모태가 된다. 이후 동 제도는 1983년에 Business Expansion Scheme(BES)으로 확대·개편되었다가 1993년에 단행된 세제개정으로 BES는 1993년 말에 폐지되고 EIS 제도가 1994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⁷⁴⁾.

(1) EIS제도의 적용범위⁷⁵⁾

EIS제도는 적격기업(qualifying company)이 발행한 적격주식

74) Incomet Tax, Reliefs and Deduction for Income, 1930조.

75) Income Tax, Reliefs and Deductions for Income Tax, 1930조, 1932조, 1934조.

(qualifying shares)을 적격 투자자(qualifying individual)가 투자한 경우 적용되는 제도이다.

우선 EIS 적용대상기업의 자격을 보면, 반드시 미공개기업으로서 주식발행일 현재 적격사업만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주식발행 후 3년 이내에 적격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기업 등이다. 한편 적격사업만을 영위하는 자회사(출자비율 90% 이상)에 투자한 모기업⁷⁶⁾과 적격사업에 대한 투융자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도 적격기업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투자우대제도가 적용되는 적격주식이란 적격기업의 설립 또는 증자시 개인이 취득하는 보통주이다. 보통주란 발행 후 5년간 이익배당, 잔여 재산분배 또는 상환에 관하여 우선권이 없는 주식을 말한다. 결국 신규 발행된 주식만 세금우대제도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유통시장에서 이차적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세금우대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적격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투자자가 자신의 이익(benefit)을 출자하고, 출자기간 동안 출자대상기업과 어떠한 관계⁷⁷⁾도 맺고 있어서는 안된다.

(2) 자금조달 규모⁷⁸⁾

1998년 4월 6일 이전 발행주식의 경우는 적격기업이 EIS제도의 혜택을 받으면서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연간 100만파운드로 제한되었으나, 그 이후 이 규정은 폐지되었다. 단 EIS를 통한 자금조달

76) 51% 출자한 모회사 또는 자회사(subsidiary)를 종속하려는 모회사는 적격기업의 범주에서 제외된다.

77) ① 기업파트너 ② 고용인 ③ 보수를 받는 임원 ④ 기업경영자 및 결산시 주주에 대한 배당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업자산에 대해 30% 이상 권리를 가진 자 ⑤ 발행주식의 30% 이상 보유자.

78) Income Tax, Reliefs and Deductions for Income Tax, 1930조.

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총자산이 투자 전 1,500만파운드, 투자 후 1,600만파운드인 기업들과 그룹계열사인데, 그룹계열사인 경우, 그룹 내 모든 기업의 통합자산이 투자 전 1,500만파운드, 투자 후 1,600만파운드여야 한다는 제한 규정이 추가되었다⁷⁹⁾.

(3) 조세지원내용

첫째, 개인투자자는 세무당국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적격 중소기업의 신규주식 투자시 투자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연간 최대 10만파운드의 투자에 대해 2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었으나, 1998년 4월 6일 이후 발행주식에 대해서는 15만파운드까지 투자금액이 확대되었으며 세액공제율 또한 50%로 높아져 EIS를 통한 세제혜택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⁸⁰⁾.

둘째, 개인투자자가 취득한 주식을 5년간 보유한 후 매각한 경우 발생한 주식매각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있다. 또한 주식매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매각연도 주주의 통상소득에서 매각손실만큼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식매각손이 당해연도 주주의 통상소득에서 공제하고도 남을 경우 매각 전년도 주주의 통상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2년간 주식에서 공제하고도 주식매각손이 남을 경우 일반 매각손처럼 다른 매각익과 상계할 수 있다.

셋째, 개인투자자가 상장주식 등의 처분에서 발생한 매각이익을 EIS적용을 받는 미공개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미공개기업의 주식을 매각할 때까지 상장주식 등의 처분에서 발생한 매각이익의 과세는 연기할 수 있다. 특히 최근 개정된 1998년 FA의 Sec. 70

79) Sec 71, 1998 FA에 개정된 내용이다.

80) Inland Revenue 인터넷 자료, "CGT Reform : The 1998 Finance Act Chapter 8, : 8 Tax Incentives for Venture Capital", 1999. 3.

에서는 개인투자자가 외에 투자조합(trustee)의 주식매각익에 대해서도 과세이연 혜택을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개인투자자가 세무당국의 승인을 받은 펀드를 통하여 적격기업에게 간접적으로 투자한 경우에 직접투자와 동일하게 세금우대제도가 적용된다⁸¹⁾.

나) Venture Capital Trust(VCT)⁸²⁾

EIS제도가 미공개기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인 데 비해, 1995년 세제개정 이후 도입된 VCT는 적격 미공개기업에 투자하는 회사형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개인에 대한 세금우대제도이다.

(1) VCT제도의 적용 요건

적격 VCT가 적격 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세무당국은 VCT에 대해 각종 세금우대제도를 적용하게 된다.

우선 VCT 적격 요건(conditions to be satisfied)은 다음과 같다. 첫째 VCT의 주된 수입이 주식투자 및 5년 초과 장기대출금에서 발생되어야 한다. 둘째, VCT는 미공개기업에 집중투자하되 특정 기업에 대해서만 집중투자하는 것은 제한한다. 즉, 총투자액의 70% 이상이 적격 미공개기업에 투자되어야 하고, 이러한 적격 미공개기업에 대한 투자 중 30% 이상을 보통주에 투자하여야 한다. 또한 다른 VCT에 투자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1개 기업에 대한 투자가 VCT 총투자액의 15% 이내여야 한다. 따라서 다른 VCT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최소한 5개 이상의 미공개기업에 대하여 투자하여야 한다. 셋째, VCT의 보통주는 런던증권거래소에

81) Income Tax, Reliefs and Deductions for Income Tax, 1946조.

82) Income Tax, Reliefs and Deductions for Income Tax, 1950조.

상장되어야 하며, 넷째, VCT의 이익금 사내유보 한도는 유가증권 투자 등에서 발생한 총이익금의 15% 이내로 하여야 하며, 나머지 85% 이상은 투자자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또한 VCT 투자적격 기업이 갖추어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공개기업이어야 한다. 미공개기업이란 증권거래소, USM (Unlisted Securities Market : 장외시장), 국세청이 지정하는 해외 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않은 기업을 말하며, 이때 비상장기업일지라도 주식과 회사채 공모를 실시한 기업은 미공개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⁸³⁾. 둘째, 투자대상기업은 EIS제도에서 규정한 바 있는 적격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적격사업을 시작할 예정인 기업이어야 한다. 특히 EIS 개정으로 확대된 적격사업 범주가 그 대로 적용된다. 셋째, VCT 투자대상기업의 총자산은 VCT 투자자금을 포함하여 주식 발행 전 1,000만파운드, 주식 발행 후 1,100만 파운드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2) 투자규모 및 용도

개별기업에 대한 VCT의 투자한도는 연간 100만파운드이다. 한편 투자가 당해연도를 넘기면서 2년간에 걸쳐 진행될 경우에는 6개월간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100만파운드로 제한된다. 원칙적으로 VCT가 투자기업에 차입해준 자금은 차입일로부터 1년 이내 적격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세금우대 내용

18세 이상인 영국 내 거주자가 VCT에 자금을 투자하면 다음과 같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83) VCT가 투자한 다음에 주식을 공개한 기업은 주식공개 이후 5년간 미공개기업으로 간주된다.

첫째, VCT가 투자자금 조성을 목적으로 보통주를 신규 발행할 때 개인투자자는 최대 10만파운드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투자액의 20%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그러나 VCT 주식을 유통시장에서 취득할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며, 개인투자자가 투자하고 나서 5년 이내 주식을 매각할 때에는 세액공제가 취소된다.

둘째, 유통시장에서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연간 10만파운드 이내로 VCT 보통주에 투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는다. 주목할 것은 이러한 배당소득 면제조항이 VCT제도의 하의 세금우대제도와 내용이 비슷한 EIS제도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셋째, 유통시장에서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연간 10만파운드 이내에서 취득한 VCT 주식을 매각할 때 발생한 주식매각익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는다. 단 매각손이 발생할 경우 통상소득 또는 다른 매각익과 합산되지 않는 것이 EIS와 다른 점이다.

넷째, 상장주식 등의 처분에서 발생한 매각익을 일정 기간 이내 VCT에 재투자할 경우에는, 상장주식 등의 처분에서 발생한 매각익에 대한 과세를 VCT 주식매각시까지 연기할 수 있다.

다) 주식매각이익 재투자에 대한 과세이연제도

1993년 세제개정시 도입된 과세이연제도는 개인투자자가 상장주식 등의 처분에서 발생한 매각이익을 적격 미공개기업에 재투자할 경우 주식매각 이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여 주는 것이다⁸⁴⁾. 그러나 최근 개정된 1998 Financial Act Sec. 74, 141(1)(a)에 따르면 1998년 4월 6일 이후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여 발생한 자본이득부터는 미공개기업에 재투자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처럼 과세이연제도가 폐지되는 것은 일반적인 자본

84) 산업연구원(1998), p. 152.

이득의 재투자 혜택의 많은 부분들이 EIS제도에 통합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EIS나 VCT를 통한 투자의 경우 과세이연제도 특례를 여전히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표 V-12>에서 보는 바와 같다.

라) 미공개기업의 주식 매각손실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1988년 ICTA 573항부터 576항에 걸쳐 적격 미공개기업 주식매각 손실을 통상소득과 합산할 수 있는 특례사항이 규정되었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는 적격 미공개기업의 주식에 투자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액에다 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만큼을 개인통상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러한 특례제도가 적용되는 기업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으면서 일정기간 동안 사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사업장이 영국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 단 사업분야가 증권, 상품선물, 토지 등의 매매·중개업인 기업과 유가증권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투자회사는 제외된다. 또한 과세특례제도가 적용되는 주식은 적격기업의 보통주이고, 개인투자자가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증자시에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유통시장을 통하여 이차적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마) 미공개 적격기업 회사채에 대한 지원

1992년 TCGA 254항과 255항에 의하면, 미공개 적격기업 회사채(Qualifying Corporate bond : QCB) 매각시 발생한 이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며,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식 매각손과 마찬가지로 소득공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1998년 개정된 Financial Act Sec. 141(1)(b)에서 1998년 3월 17일 이후 발행한 QCB 매각손에 대해 통상소득과 합산하는 과세특례를 폐지하였다.

<표 V-12> 과세이연제도 비교

항 목	일반적인 과세이연	EIS 투자의 과세이연	VCT 투자의 과세이연
이연가능 매각익	· 1993년 3월 15일 이후 발생한 자산매각익(단, 1998년 4월 4일 이후 발생한 자산매각익의 과세이연 인정혜택은 폐지)	· 1994년 11월 29일 이후 발생한 자산매각익	· 1995년 4월 6일 이후 발생한 자산매각익
이연이 인정되는 채투자 기간	· 매각익 발생일 1년 전에서 3년 후 사이 기간	· 매각익 발생일 1년 전에서 3년 후 사이 기간	· 매각익 발생일 1년 전에서 1년 후 사이 기간
이연가능 한도액	· 매각익 중 적격기업 주식에 채투자된 금액	· 매각익 중 적격기업 주식에 채투자된 금액(단 연간 15만파운드 이하 한도)	· 매각익 중 적격기업 주식에 채투자된 금액(단 연간 10만파운드 이하 한도)

바) AIM 등록기업 세금우대제도

런던증권거래소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이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공개기준을 대폭 완화시킨 AIM (Alternative Investment Market)을 1995년에 발족하였다. 영국 정부는 AIM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AIM 거래주식을 세계상 공개주식이 아닌 미공개주식으로 취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AIM 거래주식에 대하여는 EIS, VCT제도 및 주식매각손실 통상 소득과의 합산 등과 같은 세금우대제도가 모두 적용된다⁸⁵⁾.

85) 산업연구원(1998), p. 154.

3. 일 본

가. 중소기업 현황

1) 중소기업 현황

현행 일본의 「중소기업기본법」은 중소기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공업과 광업의 경우 300인 이하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거나 자본금이 3억엔 이하인 기업을 말한다. 도매업, 소매업,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가 조금씩 다르는데, 도매업의 경우 100인 이하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거나 자본금이 1억엔 이하인 기업을 말한다. 서비스업의 경우는 100인 이하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거나 자본금이 5천만엔 이하인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소매업은 종업원 50인 이하를 고용하고 있거나 자본금이 5천만엔 이하인 기업 및 개인사업자를 중소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⁸⁶⁾.

일본의 총무성은 일정한 기간마다 「사업소 및 기업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1999년의 경우 중소기업의 수는 <표 V-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614만개로서 전체 기업 수 약 618만개의 99.3%에 달한다. 중소기업의 피고용자 수는 약 4,320만명으로 전체 피고용자 5,359만명의 80.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용흡수 측면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비록 중소기업이 일본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큰 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일본경제는 제조업 등의 해외발전 증대, 해외로

86) 구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하면 중소기업이란 광공업의 경우 종업원 300인 이하 고용 또는 자본금 1억엔 이하인 기업, 도매업은 100인 이하 종업원 고용 또는 자본금 3천만엔 이하인 기업, 소매업 및 서비스업은 종업원 50인 이하 고용 또는 자본금 1천만엔 이하인 기업 및 개인사업자이다.

<표 V-13> 일본의 중소기업 비중

(단위: 개, 명, %)

		1991	1994	1996	1999
기업 수	중소기업 ²⁾	6,484,296 (99.1)	6,470,532 (99.1)	6,433,557 (98.9)	6,139,735 (99.3)
	대 기업	57,445 (0.9)	61,448 (0.9)	69,367 (1.1)	45,094 (0.7)
	합 계	6,541,741 (100.0)	6,531,980 (100.0)	6,502,924 (100.0)	6,184,829 (100.0)
피고용자 수	중소기업	43,399,294 (79.2)	42,273,745 (78.0)	44,492,576 (77.6)	43,194,781 (80.6)
	대 기업	11,392,533 (20.8)	11,890,062 (22.0)	12,854,194 (22.4)	10,395,532 (19.4)
	합 계	54,791,827 (100.0)	54,163,807 (100.0)	57,346,770 (100.0)	53,590,313 (100.0)

- 주 : 1) 농업과 어업은 제외한 자료이며, () 안은 합계에 대한 구성비임.
 2) 1999년의 수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1999. 12) 후의 정의에 기초하여 계산하였음.
 3) 종업원 총수 300인 이하(도매업, 서비스업은 100인 이하, 소매업, 음식점업은 50인 이하)를 중소기업으로 정의하였음.

자료 : 日本 中小企業廳(2002).

부터의 부품조달이 확대, 기존 시장이 성숙, 소비자의 구매의식 및 수요의 변화 등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가운데 오랜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조업, 소매업을 중심으로 개업률이 떨어지는 추세이며 중소기업을 기초로 한 기업수도 1990년대 이후 계속하여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피고용자의 수도 1996년의 「사업소·기업통계조사」를 실시한 때보다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벤처기업 현황

일본에서도 공식적으로 벤처기업을 정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벤처기업 수가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통산성이 연구개발이나 창업 등 창조적인 사업활동을 하는 중소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1995년 4월에 「중소기업의 창조적 사업활동의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에 의한 지원대상을 벤처기업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지원대상기업으로는 먼저 특정중소기업자를 들 수 있다. 특정중소기업자는 ① 제조업, 인쇄업, 소프트웨어업, 정보처리서비스업에 속하는 창업 5년 미만의 자, ② 매상고에 대한 시험연구비 비율이 3%를 초과하는 자, ③ 매상고에 대한 시험연구비 비율이 3%를 초과하는 창업 5년 미만의 자 등이다. 다음으로 새로운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및 이를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자 등도 지원대상이 된다. 여기서 ‘기술’이란 생산, 판매는 노무제공기술로서 제조업, 상업,

<표 V-14> 중소기업창조활동촉진법 도(都)별 인정 기업 수
(단위: 개)

도	관내 인정 기업 수
北海道	84
東北	443
關東	4,360
中部	636
近畿	1,526
中國	533
四國	278
九州	609
沖繩	54
합계	8,523

주 : 2002년 1월 말 기준임
자료 : 日本 中小企業廳 인터넷 자료.

<표 V-15> 일본의 업종별 벤처기업 현황

(단위: 개, %)

업종구분	업체수	비율
식품	112	4.6
섬유	52	2.1
목재 및 종이	24	1.0
화학 및 의약	104	4.3
유리 및 세라믹	43	1.8
철강, 비철 및 금속가공	106	4.4
기계	205	8.5
전자	355	14.7
수송용 기계	37	1.5
정밀기계	140	5.8
출판, 인쇄	38	1.5
기타 제조업	279	11.5
주택·건설	83	3.4
정보 서비스	64	2.6
소프트웨어	258	10.7
유통	217	9.0
서비스 및 기타	305	12.6
합계	2,422	100.0

주 : 日經에서 조사대상업체 5,000개 중 설문에 회답한 2,422개사에 대한 자료임.

자료 : 日本經濟新聞(1999).

서비스업을 불문하고 사업분야의 것이 대상이다. 자연과학계의 기술에 한정하지 않고 경영상의 노하우 등도 포함된다.

이 법의 정의에 의한 인정을 받은 벤처기업의 수는 <표 V-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2년 1월말 현재 8,523개에 달하고 있다.

벤처기업의 업종별 분포는 『1999 일경 벤처비즈니스 연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 연감은 5,000여개의 조사대상 벤처기업 중에서 2,422개의 벤처기업으로부터 응답을 받아 작성한 것이다. <표 V-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업종별로는 전자 14.7%, 소프트웨어 9.1% 등 첨단분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비교적 작고, 서비스 16.4%, 유통 8.7% 등 이들 분야의 비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나. 벤처산업 관련 일반지원제도

1) 벤처산업에 대한 주요지원책

가) 법률에 근거한 종합적인 지원

통산성에서는 1995년 4월에 「중소기업의창조적사업활동의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을 제정하여 연구개발이나 창업 등 창조적인 사업활동을 하는 중소기업, 즉 벤처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1) 엔젤(개인투자자) 세제를 통한 직접금융지원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해 개인투자자가 주식투자를 하여 이 주식에 대해 양도손실 등이 발생한 경우에 개인투자자는 그 양도손실 등에 대해 이월공제 등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절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2) 벤처재단을 통한 직접금융지원 촉진

도도부현의 재단 등(벤처재단)을 통하여 시행하는 직접금융지원제도 중 창조적인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사채의 인수를 재보험제도에 의해 촉진한다.

(3) 리스(임대) 등에 의한 설비투자 원활화

「중소기업의창조적사업활동의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이 인정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는 기계류 신용보험의 보전율을 인상(50%→70%), 임대 등에 의한 원활한 설비도입을 가능하게 한다.

(4) 채무보증제도 확충

계획의 실시예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때 신용보증협회가 행한 채무보증에 대해 채무보증한도액의 확대, 무담보범위 확대 등을 하고 있다. 즉, 채무보증한도액은 2억엔에서 3억엔으로, 채무 중 무담보 범위는 5,000만엔에서 7,000만엔으로, 채무 중 무담보·무보증인 범위는 2,000만엔으로 확대하고 있다.

(5) 지역산업창조기술연구개발비보조금

인정된 계획에 기초하여 연구개발을 하는 자(중소기업자 및 조합 등)는 연구개발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하는 지역산업창조 기술연구개발비보조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본 보조금은 다년간에 걸친 연구개발도 수혜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보조율은 3분의 2, 보조단가는 1건당 500만~3,000만엔으로 도도부현이 정한 금액으로 하고 있다.

(6) 설비투자감세 등 감세조치

1대 또는 1기 가액이 250만엔 이상인 것에 대한 설비투자감세는 당초연도 취득가격의 7% 세액공제 또는 30%를 특별상각받을 수 있다. 또한 기타 다양한 감세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7) 설비 근대화 자금제도의 충실

중소기업설비 근대화를 꾀하기 위해 설비구입에 필요한 자금의 2분의 1에 대해서 무이자대부 등을 해주는 설비 근대화 자금제도는 인정된 계획을 실시하는 자가 차입한 자금 등의 상환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있다.

(8) 저리융자제도 실시

인정계획을 실시하는 자에 대해 중소기업금융공고, 국민금융공고, 상공조합중앙금고 등에는 각종 저리융자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9)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의 투자제도 충실

자본금 1억엔 이하의 주식회사에 대해 투자하는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의 사업에 대해 자본금이 1억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투자대상으로 하고 있다.

(10)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의 투자제도 충실

자본금 1억엔 이하의 주식회사에 대해 투자하는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의 사업에 대해 자본금이 1억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투자대상으로 하고 있다.

나) 자금조달지원

(1) 창조적인 중소기업 창업지원사업

이 사업은 도도부현의 재단 등(벤처재단)이 중소기업사업단의 고도화융자제도를 활용하여 벤처캐피탈 투자로 투자공급을 촉진하는 등, 창조적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자는 「중소기업창조활동촉진법」의 인정을 받은 자 및 벤처재단이 동법의 인정과 유사하다고 인정한 자로서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를 설립한 자이다. 지원내용은 간접투자로서 벤처재단으로부터 투자자금의 저리예탁을 받은 벤처캐피탈이 투자(주식, 전환사채, 보증채의 인수)하며, 직접투자로서 벤처재단이 창조적 중소기업의 주식, 사채(전환사채 및 보증(warrant)채)를 직접 인수한다.

<표 V-16> 창조적인 중소기업 창업지원 내용

	간접투자		직접투자	
	주 식	사 채	주 식	사 채
금액	1억엔 이내	1억엔 이내	1천만엔 이내	1천만엔 이내
상환 기한	-	10년 이내	-	10년 이내
이율	-	장기프라임 레이트 이하	-	장기프라임 레이트 이하
담보	-	불 요	-	불 요

자료 : 일본 중소기업청 인터넷 자료.

다) 기술개발지원

(1) 창조기술연구개발비 보조금·지역산업창조기술연구개발비 보조금

중소기업자 자신이 행하는 신제품, 신기술 등에 관한 기술연구 또는 시험작동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촉진함과 동시에 기술개선을 꾀하며, 중소기업제품의 고부가가치화, 중소기업의 신분야 진출 원활화 등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창조기술연구개발비보조금제도·지역산업창조기술연구개발비보조금제도가 있다.

창조기술연구개발비보조금은 일반기술, 연구개발형 중소기업(매출액에 대한 시험연구비의 비율이 3% 이상인 기업)이 하는 기술연구나 시험작동 또는 하청기업이 하는 기술연구 또는 시험작동, 환경기술에 대해 지원하며, 지역산업창조기술연구개발비보조금은 이에 추가하여 창조적 중소기업진흥, 신기술육성, 그리고 지역산업집적 활성화(조합분, 기업분) 등에 대해 보조한다.

<표 V-17> 창조기술연구개발비·지역산업창조기술연구개발비 보조금 지원 내용

	① 창조기술연구개발비보조금 (통산국이 교부)			② 지역산업창조기술연구개발비 보조금 ¹⁾ (각 자치단체가 교부)		
	보조율	보조금액 (만엔)	예산액 (천엔)	보조율	보조금액 (만엔)	예산액 (천엔)
일반기술	1/2	500~2000	309,225	2/3	100~500	220,500
특정기업 ²⁾		500~3000	236,250	2/3	100~700	56,000
창조적 기업 ³⁾						2,883,821
인정기업분				2/3	500~3000	2,081,255
융합화분				2/2	19,815천엔	802,566
환경기술 ⁴⁾	1/2	700~3000	70,875	2/3	100~700	84,000
				2/2	4000이하	40,558
신기술육성 ⁵⁾				2/3	100~1000	409,500
지역산업직접활성화 ⁶⁾						224,175
기업분				2/3	1,470이하	147,000
조합분				2/3	2,205이하	77,175
		예산액 계	616,350		예산액 계	3,918,554

- 주 : 1) ②의 예산액은 국가로부터 자치단체로의 보조금예산액이며 자치단체로부터 기업 등에 대한 보조금액은 대략 이 금액의 2배가 됨.
 2) 특정기업은 연구개발형기업 등(시험연구비가 매상액의 3%이상) 또는 하청기업 등(하청중소기업 중 특정신사업자와의 거래액이 총거래액의 약 20% 이상)이 대상이 됨.
 3) 창조적 기업은 「중소기업창조적사업활동촉진에 관한임시조치법」이 인정한 기업이나 조합 등이 대상이 됨.
 4) 환경기술은 환경관련 기술을 개발하도록 하는 기업이 대상이 됨.
 5) 신사업육성은 아이디어단계의 기술에 대해 기초적 연구개발을 실시하는 기업이 대상이 됨.
 6) 지역산업직접활성화는 「특정산업직접활성화에 관한임시조치법」에 관한 승인지역 내에서 동법 계획승인을 받은 기업, 조합 등이 대상이 됨.

자료 : 日本 中小企業廳 인터넷 자료.

(2) 중소기업 창업기반 기술연구사업

중소기업과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대학 등 연구기관이 소유한

우수한 연구성과를 새로운 사업이나 산업의 경영자원이 되도록 연구개발을 실시하기 위해 중소기업사업단으로부터의 위탁에 의해 연구자금을 제공한다.

- ① 위탁연구대상은 중소기업과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공동연구체가 실시하는 공동연구프로젝트이다. 연구기관에는 대학, 고등전문학교, 국립시험연구기관, 공설시험연구기관(도도부현의 공업기술센터 등), 연구개발을 실시하고 있는 공익법인, 제3섹터가 해당된다.
- ② 위탁연구비의 규모는 1개 프로젝트당 연간 2천만엔 정도, 연구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한다. 매년마다 위탁연구계약을 체결하며, 당해연도 연구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당해연도 말까지로 한다.

(3) 중소기업 산·학·관 기술교류 등 촉진사업

(가) 산·학·관 기술교류회

대학 등의 연구자와 관심이 있는 중소기업 간에 산·학 교류회를 가져 대학 등과 중소기업에 의한 공동연구나 대학 등의 우수한 연구성과 이전을 위한 제휴관계 구축, 파트너 개척을 하기 위해 산·학 기술교류회를 개최하고 있다.

- ① 대학 등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연구 중 중소기업에 의하여 활용가능성이 높은 것에 대해 연구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 ② 대학 등의 연구자에 의한 연구내용을 panel 전시 등의 형태로 발표하고 있다.
- ③ 대학 등의 연구자에 의한 결과 제시 후, 관심을 가지는 중소기업간에 개별상담을 하는 장소를 설치하고 있다.
- ④ 기타
필요에 따라 대학 등과의 교류에 의해 업적을 발전시킨 실적이

있는 기업경영자 등에 의한 panel discussion 등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나) 창조기반 기술이전 컨설팅사업

의욕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한 연구성과를 가진 대학연구자를 조연자로 하여 중소기업사업단에 등록하고 당해 대학의 연구사업화에 관심을 가진 중소기업자의 요청에 기초하여 기술지도를 하며 당해 중소기업으로의 기술이전 등을 촉진하고자 하고 있다.

2) 정부계열 중소기업금융기관에 의한 융자제도

정부지원을 받는 중소기업금융기관(중소기업금융공고, 국민금융공고, 상공조합중앙금고)들은 기관의 성격에 따라 중소기업의 채무보증 및 투·융자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중소기업금융공고는 중소기업자가 행하는 사업진흥에 필요한 장기자금의 융통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전국에 59개의 지점이 있다. 이 기관은 중소기업 중에서도 비교적 큰 기업에 대한 융자를 중심 업무로 하고 있다. 대부한도액은 직접일반대부의 경우 원칙적으로 설비자금 4억8천만엔이며, 장기운전자금은 2억4천만엔이다.

국민금융공고는 중소기업 중에서 소규모기업에 대한 융자를 중심 업무로 하고 있으며, 전국에 152개의 지점이 있다. 대부한도액은 직접일반대부의 경우 원칙적으로 설비자금, 운전자금 모두 4,800만엔이다.

상공조합중앙금고는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 기타 중소규모사업자를 주요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에 대해 금융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전국에 104개의

지점이 있다. 이 기관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조합 중에서 동급고에 출자하고 있는 단체 및 그 구성원에게 융자하고 있으며, 상공채권 발행 등 기타 종합적인 금융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대부한도액은 보통대부의 경우 원칙적으로 20억엔이며, 조합은 200억엔이다.

3)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완제도

신용보증협회는 담보력이나 신용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이 곤란한 중소기업자(상업, 공업, 운송업, 서비스업, 기타 중소기업의 사업자)의 차입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행하고, 융자를 받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다. 신용보증협회는 현재 전국에 52개소가 설치되어 있다(각 도도부현, 요코하마시, 가와사키시, 나가사키시, 기후시, 오오사카시).

신용보증의 대상자는 자본금 1억엔(도매업 7천만엔, 소매·서비스업 5천만엔) 이하 또는 종업원 300인(광업 1000인, 도매업 100인, 소매·서비스업 50인) 이하이고 대체로 1년 이상의 영업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자이며, 중소기업의 사업자금(운전자금 및 설비자금)이 그 대상이 된다.

보증한도액은 다음의 표와 같이 일반적으로 개인 및 법인의 경우는 2억엔이며, 조합의 경우는 4억엔이다.

<표 V-18> 신용보증제도

(단위: 만엔)		
보증한도액(일반적인 보증)	개인·법인	조합 등
보 통	20,000	40,000
특별소액	1,000	1,000
무 담 보	5,000	5,000

자료 : 日本 中小企業廳. 인터넷 자료.

4) 벤처사업센터(Venture Enterprise Center; VEC)의 사업

벤처사업센터는 1975년 중소기업의 채무보증과 정보교류를 주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높은 기술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부족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하지 못하는 기업에게 연구개발 및 그 성과의 기업화에 필요한 자금차입에 대한 무담보 채무보증을 실시한다. 그밖에 신입사원 연수, 각종 조사연구사업, 정보 및 정보교류장소 제공, 국제교류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벤처사업센터는 250개 벤처기업, 100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700만엔의 기본재산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정부로부터 50%, 민간으로부터 50%를 출연받은 19억 7,300만엔의 채무보증기금을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경륜협회로부터 지원을 받은 14억 3,000만엔의 운영자금을 가지고 있다.

벤처사업센터의 채무보증은 투자심사위원회를 통하여 결정되며, 투자기업이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채무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를 하고 있다.

1998년 3월 말까지 무담보 채무보증 실적은 연구개발형기업이 490건에 219억 4,100만엔이며, 1988년에 개시한 지식융합형기업은 27건에 9억 2,000만엔에 달하고 있다. 한편, 1995년 10월부터는 종전의 채무보증액 상한이 연구개발형기업의 경우 8천만엔이고 지식융합형기업이 4천만엔이던 것을 각각 1억엔과 5천만엔으로 인상한 바 있다.

VEC는 새로운 사업 분야의 창조와 지식집약화의 촉진에 기여하고, 또한 일본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공헌할 것을 목적으로 벤처비즈니스 및 뉴비즈니스의 창출과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표 V-19> 벤처사업센터의 채무보증업무 내용

	연구개발형 기업채무보증 (벤처비즈니스 형)	지식융합형 기업채무보증 (뉴비즈니스 형)
대상 기업	중소·중견기업으로서 신기술, 신제품의 개발 및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업화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중소·중견기업으로서 새로운 서비스의 시험적인 실시 및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업화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프로 젝트	현재의 기술수준으로 볼 때 신규성을 갖는 프로젝트로서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고, 기업화의 가능성이 높은 것 ① 사회복지의 증진, 업무효율화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계 또는 시스템의 개발 등에 관한 것 ② 위의 ①에 준하는 제품 및 이에 관련된 설비, 부품, 원재료 등의 개발에 관한 것(의약품을 제외함)	① 최신의 기술개발 성과에서 개발요소가 강한 선도적인 노하우를 조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식융합도가 높은 프로젝트로서 그 보급에 따라 합리화, 고도화 등의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 ② 위의 ①에 준하는 새로운 서비스사업 및 그 설비개발 등에 관한 것
대상 자금	연구개발의 설비비, 시험비, 시험제작비 등 및 그 성과를 기업화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기계구입, 원재료비 등의 자금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건물의 취득비용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로운 서비스제공방법에 관련된 노하우의 개발에 필요한 기계기구, 시설의 개발개량, 서비스의 실험적인 실시비용 등의 자금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건물의 취득비용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 한도액	차입금액의 80%이며, 1개 프로젝트당 1억엔 이내이다. 따라서 대상이 되는 차입금액은 1억 2,500만엔 이내가 된다.	차입금액의 80%이며, 1개프로젝트당 5,000만엔 이내이다. 따라서 대상이 되는 차입금액은 6,250만엔 이내가 된다.
담보· 보증인	○ 담보: 차입금액의 80%에 대해서는 담보가 불필요하다.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대출금융기관과 상담해야 한다. ○ 보증인: 원칙적으로 대표이사가 보증인이 될 수 있다.	

다. 벤처산업 관련 조세지원제도

일본의 벤처기업 조세지원의 경우 개별법률에 근거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법률이 「중소기업근대화촉진법」과 「중소기업의창조적사업활동의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이다.

「중소기업근대화촉진법」은 중소기업의 근대화를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업종마다 설비근대화와 기업집약화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제우대를 해주고 있다. 「중소기업의창조적사업활동의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은 1995년 4월부터 시행된 10년간의 한시법으로 적극적인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추구하고 있는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창업의 활성화와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하청중소기업진흥법」 및 「특정산업집적활성화에관한임시조치법」 등 중소기업관련 지원법률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우대조치들의 내용으로 설비투자를 위한 특례조치, 시험연구비 부과금의 임의상각 및 부과금에 의해 취득한 시험연구용 자산의 압축기장, 특별토지보유세 및 사업소세의 비과세 등이 있다.

1)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가) 기술개발촉진 세제

확정신고시에 청색신고서를 제출하는 중소기업자(자본금 1억엔 이하의 중소기업자) 중에서 시험연구를 하는 중소기업자는 확정신고시에 납부하는 법인세액이나 소득세액에서 시험연구비의 10%가 감세된다. 다만 감세의 한도액은 지불한 법인세액 또는 소득세액의 15%이다. 시험연구의 세액공제는 시험연구와 관계된 인건비, 원재료비, 위탁연구비, 시험연구용 자산의 감가상각비 등 시

험연구와 관계된 비용이 대상이 된다.

자본금 1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자이어도 대규모 법인(자본금 1억엔을 초과한 기업)으로부터 자본의 2분의 1(여러 대규모 법인으로부터 출자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자본의 3분의 2)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감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소득세 공제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이외에 소득세 및 개인주민세 등에 다음과 같은 각종 공제조치가 있다.

(1) 청색신고 특별공제

- ①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소득을 발생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청색신고자에서 정규장부의 기장자에 대해서는 45만엔을 소득 공제한다.
- ② ① 이외의 청색신고자에 대해서는 10만엔을 소득공제해 준다.

(2) 기타 공제

- ① 국세, 지방세(개인주민세, 개인사업세)
 - 청색사업 전문종사자로서 전문종사자의 근무대상에 상당하는 급여액을 공제
 - 백색사업 전문종사자로서 50만엔(배우자의 경우 86만엔)을 공제
- ② 지방세(개인사업세)⁸⁷⁾
 - 사업주 공제로서 270만엔을 공제

87) 주민세는 도도부현민세(도민세) 및 시정촌민세(특별구민세)가 있음.

다) 법인세 경감

(1) 중소기업(자본금 1억엔 이하의 법인)에 대해서는 일반법인에 대한 법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법인세율을 비교하여 보면 보통법인에 있어서는 자본금 1억엔 초과법인은 30%, 자본금 1억엔 이하의 법인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의 800만엔 초과부분에 대해서 30%, 소득금액 800만엔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는 22%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협동조합 등 및 공익법인⁸⁸⁾에 대해서는 22%가 적용된다.

(2) 교제비의 손금산입

일반적으로 교제비는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지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구분에 의해 손금산입이 인정된다.

자본금 1,000만엔 이하의 법인 : 연 400만엔 중 80%

자본금 5,000만엔 이하의 법인 : 연 300만엔 중 80%

라) 설비투자 관련 세제

(1) 중소기업자의 기계 등의 특별상각(일반기계 특별상각)

- 대상설비 : 1대 또는 1기의 가격이 230만엔 이상의 기계, 장치
- 조치내용 : 취득가격의 11% 특별상각

(2) 중소기업신기술 투자촉진세제

- 대상설비 : 1대 또는 1기 가격이 160만엔 이상의 전자기구 이용설비 및 전자계산기
- 조치내용 : 취득가격의 30% 특별상각(다만, 자본금 3000만엔 이하) 중 중소기업 및 개인은 취득가격의 7% 세액공제

88) 협동조합 등이란 중소기업등 협동조합 등과 같은 각종 조합(기업조합 및 협업조합을 제외)을 말한다.

를 선택가능

(3) 중소기업 등 기반강화세제

- 대상사업자
 - 특정 중소기업자(「중소기업노동력확보법」, 「집적생활화법」, 「신분야진출등원활화법」 등에 기초하여 계획 승인을 받은 자 등)
 -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 대상설비 : 단가 280만엔 이상의 기계, 장비(기구, 비품은 100만엔 이상)
- 조치내용 : 취득가격의 30% 특별상각 또는 7% 세액공제
- 임대의 경우 : 총액 320만엔 이상(기구, 비품은 140만엔 이상)의 임대료 60%에 대해서 7% 세액공제

(4) 에너지수급구조개혁투자촉진세제(에너지개혁세제)

- 대상설비 : 단가 200만엔 이상의 기계, 장치 등
- 조치내용 : 취득가격의 30% 특별상각 또는 7% 세액공제

(5) 사업화설비투자촉진세제(「중소기업의창조적사업활동의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에 기초한 벤처세제)

- 대상사업자
 - 제조업 등의 설립 또는 사업개시 후 5년 이내의 자
 - 시험연구비 대비 수입금액 비율이 3% 이상의 자
 - 「창조적활동촉진법」의 연구개발 등 계획 인정을 받은 자
- 대상설비 : 단가 250만엔 이상의 기계, 장치
- 조치내용 : 취득가격 30%의 특별상각 또는 7% 세액공제
- 임대의 경우 : 총액 340만엔 이상의 임대료의 60%에 대해서

는 7% 세액공제

마) 시험연구 관련 세제

(1) 중소기업기술기반강화세제

시험연구비에 대해서는 10%를 세액공제(증가시험연구비의 세액공제제도와 선택적용, 기반기술개발연구비용자산을 취득한 경우는 취득가격 5%를 가산공제)한다.

(2) 증가시험연구비 세액공제제도

시험연구비 증가액의 20%를 세액공제한다.

(3) 개별입법(「중소기업근대화촉진법」, 「신분야진출등원활화법」, 「중소기업의창조적사업활동의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등에 기초한 세제조치

- 구성조합원이 조합에 부과된 부담금의 임의상각(손금산입)
- 당해부담금을 가, 나)의 시험연구비 대상경비화
- 당해 부담금에 의해 조합이 취득한 시험연구용 고정자산의 압축기장

바) 사업승계 관련 세제

사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조치

(1) 소규모 택지 등 감액특례

상속재산 중 200평방미터까지 소규모택지 등의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감액된다.

① 사업용택지 등(부동산 대부업을 제외) 감액비율

- ㉠ 피상속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인계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 80%

- ② ① 이외의 경우 50%
- ② 거주용택지 등
 - ① 피상속인과 동거하고 있는 친족이 인계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80%
 - ② ① 이외의 경우 50%

일련의 가옥 일부에서도 피상속인의 거주용으로 제공되고 있다면 그 가옥의 부지 전체를 거주용택지 등이 된다.

(2) 비상장주식 평가

비상장주식의 경우 소규모 회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유한 자산의 가액에 기초하여 1주당 가치를 평가하는 순자산가액방식으로 평가하지만 순자산가액평가방식과 유사업종의 상장주식의 가격에 비준하는 유사업종비준방식과의 병용방식(모두 50%)을 선택할 수 있다. 대규모 회사에 대해서는 유사업종 비준방식에 의해 평가되지만 순자산가액방식에 의한 평가를 선택할 수도 있다. 중견 회사에 대해서는 양자의 병용방식(유사업종 비준방식의 적용 비율을 0.9, 0.75, 0.6으로 세분)에 의해 평가한다.

1)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에 대한 조세지원

청색신고서를 제출하고 있는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가 특정 회사⁸⁹⁾의 주식을 취득하고⁹⁰⁾, 그 취득한 주식을 당해 취득일을 포함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조세특별조치법」 제55조의 4에 의해 중소기업투자육성회사가 적립한 창업중소기업투자손실준비금은 손금에 산입된다. 다만 당

89)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법」 제5조 제1항 제1호 ‘사업의 범위’에서 제 3호까지에 규정하고 있는 주식회사를 말한다.

90) 당해 특정회사의 설립일 이후 5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

해 특정 주식의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당해 특정 주식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⁹¹⁾ 이하의 금액을 손금경리의 방법⁹²⁾에 의해 특정회사별로 창업중소기업투자손실준비금으로 적립된 때에 한한다.

창업중소기업투자손실준비금을 적립하고 있는 투자육성회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해당하는 것으로 되는 날(일)을 포함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 ① 당해 창업중소기업투자손실준비금에 관한 특정회사의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하지 않게 된 경우
- ② 특정주식회사가 해산(합병에 의한 해산 제외)한 경우
- ③ 특정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장부가액을 감액한 경우
- ④ 당해 투자육성회사가 해산한 경우
- ⑤ 이 이외의 경우에 있어서 특정회사에 관한 창업중소기업투자손실준비금의 금액을 없애버린 경우

3) 엔젤에 대한 조세지원

일본에서는 엔젤에 대한 지원제도로서 엔젤세제가 있다. 엔젤세제는 벤처기업 중에서 「중소기업의창조적사업활동의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기업⁹³⁾에 투자하

91) 당해 사업연도에 있어서 당해 특정주식의 장부가액을 감액한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 중에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상 손금액에 산입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92) 확정된 결산에 있어서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해 적립금으로 적립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93) 엔젤세제의 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이란, 「중소기업의창조적사업활동의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제7조의2에서 외부로부터의 투자를 받아 사업활동을 행하는 것이 특별히 필요하고도 적절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는 개인투자자에 대하여 투자로 인해 발생한 일정한 손실을 3년간에 걸친 이월공제 등이 적용되는 세제를 말한다. 엔젤세제의 입법은 개인투자자의 투자리스크를 경감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며, 신규산업의 창출·발전을 의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엔젤세제의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일정한 조건을 갖춘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회사설립에 의한 발행을 포함함)을 금전을 지불하고 취득한 개인이 적용기간⁹⁴⁾ 내에 그 금전지불에 의해 취득한 주식을 양도⁹⁵⁾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금액 중에서, 당해연도 주식양도에 따른 이익과 통산한 결과 손실이 남는 경우⁹⁶⁾에는 일정한 요건하에서 그 연도의 익년 이후 3년에 걸쳐서 이월공제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 ② 적용기간 내에 ①의 금전지불에 의해 취득한 주식이 그 주식발행회사의 해산(합병을 제외함)에 따른 청산결정이나 파산선고에 의해 가치를 상실한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을 양도함에 따른 손실로 간주하여 ①의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엔젤세제의 대상이 되는 벤처기업 및 개인투자자의 요건은 아래와 같다. 개인투자자가 엔젤세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투자대상기업이 이러한 요건을 만족하는지에 대하여 통상산업국 등에서 발행된 확인서가 필요하다. 금전지불일(회사설립시 투자의 경

94) 적용기간이란 회사 설립일로부터 상장 등의 일(日)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95) 투자자의 친족에 대한 양도 등 일정한 양도에 의해 발생한 손실금액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96) 「조세특별조치법」에서 그 양도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분의 신고분리과세의 주식 등에 관한 양도소득 등의 금액 계산상 공제되지 않는 금액을 가지고 있는 때로 규정되어 있다.

우에는 회사성립일) 이후 투자를 받은 기업은 지체없이 확인서의 신청수속을 행하여야 한다.

① 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의 요건

- 창업기(설립 후 5년 이내)의 중소기업자일 것
- 상당한 정도의 연구개발을 행하고 있는 회사일 것⁹⁷⁾
- 대기업의 자회사가 아닐 것
- 외부로부터의 투자를 3분의 1 이상 유치하고 있는 회사일 것
- 미등록·미상장회사일 것 등.

② 대상이 되는 투자자⁹⁸⁾의 요건

-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투자계약의 참고양식은 통상 산업국 등에 비치되어 있음)
- 금전지불에 의해 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하고 있을 것 등.

<표 V-20> 엔젤세제의 효과

	엔젤세제를 적용받지 않을 경우	엔젤세제를 적용받을 경우
양도손실 (캐피탈로스)	· 당해연도분의 신고분리과세의 주식양도이익과의 통산이 가능함 · 이월공제는 불가함.	· 당해연도분의 신고분리과세의 주식양도이익과의 통산이 가능함 · 일정한 경우 익년 이후 3년간의 이월공제가 가능함.
회사해산에 따른 청산 결정 등에 의한손실 (소각화)	· 통산은 불가함 → 손실로 인정 되지 않음.	· 회사해산에 따른 청산결정이나 파산선고에 의해 발생한 손실 도 당해연도분의 신고분리과세 의 주식양도이익과의 통산이 가 능함 · 일정한 경우 익년 이후 3년간의 이월공제가 가능함.

97) 매출액대비 시험연구비 비중이 3%를 초과할 것 등.

98) 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의 동족주주에 해당하는 자 등 특정한 자는 제외된다.

4. 시사점

각국의 벤처기업 현황과 벤처기업에 대한 일반지원제도와 조세지원제도를 요약해 보고 이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중소기업청에서 벤처기업을 인정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벤처기업의 수를 알 수는 없으나 미국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1990년대 이후 이들 벤처기업들은 침체된 미국경제에 커다란 활력을 불어넣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의 벤처산업 관련 일반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의 육성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SBIR제도와 같은 자금지원과 경영관리지원 및 출판사업 등에 국한되어 있다. 미국은 조세지원제도에서도 특별히 벤처기업을 직접적으로 우대하는 제도를 운용하지 않는 것이 특징적이다. 벤처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S법인제도를 통해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대신 해당 법인의 손익을 개인 주주에게 출자비율로 배분해서 개인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는 정도의 지원에 그치고 있다. 그 대신 일반지원제도와 마찬가지로 S법인 주주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와 적격 중소기업에 투·융자를 전문으로 하는 투자회사와 투자신탁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과세특례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중소기업투자회사(SBIC), 투자조합 및 엔젤에 대한 조세지원을 함으로써 벤처산업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 미국의 벤처산업에 대한 지원제도는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환경 및 투자환경 조성과 중소기업, 투자회사, 투자조합, 엔젤 등의 주주나 투자자에게 지원을 함으로써 벤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간접적인 지원제도가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영국에서도 벤처기업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의 벤처산업국으로서 지위를 자리매김하고 있다. 영국정부는 기본적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은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는 달리 지원대상 벤처기업의 선정을 민간부문에 맡김으로써 시장원리를 최대한 존중하고 있다. 따라서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 역시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적 지원(정부대출, 정부투자 등)이 아닌 벤처기업의 창업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벤처기업의 대출금액에 대한 정부보증제도, 정부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창구 역할을 하는 비즈니스링크제도, 기술지원을 위한 사이언스파크 설립, 벤처기업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및 벤처기업 스스로 직접금융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외시장의 운영 등 간접적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영국의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조세지원제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경감세율 적용과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를 운용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서 미국의 경우와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다. 영국 역시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조세지원 대신 벤처기업 투자자들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1994년부터 적격 미공개기업의 신규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들에 대한 세금우대제도인 ELS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1995년부터 적격 미공개기업에 투자하는 회사형투자신탁에 투자하는 개인에 대한 세금우대제도인 VCT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기타 주식매각이익을 미공개기업에 재투자하는 경우 과세이연을 인정하고 있으며, 미공개기업의 주식매각손실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도 실시하고 있다. 영국에서의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역시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투자자들의 투자환경 및 자금조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간접적인 지원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 매우 유사하다.

반면 일본의 경우 1995년 4월부터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과 유사한 「중소기업의창조적사업활동의촉진에 관한임시조치법」을 제정하여 벤처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원제도들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벤처기업 지원제도와 매우 유사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조세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각국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제도의 공통적인 특징과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생각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선진국들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구분하여 벤처기업에 대해 별도의 일반지원제도나 조세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지 않다. 즉,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그치고 있다. 다만 미국 및 영국과 달리 일본의 경우는 「중소기업의창조적사업활동의촉진에 관한임시조치법」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일반지원제도는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구분하여 벤처기업을 더 많이 지원하는 제도를 지양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더라도 주요 선진국은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중소기업의 주주나 투자자에 대한 지원에 그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직접적인 지원을 해주기보다는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이 활성화되고 중소·벤처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기 위해 자금조달환경 및 투자환경을 제고시킬 수 있는 지원에 치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지원제도 및 조세지원제도는 비교적 단순한 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지원제도 및 조세지원제도만 하더라도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벤처기업에 대한 일반지원제도 및 조세지원제도까지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이에 따라 각종 지원제도의 활용도가 낮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복잡하고 너무 다양한 일반지원 및 세제지원의 형태를 지양하고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벤처캐피탈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창업 초기의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중소기업투자회사(SBIC: 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가 중소기업청의 지원금에 민간자본을 더하여 민간 벤처캐피탈회사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창업 초기의 중소기업에 투·융자하고 있다. 벤처캐피탈 입장에서는 자금의 회수를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기술력만을 가진 초기의 벤처기업보다는 이미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기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한 벤처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기술력만을 가진 초기의 벤처기업은 투자자금을 유치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시장의 실패를 공적 벤처캐피탈이 보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벤처기업이 여러 측면에서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바가 큰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선진국들의 지원제도를 참고하여 중소·벤처기업이 건전한 발전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복잡다양한 일반지원 및 세제지원의 형태에서 벗어나 실효성이 없는 각종 지원제도를 정비하고 선진국의 경우처럼 벤처산업이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금조달시장에 대한 지원 및 투자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지원제도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VI. 벤처기업 지원제도의 활용실태조사 결과분석

1. 활용실태조사의 개요

가. 활용실태조사의 목적

본 조사의 목적은 벤처기업에 대한 일반지원제도와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실태 및 지원효과 등을 조사함으로써 향후 벤처기업 지원시책 수립 및 지원효과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조사는 한국조세연구원과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한국개발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2002년 10월 2일부터 10월 18일까지 16일간 실시하였다.

나. 활용실태조사의 설계

1) 표본설계

본 벤처기업 지원제도의 활용실태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 대상기업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본 조사의 모집단은 전국의 벤처기업 전체이며, 2002년 9월 현재 중소기업에서 조사한 벤처기업실태조사 목록 중에서 2002년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을 제외한 9,711개 업체를 전체표본으로 설정하였다. 2002년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을 제외한 이유는 본 조사의 기준일이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전체표본인 9,711개 기업을 대상으로 502개 기업을 추

출하여 표본기업을 선정하였는데, 이는 벤처기업 모집단 분석을 통해 업종/지역별로 층화한 후 각 층 내에서 무작위 추출하는 층화무작위추출법을 사용하였다. 본 조사의 표본오차는 $\pm 4.3\%$ (95% 신뢰수준)이다.

2) 자료모집 방법 및 기간

502개 표본기업에 대한 자료모집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본 보고서의 부록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구조화된 설문지를 제시하고 표본기업의 대표이사, 임원 및 재정담당 대리 이상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면접원의 직접방문에 의한 1 대 1 개별면접 및 자기기입식 조사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본 조사의 면접원은 서울 및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주요도시의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소속 전문면접원 중에서 본 조사에 알맞은 적격자를 선발하였으며, 오리엔테이션과 연습면접을 실시한 후 개별면접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면접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완성되어 회수된 질문지 중 20%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검증원이 해당 표본기업에 재방문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검증결과 응답의 허위기재나 조작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면접원이 조사한 질문지 전부를 무효화하고 예비표본에서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가 수행된 기간은 2002년 10월 2일부터 10월 18일까지 16일간이었다.

3) 활용실태조사의 내용

본 조사의 질문지는 ① 표본업체의 개황에 관한 질문, ② 벤처기

업의 일반지원제도 활용실태 및 평가에 관한 질문, ③ 벤처기업의 조세지원제도 활용실태 및 평가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체개황을 제외한 지원제도의 활용실태 및 평가에 관한 질문은 총 3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질문지에 제시된 주요 조사내용은 <표 VI-1>과 같다.

다. 표본의 특성

본 벤처기업 지원제도 활용실태조사의 조사대상기업의 특성은 아래의 <표 VI-2>와 같다. 조사대상기업인 총 502개 벤처기업 중에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은 361개 기업으로 전체의 71.9%에 해당하며,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벤처기업의 수는 141개 기업으로 전체의 28.1%에 해당한다.

기업의 형태는 법인이 92.8%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첨단제조업, 일반제조업, 그리고 SW/통신서비스업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창업연도별로 나누어보면 1998년 이후에 창업한 기업이 318개 기업으로 63.4%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0년 이전에 창업한 벤처기업도 57개가 포함되어 있다.

표본추출된 조사대상기업들은 대부분 코스닥 및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자본금은 1억원~5억원 미만인 기업이 174개 기업으로 34.7%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10억원~50억원 미만인 기업이 157개로 31.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간 매출액 규모는 10억원~50억원 미만인 기업이 185개 기업(36.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00억원 이상의 매출액을 기록한 벤처기업도 59개 기업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당기순이익은 적자기업이 55개, 1억원 미만인 기업이 108개, 1억원

<표 VI-2> 표본의 특성

(단위: 개, %)

특성	응답	기업 수	구성비
전 체		502	100.0
지 역 별	서울	219	43.6
	인천 / 경기	142	28.3
	경상도	70	13.9
	전라도	17	3.4
	충청도	49	9.8
	강원 / 제주	5	1.0
기업 형태 별	개 인	36	7.2
	법 인	466	92.8
업 종 별	첨 단 제 조 업	178	35.5
	일 반 제 조 업	144	28.7
	SW/통신서비스	142	28.3
	기 타 서 비 스	20	4.0
	농 / 임 / 어 업	2	0.4
	기 타 산 업	16	3.2
창 업 연 도	1990년 이 전	57	11.4
	1991~1997 년	127	25.3
	1998~1999 년	159	31.7
	2000~2001 년	159	31.7
벤처기업 확인유형	벤처 캐 피탈	54	10.8
	연 구 개 발	93	18.5
	신 기 술 개 발	161	32.1
	기술 평가 기업	194	38.6
벤처기업 확인연도	1998년	13	2.6
	1999년	53	10.6
	2000년	140	27.9
	2001년	296	59.0
코스닥(거래소) 상 장 여 부	등 록 (상 장)	23	4.6
	비등록 (비상장)	479	95.4
자 본 금 규 모	1억원 미만	28	5.6
	1억~5억원 미만	174	34.7
	5억~10억원 미만	107	21.3
	10억~50억원 미만	157	31.3
	50억~100억원 미만	10	2.0
	100억원 이상	9	1.8
	모 름 / 무 응 답	17	3.4

~5억원 미만인 기업이 124개로 나타나고 이들 기업의 전체의 비중이 57.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벤처기업의 수익성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보인다. 벤처기업의 영세성은 종업원 규모에 있어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조사대상 벤처기업 중에서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기업은 92개, 10명~29명인 기업이 242개로 나타나 종업원 수 30명 미만인 기업의 비중이 66.5%에 달하고 있다⁹⁹⁾.

2. 일반지원제도에 대한 활용실태조사 결과분석

가. 중소기업 일반지원제도 활용실태

본 조사에서 나타난 벤처기업의 중소기업 일반지원제도에 대한 평균 활용도는 6.4%로 낮게 나타났다. 세부 분야별 평균 활용도는 금융지원제도 6.6%, 신용보증지원제도 8.3%, 판로·수출확대지원제도 4.2%에 불과한 실정이다.

금융지원제도 중 중소·벤처창업자금 지원제도(19.5%), 일반금융기관의 벤처기업자금 지원제도(14.9%),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자금 지원제도(14.7%),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지원제도(10.6%)가 10% 이상의 활용도를 보이고 있으며, 신용보증지원제도 중 기술우대 보증제도(19.9%)가 10%이상의 활용도를 나타내고 있어 다른 지원제도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활용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판로·수출확대 지원제도 중 해외유명규격 인증획득 지원제도가 9.2%의 활용도를 보여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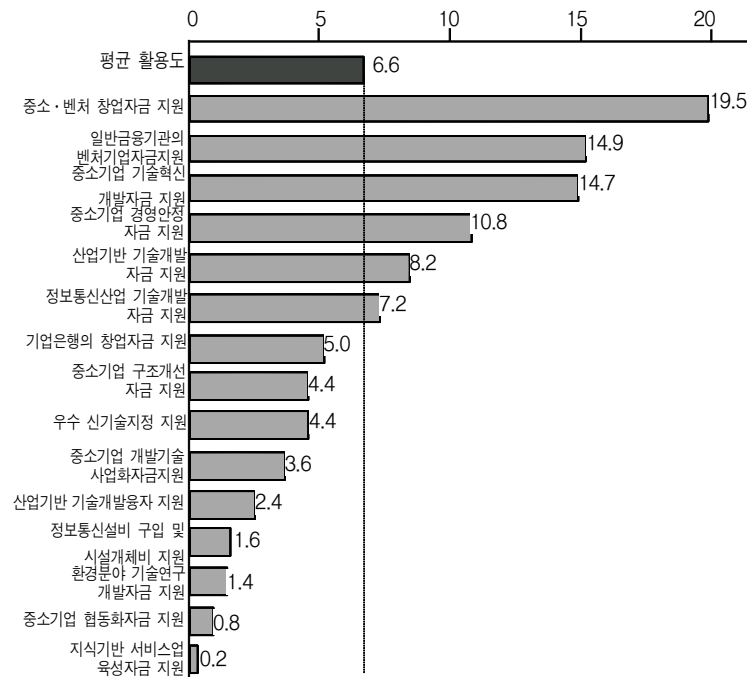
이하에서는 조사결과에 나타난 세부적인 중소기업 일반지원제도의 활용실태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99) <부표 1> 참조.

1) 금융지원제도의 활용실태

중소기업 일반지원제도 중 금융지원제도의 평균 활용도는 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15개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제도 중에서 벤처기업이 가장 많이 활용한 금융지원제도는 중소·벤처창업자금 지원제도로써 502개의 조사대상 벤처기업 중 98개 기업(19.5%)이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높은 활용도를 나타낸 금융지원제도는 75개 기업(14.9%)이 활용한 바 있다고 응답한 일반금융기관의 벤처기업자금 지원제도였다.

[그림 VI-1] 금융지원제도의 활용도



그 외에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자금 지원제도(14.7%),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제도(10.6%) 등이 10% 이상의 벤처기업이 활용한 금융지원제도로 나타났다. 2% 이하의 저조한 활용도를 보인 금융지원제도는 정보통신설비 구입 및 시설개체비 지원제도(1.6%), 환경분야 기술연구개발자금 지원제도(1.4%), 중소기업 협동화자금 지원제도(0.8%), 지식기반 서비스업 육성자금 지원제도(0.2%)였다.

이 외에도 16개 벤처기업이 9개의 기타 창업자금 지원제도를 활용했다고 응답했으며, 9개 벤처기업이 8개의 기타 기술개발 지원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6개 벤처기업이 이외의 기타 14개 지원제도를 활용했다고 응답했다.

2) 신용보증 지원제도의 활용실태

중소기업 일반지원제도 중 신용보증 지원제도의 평균 활용도는 8.3%로 나타나 앞의 금융지원제도 활용도보다 다소 높은 활용도를 나타내었다. 신용보증 지원제도 중 벤처기업이 가장 많이 활용한 제도는 기술우대 보증체도로 502개의 조사대상기업 중 100개 기업(19.9%)이 활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그 외의 신용보증 지원제도의 활용도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기술창업평가 보증체도는 28개 기업이 활용하여 5.6%의 활용도를 나타내었으며, 벤처창업평가 특별보증체도와 회사채발행 보증체도는 각각 4.4%와 3.2%의 활용도를 보여주고 있어 동 체도들의 활용정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신용보증 지원제도의 활용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18개 벤처기업이 기타 9개 신용보증 지원제도를 활용했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기술신용 보증제도'를 이용한 벤처기업이 8개 벤처기업에 달했다.

3) 판로·수출확대 지원제도 활용실태

중소기업 일반지원제도 중 판로·수출확대 지원제도의 평균 활용도는 6.4%로 나타나 다른 중소기업 지원제도에 비하여 가장 낮은 활용도를 보여주었다. 또한 벤처기업의 90% 이상이 중소기업 판로·수출확대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로·수출확대 지원제도 중 해외유명규격 인증획득 지원제도는 9.2%에 해당하는 46개 업체가 활용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활용도를 보여주었다. 또한 수출기업화 지원제도도 26개 업체가 활용함으로써 5.2%의 활용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판로·수출확대지원제도 중 일반수출입 금융지원제도, 수출자금 지원제도 및 수출신용보증 특례제도의 활용도는 모두 3% 이하에 불과하여 이

<표 VI-3> 신용보증 지원제도의 활용도

(단위: 개, %)

신용보증 지원제도	활용기업 수	활용도
벤처창업평가 특별 보증제도	22	4.4
기술우대 보증제도	100	19.9
회사채발행 보증제도(Primary-CBO)	16	3.2
기술창업평가 보증제도	28	5.6

주 : 활용도는 조사대상업체(N=502)에 대한 비중임.

<표 VI-4> 판로·수출확대 지원제도의 활용도

(단위: 개, %)

판로·수출확대 지원제도	활용기업 수	활용도
해외유명규격 인증획득 지원	46	9.2
일반수출입 금융지원	15	3.0
수출자금 지원	11	2.2
수출기업화 지원	26	5.2
수출신용보증 특례	8	1.6

주 : 활용도는 조사대상업체(N=502)에 대한 비중임.

들 제도의 활용정도가 극히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의 활용실태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에 대한 평균 활용도는 7.3%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 일반지원제도의 평균 활용도에 비해서는 다소 높지만 세부 분야별 평균 활용도는 기술인력 지원제도의 15.8%를 제외하고는 낮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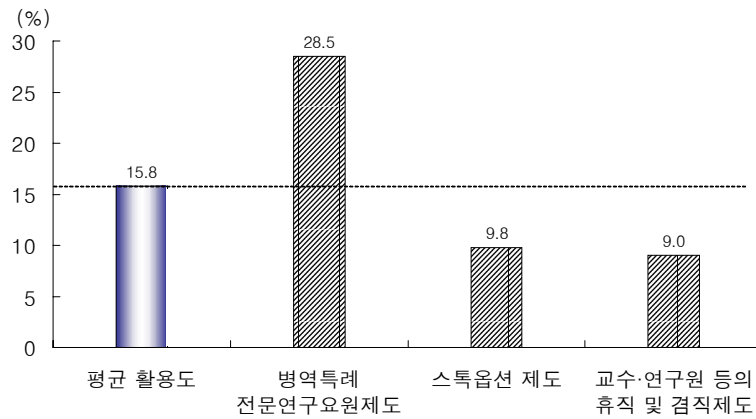
기술인력 지원제도 중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28.5%)가 높은 활용도를 보였고, 나머지 지원제도의 활용도는 10% 이하로 저조한 편이다. 입지지원제도는 창업보육센터 지원제도(7.8%)를 비롯해 모두 10%대 이하의 활용도를 보여주고 있다. 수출확대 지원제도는 벤처기업 해외진출지원센터지원제도(4.2%)를 비롯해 모두 5% 이하의 저조한 활용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기타 지원제도 중 기술담보제도 및 가치평가제도가 비교적 높은 14.7%의 활용도를 보여주고 있다.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의 세부 분야별 지원제도의 활용실태는 아래와 같다.

1) 기술인력 지원제도의 활용실태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 중 기술인력지원제도의 평균 활용도는 15.8%였으며, 기술인력 지원제도 중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를 전체 벤처기업의 28.5%가 활용한 것으로 나타나 활용도가 가장 높았다. 그러나 스톡옵션제도(9.8%)와 교수·연구원 등의 휴직 및 겸직제도(9.0%)는 10% 미만의 벤처기업만이 활용한 것으로 나타나 활용실적이 높지 않았다.

[그림 VI-2] 기술인력 지원제도의 활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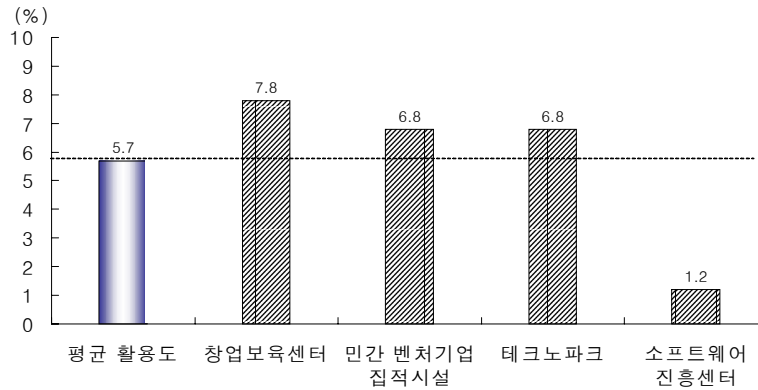


2) 입지지원제도 활용실태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 중 입지지원제도의 평균 활용도는 5.7%로 나타나 벤처기업의 입지지원제도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지지원제도 중 창업보육센터를 활용한 적이 있는 벤처기업은 39개 업체로 7.8%의 활용도를 나타내고 있어 다른 입지지원제도들에 비해 활용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민간벤처기업 집적시설 및 테크노파크를 활용한 벤처기업은 각각 34개 기업으로 나타나 두 제도에 대한 활용도가 각각 6.8%에 달하고 있다. 반면에 소프트웨어 진흥센터는 1.2%의 벤처기업만이 활용한 것으로 나타나 활용도가 가장 낮았다.

이 외에도 12개의 벤처기업이 기타 입지지원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이 활용한 기타 입지지원제도는 협동화공장, 교내시설, (주)대덕밸리 협동화사업단지, 구로 사무공단, 벤처타운 입주, 농공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 고용안정센터, ERT, 검증염색조합 등 다양한 제도들이다.

[그림 VI-3] 입지지원제도의 활용도



3) 판로·수출확대 지원제도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 중 판로·수출확대 지원제도의 활용도는 평균 2.8%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매우 낮았다. 벤처기업 해외진출 지원센터 지원제도를 4.2%의 벤처기업이 활용해 입지지원제도 중 가장 높은 활용도를 보였으며, 벤처기업 수출보험우대 지원제도는 1.8%의 활용도를 보여 가장 낮은 활용도를 나타냈다. 또한 조사대상 기업 중 6개의 벤처기업이 기타 벤처기업 판로·수출확대 지원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5> 판로·수출확대 지원제도의 활용도

(단위: 개, %)

판로·수출확대 지원제도	활용 기업수	활용도
방송광고 지원	16	3.2
벤처기업 수출보험우대 지원	9	1.8
수출벤처기업 법률 지원	10	2.0
벤처기업 해외진출지원센터 지원	21	4.2

주 : 활용도는 조사대상업체(N=502)에 대한 비중임.

4) 기타 지원제도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 중 기타 지원제도의 평균 활용도는 6.9%였으며, 이 중 기술담보제도 및 가치평가제도를 14.7%의 벤처기업이 활용해 가장 높은 활용도를 보였다. 소자본 주식회사 설립 지원제도는 2.4%의 벤처기업만이 활용해 가장 낮은 활용제도로 나타났다.

<표 VI-6> 기타 지원제도의 활용도

(단위: 개, %)

기타 지원제도	활용 기업수	활용도
소자본 주식회사 설립지원	12	2.4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공장등록	18	3.6
기술담보제도 및 가치평가제도	74	14.7

주 : 활용도는 조사대상업체(N=502)에 대한 비중임.

다. 일반지원제도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결과

1)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의 정비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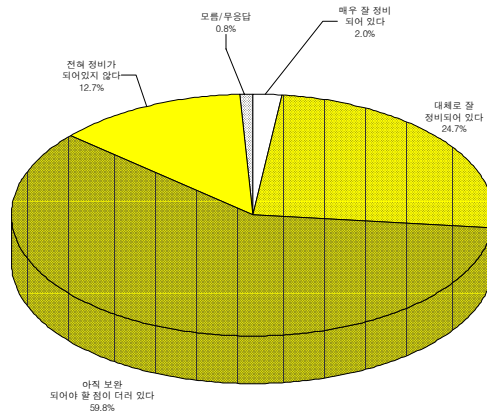
본 조사의 결과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의 정비 정도에 대해 3분의 2 이상의 벤처기업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 정비정도에 대해 조사대상기업의 2.0%에 해당하는 10개 업체만이 매우 잘 정비되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4.7%에 해당하는 124개 기업이 대체로 잘 정비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결국 전체 조사대상 기업의 26.7%인 134개 기업만이 벤처기업 일반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다고 응답한 반면, 364개의 벤처기업

(72.5%)이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가 보완되어야 할 점이 있거나 전혀 정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응답함으로써 3분의 2 이상의 벤처기업들은 일반지원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의 정비정도에 대한 응답을 표본특성별로 살펴보면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벤처기업의 75.3%, 인천/경기지역 기업의 75.4%, 경상도지역의 벤처기업의 71.4%가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가 아직 보완되어야 할 점이 더러 있거나 전혀 정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응답함으로써 다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벤처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불만족 수준을 나타내었다. 또한 업종별로 살펴보면 소프트웨어·정보통신서비스 업종의 81.7%가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가 보완되어야 할 점이 더러 있거나 전혀 정비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일반지원제도 정비정도를 가장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다른 업종의 벤처기업들도 전체적으로 70% 내외가 일반지원제도의 정비정도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VI-4] 벤처기업일반지원제도의 정비정도에 대한 응답결과



<표 VI-7> 표본 특성별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 정비 정도

(단위: 개, %)

특 성	응 답	기업 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매우 잘 정비 되어 있다	대체로 잘 정비 되어 있다		아직 보완할 점이 더러 있다	전혀 정비가 되어 있지 않다			
전 체		502	2.0	24.7	26.7	59.8	12.7	72.5	0.8	100.0
지 역	별									
서 울		219	3.2	20.5	23.7	60.7	14.6	75.3	0.9	100.0
인 천 / 경 기		142	1.4	23.2	24.6	57.7	17.6	75.4	-	100.0
경 상 도		70	1.4	27.1	28.6	62.9	8.6	71.4	-	100.0
전 라 도		17	-	35.3	35.3	58.8	-	58.8	5.9	100.0
충 청 도		49	-	40.8	40.8	57.1	2.0	59.2	-	100.0
강 원 / 제 주		5	-	20.0	20.0	60.0	-	60.0	20.0	100.0
업 종	별									
첨 단 제 조 업		178	3.9	27.5	31.5	57.9	10.1	68.0	0.6	100.0
일 반 제 조 업		144	1.4	27.8	29.2	57.6	12.5	70.1	0.7	100.0
SW/통신서비스		142	0.7	17.6	18.3	64.1	17.6	81.7	-	100.0
기 타 서 비 스		20	-	30.0	30.0	65.0	5.0	70.0	-	100.0
농 / 임 / 어 업		2	-	50.0	50.0	50.0	-	50.0	-	100.0
기 타 산 업		16	-	18.8	18.8	56.3	12.5	68.8	12.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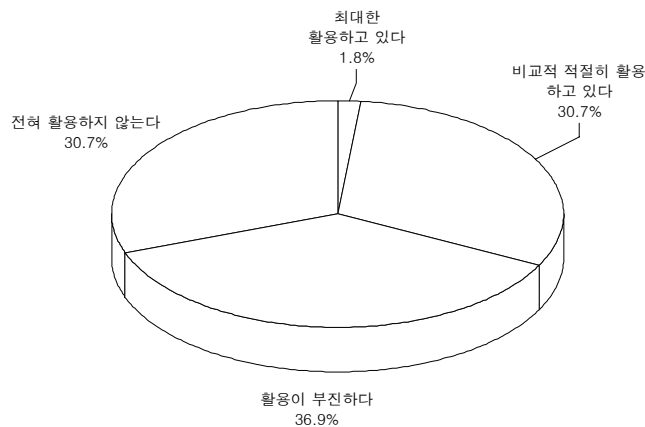
2)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의 활용 정도

벤처기업이 스스로 평가한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의 활용 정도에 대하여 3분의 2 이상의 벤처기업이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동 제도의 활용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기업의 1.8%에 해당하는 9개의 벤처기업만이 벤처기업 일반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비교적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벤처기업은 154개 기업으로 30.7%에 그치고 있다. 결국 조사대상 기업 502개 중에서 67.5%에 해당하는 339

개의 벤처기업이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의 활용 정도가 부진하거나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한편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163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를 활용하게 된 경로를 물어본 결과 회사 내의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한 기업이 39개 업체로 가장 높은 23.9%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그 다음으로 벤처기업 지원제도와 관련한 전문지(23.3%), 신문·방송·인터넷(20.9%), 은행(16.6%)의 도움을 받았다는 벤처기업의 응답이 많았다. 그러나 조합 등 경제단체(6.7%)나 정부 설명회(5.5%)를 통해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벤처기업은 10% 미만이었다. 따라서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벤처기업이 이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지원제도와 관련한 전문지와 신문·방송·인터넷 및 은행의 홍보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경제단체와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노력을 강화할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림 VI-5]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의 활용 정도



<표 VI-8>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 활용때 도움 받은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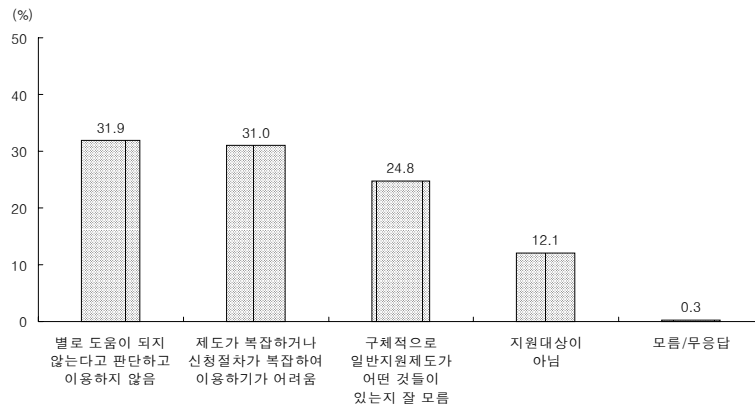
(단위: 개, %)

도움 받은 경로	응답 기업 수	비율
회사 내의 전문인력	39	23.9
벤처기업 지원제도와 관련한 전문지	38	23.3
신문·방송·인터넷	34	20.9
은행	27	16.6
조합 등 경제단체	11	6.7
정부 설명회	9	5.5
다른 벤처기업	3	1.8
기 타	2	1.2
합 계	163	100.0

마지막으로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의 활용이 부진하거나 전혀 활용하지 않는 벤처기업 339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웠던 가장 큰 이유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용하지 않은 벤처기업이 가장 높은 비중(31.9%)을 차지하였으며, 제도가 복잡하거나 신청절차가 복잡하여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업체도 거의 비슷한 비중(31.0%)을 차지하였다. 또한 일반지원제도가 어떤 것이 있는지 잘 모른다는 벤처기업도 비교적 높은 비중(24.8%)을 차지하였다. 반면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기업은 1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제도가 복잡하거나 신청절차가 복잡하여 이용하기가 어려워서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기업의 비중이 55.8%에 달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를 제대로 알고 있으나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그림 VI-6] 벤처기업 일반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이유



이용하지 않은 기업의 비중인 44.0%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다. 따라서 벤처기업이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벤처기업이 이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3)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의 효과

조사대상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의 효과 정도를 질문한 결과 매우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벤처기업은 불과 16개 업체로 3.2%에 불과하였으며, 비교적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벤처기업은 217개 업체로 43.2%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벤처기업의 비율은 46.4%로 절반을 넘지 않았다. 벤처기업의 절반을 넘는 53.6%의 기업이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가 효과가 없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의 정비정도가 낮고, 활용정도 또한 낮은 것으로 응답한 사실과 맥을 같이 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표 VI-9>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 중 가장 도움이 된 제도

(단위: 개, %)

일반지원제도의 내용	응답 기업 수	비 율
금융지원제도	127	54.5
신용보증지원제도	63	27.0
기술인력지원제도	21	9.0
입지지원제도	8	3.4
관로 및 수출지원제도	6	2.6
기타 지원	7	3.0
모름/무응답	1	0.4
합 계	233	100.0

또한 벤처기업의 일반지원제도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233개 기업을 대상으로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일반지원제도를 질문한 결과 54.5%에 해당하는 127개 기업이 금융지원제도라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신용보증지원제도로 63개 기업이 응답하여 27.0%를 차지하였으며, 기술인력지원제도, 입지지원제도 및 관로 및 수출지원제도라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낮았다.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의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269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가 지원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를 질문한 결과 과반수 이상에 해당하는 140개의 벤처기업(52.0%)이 벤처기업의 일반지원제도를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여 가장 큰 비중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의 활용 여부가 동 제도의 효과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의 효과가 없는 이유로 지원내용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벤처기업이 102개 업체로 37.9%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VI-10>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가 효과가 없는 이유

(단위: 개, %)

이유	응답 기업 수	비율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를 이용하지 않았다	140	52.0
벤처기업 지원제도의 지원내용이 미흡하다	102	37.9
중소기업 일반지원제도로도 충분하다	11	4.1
지원 기준이 엄격하고 절차가 까다롭다	8	3.0
재무구조 중심의 지원방식	2	0.7
지원제도에 대한 지식 부족	2	0.7
기타	3	1.1
모름/무응답	1	0.4
합계	26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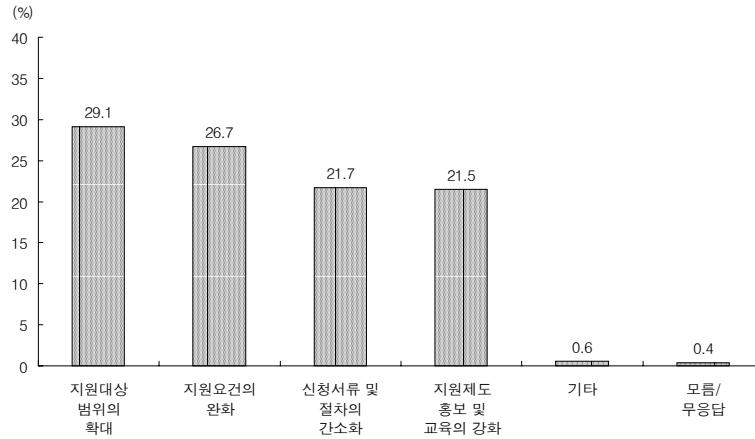
결국 이러한 결과는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벤처기업의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 활용제고 및 개선 방안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의 활용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과 관련하여 벤처기업은 무엇보다도 지원대상 범위의 확대를 제시하였다. 총 502개의 조사대상기업 중 146개 업체(29.1%)가 지원대상 범위의 확대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는 지원요건의 완화를 제시한 벤처기업이 134개 업체로 26.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 이상의 벤처기업이 신청서류 및 절차의 간소화(21.7%)와 지원제도의 홍보 및 교육의 강화(21.5%)를 벤처기업의 활용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림 VI-62]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 활용 제고방안

(단위: 개, %)



그 외에도 일반제조업(36.1%), 매출액 규모 1억~5억원 미만의 벤처기업(38.8%)이 지원대상 범위의 확대를 우선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반면에 벤처기업 확인유형 중 연구개발 분야의 벤처기업(41.9%)이 지원요건의 완화를 우선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한편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조사대상 기업의 48.0%에 해당하는 241개 벤처기업이 제도를 단순화하고 지원내용을 강화함으로써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금융 및 보증지원시 벤처기업에 대한 우대 확대라고 응답한 기업이 120개 업체로 23.9%를 차지하고 있다. 벤처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4.4%), 창업보육센터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 확대(2.6%), 코스닥 등록요건 완화 등 코스닥시장의 제도 개선(1.6%) 등은 모두 5% 미만의 벤처기업이 개선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표 VI-11>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 개선방안

(단위: 개, %)

개 선 방 안	응답 기업 수	비율
제도를 단순화하고 지원내용을 강화함으로써 활용도 제고	241	48.0
벤처투자조합 결성 확대 등 투자재원 확충	30	6.0
코스닥 등록요건 완화 등 코스닥시장의 제도 개선	8	1.6
창업보육센터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 확대	13	2.6
벤처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22	4.4
국내의 기업, 엔젤 및 벤처캐피탈, 컨설팅사 등 벤처산업 네트워크 구축 지원	26	5.2
연구개발투자의 효율화를 위해 산·학·연의 협조체제 구축 지원	38	7.6
금융 및 보증지원시 벤처기업에 대한 우대 확대	120	23.9
기타	1	0.2
모름/무응답	3	0.6
합 계	502	100.0

5) 벤처기업 확인제도

본 조사의 결과 대부분의 조사대상 벤처기업들은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과반수 이상의 기업들은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토대로 한 지원제도가 벤처기업의 경영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기업경영에 도움이 된 측면은 정책자금 및 보증기관에의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을 지적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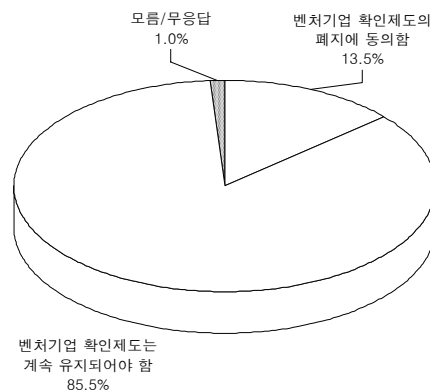
우선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중소기업 중에서 잠재력이 큰 기업을 선별하여 차별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서 과거의 대기업 지원 정책과 마찬가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폐지에 대한 동의 여부를 질문해 보았다. 질문결과 응답기업의 85.5%에 해당하는 429개 기업이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응답했으며,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폐지에 동의하는 기업은 13.5%인 68개 업체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에 대해 많은 벤처기업이 정비되어야 하고, 실제 효과가 없다고 응답하긴 했지만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결국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폐지보다는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의 활성화가 더욱 요구된다는 것이 벤처기업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또한 정부가 그 동안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토대로 한 각종 정책 및 지원제도를 실시해 온 것이 벤처기업의 경영에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 조사대상기업의 과반수를 넘는 284개 벤처기업(56.6%)이 벤처기업 지원제도 등의 정책지원제도가 경영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를

[그림 VI-8] 벤처기업 확인제도 폐지 동의 여부



토대로 볼 때 벤처기업을 위한 정책지원제도가 어느 정도 벤처기업 경영에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영에 도움이 된 것이 없다고 응답한 벤처기업도 43.4%의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벤처기업 지원제도로 경영에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벤처기업은 대부분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벤처기업으로 나타났다.

또한 벤처기업 지원제도 등의 정책지원제도가 기업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284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게 됨으로써 기업경영의 어떠한 측면에서 가장 큰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응답업체의 56.3%인 160개 업체가 정

<표 VI-12> 벤처기업 지원제도 등의 정책지원제도의 경영도움 여부
(단위: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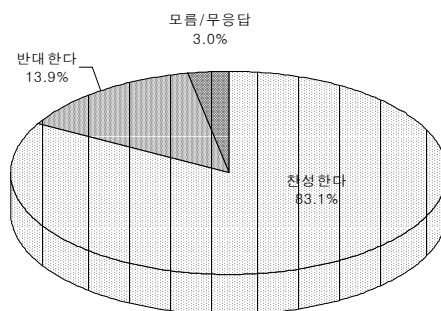
특 성 \ 응 답	기업 수	경영에 도움이 되었다	경영에 도움이 된 것이 없다	계
전 체	502	56.6	43.4	100.0
지 역 별				
서울	219	51.1	48.9	100.0
인천 / 경기	142	55.6	44.4	100.0
경상도	70	55.7	44.3	100.0
전라도	17	70.6	29.4	100.0
충청도	49	77.6	22.4	100.0
강원 / 제주	5	80.0	20.0	100.0
업 종 별				
첨단제조업	178	67.4	32.6	100.0
일반제조업	144	54.9	45.1	100.0
SW/통신서비스	142	48.6	51.4	100.0
기타서비스	20	35.0	65.0	100.0
농 / 임 / 어업	2	50.0	50.0	100.0
기타산업	16	50.0	50.0	100.0

책자금 및 보증기관에 접근하기 용이한 점이 기업경영에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벤처기업이 자금을 융통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 외에 기업홍보에 유리(24.6%)하다는 응답과 세제 지원(14.1%)이 그 다음 순서로 기업경영 측면에서 벤처기업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가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2002년 11월부터 벤처기업 확인기준을 강화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인 것과 관련하여, 동 제도 시행에 대한 찬성 여부를 질문하여 보았다. 전체 조사대상 기업의 83.1%에 해당하는 417개 업체가 이에 대하여 찬성함으로써 동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벤처기업의 비율보다 6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벤처기업은 현재의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벤처기업 확인기준 강화에 찬성하는 벤처기업 417개업체 중 51.8%인 260개 업체는 벤처기업 확인기준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로서 확실한 벤처기업 기준을 마련해서 집중적인 선별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부실 벤처기업을 정리를 위

[그림 VI-9] 벤처기업 확인기준 강화 찬반 여부



VI. 벤처기업 지원제도의 활용실태조사 결과분석 215

해 벤처기업 확인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업체도 46개 업체로 그 비율은 11.0%에 달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무분별한 벤처의 난립이 벤처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을 벤처기업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벤처기업의 기술적 수준을 강화하는 계기로 만들

<표 VI-13> 벤처기업 확인기준 강화 찬성이유

(단위: 개, %)

찬성 이유	응답 기업 수	비율
확실한 벤처기업 기준을 마련해서 집중적 선별 지원이 필요	219	51.8
부실기업 정리를 위해	46	11.0
벤처기업의 기술적 수준을 강화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41	9.8
벤처 확인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필요	30	7.2
기타	30	7.2
모름/무응답	54	12.9
합 계	417	100.0

<표 VI-14> 벤처기업 확인기준 강화 반대이유

(단위: 개, %)

반대 이유	응답 기업 수	비율
벤처기업 확인 절차가 번거롭고 까다롭기 때문에	18	25.7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후 기업에 실제 이익이 없기 때문에	14	20.0
형식적 제도 도입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11	15.7
벤처 창업기준이 완화되어야 한다	7	10.0
기타	11	15.7
모름/무응답	9	12.9
합 계	70	100.0

어야 한다(9.8%), 벤처확인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7.2%)는 응답도 나왔다.

반면 벤처기업 확인기준 강화에 반대하는 벤처기업은 반대 이유로서 벤처기업 확인절차가 번거롭고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18개 업체로 25.7%의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후 기업에 실제 이익이 없기 때문에 구태여 확인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20.0%에 달했으며, 그 다음으로 형식적 제도 도입에 그치고 있기 때문(15.7%), 벤처 창업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10.0%) 순으로 벤처기업 확인제도 강화에 대한 반대이유가 제시되었다.

6) 벤처기업 관련 기관

현재 여러 군데의 정부부처 및 기관에서 벤처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벤처기업을 영위하면서 벤처기업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기관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 조사대상 기업의 64.1%인 322개 벤처기업이 중소기업청이라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중소기업진흥공단(12.4%), 기술신용보증기금(9.4%), 산업자원부(5.0%), 정보통신부(5.0%)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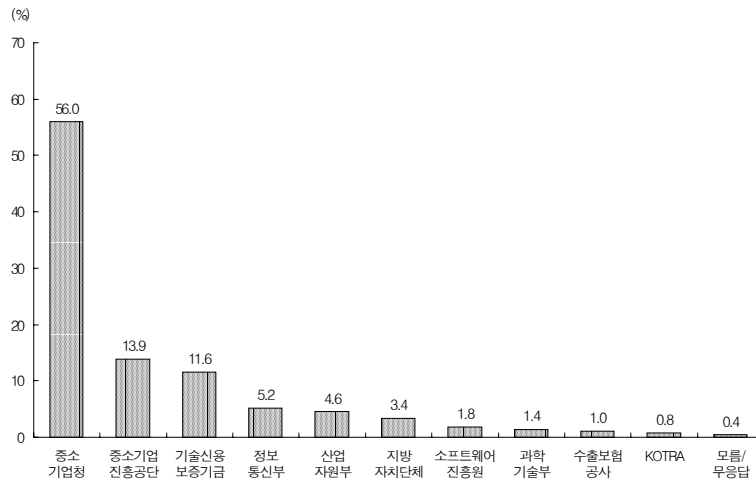
또한 벤처기업과 관련된 기관 중에서 앞으로 벤처기업 관련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기관을 물어본 결과 50% 이상의 벤처기업이 중소기업청(56.0%)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13.9%), 기술신용보증기금(11.6%), 정보통신부(5.2%), 산업자원부(4.6%) 순이었다. 결국 조사대상 벤처기업의 약 70%는 자신들의 기업실정과 관련된 중소기업에 관한 정부부처 및 기관의 기능강화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15> 벤처기업과 가장 밀접한 기관

(단위: 개, %)

관련기관	응답 기업 수	비 율
중소기업청	322	64.1
중소기업진흥공단	62	12.4
기술신용보증기금	47	9.4
산업자원부	25	5.0
정보통신부	25	5.0
소프트웨어진흥원	9	1.8
KOTRA	4	0.8
지방자치단체	3	0.6
과학기술부	2	0.4
에너지 관리공단	1	0.2
모름/무응답	2	0.4
합 계	502	100.0

[그림 VI-10] 벤처기업 관련 기능과 역할 강화가 필요한 기관



3.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활용실태조사 결과분석

가.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본 조사의 결과 벤처기업의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평균 활용도는 6.0%로 낮게 나타났다. 세부 분야별 평균 활용도는 일반적인 조세특례 지원제도가 12.2%로 가장 높았으며, 투자촉진 지원세제가 9.1%, 준비금제도가 6.1%의 활용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재무구조개선 및 구조조정 지원세제와 지방이전 지원세제는 각각 2.5% 및 1.7%의 활용도를 보여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이하에서는 조사결과 나타난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실태에 대하여 세부분야별로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1)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활용방식

한편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는 방식으로는 조사대상인 502개 기업의 46.0%에 해당하는 231개 벤처기업이 세무대리인에게 위탁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벤처기업도 41.4%에 달했다. 또한 자체적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세무대리인에게 위탁하는 방식을 병행하는 벤처기업의 비율은 10%를 약간 넘는 수준이었다.

종업원 규모별로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살펴보면, 50~99명(59.2%), 100명 이상(63.0%)의 벤처기업은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비율이 높았고, 10명 미만(52.2%), 10~29명(53.7%)의 벤처기업은 위탁하여 활용하는 비율 높은 것으로 나타나 벤처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16> 표본특성별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활용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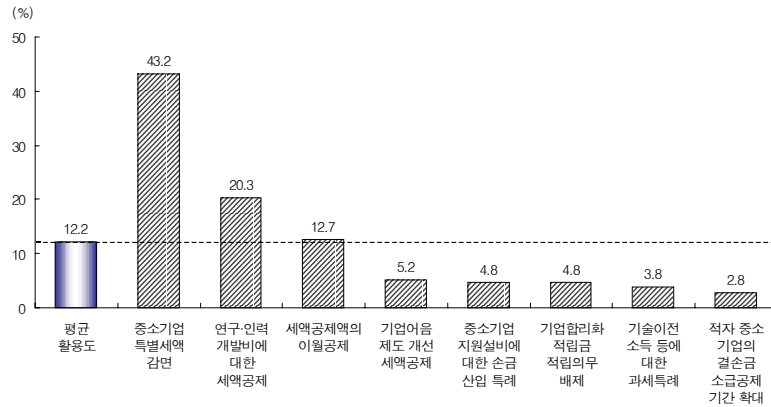
(단위: 개, %)

특 성 \ 응 답	기업수	자체적 활용	위탁 활용	두가지 방법병행	모름/ 무응답	계
전 체	502	41.4	46.0	11.4	1.2	100.0
지 역 별						
서울	219	43.8	44.7	10.0	1.4	100.0
인천 / 경기	142	36.6	53.5	8.5	1.4	100.0
경 상 도	70	57.1	22.9	18.6	1.4	100.0
전 라 도	17	29.4	47.1	23.5	-	100.0
충 청 도	49	28.6	59.2	12.2	-	100.0
강 원 / 제 주	5	20.0	80.0	-	-	100.0
업 종 별						
첨 단 제 조 업	178	37.6	50.0	12.4	-	100.0
일 반 제 조 업	144	38.2	45.1	15.3	1.4	100.0
SW/통신서비스	142	47.2	43.7	6.3	2.8	100.0
기 타 서 비 스	20	50.0	40.0	10.0	-	100.0
농 / 임 / 어 업	2	-	50.0	50.0	-	100.0
기 타 산 업	16	56.3	37.5	6.3	-	100.0
종업원 규모						
10명 미만	92	37.0	52.2	9.8	1.1	100.0
10명 ~ 29명	242	37.2	53.7	8.3	0.8	100.0
30명 ~ 49명	86	41.9	33.7	22.1	2.3	100.0
50명 ~ 99명	49	59.2	26.5	12.2	2.0	100.0
100명 이상	27	63.0	29.6	7.4	-	100.0
모름 / 무응답	6	33.3	50.0	16.7	-	100.0

2) 일반적인 조세특례 지원제도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조세특례 지원제도의 평균 활용도는 12.2%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조세특례 지원제도 중에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를 활용한 벤처기업이 217개 업체로 조사대상 기업의 43.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동 제도의 활

[그림 VI-11] 일반적인 조세특례 지원제도의 활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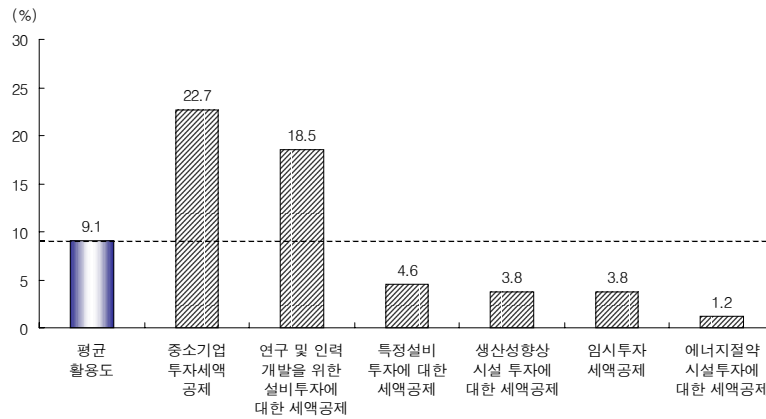


용도가 가장 높았다.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활용한 벤처기업도 102개 업체로 20.3%의 비율을 보임으로써 비교적 활용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적자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확대제도 및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는 각각 2.8%와 3.8%의 벤처기업만이 활용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낮은 활용도를 보였으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제도가 12.7%의 활용도를 나타낸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조세특례 지원제도의 활용도도 비교적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3) 투자촉진 지원세제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중 투자촉진을 위한 지원세제에 대한 벤처기업의 평균 활용도는 9.1%로 낮은 편이다. 가장 높은 활용도를 나타낸 투자촉진 지원세제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제도로 조사대상 벤처기업의 22.7%에 해당하는 114개 기업이 활용하였다.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활용

[그림 VI-12] 투자촉진 지원세제의 활용도



한 벤처기업은 전체의 18.5%인 93개 기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4.6%),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3.8%) 및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3.8%) 등은 활용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욱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는 502개 벤처기업 중에서 불과 6개 기업만이 활용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낮은 1.2%의 활용도를 나타냈다.

4) 기타 지원세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일반 조세특례 지원제도와 투자촉진 지원세제, 그리고 재무구조개선 및 구조조정 지원세제, 지방이전촉진 지원세제와 각종 준비금제도로 분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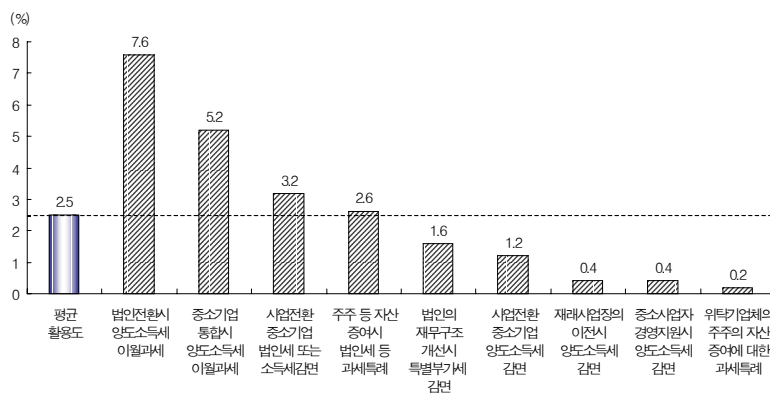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 조세특례 지원제도 중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그리고 투자촉진 지원세제 중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제도 및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는 벤처기업

들이 비교적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나머지 지원 세제 및 준비금제도는 전체적으로 활용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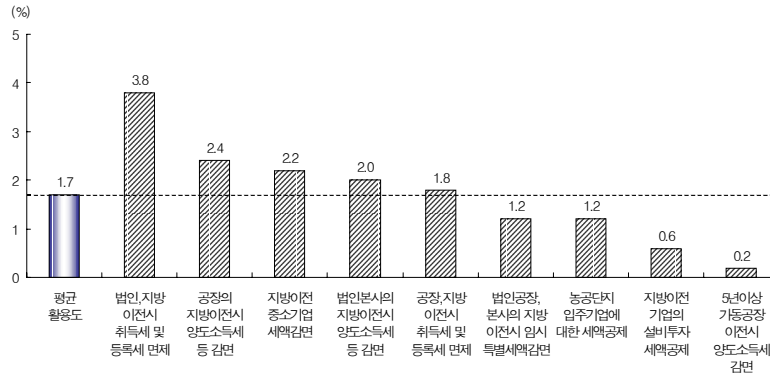
우선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중 재무구조개선 및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세제의 평균 활용도는 2.5%로 극히 낮은 수준이다. 세부 항목별로는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를 활용한 벤처기업이 38개 업체로 7.6%의 가장 높은 활용도를 보였고 중소기업 통합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가 26개 벤처기업이 이용하여 5.2%의 활용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극히 낮은 활용도를 보여주고 있어서 조세지원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기업체의 주주의 자산증여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의 활용도는 0.2%에 불과한 실정이다.

중소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지원세제 역시 매우 낮은 활용도를 나타냈는데 벤처기업의 평균 활용도는 1.7%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중 법인, 지방이전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제도가 19개 벤처기업이 활용하여 3.8%의 활용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제

[그림 VI-13] 재무구조개선 및 구조조정 지원세제의 활용도



[그림 VI-14] 지방이전 촉진 지원세제의 활용도



외하면 대부분의 세부적인 지원세제는 1~2% 대의 낮은 활용도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지방이전 기업의 설비투자 세액공제 제도(0.6%) 및 5년 이상 가동공장 이전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0.2%)는 거의 활용되지 않는 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중 각종 준비금제도 역시 활용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준비금제도의 평균 활용도는 6.0%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제도는 502개의 조사대상 벤처기업 중에서 47개 업체가 활용함으로써 가장 높은 9.4%의 활용도를 나타내었다. 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제도는 32개 업체가 이용하여 6.4%의 활용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상장 또는 등록법인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제도는 13개 업체만 활용함으로써 가장 낮은 2.6%의 활용도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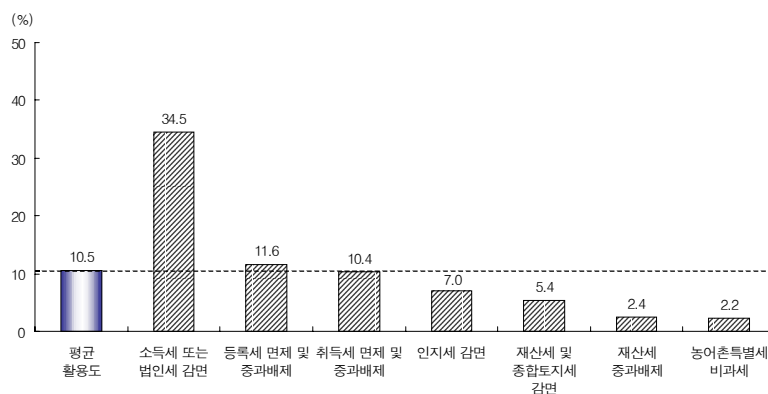
나. 벤처기업 특례지원세제

본 조사의 결과 벤처기업의 벤처기업 특례지원세제에 대한 평균 활용도는 6.6%로 나타났으며 이는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평균 활용도와 유사한 수준이다. 세부분야별로 창업벤처 중소기업 지원세제가 10.5%의 활용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공장 설립시 부담금 감면제도는 4.1%, 스톱옵션 관련 조세감면제도는 6.0%의 평균 활용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하에서는 조사결과 나타난 벤처기업 특례지원제도의 활용실태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우선 벤처기업 특례지원세제 제도 중 창업 이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세제의 활용도를 질문한 결과 평균 활용도는 10.5%였다. 그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제도는 전체 502개 조사대상 벤처기업 중에서 173개 업체가 활용함으로써 34.5%의 가장 높은 활용 정도를 보여준다. 등록세 면제 및 중과배제 제도는 58개 업체가 이용하여 11.6%의 활용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취득세 면제 및 중과배제 제도는 52개 업체가 이용하여 10.4%의 벤처기업이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제도를 활용한 벤처기업은 불과 11개 업체로 나타나 가장 저조한 2.2%의 활용도를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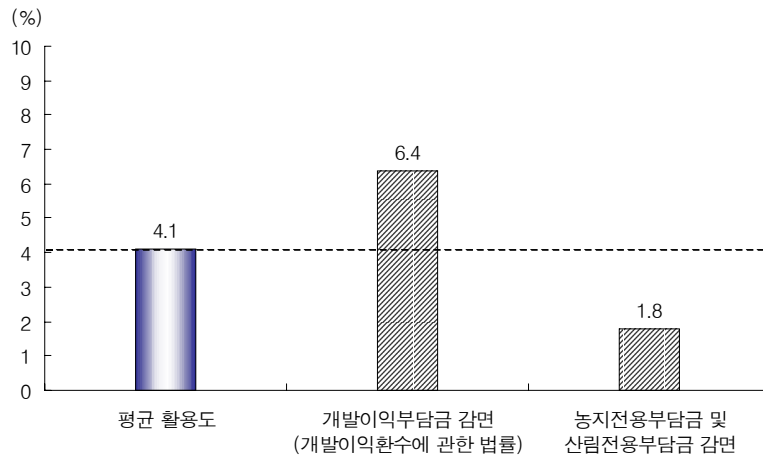
[그림 VI-15] 창업벤처 중소기업 지원세제의 활용도



다음으로 벤처기업 특례지원세제제도 중 창업중소기업의 공장설립시 부담금 감면제도의 평균 활용도는 4.1%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구체적으로는 개발이익부담금 감면제도의 경우 조사대상 기업의 6.4%에 해당하는 32개 업체가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지전용부담금 및 산림전용부담금 감면제도는 불과 9개 업체만 이용하여 평균 활용도에 크게 못 미치는 1.8%의 활용도를 보여주고 있어서 동 제도의 실효성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조사대상 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톱옵션 관련 조세감면제도를 활용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본 결과, 활용한 적이 있는 벤처기업은 30개 업체에 불과하였으며, 동 제도의 활용도는 6.0%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벤처기업이 스톱옵션 관련 조세감면제도를 활용한 적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림 VI-16] 공장설립시 부담금 감면제도의 활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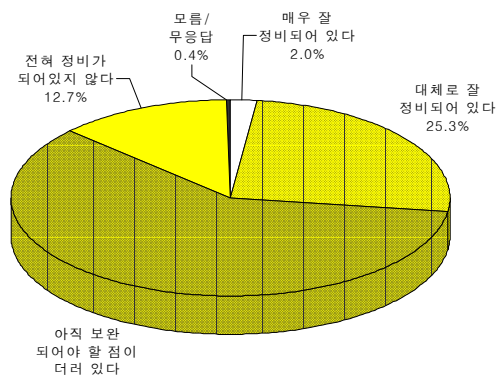


다. 조세지원제도의 평가 및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결과

1)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정비 정도

본 조사의 결과 벤처기업의 조세지원제도의 정비 정도에 대해서는 앞의 일반지원제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3분의 2 이상의 벤처기업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벤처기업 502개 업체를 대상으로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정비 정도에 대해 질문해 본 결과, 매우 잘 정비되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불과 10개 업체(2.0%)에 불과하였으며, 대체로 잘 정비되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127개 업체(25.3%)였다. 결국 전체 응답기업의 27.3%에 해당하는 137개 벤처기업만이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정비 정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3분의 2 이상의 벤처기업은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가 보완되어야 할 점이 있거나 전혀 정비가 되어 있지 않다(72.3%)고 응답함으로써 실제로 벤처기업들이 느끼고 있는 조세지원제도의 정비 정도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VI-17]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정비 정도에 대한 응답결과



<표 VI-17> 표본특성별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정비 정도

(단위: %)

응답 특성	기업 수	① 매우 잘 정비 되어 있다	② 대체로 잘 정비 되어 있다	①+②	③ 아직 보완할 점이 더러 있다	④ 전혀 정비가 되어 있지 않다	③+④	모름/ 무응답	계
전체	502	2.0	25.3	27.3	59.6	12.7	72.3	0.4	100.0
지역별									
서울	219	4.6	18.3	22.8	60.3	16.9	77.2	-	100.0
인천/경기	142	-	25.4	25.4	61.3	13.4	74.6	-	100.0
경상도	70	-	30.0	30.0	61.4	8.6	70.0	-	100.0
전라도	17	-	29.4	29.4	58.8	5.9	64.7	5.9	100.0
충청도	49	-	49.0	49.0	46.9	2.0	49.0	2.0	100.0
강원/제주	5	-	20.0	20.0	80.0	-	80.0	-	100.0
업종별									
첨단제조업	178	3.4	34.8	38.2	55.1	6.2	61.2	0.6	100.0
일반제조업	144	0.7	23.6	24.3	64.6	11.1	75.7	-	100.0
SW/통신서비스	142	2.1	17.6	19.7	59.2	20.4	79.6	0.7	100.0
기타서비스	20	-	15.0	15.0	75.0	10.0	85.0	-	100.0
농/임/어업	2	-	50.0	50.0	50.0	-	50.0	-	100.0
기타산업	16	-	12.5	12.5	50.0	37.5	87.5	-	100.0

이와 같은 조세지원제도의 정비 정도에 대한 응답결과는 앞의 일반지원제도의 정비 정도에 대한 응답결과와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벤처기업들은 정부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들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각종 정책적 지원제도에 대해 보완 및 개선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활용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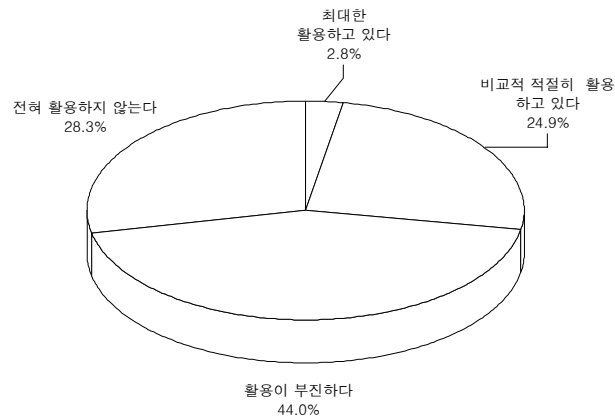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활용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3분

의 2 이상의 벤처기업이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응답함으로써 벤처기업이 스스로 평가한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활용 정도는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기업 중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벤처기업은 14개 업체이며, 비교적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도 125개 업체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를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다(최대한 + 비교적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는 벤처기업의 비율은 27.7%에 그쳤으며, 나머지 72.3%의 벤처기업들은 조세지원제도의 활용 정도가 부진하거나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비율은 앞의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를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다는 벤처기업 비율인 32.5%에 비하여 조금 낮아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비율이 일반지원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139개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조세지원제도

[그림 VI-18]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활용 정도



<표 VI-18>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활용 때 도움받은 경로

(단위: 개, %)

도움 받은 경로	응답 기업수	비율
세무대리인	81	58.3
회사 내 세무전문인력	28	20.1
신문·방송·인터넷	7	5.0
세무서	6	4.3
조세관련 전문지	6	4.3
정부부처	6	4.3
조합 등 경제단체	2	1.4
회계사	1	0.7
감사	1	0.7
법률 사무실	1	0.7
합 계	13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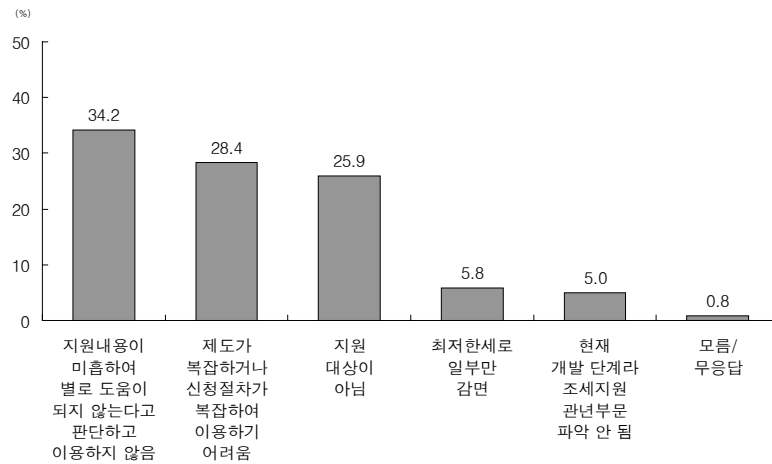
를 활용할 때 도움받은 경로를 질문한 결과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한 벤처기업이 과반수를 넘는 81개 업체로 나타나 58.3%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회사 내 세무전문인력의 도움을 받은 벤처기업의 비율은 20.1%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도움을 받은 경로는 신문·방송·인터넷(5.0%), 세무서(4.3%), 조세관련 전문지(4.3%), 정부부처(4.3%) 등이었다. 조합 등 경제단체(1.4%)의 도움을 받은 경우는 아주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이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는 데에는 세무대리인과 회사 내 세무전문인력의 역할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들에 대해 벤처기업의 조세지원제도를 홍보하는 노력을 더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관련 정부부처와 조합 등 경제단체의 경우도 벤처기업의 조세지원제도를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363개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이유를 질문

한 결과 지원내용이 미흡하여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용하지 않는다는 벤처기업이 124개 업체로 가장 높은 비율(34.2%)을 차지하였다. 이는 중소기업 일반지원제도의 경우와 유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제도가 복잡하거나 신청절차가 복잡하여 이용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벤처기업이 103개 업체로 그 다음으로 많은 비율(28.4%)을 나타냈다. 벤처기업 조세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벤처기업도 25.9%에 달했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제도가 복잡하거나 신청절차가 복잡하여 이용하기가 어려워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기업의 비중이 34.2%에 달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를 제대로 알고 있으나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용하지 않은 기업의 비중인 60.1%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이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설명한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의 경우와는 상당히 다른 결과이다. 이 결과에 따르면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에 비하여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를 더 잘 이해하고 있는 기업이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지원제도의 경우 기업 스스로가 지원제도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반면, 조세지원제도의 경우 기업이 이 제도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있더라도 세무대리인의 도움으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경우에도 이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제도가 복잡하거나 신청절차가 복잡하여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기업이 상당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벤처기업이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벤처기업이 이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림 VI-19]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이유



3)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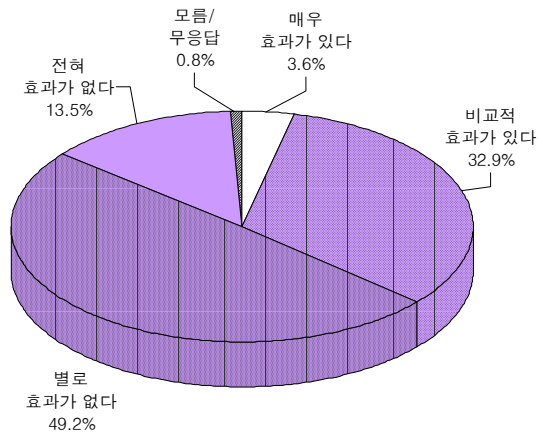
본 조사의 결과 벤처기업의 절반 이상이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벤처기업 전체에 대하여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효과 정도를 물어본 결과 매우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불과 18개 업체로 3.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비교적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벤처기업도 165개 업체로 전체 조사대상 기업의 32.9%에 불과하다. 결국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효과를 느끼고 있는 기업은 36.5%로 조사대상기업의 3분의 1정도에 해당한다. 반면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가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벤처기업은 322개 업체로 62.7%의 비율을 보여준다.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의 효과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조사대상기업의 53.6%가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결과와 비교할 때, 벤처기업들은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에 비하여 조세지원제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벤처기업의 조세지원제도 또한 정비 정도와 활용 정도가 낮아 효과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183개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중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제도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70.5%에 해당하는 129개 업체가 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라고 응답함으로써 동 제도가 벤처기업에게 가장 효과가 있는 제도임을 알 수 있었다. 벤처기업들은 창업 중소기업의 공장설립시 부담금 감면제도(15.8%)를 그 다음으로 효과가 있는 조세지원제도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스톡옵션 관련 조세감면제도(8.7%)를 효과가 있는 조세지원제도로 응답한 벤처기업은 16개 기업에 불과하였다.

[그림 VI-20]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효과 정도



<표 VI-19>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중 가장 도움이 된 제도

(단위: 개, %)

조세지원제도의 내용	응답 기업 수	비율
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129	70.5
창업 중소기업의 공장설립시 부담금 감면	29	15.8
스톡옵션 관련 조세감면제도	16	8.7
기 타	2	1.1
모름/무응답	7	3.8
합 계	183	100.0

마지막으로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조세지원제도가 효과가 없는 이유를 물어 본 결과 48.6%의 벤처기업이 동 제도의 지원내용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를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 제도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벤처기업(46.0%)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비추어볼 때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정비가 우선적으로 요구되며, 벤처기업이 조세지원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VI-20>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효과가 없는 이유

(단위: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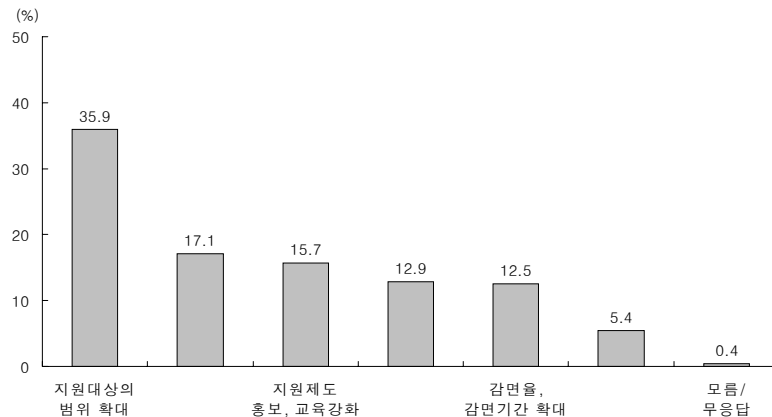
효과가 없는 이유	응답 기업 수	비율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지원내용이 미흡하다	153	48.6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를 이용하지 않았다	145	46.0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로도 충분하다	12	3.8
업력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제도 미비	1	0.3
기 타	4	1.3
합 계	315	100.0

4)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활용 제고 및 개선방안

우선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전체 조사대상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질문한 결과 무엇보다도 지원대상의 범위 확대를 지적한 벤처기업의 수가 180개 업체로 전체 조사대상 기업의 35.9%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필요한 방안으로 신청서류 및 절차의 간소화(17.1%), 지원제도 홍보·교육강화(15.7%), 감면요건 완화(12.9%), 감면율·감면기간 확대(1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행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조사대상 벤처기업의 3분의 2 이상이 훨씬 넘는 364개 기업이 제도를 단순화하고 지원내용을 강화함으로써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응답함으로써 가장 높은 72.5%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응답은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의 개선방안으로서 제도를 단순화하고 지원내용을 강화함으로써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48.0%)보다 훨씬 더 높

[그림 VI-21]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활용 제고 방안



<표 VI-21>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개선방향

(단위: 개, %)

조세지원제도 개선방향	응답 기업 수	비율
제도를 단순화하고 지원내용을 강화함으로써 활용도 제고	364	72.5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68	13.5
창업과정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46	9.2
투자조합의 출자자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13	2.6
스톡옵션에 대한 조세감면 확대	8	1.6
엔젤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1	0.2
대표자 이외의 종업원에 대한 신용불량 적용 배제	1	0.2
모름/무응답	1	0.2
합 계	315	100.0

은 것으로서 벤처기업들이 희망하는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향이 무엇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그 외에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를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은 벤처기업도 68개 업체로 13.5%를 차지했다. 창업과정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도 9.2%의 벤처기업이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적했다.

4. 요약 및 시사점

본 조사를 통해 살펴본 벤처기업의 일반지원제도 및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실태의 특징과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벤처기업의 일반지원제도 및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도가 매우 낮았다. 벤처기업의 중소기업 일반지원제도의 활용도는 6.4%였으며,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의

활용도는 7.3%였다. 벤처기업의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활용도는 6.0%였으며, 벤처기업의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활용도는 6.6%였다. 이와 같이 벤처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활용도가 매우 낮은 근본적인 이유는 지원제도가 매우 다양하며 지원제도마다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들은 제도가 매우 복잡해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다양한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가 없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조사결과에서도 어느 정도 타당함을 알 수 있다. 벤처기업 일반 지원제도 및 조세지원제도에 있어서 활용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일반지원제도의 경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용하지 않기 때문(31.9%)과 제도가 복잡하거나 신청절차가 복잡하여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31.0%)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세지원제도의 경우는 지원내용이 미흡하여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34.2%)과 제도가 복잡하거나 신청절차가 복잡하여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28.4%)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 및 조세지원제도의 정비 정도에 대해 3분의 2 이상의 벤처기업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에 대해 매우 잘 정비되어 있다(2.0%)와 대체로 잘 정비되어 있다(24.7%)고 생각하는 벤처기업의 비율은 26.7%에 지나지 않았으며,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에 대해 매우 잘 정비되어 있다(2.0%)와 대체로 잘 정비되어 있다(25.3%)고 생각하는 벤처기업의 비율은 27.3%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벤처기업 지원제도의 활용도가 매우 낮다는 결과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벤처기업 지원제도가 복잡하여 이용하기가 어렵고 지원내용이 미흡하여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기업은 당

연히 벤처기업 지원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셋째,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 및 조세지원제도에 대해서 과반수 이상의 벤처기업들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에 대해서는 53.6%의 벤처기업들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벤처기업의 조세지원제도에 대해서는 62.7%의 벤처기업들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 또는 조세지원제도가 효과가 없다고 답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를 질문한 결과 각각 52.2%와 46.0%의 벤처기업이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 또는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한 적이 없다고 답을 하였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벤처기업이 지원제도가 효과가 있다고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지원제도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넷째, 벤처기업 스스로 생각하는 일반지원제도 및 조세지원제도의 활용 제고 방안은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요건을 완화해야 하는 것이었다.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요건을 완화하면 벤처기업은 당연히 지원제도를 더 많이 활용할 것이다. 이 외에도 신청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제도의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즉, 벤처기업은 일반지원제도의 활용 제고를 위해 지원대상 범위의 확대(29.1%), 지원요건의 완화(26.7%), 신청서류 및 절차의 간소화(21.7%), 지원제도의 홍보 및 교육의 강화(21.5%)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벤처기업은 조세지원제도에 대해 지원대상 범위의 확대(35.9%), 신청서류 및 절차의 간소화(17.1%), 지원제도의 홍보 및 교육의 강화(15.7%), 감면요건의 완화(12.9%)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다수의 벤처기업은 일반지원제도 및 조세지원제도의 개

선방안으로 제도를 단순화하고 지원내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벤처기업 일반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제도를 단순화하고 지원내용을 강화함으로써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48.0%)을 제시하였으며,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제도를 단순화하고 지원내용을 강화함으로써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72.5%)을 제시하였다.

벤처기업이 생각하는 일반지원제도 및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도 제고 방안은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지원대상 범위 및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내용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즉, 상당수의 벤처기업이 다양한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적용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적용요건을 완화해 달라라는 것이다. 둘째, 신청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것이다. 즉,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 및 조세지원제도를 단순화함으로써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것이다. 셋째, 지원제도의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즉, 지원제도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해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달라는 것이다.

첫 번째 방안은 지원을 받는 벤처기업 입장에서는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좋다고 생각할 것이므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겠지만, 정책당국의 입장에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생각해서 신중을 기해야 할 사항이다. 제V장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주요 선진국의 경우 벤처기업을 중소기업과 구분하여 별도의 지원을 하는 것은 일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도 벤처기업을 중소기업과 구분하여 별도의 지원을 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볼 때,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벤처기업 지원제도의 정책방향은 정기적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의 규모를

절대적으로 축소하고 지원대상을 축소하고 지원의 한시성을 확보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2005년부터 폐지될 예정이므로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두 번째 방안은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 및 조세지원제도를 단순화함으로써 이 제도들을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개별 지원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물론, 경기상황의 변화나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조세지원 수준이나 지원대상을 계속해서 변경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지원이 그 시점에서 그 대상에게 반드시 필요했었는지의 여부, 지원대상에 적합한 방법으로 조세지원이 이루어졌는지의 여부, 지원의 관리·통제 및 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한 평가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방안은 벤처기업의 일반지원제도 및 조세지원제도 자체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은 아니지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지원제도의 활용 때 도움을 많이 주는 것으로 조사된 회사 내 전문인력, 전문지, 세무대리인, 신문·방송·인터넷 등에 대해서는 지원제도를 더 잘 홍보함으로써 벤처기업이 지원제도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지원제도의 활용시에 도움을 많이 주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된 정부부처와 조합 등 경제단체에 대해서는 홍보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VII. 벤처기업 지원제도의 유효성에 관한 실증분석

1. 추정모형과 변수의 설명

가. 벤처기업의 규모가 일반지원제도 및 조세지원제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¹⁰⁰⁾

벤처기업의 규모가 정부지원제도의 활용도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벤처기업의 기업규모에 따라 정부의 지원제도에 대한 활용도가 영향을 받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벤처기업의 규모를 기업형태, 종업원 기준, 매출액 기준으로 구분하여 기업규모가 클수록 일반지원제도 및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정부의 지원제도를 일반지원제도와 조세지원제도로 구분하여 각각의 다음과 같은 회귀식을 설정하였다.

$$UG_i = a_0 + a_1 TYP_i + a_2 \ln EMP_i + \dots \dots \dots (1) \\ a_3 \ln SAL_i + a_4 KOS_i + e_i$$

$$UT_i = a_0 + a_1 TYP_i + a_2 \ln EMP_i + \dots \dots \dots (2) \\ a_3 \ln SAL_i + a_4 KOS_i + e_i$$

100)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실시한 「중소기업세제·세정의 합리적 방향에 관한 의견 조사분석」 자료(466개 중소기업)를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고성삼·김기명(2000)의 방법을 따른 것이다.

다중회귀식 (1)의 종속변수는 일반지원제도의 활용도로서, 이 항은 일반지원제도에 관한 의견조사시 응답자로 하여금 해당사항에 모두 표시하도록 하였으므로 전체 44개 항목 중에서 개별기업이 표시한 항목의 개수를 가지고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도를 측정하였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UG_i = \frac{SG_i + VG_i}{44}$$

UG_i = 기업 i 의 조세지원제도 활용도

SG_i = 기업 i 가 활용한 중소기업의 일반지원제도 개수

VG_i = 기업 i 가 활용한 벤처기업의 일반지원제도 개수

독립변수는 기업형태(TYP), 종업원수(EMP), 매출액(SAL), 코스닥등록 여부(KOS)를 사용하였는데, 이 중 기업형태(TYP), 종업원수(EMP), 매출액(SAL)은 기업규모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일단 기업형태는 그룹변수로서 더미변수를 사용하였다. 즉, 법인기업은 1, 개인기업은 0의 값을 가진다. 종업원수와 매출액은 실제 측정치에 자연log를 취해서 사용하였다. 일단 법인기업이 개인기업보다 일반지원제도에 대한 활용도가 높은지, 그리고 종업원수가 많을수록 일반지원제도에 대한 활용도가 높은지, 매출액이 많을수록 일반지원제도의 활용도가 높을 것인지를 검정한다. a_1 , a_2 , a_3 는 모두 정(+)의 값을 갖고 통계적으로 유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에 독립변수로 코스닥등록여부(KOS)를 사용하였는데 코스닥 등록기업은 1의 값을, 비등록기업은 0의 값을 가지도록 하였다. 코스닥등록기업이 코스닥에 등록하지 않은 기업보다 일반지원제도에 대한 활용도가 높을 것인지를 검정한다. a_4 는 정(+)의 값을 갖고 통계적으로 유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중회귀식 (2)는 종속변수를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도로 두었는데 이것은 설문조사에서 조세지원제도 활용 관련 항목에 체크한 갯수를 전체 항목 수(45개)로 나눈 값을 활용도의 대리변수로 사용한 것이다.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UT_i = \frac{ST_i + VT_i}{45}$$

UT_i = 기업 i 의 조세지원제도 활용도

ST_i = 기업 i 가 활용한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 개수

VT_i = 기업 i 가 활용한 벤처기업의 조세지원제도 개수

대리변수로 이용한 독립변수는 위의 일반지원제도의 경우와 같이 기업형태, 종업원 수, 매출액을 사용하였으며 기업형태는 더미변수를, 종업원수와 매출액도 마찬가지로 실제 측정치에 자연log를 취해서 사용하였다.

나. 일반지원제도 및 조세지원제도의 복잡성이 활용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¹⁰¹⁾

일반지원제도 및 조세지원제도의 복잡성이 일반지원제도 및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도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다. 일반지원제도와 조세지원제도의 복잡성이 활용도에 미치는 정도를 검정하기 위한 다중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101)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실시한 「중소기업세계 · 세정의 합리적 방향에 관한 의견 조사분석」 자료(466개 중소기업)를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고성삼 · 김기명(2000)의 방법을 따른 것이다.

$$UG_i = b_0 + b_1 COMG_i + b_2 TYP_i + e_i \dots\dots\dots (3-1)$$

$$UG_i = b_0 + b_1 COMG_i + b_2 \ln EMP_i + e_i \dots\dots\dots (3-2)$$

$$UG_i = b_0 + b_1 COMG_i + b_2 \ln SAL_i + e_i \dots\dots\dots (3-3)$$

$$UT_i = b_0 + b_1 COMT_i + b_2 TYP_i + e_i \dots\dots\dots (4-1)$$

$$UT_i = b_0 + b_1 COMT_i + b_2 \ln EMP_i + e_i \dots\dots\dots (4-2)$$

$$UT_i = b_0 + b_1 COMT_i + b_2 \ln SAL_i + e_i \dots\dots\dots (4-3)$$

모형 (3-1)~(3-3)은 기업 규모를 대응하는 변수에 따라 일반지원제도의 복잡성이 활용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검정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독립변수 COMG는 일반지원제도의 복잡성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이 항은 설문지 문9-2)의 “2. 제도가 복잡하거나 신청절차가 복잡하여 이용하기가 어려움”이라는 답을 체크하면 1로 코딩하고 그 외의 네 개의 답을 체크하면 0으로 코딩하여 이용하였다. 모형(3-1)은 기업의 업종유형을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으로 분류한 경우, 일반지원제도의 복잡성이 활용도에 미치는 정도가 법인기업과 개인기업 간에 유의적 차이가 있는가를 검정하기 위한 회귀모형이다. 개인기업이 법인기업보다 일반지원제도의 복잡성을 이유로 일반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인지를 검정한다. b_1 은 부(-)의 값을 갖고 b_2 는 정(+)의 값을 갖고 통계적으로 유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귀모형(3-2)는 규모의 변수로 종업원 수를 사용한 경우, 일반지원제도의 복잡성이 활용도에 미치는 정도를 검정하기 위한 모형이다. 종업원이 적을수록 일반지원제도의 복잡성을 이유로 일반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인지 검정한다. b_1 은 부(-)의 값을 갖고 b_2 는 정(+)의 값을 갖고 통계적으로 유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형 (3-3)은 매출액 규모에 따라 일반지원제도의 복잡성이 활용도에 미치

는 정도가 어떠한지를 검정하기 위한 회귀모형이다. 매출액이 적을수록 일반지원제도의 복잡성을 이유로 일반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인지를 검정한다. b_1 은 부(-)의 값을 갖고 b_2 는 정(+)의 값을 갖고 통계적으로 유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귀모형 (4-1)~(4-3)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조세지원제도의 복잡성이 활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기 위한 것이다. 모형 (4-1)~(4-3)은 모형(3-1)~(3-3)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형태, 종업원 수, 매출액이 각각 조세지원제도의 복잡성과 함께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검정하기 위한 것들이다. COMT는 조세지원제도의 복잡성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설문지 문 28-2)의 “2. 제도가 복잡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움”이라는 답을 1로 코딩하고 그 외의 네 개의 답을 0으로 코딩하였다.

다. 일반지원제도 및 조세지원제도의 활용 여부가 벤처기업의 이윤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일반지원제도 및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이 벤처기업의 이윤획득에 도움을 주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하였다. 독립변수 AG와 AT는 각각 일반지원제도와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여부를 나타내는 변수이다. AG는 설문지 문9)의 “1.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와 “2. 비교적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라는 답을 1로 코딩하고, “3. 활용이 부진하다”와 “4.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라는 답을 0으로 코딩하여 이용하였다. AT는 설문지 문28)의 “1.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와 “2. 비교적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라는 답을 1로 코딩하고, “3. 활용이 부진하다”와 “4.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라는 답을 0으로 코딩하여 이용하였다. 또한 기업의 이윤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들, 즉 매출액, 수출액을 독립변수에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begin{aligned}
 PROF_i = & C_0 + C_1SAL_i + C_2EXP_i + \dots\dots\dots (5-1) \\
 & C_3AG_i + C_4AT_i + e_i
 \end{aligned}$$

일반지원제도 및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을 많이 한 벤처기업일수록 이윤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C₃, C₄는 정(+)의 값을 갖고 통계적으로 유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관심의 대상은 아니지만 매출이 많은 기업일수록 이윤이 높을 것이며 수출이 많은 벤처기업일수록 이윤이 높을 것이므로 C₁과 C₂도 정(+)의 값을 갖고 통계적으로 유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독립변수 AG와 AT 대신 UG와 UT를 사용하여 일반지원제도 및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이 벤처기업의 이윤획득에 도움을 주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하였다. AG와 AT는 더미변수인 반면 UG와 UT는 각각 일반지원제도와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도를 나타내는 대리변수이기 때문에 독립변수로서 더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모형 (5-1)과 마찬가지로 모형 (5-2)는 일반지원제도 및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이 많은 기업일수록 이윤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C₃, C₄는 정(+)의 값을 갖고 통계적으로 유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begin{aligned}
 PROF_i = & C_0 + C_1SAL_i + C_2EXP_i + \dots\dots\dots (5-2) \\
 & C_3UG_i + C_4UT_i + e_i
 \end{aligned}$$

2. 실증분석의 결과

가. 표본의 기술적 통계

본장에서 사용된 자료는 제VI장의 벤처기업 지원제도 활용실태 조사 대상이었던 502개의 벤처기업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자료이다. <표 V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SAS Dataset 총 502개의 기업 중에서 추정변수의 분석에 필요한 변수의 값을 모두 가지고 있는 433개의 기업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앞 절에서 고려한 3가지 형태의 모형 검정에 사용되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의 기술통계치가 <표 VII-1>에 요약되어 있다.

기업형태의 변수는 평균이 0.9307로 상당히 높아 조사대상이 대부분 법인기업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지원제도의 활용도와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도는 각각 0.065와 0.0707로 매우 낮은 것으로

<표 VII-1> 분석변수의 기초통계치

변수	N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TYP	433	0.9307159	0.2542303	0	/1.0000000
EMP	433	32.2448037	44.1501555	2.0000000	450.0000000
SAL	433	497.5612009	1040.42	1.0000000	8800.00
UT	433	0.0706697	0.0780708	0	0.4666667
UG	433	0.0649801	0.0583998	0	0.3181818
COMG	433	0.2009238	0.4011547	0	1.0000000
COMT	433	0.2009238	0.4011547	0	1.0000000
KOS	433	1.9491917	0.2198601	1.0000000	2.0000000
EXP	433	94.0969977	470.2658821	-6.0000000	5600.00
AG	433	0.3325635	0.4716766	0	1.0000000
AT	433	0.2863741	0.4525893	0	1.0000000

나타났고, 복잡성은 일반지원제도와 조세지원제도가 0.201로 동일하게 나왔다. 그리고 분석대상기업 중 코스닥등록에 대한 평균값이 1.94로, 조사가 거의 등록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일반지원제도의 활용 여부에 관한 평균은 0.3326, 조세지원제도의 활용 여부에 대한 평균은 0.2864로 약간 낮게 나타났다.

나. 실증분석 결과

1) 벤처기업의 규모가 일반·조세지원제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다음 <표 VII-2>는 모형 (1)의 추정결과로 기업의 형태와 종업원 수 그리고 매출액이 일반지원제도의 활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다중공선성지수를 보면 어느 값에서도 심각한 다중공선성 문제가 존재한다는 의심을 가질만한 증거가 없다¹⁰²⁾. 오차항의 자기상관에 있어서도 1차 자기상관지수가 0.088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정결과를 살펴보면, 기업형태의 계수는 양이며 통계적으로도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왔다. 즉, 법인기업일수록 일반지원제도의 활용도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종업원 수의 계수는 정(+)의 관계에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5% 수준에서 유의함을 보이고 있다. 법인기업일수록 그리고 종업원 수가 많을

102)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 평가지수는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	다중공선성 평가지수	
	고유값(eigenvalue)	상태지수(condition index)
TYP	1.88626	1.00000
lnEMP	0.98819	1.38159
lnSAL	0.82597	1.51119
KOS	0.29958	2.50926

<표 VII-2> 모형(1)의 추정결과

독립변수	검정결과
INTERCEPT	-0.03044 (-0.97)
TYP	0.02995 (2.73)***
lnEMP	0.01008 (2.38)**
lnSAL	-0.00552 (-2.31)**
KOS	0.03345 (2.55)**
N	433
adj R ²	0.0394
F	5.43

주 : ***는 1%, **는 5%, *는 10% 수준(양측검정)에서 유의함.

수록 일반지원제도를 잘 활용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일반지원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매출액의 계수는 부(-)의 값을 가졌으며 통계적으로도 5%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즉, 매출이 클수록 일반지원제도를 잘 활용할 것이라는 결과는 얻을 수 없었으며, 오히려 매출이 작을수록 일반지원제도를 잘 활용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표 VII-3>은 모형 (2)의 추정결과로 기업의 형태와 종업원 수, 그리고 매출액이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이 추정결과는 <표 VII-2>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띠고 있다. 다중공선성지수를 보면 어느 값에서도 심각한 다중공선성 문제가 존재한다는 의심을 가질만한 증거가 없었다. 기업형태와 종업원수의 계수는 정(+)의 값을 가지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다. 그러

나 예상과는 달리 매출액의 계수는 부(-)의 값을 가졌으며 통계적으로도 5%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즉, 매출이 클수록 조세지원제도를 잘 활용할 것이라는 결과는 얻을 수 없었으며, 오히려 매출이 작을수록 조세지원제도를 잘 활용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표 VII-3> 모형(2)의 추정결과

독립변수	검정결과
INTERCEPT	-0.04914 (-0.75)
TYP	0.07827 (2.80)***
lnEMP	0.002490 (2.10)**
lnSAL	-0.01541 (-1.99)**
KOS	0.03049 (1.28)
N	433
adj R ²	0.0886
F	3.06

주 : ***는 1%, **는 5%, *는 10% 수준(양측검증)에서 유의함.

2) 일반·조세지원제도의 복잡성이 활용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표 VII-4>는 개인기업이 법인기업보다 정부지원제도의 복잡성을 이유로 이들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인가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즉, 모형 (3-1)의 회귀결과는 일반지원제도의 복잡성을 주요 설명변수로 사용한 것이고, 모형 (4-1)은 조세지원제도의 복잡성을 주요 변수로 이용한 것이다. 분석결과를 보면 모형 (3-1)의 검정결과는 일반지원제도의 복잡성

계수는 부(-)의 값을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기업형태의 계수는 정(+)의 값을 가지며 1% 수준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개인기업이 법인기업보다 일반지원제도의 복잡성을 이유로 일반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모형 (4-1)의 분석결과는 기업의 형태와 조세지원제도의 복잡성이 조세지원제도 활용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VII-4> 모형 (3-1)과 (4-1)의 추정결과

독립변수	(3-1)의 검정결과	독립변수	(4-1)의 검정결과
INTERCEPT	0.03671 (3.46)	INTERCEPT	0.05071 (3.52)
TYP	0.03279 (3.00)***	TYP	0.01833 (1.24)
COMG	-0.01119 (-1.65)*	COMT	0.01443 (1.54)
N	433	N	433
adj R ²	0.0212	adj R ²	0.0043
F	5.69	F	1.92

주 : ***는 1%, **는 5%, *는 10% 수준(양측검정)에서 유의함.

다음 <표 VII-5>는 종업원 수가 적을수록 정부지원제도의 복잡성을 이유로 이 지원제도들을 이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인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회귀모형 (3-2)의 분석결과는 비록 기대했던 바대로 종업원 수 계수가 정(+)의 값을, 일반지원제도의 복잡성 계수는 부(-)의 값이 나왔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모형 (4-2) 종업원 수 계수는 정(+)이 나왔고 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조세지원제도의 복잡성 계수는 예상과는 달리 정(+)의 값이 도출되었다.

<표 VII-5> 모형 (3-2)와 (4-2)의 추정결과

독립변수	(3-2)의 검정결과	독립변수	(4-2)의 검정결과
INTERCEPT	0.06099 (6.23)	INTERCEPT	0.03335 (2.59)
lnEMP	0.00202 (0.66)	lnEMP	0.01833 (2.82)***
COMG	-0.01029 (-1.46)	COMT	0.01575 (1.70)*
N	433	N	433
adj R ²	0.0018	adj R ²	0.0189
F	1.39	F	5.16

주 : ***는 1%, **는 5%, *는 10% 수준(양측검증)에서 유의함.

<표 VII-6>은 매출액이 적을수록 정부지원제도의 복잡성을 이유로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인가에 대한 회귀분석결과이다. 다중회귀모형 (3-3)은 각 설명변수들의 계수값과는 상관없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보이고 있다. 회귀모형 (4-3)은 검정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매출액 계수가 정(+)이기는 하지만 조세제도의 복잡성 계수가 의외로 정(+)의 값이 나왔다.

<표 VII-6> 모형 (3-3)과 (4-3)의 추정결과

독립변수	(3-2)의 검정결과	독립변수	(4-2)의 검정결과
INTERCEPT	0.07875 (8.39)	INTERCEPT	0.04358 (3.40)
lnSAL	-0.00229 (-1.31)	lnSAL	0.00470 (2.00)**
COMG	-0.01082 (-1.55)	COMT	0.01649 (1.76)*
N	433	N	433
adj R ²	0.0048	adj R ²	0.0189
F	2.03	F	5.16

주 :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

3) 일반·조세지원제도의 활용 여부가 벤처기업의 이윤에 미치는 영향분석결과

아래 <표 VII-7>은 다중회귀모형 (5-1)의 추정결과를 요약해 놓은 것이다¹⁰³⁾. 즉, 일반지원제도와 조세지원제도의 활용 여부와 매출액, 그리고 수출액이 벤처기업의 이윤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다중공선성지수를 살펴보면 선택된 4가지 독립변수들에게 심각한 다중공선성이 존재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 검정결과에 따르면, 전체 설명변수들의 조정된 결정계수 adj R²는 0.2388로 설명력이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F값은 27.12로서 계수 전반의 유의성을 보여준다. 각 변수에 대한 추정결과를

<표 VII-7> 모형 (5-1)의 추정결과

독립변수	검정결과
INTERCEPT	3.27152 (0.44)
SAL	0.01792 (2.76)***
EXP	0.08287 (6.91)***
AG	9.07403 (0.77)
AT	-1.61033 (-0.13)
N	333
adj R ²	0.2388
F	27.12

주 :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

103) 이윤(PROF) 항목에 답을 한 333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살펴보면, 매출액과 수출액이 예상대로 정(+)의 추정계수를 가졌고 통계적으로도 각각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왔다. 이와 같은 결과는 매출액과 수출액이 많을수록 벤처기업의 이윤증가에 바람직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일반지원제도의 활용계수와 조세지원제도의 활용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지원제도의 활용 여부는 벤처기업의 이윤에 커다란 영향을 주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아래 <표 VII-8>은 다중회귀모형 (5-2)의 추정결과를 요약해 놓은 것이다. 즉, 일반지원제도와 조세지원제도의 활용 여부와 매출액, 그리고 수출액이 벤처기업의 이윤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다중공선성지수를 살펴보면 선택된 4가지 독립변수들에게 심각한 다중공선성이 존재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 검정 결과에 따르면, 전체 설명변수들의 조정된 결정계수 adj R^2 는 0.2400으로 설명력이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F값은 27.29로서 계수 전반의 유의성을 보여준다. 각 변수에 대한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매출액과 수출액이 예상대로 정(+)의 추정계수를 가졌고 통계적으로도 각각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왔다. 이와 같은 결과는 매출액과 수출액이 많을수록 벤처기업의 이윤증가에 바람직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일반지원제도의 활용도 및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도의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독립변수 UG와 UT를 사용한 모형(5-2)가 독립변수 AG와 AT를 사용한 모형 (5-1)에 비해서 설명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모형 (5-2)의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지원제도의 활용 여부는 벤처기업의 이윤에 커다란 영향을 주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벤처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이 기업의 경쟁력 제고나 이윤창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표 VII-8> 모형 (5-2)의 추정결과

독립변수	검정결과
INTERCEPT	3.80582 (0.43)
SAL	0.01700 (2.63)***
EXP	0.08280 (6.91)***
UG	-49.39490 (-0.53)
UT	77.66183 (1.06)
N	333
adj R ²	0.2400
F	27.29

주 :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활용도를 나타내는 독립변수가 지원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활용한 지원제도의 개수를 나타낸다는 문제가 있다. 벤처기업의 이윤에는 활용한 지원제도의 개수보다는 지원의 크기가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지원의 효과가 당해 연도에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차를 두고 나타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전년도의 지원이 당해연도의 이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고려되어야 더 좋은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 요약 및 시사점

본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에 대해 정부의 지원제도들이 벤처기업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고찰하기 위해 벤처

기업 지원제도 활용실태 설문조사 결과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벤처기업의 규모가 일반지원제도 및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법인기업일수록, 그리고 종업원 수가 많을수록 일반지원제도 및 조세지원제도를 잘 활용한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얻었다.

다음으로 일반지원제도 및 조세지원제도의 복잡성이 일반지원제도 및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일반지원제도의 경우는 개인기업이 법인기업보다 일반지원제도의 복잡성을 이유로 일반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얻었다. 조세지원제도의 경우는 예상한 결과를 전혀 얻을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일반지원제도 및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이 벤처기업의 이윤 창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정해 보았다. 벤처기업의 일반지원제도 및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도가 높을수록 기업의 이윤이 높다는 실증적인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벤처기업의 이윤은 일반지원제도 및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도와 정(+)의 상관관계가 없는 반면 매출액규모나 수출액 규모와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벤처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이 기업의 경쟁력 제고나 이윤창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VIII. 벤처기업 지원제도의 개선방향

1. 기본방향

제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경제에서 벤처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에 대한 일반지원제도 및 조세지원제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지원제도 및 조세지원제도에 추가하여 벤처기업에만 적용되는 일반지원제도 및 조세지원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벤처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는 벤처기업이 중소기업인 관계로 우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논리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대기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금융·조세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서 자금조달 등 여러 측면에서 큰 불이익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를 보정하기 위해서 금융·조세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정된 자원을 대부분 대기업에 투입하여 수출지향적 공업화를 이룩하였다. 특히 1970년대 중반부터는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고도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화학공업의 육성이 대형 조립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우는 자금조달면에서 큰 불이익을 받아 왔던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과거 중소기업을 보는 시각은 대기업에 대한 상대적인 형평성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즉,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서 경제적 약자로서 보호의 대상이라는 소극적인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서 경제적 약자로서 보호대상이라는 시각으로부터 중소기업 자체가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받쳐주는 지주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있다는 시각으로 바뀌게 되었다. 즉, 중소기업은 경영의 특성상 새로운 수요와 기술개발에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동성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왜곡된 산업구조를 시정하고 무역수지를 개선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을 보는 시각이 변하면서 최근에 와서는 대기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조세지원을 해야 한다는 상당히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둘째,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특정 산업에 속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조세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성장제일 주의에서 야기된 산업부문 간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선진경제로의 진입을 위한 성장잠재력의 배양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루기 위해서 금융·조세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건전하게 유지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산업의 핵심이 되는 기계류 및 부품·소재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국내에서는 저부가가치 부품의 생산과 조립 위주의 완제품 생산에 주력함으로써 수입유발적인 산업구조를 이루고 있다. 기계류 및 부품·소재산업에서 중소기업이 발전함으로써 왜곡된 산업구조를 시정하고 무역수지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기계류 및 부품·소재산업의 발전을 통해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중소기업의 발전이 필수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의 산업정책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기계류 및 부품·소재산업의 발전을 위해 무조건적으로 중소기업 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소기업 을 지나치게 보호·육성하게 되면 자생력이 약화되고 도덕적 해이가 유발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대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던 과거의 산업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은 이들 기업들을 육성하려는 정책에서 기술혁신을 유발하는 정책으로 바꿀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기술혁신적인 중소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기술혁신에서 발생하는 외부성(externalities)을 보정하기 위해 금융·조세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¹⁰⁴⁾. 기술혁신에 대한 유인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들에 의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중소기업에 의하여 개발된 기술에 대한 학습효과로 인해 여타 기업도 그 혜택을 보아 시장의 일부를 차지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서 외부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특정 기업이 개발한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혁신으로 인한 부가가치가 해당 기업의 수익으로 귀속되지 않고 가격의 하락이라는 형태로 소비자에게 귀속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개별 기업의 수익성을 하락시키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의 수익이 사회적 수익보다 낮게 되어 중소기업의 투자의욕을 저하시키게 된다¹⁰⁵⁾. 중소기업은 특성상 유발되는 이로운 외부효과로 인해 중소기업의 투자량이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낮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외부효과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통하여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려고 하지만

104)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철인 외(1999) 참조.

105) 위의 논의는 Hall(1996)이 R&D 투자에 대한 보조의 필요성에 대한 경제적 논리로 사용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따라 금융 및 조세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수익이 사회적 수익과 일치하게 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의 요인이 있는지를 찾아내어서 그 요인을 교정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세 가지 논리 중에서 세 번째 논리가 가장 타당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는 벤처기업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벤처기업이 대기업에 비해서 경제적 약자이기 때문에 지원하거나 산업정책적 목적상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경쟁력이 낮은 벤처기업을 양산할 것이며,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막고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벤처기업의 독자적 존립능력을 저해하여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벤처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구분하여 벤처기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벤처정책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에 대한 지원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구분 없이 외부성(externalities)을 보정하는 차원에 그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벤처기업에 대해 직접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벤처기업이 많이 탄생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데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좀더 자세히 논의해 본다면, 첫째, 중소·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를 지원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사업초기에는 기업 외부에 기술력에 대한 정보를 알릴 기회가 적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감안하여 창업에 대한 일반지원을 확대하고 창업시 발생하는 과세문제를 가능한 해결해 줄 필요가 있다. 둘째, 벤처캐피탈이 자금회수

를 우려하여 초기의 중소·벤처기업에의 투자를 꺼리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에게 투자를 하는 공적벤처캐피탈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및 인력확보를 지원함으로써 시장의 실패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재원의 확보 및 투자자산의 회수 등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벤처캐피탈, 코스닥시장, 그리고 M&A시장 등과 같은 인프라 확충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제V장, 제VI장, 제VII장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시사점을 재검토해 봄으로써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 및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해 본다. 먼저 제V장에서 살펴본 주요국의 벤처기업 지원제도에서 알 수 있듯이 주요 선진국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벤처기업에 대해 다른 중소기업과 구분하여 별도의 일반지원제도나 조세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중소기업의 주주나 투자자에 대한 지원에 그치고 있었다. 주요 선진국은 중소기업에 대해 직접적인 지원을 지양하고 자금조달환경 및 투자환경을 제고시킬 수 있는 지원에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선진국들의 지원제도를 참고하여 벤처기업을 중소기업과 구별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지양하고, 또한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대신에 벤처기업의 창업이 활성화되고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제VI장의 벤처기업 지원제도의 활용실태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벤처기업의 일반지원제도 및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도가 매우 낮았다. 벤처기업 지원제도의 활용도가 낮은 이유 중의 하나는 많은 벤처기업들이 지원제도가 매우 복잡해서 활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 및 조세지원제도를

단순화함으로써 이 제도들을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복잡하고 너무 다양한 금융 및 세제지원의 형태에서 벗어나 실효성이 없는 각종 지원제도를 정비하고 벤처산업이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금조달시장에 대한 지원 및 투자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지원제도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VII장의 벤처기업 지원제도의 유효성에 관한 실증분석에서 논의하였듯이 벤처기업의 일반지원제도 및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도가 높을수록 기업의 이윤이 높다는 실증적인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기업의 이윤은 일반지원제도 및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도와 정의 상관관계가 없는 반면 매출액규모나 수출액 규모와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벤처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이 기업의 경쟁력 제고나 이윤창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 및 조세지원제도의 구체적인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모색해 본다.

2. 일반지원제도의 개선방향

가.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폐지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

벤처기업이라는 용어는 국가마다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고부가가치기업, 신기술기업, 기술집약기업, 모험기업 등의 개념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우리나라처럼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두고 있지는 않다.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별하여 벤처기업에 대해 적절한 육성정책을 제공하려는 목적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지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에 벤처기업 확인신청을 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을 수 있으며,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게 되면 정부로부터 금융, 조세, 인력, 입지 등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199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대체로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첫째,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과연 진정한 벤처기업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는 경우 거의 대부분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벤처기업으로서의 특성이 미흡한 기업, 즉 기술집약도가 높지 않거나 미래에 높은 성장이 기대되지 않는 기업도 벤처기업으로 확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이다.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과거 수출주도형 대기업을 지원했던 산업정책과 유사한 것이라는 것이다. 성소미(2001)는 “특히 정부가 벤처기업을 지정,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기업들에 대해 조세, 금융, 인력, 입지, 정보 등의 측면에서 차별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과거 경제개발 초기 시장형성이 미흡한 가운데 정부가 직접 승자(picking winners)를 하던 전략과 흡사하다”고 비판하고 있다¹⁰⁶⁾.

이러한 문제점은 정부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어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을 2005년 폐지함으로써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종료할 예정이다.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벤처기업을 다른 중소기업과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는 결국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폐지함을 의미한다.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종료되는 2005년 이후에는 벤처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모두

106) 성소미(2001), p. 206.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지원제도 및 조세지원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에 대한 일반지원제도 및 조세지원제도가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폐지되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 제V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폐지에 대한 동의 여부를 질문해 본 결과, 응답기업의 85.5%에 해당하는 기업이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벤처기업의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벤처기업이 43.4%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유지되기를 원하는 이유는 대외적으로 정부에서 인정한 벤처기업이라는 것이 벤처기업에게는 큰 자산이 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음으로써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에의 접근이 용이하고 기업의 홍보에도 유리하고 우수인력의 채용도 쉬워짐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결과가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연장해야 하는 이유는 되지 못한다고 생각된다.

나.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의 단순화

제VI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가 복잡하다고 느끼는 기업이 결코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의 활용이 부진하거나 전혀 활용하지 않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웠던 이유를 질문한 결과를 살펴보면, 제도가 복잡하거나 신청절차가 복잡하여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31.0%나 되고 있다. 그리고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의 활용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과 관련하여 21.7%의 벤처기업이 신청

서류 및 절차의 간소화를 벤처기업의 활용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를 단순화함으로써 이 제도들을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복잡하고 너무 다양한 금융 등의 지원형태에서 벗어나 실효성이 없는 각종 지원제도를 정비하고 벤처산업이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금조달시장에 대한 지원 및 투자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지원제도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벤처기업이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의 내용을 단순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벤처기업이 이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앞서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2005년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폐지되어야 함을 감안하면 현행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나치게 많이 기울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 대신 향후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별 없이 적용될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지원제도를 단순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다. 창업과정에 대한 지원의 강화

벤처기업은 위험부담은 크지만 성공하면 기대수익이 큰 독자적인 신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왕성한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신규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신생 중소기업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기업가정신이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창업인프라의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창업인프라의 구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대학·연구소의 창업보육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대학·연구소가 사무실 공간을 저렴하게 또는 무료로 제공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며, 중소·벤처기업이 대학·연구소와의 연계를 통해 실험실의 기술을 사업화로 연결시키는 공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중소·벤처기업 집적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이다. 집적시설의 정보인프라 및 회계·세무·경영 등의 기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집적시설 내 기업 간의 네트워크와 집적시설 간의 네트워크를 잘 형성함으로써 시너지효과가 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사이언스파크(science park)의 효율적인 조성이 필요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중소·벤처기업단지를 경쟁적으로 조성하여 결국은 공동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학·연구소 및 관련 인프라가 잘 구축된 지역에 해당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충분히 고려한 사이언스파크를 집중 조성해야 할 것이다.

라. 기술개발 및 기술인력 확보에 대한 지원 확대

중소·벤처기업과 관련하여 시장의 실패가 일어나는 대표적인 부문이 기술개발 부문과 인력 부문일 것이다. 기술개발 부문은 앞서에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특정기업에 의하여 개발된 기술에 대한 학습효과로 인해 여타 기업도 그 혜택을 보아 시장의 일부를 차지하기 때문에 특정기업의 기술혁신에서 외부효과가 발생하게 되며, 특정기업의 수익이 사회적 수익보다 낮게 되어 특정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하시키게 된다. 또한 기술인력부문에서는 우수 기술인력의 대기업 선호와 중소·벤처기업의 산·학·연 연대기반의 취약으로 인해 우수 기술인력이 중소·벤처기업을 기피하게 된다.

장기적으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는 직접 지원은 축소하고 벤처캐피탈의 선진화 및 코스닥시장의 정비 등을 통해 벤

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다만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 중에서 기술개발 및 기술인력에 대한 지원은 이 부문에서 시장의 실패가 일어남을 감안하여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Ⅳ장의 <표 IV-3>에서 현행 기술개발자금지원제도를 살펴보면,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과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의 경우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을 차별하고 있지 않으나, 산업기반기술개발용자사업의 경우는 벤처기업만 지원하고 일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과 환경분야기술연구개발사업의 경우는 벤처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폐지되면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개발자금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이 이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지원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벤처기업의 기술인력에 대한 지원제도로는 교수·연구원 등의 휴직·겸직제도, 병역특례전문연구요원제도, 스톡옵션제도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교수·연구원 등의 휴직·겸직제도와 스톡옵션제도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 법이 2005년에 폐지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인력지원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마. 벤처캐피탈의 역할 제고

벤처기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벤처기업에 대해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과 벤처기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단기적 투자지

원은 유망하지 않는 벤처기업을 양산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외국의 경우에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구분하여 정책적으로 차별적인 지원을 하는 국가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장기적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은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수준으로 낮추고 벤처캐피탈을 통한 간접 지원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중소·벤처기업이 많이 탄생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벤처캐피탈의 역할은 일차적으로 투자재원을 조성하는 작업에서 시작된다. 그 다음 조성된 재원을 기반으로 하여 벤처캐피탈은 투자대상 기업을 선정하게 된다. 이때 벤처캐피탈은 주로 투자지분의 매각에 따른 자본이득에 관심을 가지므로 벤처기업의 장기적인 수익 잠재성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한다. 따라서 벤처캐피탈은 벤처기업이 추구하는 시장의 수익성 여부, 벤처기업이 사용하는 기술의 적절성 및 독특성 등의 요소들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통해 투자기업을 선정하게 된다. 다음 단계로 벤처캐피탈은 벤처기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각종 지원을 함으로써 투자기업의 성장을 돕는데, 단순히 투자기회를 찾는 것을 넘어서 자신들의 능력과 지식을 이용하여 자신들이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마지막 단계로 벤처캐피탈은 자신들이 투자한 기업이 성장한 다음 주식공개와 투자회사의 매각 등을 통해 투자지분을 매각함으로써 수익을 실현한다.

다시 말하면, 벤처캐피탈은 기술력과 장래성은 있으나 자본과 경영기반이 취약한 벤처기업에 대하여 자금, 경영, 관리, 기술지도 등 종합적인 지원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전통적인 금융기관이 자본의 공급을 꺼리는 벤처기업에 대해 자본을 공급하고 경영

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사업실패시의 개인적 위험부담을 최소화시켜 줌으로써 창의적인 기업가들이 높은 위험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지닌 신기술 사업에 쉽게 도전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벤처캐피탈의 활성화는 벤처기업의 육성에 필수적이다.

벤처캐피탈의 역할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공적벤처캐피탈의 역할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특정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펀드조성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앞서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과거 대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던 산업정책과 별로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공적벤처캐피탈이나 공적벤처펀드가 존재 이유를 가지려면 그 투자는 민간 벤처캐피탈이 외면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초기단계의 기업이나 산업정책상 꼭 필요한 분야에만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시장실패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 분야에 정부가 나서서 공적자금으로 투자할 이유는 없다. 미국의 SBIC의 경우에도 민간벤처캐피탈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창업초기의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만일 민간벤처캐피탈이 투자를 잘 하고 있는 분야에 공공벤처캐피탈이 진입한다면 공공벤처캐피탈의 자금조달 비용이 민간벤처캐피탈의 그것에 비해 낮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초기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부분에서 시장의 실패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벤처캐피탈 입장에서는 자금의 회수를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기술력만을 가진 초기의 벤처기업보다는 이미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기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한 벤처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해야 위험을 줄이면서도 단기일 내에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술력만을 가진 초기의 벤처기업은 투자자금을 유치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미국의 경우는 공적캐피탈이라고 볼 수 있는 중소기업투자회사(SBIC)제도가 1958년에 제정된 중소기업투자법(Small Business Investment Act)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의 승인을 받아 설립되며 민간에 의해 소유·경영되고 있다. 중소기업투자회사는 기본적으로 민간자본을 가지고 창업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에 중소기업청의 지원금이 합쳐져 운용자금이 조성된다. 이렇게 조달된 투자자금은 민간 벤처캐피탈회사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창업 초기의 중소기업에 투·융자해 주고, 이로부터 얻은 자본이득을 지분율에 따라 이자와 함께 정부에 돌려주는 형태로 사업이 운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소기업투자회사는 공적벤처캐피탈로 분류된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SBIC를 모델로 하여 기술력은 있으나 민간벤처캐피탈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창업 초기의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투자를 하는 벤처캐피탈회사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벤처캐피탈회사는 민간이 설립하도록 하고 정부는 벤처캐피탈회사에 출자하는 것이 아니라 벤처캐피탈회사가 만든 조합에 일정 비율을 출자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바. 기관투자자의 투자조합 출자비중 확대

투자조합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투자조합 참여가 필요하다. 특히 기관투자자 중에서도 규모 자체가 방대하여 작은 비중을 투자하여도 투자조합의 활성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연·기금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연·기금은 공공성을 강조하여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 및 연금기금관련법 등의 법령으로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투자조합 출자를 어렵게 만들어 왔다¹⁰⁷⁾.

반면 미국의 경우 1979년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ERISA)의 완화조치 등 연·기금의 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연·기금의 투자조합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였다. 그후 연·기금의 투자조합 출자액이 크게 증가하여 투자조합 출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 말을 기준으로 할 때 연·기금의 투자조합 출자 비중은 총결성액의 60%에 달하고 있어서 투자조합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¹⁰⁸⁾. 특히 연·기금의 선도적 역할은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조합 출자액과 비중을 증가시키는 데 일조를 하였으며, 대신 벤처캐피탈회사의 출자분은 통상 1% 정도에 지나지 않게 되어 투자조합 결성은 전적으로 외부자금조달 수단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말을 기준으로 할 때 연·기금의 투자조합 출자비중이 총결성액의 8.7%에 불과하였던 점과 크게 대조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기관투자가의 참여가 저조했던 이유는 1997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제정 이전에 기관투자가의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는 관련법에 의해 엄격히 제한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7년 이후에는 기관투자가의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는 법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지 않으나 여전히 저조한 편이다. 그 이유 중의 가장 중요한 하나는 일부 연·기금의 경우 아직도 내부규정에 의해 투자조합에 출자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내부규정에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 또는 상장예정인 유가증권에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비상장주식에 투자를 하는 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없다는 문제가

107) 김진수·김제진(2000), p. 280.

108) 2000년 말을 기준으로 할 때 미국의 투자조합 출자자 구성은 연·기금 60%, 금융 및 보험 10%, 개인 11%, 법인 12%이다. 또한 영국의 경우에도 투자조합 출자자 중 연·기금 51%, 금융 및 보험 22%, 개인 7%, 법인 3%로 연기금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있다.

연·기금 등의 장기자산 운용기관인 기관투자자가 투자조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기금의 경우 운용자금 중에서 10% 이내의 자금을 자금운용계획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투자조합에 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투자자금의 회수처인 코스닥시장이 아직 건전하게 성장하지 못함에 따라 투자조합에 대한 참여가 저조한 편이다. 그러나 1999년 이후 코스닥시장이 한 차례의 활황을 경험하면서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더구나 투자조합은 7년 정도의 기간 동안 장기투자를 요하므로 연·기금의 성격상 이와 같은 장기투자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2001년 3월 「국민연금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국민연금의 운용사업 범위에 투자조합이 명시되어 동년 7월부터 국민연금은 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에 힘입어 연·기금의 투자조합 출자비중은 2001년 말 기준 8.7%를 차지하고 있고 금액으로는 2,602억원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2002년 9월을 기준으로 할 때 연·기금의 투자조합 출자규모는 총 결성액의 10.3%에 이르는 3,343억원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연금을 제외한 다른 공적연금의 경우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가 여전히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연·기금의 내부규정에 투자조합의 출자근거를 명시하는 등 자산운용의 범위를 계속 확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그 규모가 큰 연·기금의 경우 전체 운용자산의 규모에 비해 투자조합출자에 따른 위험이 대단히 미미할 것이므로 투자조합에의 출자를 적극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 코스닥시장의 건전한 육성

창의적이고 기술·지식집약적인 벤처기업들이 끊임없이 생성되고 발전될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코스닥시장의 건전한 발전이 필수적이다. 코스닥시장은 벤처기업들에게는 자금조달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벤처캐피탈회사나 투자조합의 출자자에게는 이익실현을 하게 하는 자금회수처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지난 1999년과 2000년 초까지의 기간에 코스닥시장은 엄청난 외적인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질적인 성장이 뒷받침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침체기를 맞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코스닥시장을 우수한 기술이나 창의적인 아이템을 가진 벤처기업이 주류를 이루는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육성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먼저 코스닥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시장참여가 필수적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현재 개인투자자의 거래비중이 전체 거래량의 97%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¹⁰⁹⁾. 이에 따라 1% 정도의 투자비중을 갖고 있는 기관투자자가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다. 기관투자자가 시장이 급속히 상승하면 어느 정도 물량을 매물화하여 가속도에 제동을 걸고 시장이 급격히 하락하면 어느 정도의 물량을 매수하여 시장이 급속히 냉각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급등과 급락을 되풀이할 경우 코스닥시장은 투기장화될 수밖에 없으며 현재 침체기에 빠져 있는 벤처산업 전반의 장기적인 발전에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¹¹⁰⁾.

109) 2002년 10월 기준으로 코스닥시장 투자자별 평균 거래실적은 개인 97.8%, 기관 1.0%, 외국인 0.7%, 기타 0.5%로 나타난다.

110) 김진수·김재진(2000), p. 284.

2000년 이후 코스닥시장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우선 외적인 성장을 다시 추진하여야 할 것이지만 코스닥시장의 장기적이고도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질적인 성장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코스닥시장의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연·기금 등의 장기자산 운용기관인 기관투자자가 주가 부양차원이 아닌 장기적인 자산운용의 방안으로 코스닥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연·기금이 코스닥시장에 참여를 꺼리는 이유는 그 동안 코스닥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해서 유동성이 너무 낮았고, 예금이나 채권에 비해 위험만 있을 뿐 투자수익을 올릴 수 없었으며, 또한 각 기관의 자산운용에 관한 규정에 의해 위험 있는 자산에 대한 투자를 엄격히 제한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자금을 운용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코스닥시장에 참여할 경우 낮은 투자수익률로 인해 본인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으므로 코스닥시장에 대한 투자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과거 투신사의 주가부양 실패에 따른 투신사 부실문제에 비추어 보아 연·기금의 코스닥시장 참여가 연·기금의 부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투신사의 자금은 이자를 지급하면서 정부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이었지만 연·기금은 성격상 장기투자가 가능한 자금이다. 규모가 큰 연·기금의 경우 작은 비중을 투자하여도 코스닥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투자비용이 크지 않다면 투자위험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가 부양을 위한 일과성의 무분별한 자금투입을 지양하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우량종목들에 대해 장기적인 투자를 한다면 연·기금의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연·기금 등의 기관투자자가 코스닥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와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관투자자가 코스닥시

장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시장이 급등락을 되풀이할 때 안정판 역할을 하여 코스닥시장이 투기장화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¹¹¹⁾.

다음으로 코스닥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코스닥시장의 제도를 선진화하는 일이 중요하다. 코스닥시장은 첨단·중소벤처기업의 증권시장이 되고자 하는 목표 아래, 시장 투명성과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고, 최첨단 시스템 구축, 해외 증권시장과의 전략적 연계 및 제휴를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 표준에 적합한 시장구조를 갖추기 위한 지속적인 개혁을 해나갈 때만이 지난 1999년~2000년과 같은 외형적 성장만이 아닌 질적인 성장도 함께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코스닥시장의 개선방향으로는 첫째, 첨단 지식기반 중소·벤처기업 위주로 신규등록 기업의 유치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유망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실리콘밸리에 진출한 한국벤처기업이 나스닥시장 상장시 코스닥시장에도 동시 상장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국내 벤처기업의 실리콘밸리 직접 참여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나스닥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연대를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의 첨단기업들의 코스닥시장 등록을 적극 추진하여 코스닥시장의 이미지와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코스닥의 등록 및 등록취소의 요건을 강화하고 심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현재 벤처기업이 코스닥시장에 신규등록할 경우 일반법인과 달리 부채비율, 흑자여부 등 재무요건 면제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와 같은 면제혜택을 대폭 축소해야 할 것이다. 또한 퇴출을 활성화함으로써 코스닥시장을 머니게임의 수단으로

111) 김진수·김재진(2000), p. 285.

악용하여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억제해야 할 것이다.

셋째, 코스닥시장은 거래규모에 상응하는 시장관리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내용과 상황에 대한 정보가 시장참여자 모두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색출시스템의 확충이 필요하다.

3.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향

가. 조세지원제도의 단순화

근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아담 스미스(A. Smith)¹¹²⁾는 바람직한 세제가 갖추어야 할 특성으로 공평성(equality), 확실성(certainty), 편리성(convenience), 그리고 경제성(economy)을 제시하였다. 이후 학자들마다 제각기 세제가 지향해야 할 특성들을 열거하였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동소이함을 알 수가 있다. 오늘날 재정학자들도 이상적인 조세제도가 갖추어야 할 특성으로 형평성(equity), 효율성(eficiency), 단순성(simplicity), 유연성(flexibility)을 들고 있다. 아담 스미스가 말한 명확성(certainty)과 편리성(convenience)도 결국 단순성(simplicity)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아담 스미스는 지금으로부터 약 230년 전에 벌써 세제는 가능한 한 단순하게 디자인되어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해야 한다는 선견지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가 있다.

바람직한 조세제도가 갖추어야 할 네 가지 특성 중에서 세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에 대해서는 수많은 학자들의 연구가 있었지만,

112) A. Smith,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1776)의 Book V, Chapter II.

‘단순성’에 대한 연구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일천하다. 세제의 단순성은 세제의 복잡성(complexity)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이의 중요성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1980년대에 들어와서다. 이러한 변화가 발생한 것은 무엇보다도 세제가 복잡함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엄청나는 것을 뒤늦게나마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이다¹¹³⁾.

1986년 미국에서 발표된 『Tax Reform Act 1986』에서도 기본철학으로 「낮은 세율, 넓은 세원, 중립적이고 획일적인 세제」를 추구하여 세제의 단순화가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직시하고 있다. 영국은 1996년부터 직접세 조문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Tax Law Rewrite Project(TLRP)를 추진해오고 있으며, 호주는 소득세법을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하여 1993년 말부터 Tax Law Improvement Project(TLIP)를 추진하다가, 1998년도 말에 일단 중단하고 현재는 각종 기업관련 세제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뉴질랜드, 스웨덴 등의 국가에서도 세제를 단순화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세제를 단순화하기 위한 선진국의 이러한 노력은 세제가 복잡함으로 인하여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만이 아니라, 조세제도와 정책도 결국 납세자가 주인이기 때문에 납세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시대적 자각이 바탕에 깔려 있다.

제Ⅳ장의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중소기업·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각종 지원제도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에 나와 있는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위한 각종 조세지원제도는 시대상황에 따라 해당 산업 또

113) 세제를 단순화시켜 세제의 복잡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인식하고 이를 실천에 옮긴 나라는 그리 많지가 않다.

는 업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계속 지원항목이 늘어나고, 이미 원래의 목적을 달성한 항목이나 활용도가 뒤떨어지는 각종 지원제도가 그대로 존치하여 현재의 모습은 백화점식의 매우 방만한 모습을 띠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과거의 조세감면규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대체하면서 일몰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아직까지 문제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지출 규모는 일몰제도를 도입한 이후 절대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국세대비 조세지출비율¹¹⁴⁾은 다행스럽게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조세지출비율은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한 1999년에 14.6%를 차지하였으나, 그 후 꾸준히 감소하여 2002년에는 약 13.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세지출액은 1999년 10조 5,419억원, 2000년 13조 2,824억원, 2001년 13조 7,298억원, 2002년에는 약 14조 4,002억원으로 전망된다. 이 중에서 중소기업, 투자, R&D 등 기업에 대한 지원이 4조 7,249억원으로 약 32.8%를 차지하여 기능별 조세지출액에 있어서 근로자, 농어민 등 중산·서민층 지원액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세대비 조세지출비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은 조세지원이 사실상의 지출이라는 인식이 낮고, 정책목표 달성수단으로 조세감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기인한다고 할 수가 있다. 이처럼 조세지원이 항구화·기득권화하고 신규지원이 난립하는 경향으로 인하여 조세지원제도가 복잡다단하고, 감면규모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세제의 중립성과 형평성을 훼손하고 있다.

조세원칙에서 보면 조세감면비중의 비대는 조세감면을 받는 분야와 기타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타분야로 조세부담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조세감면

114) 조세지출비율 = 조세지출/(조세지출+국세)

은 정당성이 확보될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이고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부는 정기적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의 규모를 절대적으로 축소하고 지원대상을 축소하며 지원의 한시성을 확보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즉, 가능한 모든 감면조항을 일몰시점에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항구적인 감면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은 본법으로 이전하려고 한다. 이러한 큰 흐름 속에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당연히 「선택과 집중」이다. 즉, 현재 매우 복잡하고 지원대상이 한정되어 있어서 중소기업이 보편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각종 지원세제를 실효성 있는 제도 중심으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는 모든 중소기업이 보편적으로 겪고 있는 우수한 인력확보나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그리고 창업초기에 대한 지원으로 일반 및 조세지원을 단순화하여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조세감면규모의 점진적 축소의 추세 속에서 중소기업이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도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와 마찬가지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에 의하면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에 비하여 벤처기업 조세지원 제도를 더 잘 이해하고 있는 기업이 훨씬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지원제도의 경우 기업 스스로가 이 제도를 파악하고 있어야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반면, 조세지원제도의 경우 기업이 이 제도를 잘 알지 못하고 있더라도 세무대리인의 도움으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세무대리인을 통한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홍보도 강화함으로써 벤처기업이 이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2005년에 벤처기업 지원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경우에도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와 마찬가지로 단순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향후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별 없이 적용될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단순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나. 창업과정에 대한 조세지원의 강화

벤처기업의 가장 큰 애로점 중의 하나는 창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동성의 제한으로 인한 자금문제라고 생각된다.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도 창업단계에 집중되어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의 창업활성화, 산업구조의 고도화, 지역간 균형적 발전을 정책목표로 하여 마련되었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현행의 조세지원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해 특정단지나 시설에서 창업한 벤처기업을 포함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및 제120조 규정에 따라 수도권 외 지역의 창업중소기업이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하여 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제는 물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 농어촌특별세 전액을 면제해 주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에 의하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창업 후 2년 이내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에 대하여 인지세를 면제해 주며, 「지방세법」 제280조에 의하면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창업보육센터용

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는 면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50% 경감해주고 있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조세지원 대상기업을 일반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으로서 특정분야의 산업에 종사하는 벤처기업 및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등 벤처기업의 활성화나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에서는 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에 한하여 지방세 중과배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¹¹⁵⁾. 현실적으로 벤처기업전용단지나 벤처기업집적시설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 시설에서 창업한 벤처기업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조세지원을 해줄 경우 자원배분의 편중과 왜곡을 가져옴은 물론 형평성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창업지원이라는 본래의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특정 지역이나 분야에 대한 조세지원으로 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 기술개발 및 기술인력확보에 대한 조세지원의 강화

앞에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중소·벤처기업과 관련하여 시장의 실패가 일어나는 대표적인 부문이 기술개발 부문과 인력 부문일 것이다. 이 부문은 중소·벤처기업의 일반지원제도와 마찬가지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기술개발 및 기술인력확보를 위한 조세지원제도로써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

115)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38조 제1항, 제188조 제2항, 제280조 제9항 참조.

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스톡옵션 관련 조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앞에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기술개발부문과 기술인력부문에서 시장의 실패가 일어나기 때문에 조세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더구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가 장기적으로 축소되고 단순화된다면 특히 이 부문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다. 기술개발부문과 기술인력부문에 대한 조세지원이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과도하기 때문에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 부문에 대한 조세지원의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기술개발부문과 기술인력부문 이외에도 너무나 다양한 부문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지원이 시급하지 않은 부문에 대한 축소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서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최근 4년 평균 연구개발비 초과금액의 50% 공제방법과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의 15% 세액공제 방법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해서 다음의 몇 가지 개선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에게는 상당히 큰 조세혜택임을 감안하여 현재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을 2004년 이후로 적용대상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 투자조합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

벤처캐피탈의 활성화는 결국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시중의 자금이 벤처캐피탈로 유입되어 창업단계의 벤처기업에게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다. 벤처캐피탈회사가 본연의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벤처캐피탈회사가 자기 자금으로 투자하기보다는 투자조합을 통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양질의 시중자금을 조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투자재원이 주로 차입금이나 자기자본의 확충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자금을 조달하는 데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게 된다. 왜냐하면 차입금은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며, 자기자본은 위험을 직접 부담해야 할 뿐 아니라 자본력의 뒷받침이 있어야 확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벤처캐피탈이 자본 잠식에 대한 부담을 덜고 모험적인 투자에 나서도록 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벤처캐피탈은 투자 기회를 선별하고 중개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투자조합이 투자자금을 공급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투자조합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투자조합을 통해 벤처산업에 시중자금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벤처산업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도 투자조합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현행 세법에서는 거주자가 투자조합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2003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5%에 상당하는 금액(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함)을 그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소득공제 적용기간의 조정문제와 관련하여 다음의 몇 가지 개

선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소득공제 적용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벤처기업의 특성상 투자조합을 결성하여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더라도 투자 후 최초의 몇 년간은 수익이 발생하기가 어렵고 투자조합은 존속기간이 7년 또는 그 이상임을 감안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투자 후 최초의 3개년 중에서 1개년으로 제한한 것은 이 제도의 실효성을 낮추는 것이다. 따라서 투자조합 출자자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간을 지금보다 연장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소득공제 적용기간을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로 연장함으로써 투자 후 최초의 5개년 중에서 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소득공제 적용기간중 매년 동일한 비율을 공제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현행 제도는 소득공제 적용기간중 한 과세연도를 선택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기 때문에 소득공제 적용기간중 공제한도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매년 동일한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실효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다.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을 받는 투자조합의 출자자에게는 상당히 큰 조세혜택임을 감안하여 현재 2003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을 2004년 이후로 적용대상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 기업 인수·합병 과세제도 정비

벤처기업간 혹은 벤처기업과 기존 제조업 간의 인수·합병의 활성화는 벤처캐피탈의 자금회수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벤처기

업가의 입장에서든 인수·합병을 통해 기업의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인수·합병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인수·합병이 활성화가 잘 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인수·합병 후에는 고용감축이 필수적이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 창업자가 친인척과 계열회사를 통해 회사지배권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의 국민정서가 인수·합병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라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 경제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된 지금에 와서 우리는 국내 기업간의 인수·합병만을 생각하여 인수·합병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는 없는 일이다. 외국기업이 국내 기업을 인수·합병하고 국내기업이 외국기업을 인수·합병하는 일은 피할 수 없는 경제현상으로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수·합병과 관련한 과세제도를 시급히 정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적대적 기업인수에 대한 과세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데, 적대적 기업인수를 통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그린메일지급금에 대한 이자비용 공제, 그린메일 영수에 대한 과세문제,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관련 과세문제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IX. 요약 및 결론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건전하게 유지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대기업 못지않게 기술개발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벤처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벤처기업은 창조적 아이디어와 기술혁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국가경제의 기술개발기반을 강화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 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를 지닌다. 또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때문에 고용 증대 및 금융시장을 발전시키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벤처기업의 육성·발전은 균형적인 산업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와 같은 벤처기업이 활성화된다면 우리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신기술의 개발과 확산에 기여함으로써 경제의 하부구조를 건전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나라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1997년 8월에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됨으로써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성장은 아직 초기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벤처기업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의 활동이 미흡하며 조기에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코스닥시장이 발달해 있지 않다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성취욕구와 위험감수의 성향을 지닌 벤처기업가의 출현과 성공한 벤처기업의 등장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점을 인식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벤처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벤처기업 관련 지원제도의 개선방향을 모

색하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벤처기업 지원제도와 주요 선진국의 벤처기업 지원제도를 비교·검토해 보고, 다음으로 벤처기업 지원제도의 활용실태를 조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벤처기업 지원제도의 유효성에 관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먼저 주요 선진국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벤처기업에 대해 다른 중소기업과 구분하여 별도의 일반지원제도나 조세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중소기업의 주주나 투자자에 대한 지원에 그치고 있었다. 주요 선진국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직접적인 지원을 지양하고 자금조달환경 및 투자환경을 제고시킬 수 있는 지원에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선진국들의 지원제도를 참고하여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대신에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이 활성화되고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벤처기업 지원제도의 활용실태 조사결과에서는 벤처기업의 일반지원제도 및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도가 매우 낮았음을 알 수 있었다. 벤처기업 지원제도의 활용도가 낮은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벤처기업들이 지원제도가 매우 복잡해서 활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 및 조세지원제도를 단순화함으로써 이 제도들을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복잡하고 너무 다양한 금융 및 세제지원의 형태에서 벗어나 실효성이 없는 각종 지원제도를 정비하고 벤처산업이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금조달시장에 대한 지원 및 투자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지원제도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벤처기업 지원제도의 유효성에 관한 실증분석에서

는 벤처기업의 일반지원제도 및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도가 높을수록 기업의 이윤이 높다는 실증적인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기업의 이윤은 일반지원제도 및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도와 정(+)의 상관관계가 없는 반면 매출액규모나 수출액 규모와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벤처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이 기업의 경쟁력 제고나 이윤창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우리나라 벤처기업 지원제도의 기본방향은 기술혁신에서 발생하는 외부성(externalities)을 보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구분하여 벤처기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벤처정책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벤처기업에 대해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벤처기업이 많이 탄생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데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의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현행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 및 조세지원제도가 2005년 폐지되어야 함을 감안하면 현행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나치게 기울이기보다는 향후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구별없이 적용될 중소기업 일반지원제도를 단순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기업가정신이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창업인프라의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대학·연구소의 창업보육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며, 중소·벤처기업 집적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이며, 사이언스파크의 효율적인 조성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 중에서 기술개발 및 기술인력에 대한 지원은 이 부문에서 시장의 실패가 일어남을 감안

하여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장기적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은 일반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수준으로 낮추고 벤처캐피탈을 통한 간접 지원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기술력은 있으나 민간 벤처캐피탈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창업 초기의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투자를 하는 공적 벤처캐피탈회사제도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투자조합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규모 자체가 방대하여 작은 비중을 투자하여도 투자조합의 활성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연·기금의 적극적인 투자조합 참여가 필요하다.

여섯째, 코스닥시장은 벤처기업들에게는 중요한 자금조달창구 역할을 하고 벤처캐피탈회사나 투자조합의 출자자에게는 이익실현을 하게 하는 자금회수처이므로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시장참여를 유도하고 코스닥시장의 제도를 선진화함으로써 코스닥시장을 건전하게 육성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벤처기업이 조세지원제도의 내용도 단순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벤처기업이 이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벤처기업의 창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동성의 제한으로 인한 자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지원 대상기업을 일반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장기적으로 축소되고 단순화되더라도 특히 기술개발부문과 기술인력부문에 대한 조세지원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투자조합을 통해 벤처산업에 시중자금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벤처산업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도 투자조합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투자조합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선 방안으로는 투자조합 출자자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간을 확대하고, 소득공제 적용기간 중 매년 동일한 비율을 공제하도록 하고, 적용대상이 되는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인수·합병과 관련한 과세제도를 시급히 정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적대적 기업인수를 통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그린메일지급금에 대한 이자비용 공제, 그린메일 영수에 대한 과세문제,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관련 과세문제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고성삼·김기명,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에 관한 실증분석」, 『세무학연구』, 제16호, 2000.
- 김진수·김재진, 『효율적 벤처지원금융시장을 위한 조세정책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1.
- _____, 『벤처캐피탈 지원제도의 국제비교와 정책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1.
- 대한상공회의소,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1998.
- 박용규·강신겸,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지원방안』, 삼성경제연구소, 1997.
- 배광선 외, 『벤처기업 육성정책의 평가와 개선방안』, 산업연구원, 1999.
- 벤처활성화위원회, 「벤처기업 재도약 방안」, 2002. 11. 21.
- 산업연구원, 『벤처기업을 위한 자금원 확충방안』, 1998.
- 삼성경제연구소, 『IMF 사태의 원인과 교훈』, 1998.
- 성소미, 『한국의 벤처 : 평가와 전망』, 비봉출판사, 2001.
- 이병기, 『벤처기업의 성장과 정책과제』, 한국경제연구원, 2002.
- 이장우·김선홍, 『벤처기업 현황과 발전방향』, 산업자원부·벤처기업협회, 1998.
- 이진주 외, 『한국벤처산업의 역할분석과 그 운영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원, 1991.
- 이철인·전영준·김정훈, 『조세감면제도의 실효성 분석』, 한국조

- 세연연구원, 1999.
- 중소기업청, 「벤처기업 현황」, 각호.
- _____,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결과」, 2001. 8.
- _____, 「2002년도 중소기업지원시책 합동설명회 자료」, 2002, a.
- _____, 「벤처기업 경영실태조사 결과」, 2002, b.
- _____, 「벤처투자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벤처캐피탈 제도개선 방안」, 2002, c.
- _____, 「벤처기업 현황(2002. 11)」, 2002, d.
- _____, 벤처넷 인터넷자료.
- 증권거래소, 인터넷 통계자료.
- 코스닥, 인터넷 통계자료.
- 한국은행, 『2001년 기업경영성과분석 결과』, 2002.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캐피탈』, 각호.
- _____, 인터넷 통계자료.
- 한국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통계자료.
- 한국증권경제연구원·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의 직접금융 활성화 방안』, 1997.
- 한정화, 「한국 벤처생태계의 진화과정과 미래전망」, 『한국 벤처생태계의 진단』, 삼성경제연구소, 2000.
- 홍성도, 『벤처비즈니스, 벤처캐피탈』, 한국생산성본부, 1997.
- _____, 『벤처기업 창업경영론』, 학문사, 1998.
- 日本經濟新聞, 『1999 日經 Venture Business 年監』, 1999.
- 日本 中小企業廳, 『2002年版 中小企業白書』, 2002..
- 日本 中小企業廳, Internet data.

BVCA, “2000 Report on Investment Activity,” 2001.

- CCH, *U.S. Master Tax Guide 2001*. 2001.
- DTI, "Small Firm Loan Guarantee Scheme Executive Summary," 2001.
- _____, "Government's Expenditure plans 2001/02 to 2003/04 and Main Estimates 2001/02," 2002.
- NASDAQ, Internet data.
- NVCA, *2000 National Venture Capital Association Yearbook*, 2000.
- OECD, *Venture Capital and Innovation*, 1996, a.
- _____, *Government Programmes For Venture Capital*, 1996, b.
- PriceWaterHouseCoopers, *The Economic Impact of Venture Capital in the UK : Venture Backed Companies Provide a massive impetus to the economic performance and global competitiveness of the UK* 1999.
- Roberts, E.B., "New Venture for Corporate Growth," *Harvard Business Review*, July-August 1980.
- SME, "Small and Medium Statistics for the UK 2000," 2001.
- UK National Statistics, "Annual Abstract of Statistics," 2002.
- UK Inland Revenue, Internet data.
-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mall Business Economic Indicators 2000*, 2001.
- _____, *Small Business Growth by major Industry 1988~1995*. 1998.

<부록 1>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실태 설문지



208 SAJIK-DONG CHONGRO-KU SEOUL, KOREA, 110-054 TEL(02)3702-2100 /
 FAX(02)3702-2121/E-mail info @gallup.co.kr / internetwww.gallup.co.kr
 affiliated with **GALLUP INTERNATIONAL**

한국갤럽 GALLUP KOREA

ID A1-5

GALLUP 200116060 벤처기업 지원제도의 활용실태에 관한 조사

--	--	--	--	--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저희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는 중소기업청과 한국조세연구원의 의뢰를 받아 “벤처기업 지원제도의 활용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벤처기업 지원제도를 일반 지원제도와 조세지원제도로 나누어 그 각각에 대해 활용실태 및 지원효과 등을 조사함으로써 향후 벤처기업 지원시책 수립 및 지원효과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마련된 조사로서 귀사는 한국조세연구원에 의해 금번 조사에서 꼭 의견을 여쭙고자 하는 사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귀사에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우리나라의 벤처기업 지원제도의 활용실태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망하실 줄 아오나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는 반드시 조사와 관련된 목적에만 사용되며, 귀사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설문조사에 응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리며 귀사의 평안과 번창을 기원합니다.

2002년 10월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소장 박무익
 연구원 최원석 / 신상욱
 실사연구원

중소기업청·한국조세연구원

주소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208
 전화 (02) 3702-2665/2669

■ 지역⁶⁻⁷: 01. 서울 02. 부산 03. 대구 04. 인천 05. 광주 06. 대전 07. 울산 08. 경기
 09. 강원 10. 충북 11. 충남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 제주

■ 회사명(면접원 기입):

--

● 응답해 주실 때 꼭 지켜 주십시오 ●

1. 질문지는 첫 페이지부터 순서대로 차례차례 응답해 주십시오. 질문 앞에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모든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겉 표지를 포함해 1~8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응답은 귀사의 총무 담당자(대리급 이상)께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총무 담당자가 없으실 경우, 사장님이 직접 기입해 주셔도 됩니다.
3. 귀사의 실태 파악이 목적이므로 응답을 귀사 기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설문서의 내용은 2001. 1. 1 ~ 2001. 12. 31까지 1년간의 제도 이용 실적을 기준으로 기입해 주십시오(결산기가 다른 경우에는 최근 결산일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의 제도 이용 실적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먼저 귀사의 일반적인 기업개요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 지원제도의 통계 작성시 참고하기 위한 기본적인 설문이니 빠짐없이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항 목
기업형태	① 개인 ② 법인
업 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1 : 10 바이오, 11 환경, 12 에너지, 13 반도체장비 및 전자부품, 14 영상·음향 15 통신장비·컴퓨터 및 주변기기 16 의료기계 17 정밀기계 18 광학기계 19 첨단기계 ◆ 제조업 2 : 21 일반기계, 22 전기기기, 23 수송기계, 24 금속·비금속, 25 음·식료, 26 섬유, 27 화학 ◆ 소프트웨어·정보통신서비스 3 : 31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 엔터테인먼트, 광고 및 기타 정보제공업 32 전자상거래, 33 솔루션·컨텐츠 등,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공 ◆ 기타 서비스 4 : 41 연구개발관련 서비스, 42 문화·관광, 43 도·소매·수리업, 44 기타서비스 ◆ 농·수·임·어업 5 : 51 농업, 52 수산업, 53 어업 ◆ 기타산업 6 : 61 광업, 62 건설업, 99 기타
창업연도	_____ 년
벤처기업 확인유형	①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② 연구개발 투자기업 ③ 신기술개발 기업 ④ 기술평가기업
벤처기업 확인연도	_____ 년
코스닥(거래소) 상장 여부	① 등록(상장) ② 비등록(비상장)
자본금(납입 자본금) 규모	_____ 억원
자산 규모	_____ 억원
매출액 규모	_____ 억원

부록 1.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실태 설문지 295

구 분	항 목
당기순이익 규모	_____ 억원
수출액 규모	_____ 억원
종업원 규모	_____ 명

현재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 투자 및 수출촉진, 기술 및 인력개발 등 산업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금융지원, 신용보증지원, 기술인력지원, 입지지원, 판로 및 수출지원 등의 일반지원제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중소기업 일반지원제도의 활용 여부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문 1) 귀사가 중소기업에 대한 다음의 금융지원제도 중에서 활용한 제도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모든 항목에 V표 해 주십시오.

금융지원제도	활용 여부
① 중소·벤처 창업자금 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② 우수신기술 지정·지원 (정보통신부(정보통신연구진흥원))	
③ 기업은행의 창업자금 지원 (기업은행)	
④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⑤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⑥ 정보통신설비 구입 및 시설개체비 지원 (정보통신부)	
⑦ 산업기반 기술개발자금 지원 (산업자원부(산업기술평가원))	
⑧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자금 지원 (중소기업청)	
⑨ 정보통신산업 기술개발자금 지원 (정보통신부(정보통신연구진흥원))	
⑩ 환경 분야 기술연구 개발자금 지원 (환경부(국립환경연구원))	
⑪ 중소기업 개발기술 사업화자금 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⑫ 중소기업 협동화자금 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⑬ 일반금융기관의 벤처기업자금 지원 (기술신용보증기금)	
⑭ 지식기반 서비스업 육성자금 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⑮ 산업기반기술개발용자 지원 (산업자원부(산업기술평가원))	
⑯ 기타 창업자금 지원제도 : 적을 것: _____	
⑰ 기타 기술개발 지원제도 : 적을 것: _____	
⑱ 기타 : 적을 것: _____	

문 2) 귀사가 중소기업에 대한 다음의 신용보증지원제도 중에서 활용한 제도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모든 항목에 V표 해 주십시오.

신용보증지원제도	활용 여부
① 벤처창업평가 특별보증제도	
② 기술우대보증제도	
③ 회사채발행보증제도(Primary-CBO)	
④ 기술창업평가보증제도	
⑤ 기타 : 적을 것: _____	

문 3) 귀사가 중소기업에 대한 다음의 판로·수출확대지원제도 중에서 활용한 제도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모든 항목에 V표 해 주십시오.

판로·수출확대지원제도	활용 여부
① 해외유명규격 인증획득 지원 (판로확대 지원)	
② 일반수출입금융 지원 (수출확대 지원)	
③ 수출자금 지원 (수출확대 지원)	
④ 수출기업화 지원 (수출확대 지원)	
⑤ 수출신용보증특례 (수출확대 지원)	

정부는 벤처기업에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추가하여 각종 일반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 활용 여부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문 4) 귀사가 벤처기업에 대한 다음의 기술인력지원제도 중에서 활용한 제도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모든 항목에 V표 해 주십시오.

기술인력지원제도	활용 여부
① 교수·연구원 등의 휴직 및 겸직제도	
② 병역특례전문연구요원제도	
③ 스톡옵션제도	

부록 1.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실태 설문지 297

문 5) 귀사가 벤처기업에 대한 다음의 입지지원제도 중에서 활용한 제도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모든 항목에 V표 해 주십시오.

입지지원제도	활용 여부
① 민간 벤처기업 집적시설	
② 창업보육센터	
③ 테크노파크	
④ 소프트웨어진흥센터	
⑤ 기타 : 적을 것: _____	

문 6) 귀사가 벤처기업에 대한 다음의 판로·수출확대지원제도 중에서 활용한 제도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모든 항목에 V표 해 주십시오.

판로·수출확대지원제도	활용 여부
① 방송광고 지원	
② 벤처기업 수출보험우대 지원	
③ 수출 벤처기업 법률 지원	
④ 벤처기업 해외진출 지원센터 지원	
⑤ 기타 : 적을 것: _____	

문 7) 귀사가 벤처기업에 대한 다음의 기타 지원제도 중에서 활용한 제도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모든 항목에 V표 해 주십시오.

기타 지원제도	활용 여부
① 소자본 주식회사 설립지원	
②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공장등록	
③ 기술담보제도 및 가치평가제도	

지금부터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의 효과 및 활용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문 8) 귀사는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비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잘 정비되어 있다
2. 대체로 잘 정비되어 있다
3. 아직 보완되어야 할 점이 더러 있다
4. 전혀 정비가 되어 있지 않다

문 9) 귀사는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를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1.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 | 2. 비교적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 | 3. 활용이 부진하다 ─
- | 4.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 ─▶ **문9-2)로 갈 것**

문 9-1) (활용하고 있다면) 귀사가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주로 누구의 도움 때문이었는지 하나만 골라 주십시오.

1. 은행
2. 회사 내의 전문인력
3. 벤처기업지원제도와 관련한 전문지
4. 신문·방송·인터넷
5. 조합 등 경제단체
6. 정부 설명회
7. 기타(적을 것_____)

☞ **문 10)으로 갈 것**

문 9-2) (활용하지 않는다면) 귀사가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웠던 가장 큰 이유는 주로 무엇입니까? 다음 중 한 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1. 지원대상이 아님.
2. 제도가 복잡하거나 신청절차가 복잡하여 이용하기가 어려움
3. 지원내용이 미흡하여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용하지 않음

4. 구체적으로 일반지원제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모름
5. 기타(적을 것_____)

문 10) 귀사는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의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효과가 있다 —□
2. 비교적 효과가 있다 —□→ **문10-1)로 갈 것**
3. 별로 효과가 없다 —□
4. 전혀 효과가 없다 —□→ **문10-2)로 갈 것**

문 10-1) (효과가 있다면) 귀사가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 중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제도는 어느 것입니까? 다음 중 한 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1. 금융지원제도
 2. 신용보증지원제도
 3. 기술인력지원제도
 4. 입지지원제도
 5. 판로 및 수출지원제도
 6. 기타 지원
- 문 11)로 갈 것**

문 10-2) (효과가 없다면) 귀사가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가 지원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중 한 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1. 중소기업 일반지원제도로도 충분하다
2. 벤처기업 지원제도의 지원내용이 미흡함
3.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를 이용하지 않았다
4. 기타(적을 것_____)

문 11) 귀사는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의 활용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다음 중 한 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1. 지원대상 범위의 확대
2. 지원요건의 완화
3. 신청서류 및 절차의 간소화
4. 지원제도 홍보 및 교육의 강화
5. 기타(적을 것_____)

문 12) 현행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한 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1. 제도를 단순화하고 지원내용을 강화함으로써 활용도를 제고
2. 벤처투자조합 결성 확대 등 투자재원 확충
3. 코스닥 등록요건 완화 등 코스닥시장의 제도 개선
4. 창업보육센터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 확대
5. 벤처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강화
6. 국내외 기업, 엔젤 및 벤처캐피탈, 컨설팅사 등 벤처산업 네트워크 구축 지원
7. 연구개발투자의 효율화를 위해 산·학·연의 협조체제 구축 지원
8. 금융 및 보증지원시 벤처기업에 대한 우대확대
9. 기타(적을 것_____)

문 13)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중소기업 중에서 잠재력이 큰 기업을 선별하여 차별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서 과거의 대기업 지원정책과 마찬가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폐지에 동의함
2.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계속 유지되어야 함

문 14) 정부는 그간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토대로 다양한 제도를 도입·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간의 정책 또는 지원제도가 벤처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경영에 도움이 되었다.
2. 경영에 도움이 된 것이 없다—▶ **문 15)로 갈 것**

문 14-1) (도움이 된다면) 귀사는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아 _____ 기업경영의 어떤 측면에서 가장 큰 도움을 받았습니까? 다음 중 한 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1. 정책 자금 및 보증기관 접근 용이
2. 코스닥 등록 유리
3. 기업홍보 유리
4. 세제지원
5. 기타(적을 것_____)

부록 1.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실태 설문지 301

문 15) 최근 정부는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11월 1일부터 벤처기업 확인 기준을 강화하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귀사는 이러한 제도의 도입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문15-1) 그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문 16) 현재 여러 부처 및 기관에서 벤처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을 영위하면서 현재까지 벤처기업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기관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한 기관만 골라 주십시오

1. 중소기업청
2. 산업자원부
3. 정보통신부
4. 과학기술부
5. 지방자치단체
6. 중소기업진흥공단
7. 소프트웨어진흥원
8. 기술신용보증기금
9. 수출보험공사
10. KOTRA
11. 기타(적을 것_____)

문 17) 그럼, 벤처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앞으로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기관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한 기관만 골라 주십시오

1. 중소기업청
2. 산업자원부
3. 정보통신부
4. 과학기술부
5. 지방자치단체
6. 중소기업진흥공단

- 7. 소프트웨어진흥원
- 8. 기술신용보증기금
- 9. 수출보험공사
- 10. KOTRA
- 11. 기타(적을 것 _____)

현재 정부는 중소기업육성, 투자 및 수출촉진, 기술 및 인력개발 등 산업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 조세감면을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문 18) 현재 귀사는 조세지원제도 활용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1. 자체적으로 활용한다
- 2. 위탁(세무대리인: 세무사 등)하여 활용한다
- 3.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한다



아래 문항은 반드시 세무대리인(세무사 등) 에게 문의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19) 귀사가 중소기업에 대한 다음의 일반적인 조세특례 중에서 활용한 제도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모든 항목에 V표 해 주십시오

조세특례	활용 여부
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② 기업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③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④ 적자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33)	
⑤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⑥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⑦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⑧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문 20) 귀사가 중소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다음의 지원세제 중에서 활용한 제도는 무엇
 인니까? 해당하는 모든 항목에 V표 해 주십시오

투자 촉진 지원세제	활용 여부
①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②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③ 생산성향상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④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⑤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	
⑥ 임시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문 21) 귀사가 중소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및 구조조정을 위한 다음의 지원세제 중에서 활
 용한 제도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모든 항목에 V표 해 주십시오

재무구조 개선 및 구조조정 지원세제	활용 여부
① 중소기업통합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②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③ 사업전환중소기업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2002년부터 폐지)	
④ 사업전환중소기업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2002년부터 폐지)	
⑤ 재래사업장의 이전시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5조: 2002년부터 폐지)	
⑥ 중소기업자 경영지원시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2002년부터 폐지)	
⑦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시 특별부가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2002년부터 폐지)	
⑧ 주주 등 자산증여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⑨ 위탁기업체의 주주의 자산증여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 41조의 2)	

문 22) 귀사가 중소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다음의 지원세제 중에서 활용한 제도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모든 항목에 V표 해 주십시오

지방이전 촉진 지원세제	활용 여부
① 공장의 지방이전시 양도소득세 등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② 법인본사의 지방이전시 양도소득세 등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③ 지방이전 기업의 설비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	
④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⑤ 법인공장, 본사의 지방이전시 임시특별세액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⑥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⑦ 5년 이상 가동공장이전시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2002년부터 폐지)	
⑧ 법인, 지방이전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지방세법 제274조)	
⑨ 공장, 지방이전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지방세법 제275조)	

문 23) 귀사가 다음의 준비금제도 중에서 활용한 제도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모든 항목에 V표 해 주십시오

준비금제도	활용 여부
① 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② 상장 또는 등록법인에 대한 사업손실 준비금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2)	
③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추가하여 각종 특례규정을 마련하여 세제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벤처기업 특례규정 활용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문 24) 창업벤처기업(창업 이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대한 다음의 지원세제 중에서 귀사가 활용한 제도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모든 항목에 V표 해 주십시오

창업벤처 중소기업 지원세제	활용 여부
①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② 등록세 면제 및 중과배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 지방세법 제280조)	
③ 취득세 면제 및 중과배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 지방세법 제280조)	
④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⑤ 재산세 중과배제 (지방세법 제280조)	
⑥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⑦ 인지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문 25) 귀사가 창업중소기업의 공장설립시 부담금감면제도 중에서 활용한 제도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모든 항목에 V표 해 주십시오

부담금감면제도	활용 여부
① 개발이익부담금 감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② 농지전용부담금 및 산림전용부담금 감면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	

문 26) 귀사는 스톱옵션 관련 조세감면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를 활용했습니까?

1. 활용했다
2. 활용하지 않았다

지금부터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효과 및 활용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문 27) 귀사는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비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잘 정비되어 있다.
2. 대체로 잘 정비되어 있다
3. 아직 보완되어야 할 점이 더러 있다
4. 전혀 정비가 되어있지 않다

문 28) 귀사는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를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1.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 └ 2. 비교적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 | 3. 활용이 부진하다 ─
- | 4.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 ─▶ **문 28-2)로 갈 것**

문 28-1) (활용하고 있다면) 귀사가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주로 누구의 도움 때문이었는지 하나만 골라 주십시오.

1. 세무대리인
2. 회사 내 세무전문인력
3. 세무서
4. 조세 관련 전문지
5. 신문·방송·인터넷
6. 조합 등 경제단체
7. 정부부처
8. 기타(적을 것_____)

☞ **문 29)로 갈 것**

문 28-2) (활용하지 않는다면) 귀사가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웠던 가장 큰 이유는 주로 무엇입니까? 다음 중 한 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1. 지원 대상이 아님
2. 제도가 복잡하거나 신청절차가 복잡하여 이용하기 어려움

- 3. 최저한세로 일부만 감면
- 4. 지원내용이 미흡하여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용하지 않음
- 5. 기타(적을 것_____)

문 29) 귀사는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효과가 있다.
- 2. 비교적 효과가 있다
- 3. 별로 효과가 없다
- 4. 전혀 효과가 없다 **▶ 문 29-2)로 갈 것**

문 29-1) (효과가 있다면) 귀사가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중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
는 제도는 어느 것입니까?

- 1. 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 2. 창업중소기업의 공장설립시 부담금 감면
 - 3. 스톡옵션 관련 조세감면제도
 - 4. 기타(적을 것_____)
- ☞ 문 30)으로 갈 것**

문 29-2) (효과가 없다면) 귀사가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가 지원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라도 충분하다
- 2.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지원내용이 미흡하다
- 3.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를 이용하지 않았다
- 4. 기타(적을 것_____)

문 30) 귀사는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의 활용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면접원 : 하나만 응답 받을 것)

- 1. 감면요건 완화
- 2. 지원대상의 범위 확대
- 3. 신청서류 및 절차의 간소화
- 4. 최저한 세율 인하

- 5. 감면율, 감면기간 확대
- 6. 지원제도 홍보, 교육 강화
- 7. 기타(적을 것_____)

문 31) 현행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하나만 골라 주십시오

- 1. 제도를 단순화하고 지원내용을 강화함으로써 활용도를 제고
- 2. 창업과정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 3. 엔젤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 4. 투자조합의 출자자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 5.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 6. 스톡옵션에 대한 조세감면 확대
- 7. 기타(적을 것_____)

*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면 접 후 기 록

회 사 명			
주 소			
응답자 성명			
소 속			
직 위			
전 화 번 호			
조 사 일 시	월 일 시 분부터 ()분간		
특 이 사 항			
면접원 성명		ID	14-15
에 디 터	검 증 원		

◆ 반드시 응답자의 명함을 받아오십시오.

<부록 2>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실태 조사결과

<부표 1> 응답자 특성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 전 체 ■	502	100	연구개발관련	7	1.4	◆ 자산 규모 ◆		
◆ 지역 별 ◆			문화/관광	1	0.2	1억원 미만	8	1.6
서울	219	43.6	도소매수리업	3	0.6	5~ 10억원 미만	139	27.7
인천/경기	142	28.3	기타서비스	9	1.8	10~ 50억원 미만	195	38.8
경상도	70	13.9	농업	1	0.2	50~100억원 미만	54	10.8
전라도	17	3.4	어업	1	0.2	100억원 이상	39	7.8
충청도	49	9.8	건설업	4	0.8	모름/무응답	67	13.3
강원/제주	5	1	기타	12	2.4	◆ 매출액규모 ◆		
◆ 기업 형태 ◆			◆ 창업 연도 ◆			1억원 미만	16	3.2
개인	36	7.2	1990년이전	57	11.4	1~ 5억원 미만	80	15.9
법인	466	92.8	1991~1997년	127	25.3	5~ 10억원 미만	56	11.2
◆ 업종 별① ◆			1998~1999년	159	31.7	10~ 50억원 미만	185	36.9
첨단제조업	178	35.5	2000~2001년	159	31.7	50~100억원 미만	44	8.8
일반제조업	144	28.7	◆ 벤처 기업			100억원 이상	59	11.8
SW/통신서비스	142	28.3	확인 유형 ◆			모름/무응답	62	12.4
기타서비스	20	4	벤처캐피탈	54	10.8	◆ 당기순이익 ◆		
농/임/어업	2	0.4	연구 개발	93	18.5	적자	55	11.0
기타 산업	16	3.2	신기술개발	161	32.1	1억원 미만	108	21.5
◆ 업종 별② ◆			기술평가기업	194	38.6	1~ 5억원 미만	124	24.7
바이오	14	2.8	◆ 벤처 기업			5~ 10억원 미만	30	6.0
환경	17	3.4	확인 연도 ◆			10~ 50억원 미만	33	6.6
반도체/전자부품	31	6.2	1998년	13	2.6	500억원 이상	3	0.6
영상/음향	17	3.4	1999년	53	10.6	모름/무응답	149	29.7
통신장비/컴퓨터	61	12.2	2000년	140	27.9	◆ 수출액규모 ◆		
의료 기계	14	2.8	2001년	296	59	1억원 미만	35	7.0
정밀 기계	14	2.8	◆ 코스닥 거래소			1~ 5억원 미만	48	9.6
광학 기계	3	0.6	상장 여부 ◆			5~ 10억원 미만	27	5.4
첨단 기계	7	1.4	등록 상장	23	4.6	10~ 50억원 미만	41	8.2
일반 기계	23	4.6	비등록 비상장	479	95.4	50~100억원 미만	6	1.2
전기 기기	26	5.2	◆ 자본금규모 ◆			100억원 이상	10	2.0
수송 기계	6	1.2	1억원 미만	28	5.6	모름/무응답	335	66.7
금속/비금속	33	6.6	1~ 5억원 미만	174	34.7	◆ 종업원규모 ◆		
음 / 식료	6	1.2	5~ 10억원 미만	107	21.3	10명 미만	92	18.3
섬유	19	3.8	10~ 50억원 미만	157	31.3	10~ 29명	242	48.2
화학	31	6.2	50~100억원 미만	10	2	30~ 49명	86	17.1
정보제공업	32	6.4	100억원 이상	9	1.8	50~100명	49	9.8
전자상거래	4	0.8	모름/무응답	17	3.4	100명 이상	27	5.4
SW개발및제공	106	21.1				모름/무응답	6	1.2

<부표 2>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 활용

	중소·벤처 창업자금 지원			우수신기술 지정·지원		기업은행의 창업자금 지원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 지원		중소기업 구조개선 자금 지원	
	기업 수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 전 체 ■	502	98	19.5	22	44	25	5.0	53	10.6	22	4.4
◆ 지역 별 ◆											
서울	219	33	15.1	8	3.7	11	5.0	11	5.0	2	0.9
인천/경기	142	28	19.7	8	5.6	7	4.9	17	12.0	8	5.6
경 상 도	70	19	27.1	2	2.9	1	1.4	9	12.9	6	8.6
전 라 도	17	6	35.3	0	0.0	1	5.9	2	11.8	1	5.9
충 청 도	49	11	22.4	4	8.2	5	10.2	14	28.6	5	10.2
강원/제주	5	1	20.0	0	0.0	0	0.0	0	0.0	0	0.0
◆ 업 종 별 ◆											
첨단제조업	178	38	21.3	8	4.5	6	3.4	26	14.6	10	5.6
일반제조업	144	34	23.6	2	1.4	10	6.9	22	15.3	11	7.6
SW/통신서비스	142	20	14.1	8	5.6	7	4.9	2	1.4	0	0.0
기타서비스	20	2	10.0	2	10.0	0	0.0	1	5.0	1	5.0
농/임/어업	2	1	50.0	0	0.0	0	0.0	0	0.0	0	0.0
기타 산업	16	3	18.8	2	12.5	2	12.5	2	12.5	0	0.0
◆ 벤처기업 확인연도 ◆											
1998년	13	6	46.2	0	0.0	1	7.7	2	15.4	2	15.4
1999년	53	11	20.8	6	11.3	4	7.5	11	20.8	5	9.4
2000년	140	33	23.6	6	4.3	9	6.4	12	8.6	2	1.4
2001년	296	48	16.2	10	3.4	11	3.7	28	9.5	13	4.4
◆ 자본금규모 ◆											
1억원 미만	28	6	21.4	0	0.0	0	0.0	3	10.7	0	0.0
1~ 5억원 미만	174	33	19.0	6	3.4	8	4.6	16	9.2	5	2.9
5~ 10억원 미만	107	24	22.4	5	4.7	3	2.8	14	13.1	4	3.7
10~ 50억원 미만	157	31	19.7	8	5.1	11	7.0	17	10.8	12	7.6
50~100억원 미만	10	0	0.0	0	0.0	0	0.0	2	20.0	1	10.0
100억원 이상	9	1	11.1	1	11.1	1	11.1	1	11.1	0	0.0
모름/무응답	17	3	17.6	2	11.8	2	11.8	0	0.0	0	0.0
◆ 매출액규모 ◆											
1억원 미만	16	3	18.8	1	6.3	2	12.5	1	6.3	0	0.0
1~ 5억원 미만	80	18	22.5	3	3.8	2	2.5	3	3.8	0	0.0
5~ 10억원 미만	56	9	16.1	4	7.1	2	3.6	6	10.7	5	8.9
10~ 50억원 미만	185	37	20.0	10	5.4	9	4.9	27	14.6	7	3.8
50~100억원 미만	44	10	22.7	1	2.3	5	11.4	4	9.1	4	9.1
100억원 이상	59	8	13.6	2	3.4	1	1.7	11	18.6	6	10.2
모름/무응답	62	13	21.0	1	1.6	4	6.5	1	1.6	0	0.0

<부표 2>의 계속

	정보통신 설비 구입 및 시설 개체비지원		산업기반 기술개발 자금 지원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자금 지원		정보 통신산업 기술개발 자금 지원		환경 분야 기술연구 개발자금 지원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 전 체 ■	8	1.6	41	8.2	74	14.7	36	7.2	7	1.4
◆ 지역 별 ◆										
서울	5	2.3	16	7.3	20	9.1	17	7.8	2	0.9
인천/경기	2	1.4	7	4.9	24	16.9	7	4.9	0	0.0
경 상 도	0	0.0	9	12.9	15	21.4	5	7.1	3	4.3
전 라 도	0	0.0	1	5.9	4	23.5	1	5.9	2	11.8
충 청 도	1	2.0	7	14.3	8	16.3	5	10.2	0	0.0
강원/제주	0	0.0	1	20.0	3	60.0	1	20.0	0	0.0
◆ 업 종 별 ◆										
첨단제조업	4	2.2	21	11.8	39	21.9	18	10.1	4	2.2
일반제조업	0	0.0	15	10.4	19	13.2	2	1.4	2	1.4
SW/통신서비스	4	2.8	4	2.8	13	9.2	16	11.3	0	0.0
기타서비스	0	0.0	1	5.0	2	10.0	0	0.0	0	0.0
농/임/어업	0	0.0	0	0.0	0	0.0	0	0.0	1	50.0
기타 산업	0	0.0	0	0.0	1	6.3	0	0.0	0	0.0
◆ 벤처기업 확인연도 ◆										
1998년	0	0.0	3	23.1	6	46.2	0	0.0	0	0.0
1999년	2	3.8	6	11.3	10	18.9	3	5.7	0	0.0
2000년	1	0.7	11	7.9	14	10.0	9	6.4	1	0.7
2001년	5	1.7	21	7.1	44	14.9	24	8.1	6	2.0
◆ 자본금규모 ◆										
1억원 미만	0	0.0	2	7.1	7	25.0	3	10.7	1	3.6
1~ 5억원 미만	1	0.6	14	8.0	32	18.4	8	4.6	5	2.9
5~ 10억원 미만	0	0.0	8	7.5	11	10.3	10	9.3	0	0.0
10~ 50억원 미만	4	2.5	15	9.6	22	14.0	14	8.9	1	0.6
50~100억원 미만	1	10.0	1	10.0	1	10.0	0	0.0	0	0.0
100억원 이상	1	11.1	0	0.0	0	0.0	1	11.1	0	0.0
모름/무응답	1	5.9	1	5.9	1	5.9	0	0.0	0	0.0
◆ 매출액규모 ◆										
1억원 미만	0	0.0	3	18.8	5	31.3	1	6.3	1	6.3
1~ 5억원 미만	1	1.3	7	8.8	18	22.5	5	6.3	0	0.0
5~ 10억원 미만	0	0.0	6	10.7	10	17.9	4	7.1	1	1.8
10~ 50억원 미만	1	0.5	16	8.6	26	14.1	19	10.3	3	1.6
50~100억원 미만	1	2.3	3	6.8	9	20.5	4	9.1	0	0.0
100억원 이상	3	5.1	5	8.5	3	5.1	3	5.1	0	0.0
모름/무응답	2	3.2	1	1.6	3	4.8	0	0.0	2	3.2

<부표 2>의 계속

	중소기업 개발기술 사업화자금 지원		중소기업 협동화자금 지원		일반금융 기관의 벤처기업 자금지원		지식기반 서비스업 육성자금 지원		산업기반 기술개발 융자 지원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 전 체 ■	18	3.6	4	0.8	75	14.9	1	0.2	12	2.4
◆ 지역 별 ◆										
서울	4	1.8	1	0.5	33	15.1	0	0.0	4	1.8
인천/경기	7	4.9	0	0.0	25	17.6	1	0.7	4	2.8
경 상 도	4	5.7	0	0.0	4	5.7	0	0.0	2	2.9
전 라 도	2	11.8	1	5.9	3	17.6	0	0.0	0	0.0
충 청 도	1	2.0	2	4.1	10	20.4	0	0.0	2	4.1
강원/제주	0	0.0	0	0.0	0	0.0	0	0.0	0	0.0
◆ 업 종 별 ◆										
첨단제조업	10	5.6	4	2.2	26	14.6	1	0.6	5	2.8
일반제조업	6	4.2	0	0.0	24	16.7	0	0.0	3	2.1
SW/통신서비스	2	1.4	0	0.0	19	13.4	0	0.0	3	2.1
기타서비스	0	0.0	0	0.0	4	20.0	0	0.0	1	5.0
농/임/어업	0	0.0	0	0.0	1	50.0	0	0.0	0	0.0
기타 산업	0	0.0	0	0.0	1	6.3	0	0.0	0	0.0
◆ 벤처기업 확인연도 ◆										
1998년	2	15.4	0	0.0	1	7.7	0	0.0	1	7.7
1999년	4	7.5	1	1.9	10	18.9	0	0.0	4	7.5
2000년	4	2.9	0	0.0	17	12.1	0	0.0	1	0.7
◆ 자본금규모 ◆										
1억원 미만	8	2.7	3	1.0	47	15.9	1	0.3	6	2.0
1~ 5억원 미만	2	7.1	0	0.0	1	3.6	0	0.0	0	0.0
5~ 10억원 미만	4	2.3	0	0.0	29	16.7	0	0.0	3	1.7
10~ 50억원 미만	6	5.6	3	2.8	20	18.7	0	0.0	3	2.8
50~100억원 미만	6	3.8	1	0.6	25	15.9	0	0.0	4	2.5
100억원 이상	0	0.0	0	0.0	0	0.0	0	0.0	0	0.0
모름/무응답	0	0.0	0	0.0	0	0.0	0	0.0	1	11.1
◆ 매출액규모 ◆										
1억원 미만	0	0.0	0	0.0	0	0.0	1	5.9	1	5.9
1~ 5억원 미만	0	0.0	0	0.0	2	12.5	0	0.0	0	0.0
5~ 10억원 미만	1	1.3	1	1.3	10	12.5	0	0.0	3	3.8
10~ 50억원 미만	4	7.1	0	0.0	10	17.9	0	0.0	1	1.8
50~100억원 미만	9	4.9	3	1.6	26	14.1	1	0.5	4	2.2
100억원 이상	2	4.5	0	0.0	10	22.7	0	0.0	3	6.8
모름/무응답	2	3.4	0	0.0	8	13.6	0	0.0	0	0.0
모름/무응답	0	0.0	0	0.0	9	14.5	0	0.0	1	1.6

<부표 3>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 중 기타 지원제도 활용

	기업수	%
■ 전 체 ■	45	100.0
▶ 기타 창업자금 지원제도	16	35.6
기자재 경영안정화 자금	4	8.9
정보화 촉진 기금	2	4.4
ETRI 창업지원	2	4.4
무역협회	2	4.4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2	4.4
과학기술 진흥기금	1	2.2
연구성과 지원사업	1	2.2
선도기관 기술과제	1	2.2
TBI 신기술혁신자금	1	2.2
▶ 기타 기술개발 지원제도	9	20.0
청정 생산 기술개발	2	4.4
산자부 생기원	1	2.2
기술이전 개발사업	1	2.2
과기부 연구성과 지원사업	1	2.2
방송진흥 촉진기금	1	2.2
정보화 촉진기금	1	2.2
부천시청	1	2.2
일반금융	1	2.2
▶ 기타 지원제도	26	57.8
지자체 중소기업 육성자금	8	17.8
일반인의 지원	3	6.7
신용보증기금 지식기반 대출	2	4.4
정보화 촉진기금	2	4.4
우수 신기술 자금	2	4.4
한국은행 지방제조업체 지원	1	2.2
중협 공제기금 대출	1	2.2
시경영 안정자금	1	2.2
산업은행 외화시설 자금	1	2.2
기보 보증	1	2.2
수출 기업화 자금	1	2.2
지방 구조조정 시설자금	1	2.2
벤처기업 지원	1	2.2
일반 금융 지원	1	2.2

<부표 4> 중소기업 신용보증지원제도 활용

	벤처창업 평가 특별 보증제도		기술우대 보증제도		회사채 발행 보증제도 Primary-CBO		기술창업 평가 보증제도	
	기업 수	기업 수 %	기업 수	기업 수 %	기업 수	기업 수 %	기업 수	기업 수 %
■ 전 체 ■	502	22 44	100	19.9	16	3.2	28	5.6
◆ 지역 별 ◆								
서울	219	7 3.2	42	19.2	7	3.2	11	5.0
인천/경기	142	7 4.9	31	21.8	7	4.9	7	4.9
경 상 도	70	4 5.7	13	18.6	1	1.4	3	4.3
전 라 도	17	1 5.9	2	11.8	0	0.0	2	11.8
충 청 도	49	3 6.1	11	22.4	1	2.0	4	8.2
강원/제주	5	0 0.0	1	20.0	0	0.0	1	20.0
◆ 업 종 별 ◆								
첨단제조업	178	9 5.1	34	19.1	8	4.5	8	4.5
일반제조업	144	4 2.8	26	18.1	4	2.8	5	3.5
SW/통신서비스	142	4 2.8	34	23.9	2	1.4	11	7.7
기타서비스	20	1 5.0	2	10.0	2	10.0	2	10.0
농/임/어업	2	0 0.0	0	0.0	0	0.0	2	100.0
기타 산업	16	4 25.0	4	25.0	0	0.0	0	0.0
◆ 벤처기업 확인연도 ◆								
1998년	54	2 3.7	9	16.7	2	3.7	1	1.9
1999년	93	3 3.2	15	16.1	3	3.2	6	6.5
2000년	161	10 6.2	32	19.9	6	3.7	5	3.1
2001년	194	7 3.6	44	22.7	5	2.6	16	8.2
◆ 자본금규모 ◆								
1억원 미만	28	2 7.1	2	7.1	0	0.0	2	7.1
1~ 5억원 미만	174	10 5.7	37	21.3	1	0.6	10	5.7
5~ 10억원 미만	107	6 5.6	21	19.6	4	3.7	8	7.5
10~ 50억원 미만	157	1 0.6	37	23.6	10	6.4	5	3.2
50~100억원 미만	10	0 0.0	1	10.0	1	10.0	0	0.0
100억원 이상	9	0 0.0	0	0.0	0	0.0	1	11.1
모름/무응답	17	3 17.6	2	11.8	0	0.0	2	11.8
◆ 매출액규모 ◆								
1억원 미만	16	1 6.3	2	12.5	0	0.0	0	0.0
1~ 5억원 미만	80	4 5.0	14	17.5	2	2.5	7	8.8
5~ 10억원 미만	56	1 1.8	10	17.9	2	3.6	5	8.9
10~ 50억원 미만	185	12 6.5	44	23.8	4	2.2	7	3.8
50~100억원 미만	44	1 2.3	8	18.2	5	11.4	3	6.8
100억원 이상	59	1 1.7	10	16.9	3	5.1	3	5.1
모름/무응답	62	2 3.2	12	19.4	0	0.0	3	4.8

<부표 5> 중소기업 신용보증지원제도 중 기타 지원제도 활용

	기업 수	%
■ 전 체 ■	18	100
기술신용보증 기금	8	44.4
일반 신용보증	3	16.7
대출보증	1	5.6
일반금융기관 벤처기업 자금지원	1	5.6
창업자금 보증	1	5.6
신벤처 CB 보증제도	1	5.6
중소기업청 상호관리	1	5.6
중소기업 육성 기금	1	5.6
기타	1	5.6

<부표 6> 중소기업 판로·수출확대 지원제도 활용

	해외유명 규격인증획 득지원			일반 수출입금융 지원		수출자금 지원		수출기업화 지원		수출 신용보증 특례	
	기업 수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 전 체 ■	502	46	9.2	15	3.0	11	2.2	26	5.2	8	1.6
◆ 지역 별 ◆											
서울	219	12	5.5	4	1.8	3	1.4	4	1.8	0	0.0
인천/경기	142	17	12.0	10	7.0	4	2.8	9	6.3	6	4.2
경 상 도	70	7	10.0	1	1.4	0	0.0	7	10.0	1	1.4
전 라 도	17	2	11.8	0	0.0	1	5.9	3	17.6	1	5.9
충 청 도	49	8	16.3	0	0.0	2	4.1	2	4.1	0	0.0
강원/제주	5	0	0.0	0	0.0	1	20.0	1	20.0	0	0.0
◆ 업 종 별 ◆											
첨단제조업	178	30	16.9	4	2.2	5	2.8	16	9.0	5	2.8
일반제조업	144	12	8.3	9	6.3	3	2.1	4	2.8	2	1.4
SW/통신서비스	142	3	2.1	2	1.4	2	1.4	5	3.5	0	0.0
기타서비스	20	1	5.0	0	0.0	1	5.0	0	0.0	1	5.0
농/임/어업	2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 산업	16	0	0.0	0	0.0	0	0.0	1	6.3	0	0.0
◆ 벤처기업 확인연도 ◆											
1998년	13	1	7.7	0	0.0	1	7.7	0	0.0	0	0.0
1999년	53	6	11.3	6	11.3	1	1.9	2	3.8	1	1.9
2000년	140	15	10.7	3	2.1	5	3.6	5	3.6	2	1.4
2001년	296	24	8.1	6	2.0	4	1.4	19	6.4	5	1.7
◆ 자본금규모 ◆											
1억원 미만	28	4	14.3	0	0.0	0	0.0	3	10.7	1	3.6
1~ 5억원 미만	174	17	9.8	3	1.7	6	3.4	13	7.5	1	0.6
5~ 10억원 미만	107	10	9.3	5	4.7	2	1.9	3	2.8	1	0.9
10~ 50억원 미만	157	13	8.3	6	3.8	3	1.9	6	3.8	4	2.5
50~100억원 미만	10	0	0.0	0	0.0	0	0.0	0	0.0	1	10.0
100억원 이상	9	1	11.1	1	11.1	0	0.0	0	0.0	0	0.0
모름/무응답	17	1	5.9	0	0.0	0	0.0	1	5.9	0	0.0
◆ 매출액규모 ◆											
1억원 미만	16	2	12.5	0	0.0	0	0.0	2	12.5	0	0.0
1~ 5억원 미만	80	9	11.3	2	2.5	2	2.5	6	7.5	0	0.0
5~ 10억원 미만	56	4	7.1	1	1.8	1	1.8	3	5.4	1	1.8
10~ 50억원 미만	185	18	9.7	5	2.7	6	3.2	13	7.0	6	3.2
50~100억원 미만	44	7	15.9	3	6.8	1	2.3	2	4.5	0	0.0
100억원 이상	59	6	10.2	3	5.1	1	1.7	0	0.0	1	1.7
모름/무응답	62	0	0.0	1	1.6	0	0.0	0	0.0	0	0.0

<부표 7> 벤처기업 기술인력 지원제도 활용

	기업 수	교수·연구원 등의 휴직 및 겸직제도		병역특례 전문 연구요원 제도		스톡옵션제도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 전 체 ■	502	45	9.0	143	28.5	49	9.8
◆ 지역 별 ◆							
서울	219	14	6.4	70	32.0	25	11.4
인천/경기	142	15	10.6	34	23.9	12	8.5
경상도	70	4	5.7	11	15.7	6	8.6
전라도	17	6	35.3	5	29.4	0	0.0
충청도	49	3	6.1	21	42.9	6	12.2
강원/제주	5	3	60.0	2	40.0	0	0.0
◆ 업 종 별 ◆							
첨단제조업	178	16	9.0	54	30.3	22	12.4
일반제조업	144	12	8.3	26	18.1	8	5.6
SW/통신서비스	142	11	7.7	55	38.7	18	12.7
기타서비스	20	2	10.0	4	20.0	1	5.0
농/임/어업	2	1	50.0	1	50.0	0	0.0
기타 산업	16	3	18.8	3	18.8	0	0.0
◆ 벤처기업 확인연도 ◆							
1998년	13	1	7.7	7	53.8	1	7.7
1999년	53	3	5.7	21	39.6	8	15.1
2000년	140	10	7.1	41	29.3	13	9.3
2001년	296	31	10.5	74	25.0	27	9.1
◆ 자본금규모 ◆							
1억원 미만	28	5	17.9	7	25.0	2	7.1
1~ 5억원 미만	174	18	10.3	34	19.5	8	4.6
5~ 10억원 미만	107	7	6.5	28	26.2	11	10.3
10~ 50억원 미만	157	10	6.4	64	40.8	26	16.6
50~ 100억원 미만	10	0	0.0	7	70.0	2	20.0
100억원 이상	9	1	11.1	1	11.1	0	0.0
모름/무응답	17	4	23.5	2	11.8	0	0.0
◆ 매출액규모 ◆							
1억원 미만	16	5	31.3	1	6.3	0	0.0
1~ 5억원 미만	80	9	11.3	18	22.5	8	10.0
5~ 10억원 미만	56	5	8.9	12	21.4	8	14.3
10~ 50억원 미만	185	7	3.8	60	32.4	18	9.7
50~100억원 미만	44	5	11.4	20	45.5	5	11.4
100억원 이상	59	5	8.5	21	35.6	7	11.9
모름/무응답	62	9	14.5	11	17.7	3	4.8

<부표 8> 벤처기업 입지지원제도 활용

	기업 수	민간 벤처기업 집적시설		창업보육 센터		테크노 파크		소프트웨어 진흥센터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 전 체 ■	502	34	6.8	39	7.8	34	6.8	6	1.2
◆ 지역 별 ◆									
서울	219	9	4.1	8	3.7	6	2.7	3	1.4
인천/경기	142	13	9.2	7	4.9	21	14.8	2	1.4
경상도	70	2	2.9	6	8.6	3	4.3	0	0.0
전라도	17	1	5.9	6	35.3	2	11.8	1	5.9
충청도	49	7	14.3	12	24.5	2	4.1	0	0.0
강원/제주	5	2	40.0	0	0.0	0	0.0	0	0.0
◆ 업종 별 ◆									
첨단제조업	178	17	9.6	22	12.4	24	13.5	0	0.0
일반제조업	144	7	4.9	8	5.6	4	2.8	1	0.7
SW/통신서비스	142	8	5.6	7	4.9	3	2.1	5	3.5
기타서비스	20	1	5.0	1	5.0	3	15.0	0	0.0
농/임/어업	2	0	0.0	0	0.0	0	0.0	0	0.0
기타 산업	16	1	6.3	1	6.3	0	0.0	0	0.0
◆ 벤처기업 확인연도 ◆									
1998년	13	1	7.7	1	7.7	0	0.0	1	7.7
1999년	53	5	9.4	4	7.5	3	5.7	0	0.0
2000년	140	7	5.0	5	3.6	10	7.1	1	0.7
2001년	296	21	7.1	29	9.8	21	7.1	4	1.4
◆ 자본금규모 ◆									
1억원 미만	28	2	7.1	4	14.3	6	21.4	1	3.6
1~ 5억원 미만	174	9	5.2	17	9.8	12	6.9	2	1.1
5~ 10억원 미만	107	3	2.8	8	7.5	6	5.6	1	0.9
10~ 50억원 미만	157	18	11.5	10	6.4	10	6.4	2	1.3
50~100억원 미만	10	1	10.0	0	0.0	0	0.0	0	0.0
100억원 이상	9	0	0.0	0	0.0	0	0.0	0	0.0
모름/무응답	17	1	5.9	0	0.0	0	0.0	0	0.0
◆ 매출액규모 ◆									
1억원 미만	16	3	18.8	3	18.8	1	6.3	0	0.0
1~ 5억원 미만	80	8	10.0	10	12.5	6	7.5	1	1.3
5~ 10억원 미만	56	1	1.8	6	10.7	3	5.4	0	0.0
10~ 50억원 미만	185	13	7.0	11	5.9	16	8.6	3	1.6
50~100억원 미만	44	5	11.4	1	2.3	3	6.8	0	0.0
100억원 이상	59	3	5.1	2	3.4	0	0.0	0	0.0
모름/무응답	62	1	1.6	6	9.7	5	8.1	2	3.2

<부표 9> 벤처기업 입지지원제도 중 기타지원제도 활용

	기업 수	%
■ 전 체 ■	12	100
협동화 공장	2	16.7
교내 시설	1	8.3
(주)대덕밸리 협동화 사업단지	1	8.3
구로 사무공단	1	8.3
벤처타운 입주	1	8.3
농공단지	1	8.3
오창 과학산업단지	1	8.3
고용안정센터	1	8.3
ERT	1	8.3
시지원	1	8.3
검증업색조합	1	8.3

<부표 10> 벤처기업 판로·수출확대 지원제도 활용

	방송광고 지원			벤처기업 수출보험 우대 지원		수출 벤처기업 법률 지원		벤처기업 해외진출 지원센터 지원	
	기업 수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 전 체 ■	502	16	3.2	9	1.8	10	2.0	21	4.2
◆ 지역 별 ◆									
서울	219	8	3.7	3	1.4	2	0.9	0	0.0
인천/경기	142	5	3.5	4	2.8	4	2.8	13	9.2
경 상 도	70	1	1.4	0	0.0	2	2.9	2	2.9
전 라 도	17	1	5.9	0	0.0	0	0.0	3	17.6
충 청 도	49	1	2.0	2	4.1	2	4.1	3	6.1
강원/제주	5	0	0.0	0	0.0	0	0.0	0	0.0
◆ 업 종 별 ◆									
첨단제조업	178	8	4.5	3	1.7	4	2.2	7	3.9
일반제조업	144	5	3.5	4	2.8	3	2.1	9	6.3
SW/통신서비스	142	2	1.4	2	1.4	1	0.7	4	2.8
기타서비스	20	1	5.0	0	0.0	1	5.0	1	5.0
농/임/어업	2	0	0.0	0	0.0	0	0.0	0	0.0
기타 산업	16	0	0.0	0	0.0	1	6.3	0	0.0
◆ 벤처기업 확인연도 ◆									
1998년	13	0	0.0	0	0.0	0	0.0	0	0.0
1999년	53	1	1.9	2	3.8	3	5.7	5	9.4
2000년	140	4	2.9	3	2.1	2	1.4	3	2.1
2001년	296	11	3.7	4	1.4	5	1.7	13	4.4
◆ 자본금규모 ◆									
1억원 미만	28	1	3.6	0	0.0	1	3.6	1	3.6
1~ 5억원 미만	174	5	2.9	2	1.1	5	2.9	8	4.6
5~ 10억원 미만	107	5	4.7	2	1.9	3	2.8	6	5.6
10~ 50억원 미만	157	5	3.2	5	3.2	1	0.6	4	2.5
50~100억원 미만	10	0	0.0	0	0.0	0	0.0	1	10.0
100억원 이상	9	0	0.0	0	0.0	0	0.0	0	0.0
모름/무응답	17	0	0.0	0	0.0	0	0.0	1	5.9
◆ 매출액규모 ◆									
1억원 미만	16	0	0.0	0	0.0	1	6.3	2	12.5
1~ 5억원 미만	80	2	2.5	0	0.0	3	3.8	4	5.0
5~ 10억원 미만	56	4	7.1	2	3.6	1	1.8	3	5.4
10~ 50억원 미만	185	4	2.2	2	1.1	4	2.2	10	5.4
50~100억원 미만	44	2	4.5	2	4.5	0	0.0	2	4.5
100억원 이상	59	3	5.1	3	5.1	1	1.7	0	0.0
모름/무응답	62	1	1.6	0	0.0	0	0.0	0	0.0

<부표 11> 벤처기업 판로·수출지원제도 활용

	기업 수	%
■ 전 체 ■	6	100
KOTRA 지사화사업	2	33.3
수출지원 기업화 지원제도	1	16.7
중소기업청 지원	1	16.7
카탈로그 지원	1	16.7
관공서 납품 우대 적용	1	16.7

<부표 12> 벤처기업 기타지원제도 활용

	소자본 주식회사 설립지원			창업 보육센터 입주기업 공장등록		기술담보 제도 및 가치평가제도	
	기업 수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 전 체 ■	502	12	2.4	18	3.6	74	14.7
◆ 지역 별 ◆							
서울	219	4	1.8	4	1.8	28	12.8
인천/경기	142	3	2.1	4	2.8	26	18.3
경 상 도	70	0	0.0	3	4.3	10	14.3
전 라 도	17	1	5.9	1	5.9	1	5.9
충 청 도	49	2	4.1	6	12.2	7	14.3
강원/제주	5	2	40.0	0	0.0	2	40.0
◆ 업 종 별 ◆							
첨단제조업	178	4	2.2	9	5.1	31	17.4
일반제조업	144	3	2.1	3	2.1	17	11.8
SW/통신서비스	142	3	2.1	3	2.1	22	15.5
기타서비스	20	2	10.0	1	5.0	2	10.0
농/임/어업	2	0	0.0	0	0.0	1	50.0
기타 산업	16	0	0.0	2	12.5	1	6.3
◆ 벤처기업 확인연도 ◆							
1998년	13	0	0.0	1	7.7	1	7.7
1999년	53	2	3.8	1	1.9	7	13.2
2000년	140	1	0.7	4	2.9	28	20.0
2001년	296	9	3.0	12	4.1	38	12.8
◆ 자본금규모 ◆							
1억원 미만	28	2	7.1	3	10.7	1	3.6
1~ 5억원 미만	174	4	2.3	7	4.0	28	16.1
5~ 10억원 미만	107	2	1.9	6	5.6	17	15.9
10~ 50억원 미만	157	3	1.9	1	0.6	24	15.3
50~100억원 미만	10	0	0.0	0	0.0	1	10.0
100억원 이상	9	0	0.0	1	11.1	0	0.0
모름/무응답	17	1	5.9	0	0.0	3	17.6
◆ 매출액규모 ◆							
1억원 미만	16	3	18.8	3	18.8	2	12.5
1~ 5억원 미만	80	1	1.3	5	6.3	14	17.5
5~ 10억원 미만	56	1	1.8	5	8.9	11	19.6
10~ 50억원 미만	185	2	1.1	3	1.6	26	14.1
50~100억원 미만	44	1	2.3	0	0.0	7	15.9
100억원 이상	59	1	1.7	1	1.7	8	13.6
모름/무응답	62	3	4.8	1	1.6	6	9.7

<부표 13>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 정비 정도

	① 매우 잘 정비되어 있다.		② 대체로 잘 정비 되어 있다		①+②		③ 아직 보완되어야 할 점이 더러 있다		
	기업수	%	기업수	%	기업수	%	기업수	%	
■ 전 체 ■	502	10	2.0	124	24.7	134	26.7	300	59.8
◆ 지역 별 ◆									
서울	219	7	3.2	45	20.5	52	23.7	133	60.7
인천/경기	142	2	1.4	33	23.2	35	24.6	82	57.7
경상도	70	1	1.4	19	27.1	20	28.6	44	62.9
전라도	17	0	0.0	6	35.3	6	35.3	10	58.8
충청도	49	0	0.0	20	40.8	20	40.8	28	57.1
강원/제주	5	0	0.0	1	20.0	1	20.0	3	60.0
◆ 업 종 별 ◆									
첨단제조업	178	7	3.9	49	27.5	56	31.5	103	57.9
일반제조업	144	2	1.4	40	27.8	42	29.2	83	57.6
SW/통신서비스	142	1	0.7	25	17.6	26	18.3	91	64.1
기타서비스	20	0	0.0	6	30.0	6	30.0	13	65.0
농/임/어업	2	0	0.0	1	50.0	1	50.0	1	50.0
기타 산업	16	0	0.0	3	18.8	3	18.8	9	56.3
◆ 벤처기업 확인연도 ◆									
1998년	13	0	0.0	4	30.8	4	30.8	8	61.5
1999년	53	1	1.9	17	32.1	18	34.0	32	60.4
2000년	140	4	2.9	34	24.3	38	27.1	88	62.9
2001년	296	5	1.7	69	23.3	74	25.0	172	58.1
◆ 자본금규모 ◆									
1억원 미만	28	0	0.0	7	25.0	7	25.0	21	75.0
1~ 5억원 미만	174	3	1.7	50	28.7	53	30.5	96	55.2
5~ 10억원 미만	107	3	2.8	27	25.2	30	28.0	64	59.8
10~ 50억원 미만	157	3	1.9	34	21.7	37	23.6	96	61.1
50~100억원 미만	10	1	10.0	1	10.0	2	20.0	8	80.0
100억원 이상	9	0	0.0	2	22.2	2	22.2	5	55.6
모름/무응답	17	0	0.0	3	17.6	3	17.6	10	58.8
◆ 매출액규모 ◆									
1억원 미만	16	0	0.0	5	31.3	5	31.3	9	56.3
1~ 5억원 미만	80	2	2.5	17	21.3	19	23.8	47	58.8
5~ 10억원 미만	56	0	0.0	15	26.8	15	26.8	35	62.5
10~ 50억원 미만	185	5	2.7	49	26.5	54	29.2	106	57.3
50~100억원 미만	44	0	0.0	11	25.0	11	25.0	27	61.4
100억원 이상	59	3	5.1	13	22.0	16	27.1	40	67.8
모름/무응답	62	0	0.0	14	22.6	14	22.6	36	58.1

<부표 13>의 계속

	④ 전혀 정비가 되어 있지 않다		③+④		모름/ 무응답		계	평균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 전 체 ■	64	12.7	364	72.5	4	0.8	1000	38.65
◆ 지역 별 ◆								
서울	32	14.6	165	75.3	2	0.9	1000	37.45
인천/경기	25	17.6	107	75.4	0	0.0	1000	36.12
경상도	6	8.6	50	71.4	0	0.0	1000	40.44
전라도	0	0.0	10	58.8	1	5.9	1000	45.79
충청도	1	2.0	29	59.2	0	0.0	1000	46.21
강원/제주	0	0.0	3	60.0	1	20.0	1000	41.63
◆ 업 종 별 ◆								
첨단제조업	18	10.1	121	68.0	1	0.6	1000	41.77
일반제조업	18	12.5	101	70.1	1	0.7	1000	39.36
SW/통신서비스	25	17.6	116	81.7	0	0.0	1000	33.77
기타서비스	1	5.0	14	70.0	0	0.0	1000	41.63
농/임/어업	0	0.0	1	50.0	0	0.0	1000	49.95
기타 산업	2	12.5	11	68.8	2	12.5	1000	35.68
◆ 벤처기업 확인연도 ◆								
1998년	1	7.7	9	69.2	0	0.0	1000	40.98
1999년	2	3.8	34	64.2	1	1.9	1000	44.19
2000년	14	10.0	102	72.9	0	0.0	1000	39.96
2001년	47	15.9	219	74.0	3	1.0	1000	36.94
◆ 자본금규모 ◆								
1억원 미만	0	0.0	21	75.0	0	0.0	1000	41.62
1~ 5억원 미만	22	12.6	118	67.8	3	1.7	1000	39.92
5~ 10억원 미만	13	12.1	77	72.0	0	0.0	1000	39.53
10~ 50억원 미만	23	14.6	119	75.8	1	0.6	1000	36.93
50~100억원 미만	0	0.0	8	80.0	0	0.0	1000	43.3
100억원 이상	2	22.2	7	77.8	0	0.0	1000	33.3
모름/무응답	4	23.5	14	82.4	0	0.0	1000	31.34
◆ 매출액규모 ◆								
1억원 미만	2	12.5	11	68.8	0	0.0	1000	39.54
1~ 5억원 미만	14	17.5	61	76.3	0	0.0	1000	36.22
5~ 10억원 미만	6	10.7	41	73.2	0	0.0	1000	38.65
10~ 50억원 미만	22	11.9	128	69.2	3	1.6	1000	40.07
50~100억원 미만	6	13.6	33	75.0	0	0.0	1000	37.08
100억원 이상	3	5.1	43	72.9	0	0.0	1000	42.34
모름/무응답	11	17.7	47	75.8	1	1.6	1000	34.94

<부표 14>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 활용 정도

	①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② 비교적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①+②		③ 활용이 부진하다		④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		③+④		계	평균 점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 전 체 ■	502	9	1.8	154	30.7	163	32.5	185	36.9	154	30.7	339	67.5	100.0	34.5
◆ 지역 별 ◆															
서울	219	4	1.8	45	20.5	49	22.4	92	42.0	78	35.6	170	77.6	100.0	29.5
인천/경기	142	1	0.7	48	33.8	49	34.5	45	31.7	48	33.8	93	65.5	100.0	33.8
경상도	70	1	1.4	27	38.6	28	40.0	25	35.7	17	24.3	42	60.0	100.0	39.0
전라도	17	1	5.9	8	47.1	9	52.9	4	23.5	4	23.5	8	47.1	100.0	45.1
충청도	49	2	4.1	25	51.0	27	55.1	15	30.6	7	14.3	22	44.9	100.0	48.3
강원/제주	5	0	0.0	1	20.0	1	20.0	4	80.0	0	0.0	4	80.0	100.0	40.0
◆ 업 종 별 ◆															
첨단제조업	178	3	1.7	70	39.3	73	41.0	63	35.4	42	23.6	105	59.0	100.0	39.7
일반제조업	144	2	1.4	48	33.3	50	34.7	47	32.6	47	32.6	94	65.3	100.0	34.5
SW/통신서비스	142	3	2.1	30	21.1	33	23.2	58	40.8	51	35.9	109	76.8	100.0	29.8
기타서비스	20	0	0.0	2	10.0	2	10.0	12	60.0	6	30.0	18	90.0	100.0	26.6
농/임/어업	2	1	50.0	0	0.0	1	50.0	1	50.0	0	0.0	1	50.0	100.0	66.7
기타 산업	16	0	0.0	4	25.0	4	25.0	4	25.0	8	50.0	12	75.0	100.0	25.0
◆ 벤처기업 확인연도 ◆															
1998년	13	0	0.0	4	30.8	4	30.8	6	46.2	3	23.1	9	69.2	100.0	35.9
1999년	53	1	1.9	21	39.6	22	41.5	18	34.0	13	24.5	31	58.5	100.0	39.6
2000년	140	2	1.4	44	31.4	46	32.9	57	40.7	37	26.4	94	67.1	100.0	35.9
2001년	296	6	2.0	85	28.7	91	30.7	104	35.1	101	34.1	205	69.3	100.0	32.9
◆ 자본금규모 ◆															
1억원 미만	28	2	7.1	5	17.9	7	25.0	12	42.9	9	32.1	21	75.0	100.0	33.3
1~ 5억원 미만	174	5	2.9	53	30.5	58	33.3	65	37.4	51	29.3	116	66.7	100.0	35.6
5~ 10억원 미만	107	1	0.9	37	34.6	38	35.5	40	37.4	29	27.1	69	64.5	100.0	36.4
10~ 50억원 미만	157	1	0.6	49	31.2	50	31.8	58	36.9	49	31.2	107	68.2	100.0	33.7
50~100억원 미만	10	0	0.0	3	30.0	3	30.0	3	30.0	4	40.0	7	70.0	100.0	30.0
100억원 이상	9	0	0.0	2	22.2	2	22.2	2	22.2	5	55.6	7	77.8	100.0	22.2
모름/무응답	17	0	0.0	5	29.4	5	29.4	5	29.4	7	41.2	12	70.6	100.0	29.4
◆ 매출액규모 ◆															
1억원 미만	16	1	6.3	3	18.8	4	25.0	8	50.0	4	25.0	12	75.0	100.0	35.4
1~ 5억원 미만	80	2	2.5	22	27.5	24	30.0	31	38.8	25	31.3	56	70.0	100.0	33.7
5~ 10억원 미만	56	2	3.6	17	30.4	19	33.9	24	42.9	13	23.2	37	66.1	100.0	38.1
10~ 50억원 미만	185	2	1.1	60	32.4	62	33.5	68	36.8	55	29.7	123	66.5	100.0	34.9
50~100억원 미만	44	0	0.0	14	31.8	14	31.8	20	45.5	10	22.7	30	68.2	100.0	36.3
100억원 이상	59	1	1.7	22	37.3	23	39.0	13	22.0	23	39.0	36	61.0	100.0	33.9
모름/무응답	62	1	1.6	16	25.8	17	27.4	21	33.9	24	38.7	45	72.6	100.0	30.1

<부표 15>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 활용 때 도움 받은 경로

	회사 내의 전문 인력			벤처기업 지원제도와 관련한 전문지		신문·방송· 인터넷		은행	
	기업 수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 전 체 ■	163	39	23.9	38	23.3	34	20.9	27	16.6
◆ 지역 별 ◆									
서울	49	16	32.7	9	18.4	12	24.5	6	12.2
인천/경기	49	10	20.4	15	30.6	10	20.4	4	8.2
경상도	28	2	7.1	4	14.3	6	21.4	11	39.3
전라도	9	3	33.3	1	11.1	3	33.3	0	0.0
충청도	27	8	29.6	9	33.3	2	7.4	6	22.2
강원/제주	1	0	0.0	0	0.0	1	100.0	0	0.0
◆ 업 종 별 ◆									
첨단제조업	73	18	24.7	12	16.4	16	21.9	14	19.2
일반제조업	50	7	14.0	17	34.0	11	22.0	8	16.0
SW/통신서비스	33	12	36.4	7	21.2	7	21.2	3	9.1
기타서비스	2	0	0.0	1	50.0	0	0.0	0	0.0
농/임/어업	1	0	0.0	1	100.0	0	0.0	0	0.0
기타 산업	4	2	50.0	0	0.0	0	0.0	2	50.0
◆ 벤처기업 확인연도 ◆									
1998년	4	1	25.0	0	0.0	1	25.0	0	0.0
1999년	22	5	22.7	7	31.8	2	9.1	5	22.7
2000년	46	12	26.1	16	34.8	7	15.2	5	10.9
2001년	91	21	23.1	15	16.5	24	26.4	17	18.7
◆ 자본금규모 ◆									
1억원 미만	7	2	28.6	2	28.6	0	0.0	0	0.0
1~ 5억원 미만	58	11	19.0	16	27.6	12	20.7	11	19.0
5~ 10억원 미만	38	10	26.3	10	26.3	7	18.4	7	18.4
10~ 50억원 미만	50	11	22.0	7	14.0	14	28.0	8	16.0
50~100억원 미만	3	2	66.7	1	33.3	0	0.0	0	0.0
100억원 이상	2	1	50.0	0	0.0	1	50.0	0	0.0
모름/무응답	5	2	40.0	2	40.0	0	0.0	1	20.0
◆ 매출액규모 ◆									
1억원 미만	4	3	75.0	1	25.0	0	0.0	0	0.0
1~ 5억원 미만	24	7	29.2	6	25.0	3	12.5	3	12.5
5~ 10억원 미만	19	1	5.3	6	31.6	3	15.8	3	15.8
10~ 50억원 미만	62	13	21.0	14	22.6	16	25.8	12	19.4
50~100억원 미만	14	4	28.6	4	28.6	2	14.3	3	21.4
100억원 이상	23	6	26.1	4	17.4	6	26.1	4	17.4
모름/무응답	17	5	29.4	3	17.6	4	23.5	2	11.8

<부표 15>의 계속

	조합 등 경제단체		정부 설명회		다른 벤처기업		기타		계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 전 체 ■	11	6.7	9	5.5	3	1.8	2	1.2	100
◆ 지역 별 ◆									
서울	4	8.2	1	2.0	0	0.0	1	2.0	100
인천/경기	5	10.2	4	8.2	1	2.0	0	0.0	100
경 상 도	1	3.6	3	10.7	0	0.0	1	3.6	100
전 라 도	0	0.0	1	11.1	1	11.1	0	0.0	100
충 청 도	1	3.7	0	0.0	1	3.7	0	0.0	100
강원/제주	0	0.0	0	0.0	0	0.0	0	0.0	100
◆ 업 종 별 ◆									
첨단제조업	4	5.5	7	9.6	1	1.4	1	1.4	100
일반제조업	4	8.0	1	2.0	2	4.0	0	0.0	100
SW/통신서비스	2	6.1	1	3.0	0	0.0	1	3.0	100
기타서비스	1	50.0	0	0.0	0	0.0	0	0.0	100
농/임/어업	0	0.0	0	0.0	0	0.0	0	0.0	100
기타 산업	0	0.0	0	0.0	0	0.0	0	0.0	100
◆ 벤처기업확인연도 ◆									
1998년	2	50.0	0	0.0	0	0.0	0	0.0	100
1999년	1	4.5	1	4.5	1	4.5	0	0.0	100
2000년	1	2.2	4	8.7	1	2.2	0	0.0	100
2001년	7	7.7	4	4.4	1	1.1	2	2.2	100
◆ 자본금규모 ◆									
1억원 미만	0	0.0	3	42.9	0	0.0	0	0.0	100
1~ 5억원 미만	2	3.4	4	6.9	1	1.7	1	1.7	100
5~ 10억원 미만	2	5.3	1	2.6	0	0.0	1	2.6	100
10~ 50억원 미만	7	14.0	1	2.0	2	4.0	0	0.0	100
50~ 100억원 미만	0	0.0	0	0.0	0	0.0	0	0.0	100
100억원 이상	0	0.0	0	0.0	0	0.0	0	0.0	100
모름/무응답	0	0.0	0	0.0	0	0.0	0	0.0	100
◆ 매출액규모 ◆									
1억원 미만	0	0.0	0	0.0	0	0.0	0	0.0	100
1~ 5억원 미만	1	4.2	4	16.7	0	0.0	0	0.0	100
5~ 10억원 미만	1	5.3	3	15.8	1	5.3	1	5.3	100
10~ 50억원 미만	5	8.1	1	1.6	1	1.6	0	0.0	100
50~ 100억원 미만	1	7.1	0	0.0	0	0.0	0	0.0	100
100억원 이상	2	8.7	0	0.0	1	4.3	0	0.0	100
모름/무응답	1	5.9	1	5.9	0	0.0	1	5.9	100

<부표 16>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이유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용하지 않음			제도가 복잡하거나 신청절차가 복잡하여 이용하기가 어려움		구체적으로 일반지원 제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모름		지원대상이 아님		모름/무응답		계
	기업 수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 전 체 ■	339	108	31.9	105	31.0	84	24.8	41	12.1	1	0.3	100.0
◆ 지역 별 ◆												
서울	170	59	34.7	47	27.6	37	21.8	27	15.9	0	0.0	100.0
인천/경기	93	26	28.0	35	37.6	26	28.0	6	6.5	0	0.0	100.0
경상도	42	10	23.8	13	31.0	12	28.6	6	14.3	1	2.4	100.0
전라도	8	3	37.5	2	25.0	2	25.0	1	12.5	0	0.0	100.0
충청도	22	9	40.9	6	27.3	6	27.3	1	4.5	0	0.0	100.0
강원/제주	4	1	25.0	2	50.0	1	25.0	0	0.0	0	0.0	100.0
◆ 업 종 별 ◆												
첨단제조업	105	38	36.2	30	28.6	32	30.5	5	4.8	0	0.0	100.0
일반제조업	94	25	26.6	34	36.2	25	26.6	9	9.6	1	1.1	100.0
SW/통신서비스	109	30	27.5	34	31.2	21	19.3	24	22.0	0	0.0	100.0
기타서비스	18	7	38.9	4	22.2	5	27.8	2	11.1	0	0.0	100.0
농/임/어업	1	1	100.0	0	0.0	0	0.0	0	0.0	0	0.0	100.0
기타 산업	12	7	58.3	3	25.0	1	8.3	1	8.3	0	0.0	100.0
◆ 벤처기업 확인연도 ◆												
1998년	9	3	33.3	4	44.4	2	22.2	0	0.0	0	0.0	100.0
1999년	31	13	41.9	7	22.6	7	22.6	3	9.7	1	3.2	100.0
2000년	94	21	22.3	33	35.1	24	25.5	16	17.0	0	0.0	100.0
2001년	205	71	34.6	61	29.8	51	24.9	22	10.7	0	0.0	100.0
◆ 자본금규모 ◆												
1억원 미만	21	8	38.1	7	33.3	6	28.6	0	0.0	0	0.0	100.0
1~ 5억원 미만	116	32	27.6	41	35.3	31	26.7	11	9.5	1	0.9	100.0
5~ 10억원 미만	69	22	31.9	19	27.5	18	26.1	10	14.5	0	0.0	100.0
10~ 50억원 미만	107	37	34.6	32	29.9	23	21.5	15	14.0	0	0.0	100.0
50~100억원 미만	7	4	57.1	1	14.3	1	14.3	1	14.3	0	0.0	100.0
100억원 이상	7	3	42.9	2	28.6	0	0.0	2	28.6	0	0.0	100.0
모름/무응답	12	2	16.7	3	25.0	5	41.7	2	16.7	0	0.0	100.0
◆ 매출액규모 ◆												
1억원 미만	12	6	50.0	4	33.3	0	0.0	2	16.7	0	0.0	100.0
1~ 5억원 미만	56	18	32.1	15	26.8	14	25.0	9	16.1	0	0.0	100.0
5~ 10억원 미만	37	10	27.0	12	32.4	11	29.7	4	10.8	0	0.0	100.0
10~ 50억원 미만	123	39	31.7	36	29.3	33	26.8	14	11.4	1	0.8	100.0
50~100억원 미만	30	7	23.3	11	36.7	10	33.3	2	6.7	0	0.0	100.0
100억원 이상	36	17	47.2	10	27.8	5	13.9	4	11.1	0	0.0	100.0
모름/무응답	45	11	24.4	17	37.8	11	24.4	6	13.3	0	0.0	100.0

<부표 17>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 효과 정도

	① 매우 효과가 있다			② 비교적 효과가 있다		①+②		③ 별로 효과가 없다		④ 전혀 효과가 없다		③+④		계	평균
	기업 수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 전 체 ■	502	16	3.2	217	43.2	233	46.4	197	39.2	72	14.3	269	53.6	100.0	45.0
◆ 지역 별 ◆															
서울	219	7	3.2	71	32.4	78	35.6	102	46.6	39	17.8	141	64.4	100.0	40.3
인천/경기	142	1	0.7	61	43.0	62	43.7	58	40.8	22	15.5	80	56.3	100.0	42.9
경상도	70	3	4.3	34	48.6	37	52.9	23	32.9	10	14.3	33	47.1	100.0	47.6
전라도	17	1	5.9	13	76.5	14	82.4	3	17.6	0	0.0	3	17.6	100.0	62.7
충청도	49	4	8.2	34	69.4	38	77.6	10	20.4	1	2.0	11	22.4	100.0	61.2
강원/제주	5	0	0.0	4	80.0	4	80.0	1	20.0	0	0.0	1	20.0	100.0	59.9
◆ 업 종 별 ◆															
첨단제조업	178	8	4.5	92	51.7	100	56.2	67	37.6	11	6.2	78	43.8	100.0	51.5
일반제조업	144	2	1.4	64	44.4	66	45.8	56	38.9	22	15.3	78	54.2	100.0	43.9
SW/통신서비스	142	5	3.5	45	31.7	50	35.2	61	43.0	31	21.8	92	64.8	100.0	38.9
기타서비스	20	0	0.0	7	35.0	7	35.0	9	45.0	4	20.0	13	65.0	100.0	38.3
농/임/어업	2	1	50.0	0	0.0	1	50.0	1	50.0	0	0.0	1	50.0	100.0	66.7
기타 산업	16	0	0.0	9	56.3	9	56.3	3	18.8	4	25.0	7	43.8	100.0	43.7
◆ 벤처기업 확인연도 ◆															
1998년	13	0	0.0	5	38.5	5	38.5	8	61.5	0	0.0	8	61.5	100.0	46.1
1999년	53	1	1.9	32	60.4	33	62.3	17	32.1	3	5.7	20	37.7	100.0	52.8
2000년	140	8	5.7	57	40.7	65	46.4	56	40.0	19	13.6	75	53.6	100.0	46.2
2001년	296	7	2.4	123	41.6	130	43.9	116	39.2	50	16.9	166	56.1	100.0	43.1
◆ 자본금규모 ◆															
1억원 미만	28	1	3.6	13	46.4	14	50.0	13	46.4	1	3.6	14	50.0	100.0	50.0
1~ 5억원 미만	174	9	5.2	76	43.7	85	48.9	63	36.2	26	14.9	89	51.1	100.0	46.3
5~ 10억원 미만	107	2	1.9	48	44.9	50	46.7	45	42.1	12	11.2	57	53.3	100.0	45.8
10~ 50억원 미만	157	4	2.5	64	40.8	68	43.3	61	38.9	28	17.8	89	56.7	100.0	42.6
50~100억원 미만	10	0	0.0	3	30.0	3	30.0	7	70.0	0	0.0	7	70.0	100.0	43.3
100억원 이상	9	0	0.0	4	44.4	4	44.4	4	44.4	1	11.1	5	55.6	100.0	44.4
모름/무응답	17	0	0.0	9	52.9	9	52.9	4	23.5	4	23.5	8	47.1	100.0	43.1
◆ 매출액규모 ◆															
1억원 미만	16	0	0.0	7	43.8	7	43.8	6	37.5	3	18.8	9	56.3	100.0	41.6
1~ 5억원 미만	80	5	6.3	35	43.8	40	50.0	28	35.0	12	15.0	40	50.0	100.0	47.0
5~ 10억원 미만	56	2	3.6	22	39.3	24	42.9	24	42.9	8	14.3	32	57.1	100.0	44.0
10~ 50억원 미만	185	5	2.7	79	42.7	84	45.4	76	41.1	25	13.5	101	54.6	100.0	44.8
50~100억원 미만	44	0	0.0	25	56.8	25	56.8	16	36.4	3	6.8	19	43.2	100.0	50.0
100억원 이상	59	3	5.1	24	40.7	27	45.8	26	44.1	6	10.2	32	54.2	100.0	46.9
모름/무응답	62	1	1.6	25	40.3	26	41.9	21	33.9	15	24.2	36	58.1	100.0	39.8

<부표 18>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 중 가장 도움이 된 제도

	금융 지원제도		신용보증 지원제도		기술인력 지원제도		임지 지원제도		관료 및 수출 지원제도		기타 지원		모름/ 무응답		평균 점	
	기업 수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 전 체 ■	233	127	54.5	63	27.0	21	9.0	8	3.4	6	2.6	7	3.0	1	0.4	100.0
◆ 지역 별 ◆																
서울	78	40	51.3	20	25.6	11	14.1	2	2.6	2	2.6	3	3.8	0	0.0	100.0
인천/경기	62	29	46.8	21	33.9	7	11.3	1	1.6	2	3.2	2	3.2	0	0.0	100.0
경상도	37	27	73.0	5	13.5	2	5.4	1	2.7	0	0.0	2	5.4	0	0.0	100.0
전라도	14	6	42.9	5	35.7	0	0.0	2	14.3	0	0.0	0	0.0	1	7.1	100.0
충청도	38	22	57.9	11	28.9	1	2.6	2	5.3	2	5.3	0	0.0	0	0.0	100.0
강원/제주	4	3	75.0	1	25.0	0	0.0	0	0.0	0	0.0	0	0.0	0	0.0	100.0
◆ 업 종 별 ◆																
첨단제조업	100	50	50.0	31	31.0	9	9.0	3	3.0	4	4.0	2	2.0	1	1.0	100.0
일반제조업	66	41	62.1	17	25.8	1	1.5	2	3.0	2	3.0	3	4.5	0	0.0	100.0
SW/통신서비스	50	28	56.0	11	22.0	9	18.0	1	2.0	0	0.0	1	2.0	0	0.0	100.0
기타서비스	7	1	14.3	2	28.6	2	28.6	1	14.3	0	0.0	1	14.3	0	0.0	100.0
농/임/어업	1	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00.0
기타 산업	9	6	66.7	2	22.2	0	0.0	1	11.1	0	0.0	0	0.0	0	0.0	100.0
◆ 벤처기업 확인연도 ◆																
1998년	5	2	40.0	1	20.0	1	20.0	0	0.0	0	0.0	1	20.0	0	0.0	100.0
1999년	33	20	60.6	6	18.2	4	12.1	0	0.0	0	0.0	2	6.1	1	3.0	100.0
2000년	65	37	56.9	17	26.2	7	10.8	1	1.5	1	1.5	2	3.1	0	0.0	100.0
2001년	130	68	52.3	39	30.0	9	6.9	7	5.4	5	3.8	2	1.5	0	0.0	100.0
◆ 자본금규모 ◆																
1억원 미만	14	7	50.0	4	28.6	0	0.0	1	7.1	1	7.1	0	0.0	1	7.1	100.0
1~ 5억원 미만	85	47	55.3	20	23.5	9	10.6	4	4.7	3	3.5	2	2.4	0	0.0	100.0
5~ 10억원 미만	50	28	56.0	16	32.0	3	6.0	2	4.0	1	2.0	0	0.0	0	0.0	100.0
10~ 50억원 미만	68	40	58.8	17	25.0	8	11.8	0	0.0	0	0.0	3	4.4	0	0.0	100.0
50~100억원 미만	3	2	66.7	0	0.0	0	0.0	1	33.3	0	0.0	0	0.0	0	0.0	100.0
100억원 이상	4	1	25.0	2	50.0	0	0.0	0	0.0	0	0.0	1	25.0	0	0.0	100.0
모름/무응답	9	2	22.2	4	44.4	1	11.1	0	0.0	1	11.1	1	11.1	0	0.0	100.0
◆ 매출액규모 ◆																
1억원 미만	7	4	57.1	1	14.3	0	0.0	2	28.6	0	0.0	0	0.0	0	0.0	100.0
1~ 5억원 미만	40	20	50.0	10	25.0	4	10.0	3	7.5	1	2.5	1	2.5	1	2.5	100.0
5~ 10억원 미만	24	13	54.2	8	33.3	3	12.5	0	0.0	0	0.0	0	0.0	0	0.0	100.0
10~ 50억원 미만	84	45	53.6	26	31.0	7	8.3	2	2.4	3	3.6	1	1.2	0	0.0	100.0
50~100억원 미만	25	13	52.0	6	24.0	3	12.0	0	0.0	1	4.0	2	8.0	0	0.0	100.0
100억원 이상	27	15	55.6	7	25.9	3	11.1	0	0.0	1	3.7	1	3.7	0	0.0	100.0
모름/무응답	26	17	65.4	5	19.2	1	3.8	1	3.8	0	0.0	2	7.7	0	0.0	100.0

<부표 19>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의 효과가 없는 이유

	벤처기업 일반지원 제도를 이용하지 않았다			벤처기업 지원제도의 지원 내용이 미흡함			중소기업 일반지원 제도로도 충분하다			지원 기준이 엄격하고 절차가 까다롭다	
	기업 수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 전 체 ■	209	140	52.0	102	37.9	11	4.1	8	3.0		
◆ 지역 별 ◆											
서울	141	75	53.2	55	39.0	5	3.5	3	2.1		
인천/경기	80	42	52.5	30	37.5	3	3.8	3	3.8		
경 상 도	33	16	48.5	11	33.3	2	6.1	2	6.1		
전 라 도	3	1	33.3	1	33.3	1	33.3	0	0.0		
충 청 도	11	6	54.5	4	36.4	0	0.0	0	0.0		
강원/제주	1	0	0.0	1	100.0	0	0.0	0	0.0		
◆ 업 종 별 ◆											
첨단제조업	78	30	38.5	42	53.8	0	0.0	1	1.3		
일반제조업	78	46	59.0	22	28.2	5	6.4	4	5.1		
SW/통신서비스	92	53	57.6	30	32.6	5	5.4	3	3.3		
기타서비스	13	5	38.5	6	46.2	1	7.7	0	0.0		
농/임/어업	1	0	0.0	1	100.0	0	0.0	0	0.0		
기타 산업	7	6	85.7	1	14.3	0	0.0	0	0.0		
◆ 벤처기업 확인연도 ◆											
1998년	8	4	50.0	3	37.5	1	12.5	0	0.0		
1999년	20	4	20.0	12	60.0	1	5.0	1	5.0		
2000년	75	40	53.3	24	32.0	5	6.7	4	5.3		
2001년	166	92	55.4	63	38.0	4	2.4	3	1.8		
◆ 자본금규모 ◆											
1억원 미만	14	6	42.9	6	42.9	2	14.3	0	0.0		
1~ 5억원 미만	89	44	49.4	39	43.8	2	2.2	1	1.1		
5~ 10억원 미만	57	33	57.9	21	36.8	2	3.5	0	0.0		
10~ 50억원 미만	89	45	50.6	32	36.0	3	3.4	6	6.7		
50~100억원 미만	7	3	42.9	3	42.9	1	14.3	0	0.0		
100억원 이상	5	4	80.0	0	0.0	0	0.0	0	0.0		
모름/무응답	8	5	62.5	1	12.5	1	12.5	1	12.5		
◆ 매출액규모 ◆											
1억원 미만	9	5	55.6	4	44.4	0	0.0	0	0.0		
1~ 5억원 미만	40	18	45.0	18	45.0	2	5.0	2	5.0		
5~ 10억원 미만	32	15	46.9	12	37.5	1	3.1	1	3.1		
10~ 50억원 미만	101	56	55.4	37	36.6	4	4.0	1	1.0		
50~100억원 미만	19	9	47.4	10	52.6	0	0.0	0	0.0		
100억원 이상	32	15	46.9	10	31.3	2	6.3	4	12.5		
모름/무응답	36	22	61.1	11	30.6	2	5.6	0	0.0		

<부표 19>의 계속

	재무구조 중심의 지원방식		지원제도에 대한 지식 부족		기타		모름/ 무응답		계 %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 전 체 ■	2	0.7	2	0.7	3	1.1	1	0.4	100
◆ 지역 별 ◆									
서울	1	0.7	0	0.0	2	1.4	0	0.0	100
인천/경기	0	0.0	1	1.3	1	1.3	0	0.0	100
경상도	1	3.0	1	3.0	0	0.0	0	0.0	100
전라도	0	0.0	0	0.0	0	0.0	0	0.0	100
충청도	0	0.0	0	0.0	0	0.0	1	9.1	100
강원/제주	0	0.0	0	0.0	0	0.0	0	0.0	100
◆ 업 종 별 ◆									
첨단제조업	2	2.6	0	0.0	2	2.6	1	1.3	100
일반제조업	0	0.0	1	1.3	0	0.0	0	0.0	100
SW/통신서비스	0	0.0	1	1.1	0	0.0	0	0.0	100
기타서비스	0	0.0	0	0.0	1	7.7	0	0.0	100
농/임/어업	0	0.0	0	0.0	0	0.0	0	0.0	100
기타 산업	0	0.0	0	0.0	0	0.0	0	0.0	100
◆ 벤처기업 확인연도 ◆									
1998년	0	0.0	0	0.0	0	0.0	0	0.0	100
1999년	0	0.0	1	5.0	0	0.0	1	5.0	100
2000년	0	0.0	0	0.0	2	2.7	0	0.0	100
2001년	2	1.2	1	0.6	1	0.6	0	0.0	100
◆ 자본금규모 ◆									
1억원 미만	0	0.0	0	0.0	0	0.0	0	0.0	100
1~ 5억원 미만	1	1.1	1	1.1	1	1.1	0	0.0	100
5~ 10억원 미만	1	1.8	0	0.0	0	0.0	0	0.0	100
10~ 50억원 미만	0	0.0	1	1.1	1	1.1	1	1.1	100
50~100억원 미만	0	0.0	0	0.0	0	0.0	0	0.0	100
100억원 이상	0	0.0	0	0.0	1	20.0	0	0.0	100
모름/무응답	0	0.0	0	0.0	0	0.0	0	0.0	100
◆ 매출액규모 ◆									
1억원 미만	0	0.0	0	0.0	0	0.0	0	0.0	100
1~ 5억원 미만	0	0.0	0	0.0	0	0.0	0	0.0	100
5~ 10억원 미만	0	0.0	1	3.1	2	6.3	0	0.0	100
10~ 50억원 미만	2	2.0	1	1.0	0	0.0	0	0.0	100
50~100억원 미만	0	0.0	0	0.0	0	0.0	0	0.0	100
100억원 이상	0	0.0	0	0.0	1	3.1	0	0.0	100
모름/무응답	0	0.0	0	0.0	0	0.0	1	2.8	100

<부표 20>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 활용 제고 방안

	지원대상 범위의 확대		지원요건의 완화		신청서류 및 절차의 간소화		지원제도 홍보 및 교육의 강화		기 타		모름/무응답		계	
	기업수	%	기업수	%	기업수	%	기업수	%	기업수	%	기업수	%		
■ 전 계 ■	502	146	29.1	134	26.7	109	21.7	108	21.5	3	0.6	2	0.4	100.0
◆ 지역별 ◆														
서울	219	61	27.9	63	28.8	38	17.4	54	24.7	2	0.9	1	0.5	100.0
인천/경기	142	50	35.2	31	21.8	30	21.1	30	21.1	0	0.0	1	0.7	100.0
경상도	70	14	20.0	23	32.9	23	32.9	10	14.3	0	0.0	0	0.0	100.0
전라도	17	4	23.5	4	23.5	6	35.3	2	11.8	1	5.9	0	0.0	100.0
충청도	49	16	32.7	11	22.4	11	22.4	11	22.4	0	0.0	0	0.0	100.0
강원/제주	5	1	20.0	2	40.0	1	20.0	1	20.0	0	0.0	0	0.0	100.0
◆ 업종별 ◆														
첨단제조업	178	47	26.4	48	27.0	50	28.1	31	17.4	2	1.1	0	0.0	100.0
일반제조업	144	52	36.1	30	20.8	31	21.5	30	20.8	0	0.0	1	0.7	100.0
SW/통신서비스	142	38	26.8	48	33.8	22	15.5	33	23.2	0	0.0	1	0.7	100.0
기타서비스	20	4	20.0	7	35.0	2	10.0	6	30.0	1	5.0	0	0.0	100.0
농/임/어업	2	1	50.0	0	0.0	0	0.0	1	50.0	0	0.0	0	0.0	100.0
기타 산업	16	4	25.0	1	6.3	4	25.0	7	43.8	0	0.0	0	0.0	100.0
◆ 벤처기업 확인연도 ◆														
1988년	13	0	0.0	5	38.5	3	23.1	5	38.5	0	0.0	0	0.0	100.0
1999년	53	17	32.1	17	32.1	9	17.0	10	18.9	0	0.0	0	0.0	100.0
2000년	140	40	28.6	36	25.7	35	25.0	27	19.3	1	0.7	1	0.7	100.0
2001년	296	89	30.1	76	25.7	62	20.9	66	22.3	2	0.7	1	0.3	100.0
◆ 자본금규모 ◆														
1억원 미만	28	2	7.1	5	17.9	14	50.0	5	17.9	1	3.6	1	3.6	100.0
1~ 5억원 미만	174	63	36.2	41	23.6	33	19.0	36	20.7	0	0.0	1	0.6	100.0
5~ 10억원 미만	107	33	30.8	30	28.0	23	21.5	21	19.6	0	0.0	0	0.0	100.0
10~ 50억원 미만	157	40	25.5	50	31.8	27	17.2	39	24.8	1	0.6	0	0.0	100.0
50~100억원 미만	10	2	20.0	2	20.0	4	40.0	1	10.0	1	10.0	0	0.0	100.0
100억원 이상	9	2	22.2	3	33.3	3	33.3	1	11.1	0	0.0	0	0.0	100.0
모름/무응답	17	4	23.5	3	17.6	5	29.4	5	29.4	0	0.0	0	0.0	100.0
◆ 매출액규모 ◆														
1억원 미만	16	6	37.5	6	37.5	3	18.8	1	6.3	0	0.0	0	0.0	100.0
1~ 5억원 미만	80	31	38.8	17	21.3	21	26.3	11	13.8	0	0.0	0	0.0	100.0
5~ 10억원 미만	56	14	25.0	17	30.4	11	19.6	14	25.0	0	0.0	0	0.0	100.0
10~ 50억원 미만	185	50	27.0	47	25.4	39	21.1	45	24.3	2	1.1	2	1.1	100.0
50~100억원 미만	44	12	27.3	18	40.9	8	18.2	6	13.6	0	0.0	0	0.0	100.0
100억원 이상	59	17	28.8	12	20.3	16	27.1	14	23.7	0	0.0	0	0.0	100.0
모름/무응답	62	16	25.8	17	27.4	11	17.7	17	27.4	1	1.6	0	0.0	100.0

<부표 21>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 개선방안

	1			2		3		4		5	
	기업수	기업수	%	기업수	%	기업수	%	기업수	%	기업수	%
■ 전 체 ■	502	241	48.0	30	23.9	8	7.6	13	6.0	22	5.2
◆ 지역 별 ◆											
서울	219	108	49.3	12	25.1	4	5.9	9	5.5	6	4.6
인천/경기	142	71	50.0	10	19.0	3	8.5	1	7.0	8	5.6
경 상 도	70	31	44.3	2	30.0	0	8.6	2	2.9	3	7.1
전 라 도	17	10	58.8	1	5.9	1	17.6	0	5.9	1	0.0
충 청 도	49	18	36.7	4	30.6	0	8.2	1	8.2	4	6.1
강원/제주	5	3	60.0	1	20.0	0	0.0	0	20.0	0	0.0
◆ 업 종 별 ◆											
첨단제조업	178	83	46.6	17	24.2	6	3.9	1	9.6	11	5.6
일반제조업	144	72	50.0	4	26.4	0	11.1	2	2.8	3	4.9
SW/통신서비스	142	66	46.5	8	23.2	2	8.5	7	5.6	5	6.3
기타서비스	20	9	45.0	0	15.0	0	5.0	3	0.0	2	0.0
농/임/어업	2	1	50.0	0	0.0	0	0.0	0	0.0	1	0.0
기타 산업	16	10	62.5	1	18.8	0	12.5	0	6.3	0	0.0
◆ 벤처기업 확인연도 ◆											
1998년	13	3	23.1	1	23.1	0	30.8	0	7.7	0	15.4
1999년	53	14	26.4	6	35.8	3	3.8	2	11.3	4	5.7
2000년	140	80	57.1	7	20.0	2	6.4	3	5.0	6	1.4
2001년	296	144	48.6	16	23.6	3	7.8	8	5.4	12	6.4
◆ 자본금규모 ◆											
1억원 미만	28	12	42.9	1	17.9	2	14.3	2	3.6	0	3.6
1~ 5억원 미만	174	87	50.0	12	21.3	0	10.3	4	6.9	7	4.0
5~ 10억원 미만	107	53	49.5	4	27.1	2	3.7	2	3.7	4	8.4
10~ 50억원 미만	157	73	46.5	9	25.5	4	6.4	4	5.7	9	5.1
50~100억원 미만	10	3	30.0	2	20.0	0	10.0	0	20.0	0	10.0
100억원 이상	9	3	33.3	2	11.1	0	11.1	1	22.2	1	0.0
모름/무응답	17	10	58.8	0	35.3	0	0.0	0	0.0	1	0.0
◆ 매출액규모 ◆											
1억원 미만	16	5	31.3	0	43.8	2	12.5	0	0.0	0	0.0
1~ 5억원 미만	80	43	53.8	4	20.0	0	5.0	4	5.0	5	5.0
5~ 10억원 미만	56	27	48.2	5	16.1	0	5.4	2	8.9	3	10.7
10~ 50억원 미만	185	94	50.8	10	22.7	1	7.6	3	5.4	6	6.5
50~100억원 미만	44	16	36.4	2	40.9	2	4.5	1	4.5	3	0.0
100억원 이상	59	26	44.1	5	23.7	2	11.9	0	8.5	2	5.1
모름/무응답	62	30	48.4	4	22.6	1	9.7	3	6.5	3	1.6

<부표 21>의 계속

	6		7		8		9		무응답		계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 전 체 ■	26	4.4	38	2.6	120	1.6	1	0.2	3	0.6	100
◆ 지역 별 ◆											
서울	10	2.7	13	4.1	55	1.8	0	0.0	2	0.9	100
인천/경기	8	5.6	12	0.7	27	2.1	1	0.7	1	0.7	100
경 상 도	5	4.3	6	2.9	21	0.0	0	0.0	0	0.0	100
전 라 도	0	5.9	3	0.0	1	5.9	0	0.0	0	0.0	100
충 청 도	3	8.2	4	2.0	15	0.0	0	0.0	0	0.0	100
강원/제주	0	0.0	0	0.0	1	0.0	0	0.0	0	0.0	100
◆ 업 종 별 ◆											
첨단제조업	10	6.2	7	0.6	43	3.4	0	0.0	0	0.0	100
일반제조업	7	2.1	16	1.4	38	0.0	1	0.7	1	0.7	100
SW/통신서비스	9	3.5	12	4.9	33	1.4	0	0.0	0	0.0	100
기타서비스	0	10.0	1	15.0	3	0.0	0	0.0	2	10.0	100
농/임/어업	0	50.0	0	0.0	0	0.0	0	0.0	0	0.0	100
기타 산업	0	0.0	2	0.0	3	0.0	0	0.0	0	0.0	100
◆ 벤처기업 확인연도 ◆											
1998년	2	0.0	4	0.0	3	0.0	0	0.0	0	0.0	100
1999년	3	7.5	2	3.8	19	5.7	0	0.0	0	0.0	100
2000년	2	4.3	9	2.1	28	1.4	1	0.7	2	1.4	100
2001년	19	4.1	23	2.7	70	1.0	0	0.0	1	0.3	100
◆ 자본금규모 ◆											
1억원 미만	1	0.0	4	7.1	5	7.1	0	0.0	1	3.6	100
1~ 5억원 미만	7	4.0	18	2.3	37	0.0	1	0.6	1	0.6	100
5~ 10억원 미만	9	3.7	4	1.9	29	1.9	0	0.0	0	0.0	100
10~ 50억원 미만	8	5.7	10	2.5	40	2.5	0	0.0	0	0.0	100
50~100억원 미만	1	0.0	1	0.0	2	0.0	0	0.0	1	10.0	100
100억원 이상	0	11.1	1	11.1	1	0.0	0	0.0	0	0.0	100
모름/무응답	0	5.9	0	0.0	6	0.0	0	0.0	0	0.0	100
◆ 매출액규모 ◆											
1억원 미만	0	0.0	2	0.0	7	12.5	0	0.0	0	0.0	100
1~ 5억원 미만	4	6.3	4	5.0	16	0.0	0	0.0	0	0.0	100
5~ 10억원 미만	6	5.4	3	3.6	9	0.0	1	1.8	0	0.0	100
10~ 50억원 미만	12	3.2	14	1.6	42	0.5	0	0.0	3	1.6	100
50~100억원 미만	0	6.8	2	2.3	18	4.5	0	0.0	0	0.0	100
100억원 이상	3	3.4	7	0.0	14	3.4	0	0.0	0	0.0	100
모름/무응답	1	4.8	6	4.8	14	1.6	0	0.0	0	0.0	100

주 : 1. 제도를 단순화하고 지원내용을 강화함으로써 활용도를 제고, 2. 벤처투자조합 결성 확대 등 투자지원 확충, 3. 코스닥 등록요건 완화 등 코스닥시장의 제도 개선, 4. 창업보육센터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 확대, 5. 벤처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강화, 6. 국내외 기업, 엔젤 및 벤처캐피탈, 컨설팅사 등 벤처산업 네트워크 구축 지원, 7. 연구개발투자의 효율화를 위해 산·학·연의 협조체계 구축 지원, 8. 금융 및 보증지원시 벤처기업에 대한 우대 확대, 9. 기타

<부표 22> 벤처기업 확인제도 폐지 등의 여부

	확인제도의 폐지에 동의함			확인제도는 계속 유지되어야 함		무응답		계
	기업 수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 전 체 ■	502	68	13.5	429	85.5	5	1.0	100.0
◆ 지역 별 ◆								
서울	219	32	14.6	187	85.4	0	0.0	100.0
인천/경기	142	18	12.7	121	85.2	3	2.1	100.0
경상도	70	8	11.4	61	87.1	1	1.4	100.0
전라도	17	2	11.8	15	88.2	0	0.0	100.0
충청도	49	8	16.3	40	81.6	1	2.0	100.0
강원/제주	5	0	0.0	5	100.0	0	0.0	100.0
◆ 업 종 별 ◆								
첨단제조업	178	16	9.0	160	89.9	2	1.1	100.0
일반제조업	144	24	16.7	118	81.9	2	1.4	100.0
SW/통신서비스	142	22	15.5	119	83.8	1	0.7	100.0
기타서비스	20	5	25.0	15	75.0	0	0.0	100.0
농/임/어업	2	0	0.0	2	100.0	0	0.0	100.0
기타 산업	16	1	6.3	15	93.8	0	0.0	100.0
◆ 벤처기업 확인연도 ◆								
1998년	13	2	15.4	11	84.6	0	0.0	100.0
1999년	53	6	11.3	46	86.8	1	1.9	100.0
2000년	140	23	16.4	116	82.9	1	0.7	100.0
2001년	296	37	12.5	256	86.5	3	1.0	100.0
◆ 자본금규모 ◆								
1억원 미만	28	4	14.3	22	78.6	2	7.1	100.0
1~ 5억원 미만	174	23	13.2	150	86.2	1	0.6	100.0
5~ 10억원 미만	107	15	14.0	92	86.0	0	0.0	100.0
10~ 50억원 미만	157	18	11.5	137	87.3	2	1.3	100.0
50~100억원 미만	10	3	30.0	7	70.0	0	0.0	100.0
100억원 이상	9	2	22.2	7	77.8	0	0.0	100.0
모름/무응답	17	3	17.6	14	82.4	0	0.0	100.0
◆ 매출액규모 ◆								
1억원 미만	16	6	37.5	9	56.3	1	6.3	100.0
1~ 5억원 미만	80	7	8.8	73	91.3	0	0.0	100.0
5~ 10억원 미만	56	6	10.7	49	87.5	1	1.8	100.0
10~ 50억원 미만	185	22	11.9	161	87.0	2	1.1	100.0
50~100억원 미만	44	7	15.9	37	84.1	0	0.0	100.0
100억원 이상	59	7	11.9	52	88.1	0	0.0	100.0
모름/무응답	62	13	21.0	48	77.4	1	1.6	100.0

<부표 23> 벤처기업 확인제도 등의 정책지원제도의 경영 도움 여부

	경영에 도움이 되었다			경영에 도움이 된 것이 없다		계
	기업 수	기업 수	%	기업 수	%	
■ 전 체 ■	502	284	56.6	218	43.4	100.0
◆ 지역 별 ◆						
서울	219	112	51.1	107	48.9	100.0
인천/경기	142	79	55.6	63	44.4	100.0
경상도	70	39	55.7	31	44.3	100.0
전라도	17	12	70.6	5	29.4	100.0
충청도	49	38	77.6	11	22.4	100.0
강원/제주	5	4	80.0	1	20.0	100.0
◆ 업 종 별 ◆						
첨단제조업	178	120	67.4	58	32.6	100.0
일반제조업	144	79	54.9	65	45.1	100.0
SW/통신서비스	142	69	48.6	73	51.4	100.0
기타서비스	20	7	35.0	13	65.0	100.0
농/임/어업	2	1	50.0	1	50.0	100.0
기타 산업	16	8	50.0	8	50.0	100.0
◆ 벤처기업 확인연도 ◆						
1998년	13	9	69.2	4	30.8	100.0
1999년	53	34	64.2	19	35.8	100.0
2000년	140	79	56.4	61	43.6	100.0
2001년	296	162	54.7	134	45.3	100.0
◆ 자본금규모 ◆						
1억원 미만	28	17	60.7	11	39.3	100.0
1~ 5억원 미만	174	93	53.4	81	46.6	100.0
5~ 10억원 미만	107	63	58.9	44	41.1	100.0
10~ 50억원 미만	157	91	58.0	66	42.0	100.0
50~100억원 미만	10	5	50.0	5	50.0	100.0
100억원 이상	9	6	66.7	3	33.3	100.0
모름/무응답	17	9	52.9	8	47.1	100.0
◆ 매출액규모 ◆						
1억원 미만	16	8	50.0	8	50.0	100.0
1~ 5억원 미만	80	40	50.0	40	50.0	100.0
5~ 10억원 미만	56	36	64.3	20	35.7	100.0
10~ 50억원 미만	185	104	56.2	81	43.8	100.0
50~100억원 미만	44	27	61.4	17	38.6	100.0
100억원 이상	59	39	66.1	20	33.9	100.0
모름/무응답	62	30	48.4	32	51.6	100.0

<부표 24>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경영에 도움이 된 측면

	정책 자금 및 증기관 접근 용이			기업 홍보 유리		세계 지원		코스닥 등록 유리		기타		모름/ 무응답		계 %
	기업 수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 전 체 ■	284	160	56.3	70	24.6	40	14.1	10	3.5	2	0.7	2	0.7	100.0
◆ 지역 별 ◆														
서울	112	50	44.6	26	23.2	28	25.0	7	6.3	1	0.9	0	0.0	100.0
인천/경기	79	45	57.0	21	26.6	9	11.4	1	1.3	1	1.3	2	2.5	100.0
경상도	39	27	69.2	10	25.6	1	2.6	1	2.6	0	0.0	0	0.0	100.0
전라도	12	7	58.3	4	33.3	1	8.3	0	0.0	0	0.0	0	0.0	100.0
충청도	38	29	76.3	8	21.1	0	0.0	1	2.6	0	0.0	0	0.0	100.0
강원/제주	4	2	50.0	1	25.0	1	25.0	0	0.0	0	0.0	0	0.0	100.0
◆ 업종 별 ◆														
첨단제조업	120	65	54.2	29	24.2	17	14.2	7	5.8	1	0.8	1	0.8	100.0
일반제조업	79	49	62.0	20	25.3	7	8.9	2	2.5	0	0.0	1	1.3	100.0
SW/통신서비스	69	36	52.2	17	24.6	15	21.7	0	0.0	1	1.4	0	0.0	100.0
기타서비스	7	2	28.6	3	42.9	1	14.3	1	14.3	0	0.0	0	0.0	100.0
농/임/어업	1	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100.0
기타 산업	8	7	87.5	1	12.5	0	0.0	0	0.0	0	0.0	0	0.0	100.0
◆ 벤처기업 확인연도 ◆														
1998년	9	4	44.4	2	22.2	2	22.2	1	11.1	0	0.0	0	0.0	100.0
1999년	34	17	50.0	9	26.5	4	11.8	2	5.9	0	0.0	2	5.9	100.0
2000년	79	52	65.8	12	15.2	13	16.5	2	2.5	0	0.0	0	0.0	100.0
2001년	162	87	53.7	47	29.0	21	13.0	5	3.1	2	1.2	0	0.0	100.0
◆ 자본금규모 ◆														
1억원 미만	17	8	47.1	9	52.9	0	0.0	0	0.0	0	0.0	0	0.0	100.0
1~ 5억원 미만	93	61	65.6	19	20.4	10	10.8	2	2.2	1	1.1	0	0.0	100.0
5~ 10억원 미만	63	39	61.9	14	22.2	7	11.1	1	1.6	1	1.6	1	1.6	100.0
10~ 50억원 미만	91	43	47.3	23	25.3	19	20.9	5	5.5	0	0.0	1	1.1	100.0
50~100억원 미만	5	2	40.0	1	20.0	1	20.0	1	20.0	0	0.0	0	0.0	100.0
100억원 이상	6	1	16.7	2	33.3	2	33.3	1	16.7	0	0.0	0	0.0	100.0
모름/무응답	9	6	66.7	2	22.2	1	11.1	0	0.0	0	0.0	0	0.0	100.0
◆ 매출액규모 ◆														
1억원 미만	8	3	37.5	4	50.0	1	12.5	0	0.0	0	0.0	0	0.0	100.0
1~ 5억원 미만	40	24	60.0	14	35.0	2	5.0	0	0.0	0	0.0	0	0.0	100.0
5~ 10억원 미만	36	19	52.8	7	19.4	9	25.0	0	0.0	1	2.8	0	0.0	100.0
10~ 50억원 미만	104	69	66.3	20	19.2	10	9.6	3	2.9	1	1.0	1	1.0	100.0
50~100억원 미만	27	10	37.0	9	33.3	6	22.2	1	3.7	0	0.0	1	3.7	100.0
100억원 이상	39	15	38.5	9	23.1	9	23.1	6	15.4	0	0.0	0	0.0	100.0
모름/무응답	30	20	66.7	7	23.3	3	10.0	0	0.0	0	0.0	0	0.0	100.0

<부표 25> 벤처기업 확인 기준 강화 찬반 여부

	찬성한다			반대한다		모름/무응답		계
	기업 수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 전 체 ■	502	417	83.1	70	13.9	15	3.0	100.0
◆ 지역 별 ◆								
서울	219	192	87.7	19	8.7	8	3.7	100.0
인천/경기	142	115	81.0	23	16.2	4	2.8	100.0
경 상 도	70	58	82.9	10	14.3	2	2.9	100.0
전 라 도	17	12	70.6	4	23.5	1	5.9	100.0
충 청 도	49	36	73.5	13	26.5	0	0.0	100.0
강원/제주	5	4	80.0	1	20.0	0	0.0	100.0
◆ 업 종 별 ◆								
철단제조업	178	149	83.7	23	12.9	6	3.4	100.0
일반제조업	144	119	82.6	23	16.0	2	1.4	100.0
SW/통신서비스	142	122	85.9	16	11.3	4	2.8	100.0
기타서비스	20	16	80.0	1	5.0	3	15.0	100.0
농/임/어업	2	1	50.0	1	50.0	0	0.0	100.0
기타 산업	16	10	62.5	6	37.5	0	0.0	100.0
◆ 벤처기업 확인연도 ◆								
1998년	13	9	69.2	4	30.8	0	0.0	100.0
1999년	53	42	79.2	10	18.9	1	1.9	100.0
2000년	140	117	83.6	19	13.6	4	2.9	100.0
2001년	296	249	84.1	37	12.5	10	3.4	100.0
◆ 자본금규모 ◆								
1억원 미만	28	25	89.3	2	7.1	1	3.6	100.0
1~ 5억원 미만	174	136	78.2	31	17.8	7	4.0	100.0
5~ 10억원 미만	107	93	86.9	13	12.1	1	0.9	100.0
10~ 50억원 미만	157	133	84.7	19	12.1	5	3.2	100.0
50~100억원 미만	10	7	70.0	2	20.0	1	10.0	100.0
100억원 이상	9	9	100.0	0	0.0	0	0.0	100.0
모름/무응답	17	14	82.4	3	17.6	0	0.0	100.0
◆ 매출액규모 ◆								
1억원 미만	16	13	81.3	3	18.8	0	0.0	100.0
1~ 5억원 미만	80	67	83.8	12	15.0	1	1.3	100.0
5~ 10억원 미만	56	45	80.4	8	14.3	3	5.4	100.0
10~ 50억원 미만	185	160	86.5	17	9.2	8	4.3	100.0
50~100억원 미만	44	30	68.2	13	29.5	1	2.3	100.0
100억원 이상	59	51	86.4	8	13.6	0	0.0	100.0
모름/무응답	62	51	82.3	9	14.5	2	3.2	100.0

<부표 26> 벤처기업 확인 기준 강화 찬성 이유

	확실한 벤처기업 기준을 마련해서 집중적 선별원이 필요			부실기업 정리를 위해		벤처기업의 기술력 수준을 강화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벤처확인 제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위해 필요		기타		모름/무응답		계
	기업수	기업수	%	기업수	%	기업수	%	기업수	%	기업수	%	기업수	%	
■ 전 체 ■	417	216	51.8	46	11.0	41	9.8	30	7.2	30	7.2	54	12.9	100.0
◆ 지역 별 ◆														
서울	192	117	60.9	24	12.5	17	8.9	12	6.3	13	6.8	9	4.7	100.0
인천/경기	115	39	33.9	15	13.0	12	10.4	7	6.1	8	7.0	34	29.6	100.0
경상도	58	29	50.0	5	8.6	9	15.5	8	13.8	2	3.4	5	8.6	100.0
전라도	12	7	58.3	0	0.0	1	8.3	1	8.3	1	8.3	2	16.7	100.0
충청도	36	22	61.1	1	2.8	2	5.6	2	5.6	6	16.7	3	8.3	100.0
강원/제주	4	2	50.0	1	25.0	0	0.0	0	0.0	0	0.0	1	25.0	100.0
◆ 업 종 별 ◆														
첨단제조업	149	78	52.3	17	11.4	14	9.4	9	6.0	12	8.1	19	12.8	100.0
일반제조업	119	50	42.0	12	10.1	11	9.2	10	8.4	9	7.6	27	22.7	100.0
SW/통신서비스	122	73	59.8	15	12.3	13	10.7	8	6.6	8	6.6	5	4.1	100.0
기타서비스	16	8	50.0	1	6.3	1	6.3	3	18.8	0	0.0	3	18.8	100.0
농/임/어업	1	0	0.0	0	0.0	1	100.0	0	0.0	0	0.0	0	0.0	100.0
기타 산업	10	7	70.0	1	0.0	1	10.0	0	0.0	1	10.0	0	0.0	100.0
◆ 벤처기업 확인연도 ◆														
1998년	9	2	22.2	1	11.1	0	0.0	1	11.1	1	11.1	4	44.4	100.0
1999년	42	18	42.9	4	9.5	5	11.9	3	7.1	6	14.3	6	14.3	100.0
2000년	117	61	52.1	10	8.5	16	13.7	11	9.4	9	7.7	10	8.5	100.0
2001년	249	135	54.2	31	12.4	20	8.0	15	6.0	14	5.6	34	13.7	100.0
◆ 자본금규모 ◆														
1억원 미만	25	15	60.0	0	0.0	3	12.0	2	8.0	2	8.0	3	12.0	100.0
1~ 5억원 미만	136	70	51.5	12	8.8	21	15.4	12	8.8	9	6.6	12	8.8	100.0
5~ 10억원 미만	93	52	55.9	12	12.9	5	5.4	5	5.4	7	7.5	12	12.9	100.0
10~ 50억원 미만	133	64	48.1	19	14.3	12	9.0	9	6.8	8	6.0	21	15.8	100.0
50~100억원 미만	7	3	42.9	1	14.3	0	0.0	0	0.0	2	28.6	1	14.3	100.0
100억원 이상	9	8	88.9	0	0.0	0	0.0	0	0.0	1	11.1	0	0.0	100.0
모름/무응답	14	4	28.6	2	14.3	0	0.0	2	14.3	1	7.1	5	35.7	100.0
◆ 매출액규모 ◆														
1억원 미만	13	6	46.2	1	7.7	2	15.4	2	15.4	0	0.0	2	15.4	100.0
1~ 5억원 미만	67	34	50.7	7	10.4	10	14.9	6	9.0	6	9.0	4	6.0	100.0
5~ 10억원 미만	45	27	60.0	3	6.7	7	15.6	2	4.4	3	6.7	3	6.7	100.0
10~ 50억원 미만	160	83	51.9	19	11.9	15	9.4	10	6.3	11	6.9	22	13.8	100.0
50~100억원 미만	30	14	46.7	3	10.0	1	3.3	3	10.0	2	6.7	7	23.3	100.0
100억원 이상	51	28	54.9	3	5.9	3	5.9	6	11.8	4	7.8	7	13.7	100.0
모름/무응답	51	24	47.1	10	19.6	3	5.9	1	2.0	4	7.8	9	17.6	100.0

<부표 27> 벤처기업 확인 기준 강화 반대 이유

	벤처기업 확인의 절차가 번거롭고 까다롭기 때문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후 기업에 실제 이익이 없기 때문에			형식적 제도 도입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벤처창업 기준이 완화 되어야 한다			기타		모름/무응답		계
	기업수	기업수	%	기업수	%	기업수	%	기업수	%	기업수	%	기업수	%	기업수	%		
■ 전 체 ■	70	18	25.7	14	20.0	11	15.7	7	10.0	11	15.7	9	12.9	100.0			
◆ 지역 별 ◆																	
서울	19	3	15.8	7	36.8	3	15.8	2	10.5	3	15.8	1	5.3	100.0			
인천/경기	23	5	21.7	4	17.4	3	13.0	2	8.7	3	13.0	6	26.1	100.0			
경상도	10	5	50.0	2	20.0	1	10.0	1	10.0	1	10.0	0	0.0	100.0			
전라도	4	0	0.0	1	25.0	1	25.0	1	25.0	1	25.0	0	0.0	100.0			
충청도	13	4	30.8	0	0.0	3	23.1	1	7.7	3	23.1	2	15.4	100.0			
강원/제주	1	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100.0			
◆ 업 종 별 ◆																	
첨단제조업	23	6	26.1	4	17.4	3	13.0	3	13.0	2	8.7	5	21.7	100.0			
일반제조업	23	7	30.4	3	13.0	3	13.0	2	8.7	5	21.7	3	13.0	100.0			
SW/통신서비스	16	4	25.0	5	31.3	3	18.8	1	6.3	2	12.5	1	6.3	100.0			
기타서비스	1	0	0.0	1	100.0	0	0.0	0	0.0	0	0.0	0	0.0	100.0			
농/임/어업	1	0	0.0	1	100.0	0	0.0	0	0.0	0	0.0	0	0.0	100.0			
기타 산업	6	1	16.7	0	0.0	2	33.3	1	16.7	2	33.3	0	0.0	100.0			
◆ 벤처기업 확인연도 ◆																	
1998년	4	1	25.0	0	0.0	1	25.0	1	25.0	1	25.0	0	0.0	100.0			
1999년	10	4	40.0	1	10.0	2	20.0	1	10.0	2	20.0	0	0.0	100.0			
2000년	19	4	21.1	3	15.8	3	15.8	2	10.5	3	15.8	4	21.1	100.0			
2001년	37	9	24.3	10	27.0	5	13.5	3	8.1	5	13.5	5	13.5	100.0			
◆ 자본금규모 ◆																	
1억원 미만	2	0	0.0	1	50.0	0	0.0	1	50.0	0	0.0	0	0.0	100.0			
1~ 5억원 미만	31	6	19.4	5	16.1	7	22.6	4	12.9	5	16.1	4	12.9	100.0			
5~ 10억원 미만	13	4	30.8	4	30.8	1	7.7	1	7.7	0	0.0	3	23.1	100.0			
10~ 50억원 미만	19	7	36.8	3	15.8	2	10.5	1	5.3	4	21.1	2	10.5	100.0			
50~100억원 미만	2	1	50.0	0	0.0	1	50.0	0	0.0	0	0.0	0	0.0	100.0			
100억원 이상	3	0	0.0	1	33.3	0	0.0	0	0.0	2	66.7	0	0.0	100.0			
모름/무응답																	
◆ 매출액규모 ◆																	
1억원 미만	3	2	66.7	0	0.0	1	33.3	0	0.0	0	0.0	0	0.0	100.0			
1~ 5억원 미만	12	3	25.0	3	25.0	0	0.0	1	8.3	3	25.0	2	16.7	100.0			
5~ 10억원 미만	8	1	12.5	1	12.5	0	0.0	3	37.5	1	12.5	2	25.0	100.0			
10~ 50억원 미만	17	7	41.2	5	29.4	0	0.0	1	5.9	2	11.8	2	11.8	100.0			
50~100억원 미만	13	2	15.4	2	15.4	3	23.1	1	7.7	2	15.4	3	23.1	100.0			
100억원 이상	8	3	37.5	1	12.5	3	37.5	0	0.0	1	12.5	0	0.0	100.0			
모름/무응답	9	0	0.0	2	22.2	4	44.4	1	11.1	2	22.2	0	0.0	100.0			

<부표 28> 벤처기업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기관

	중소 기업청			중소기업 진흥공단		기술신용 보증기금		산업 자원부		정보 통신부		소프트웨어 진흥원	
	기업 수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수	%	기업 수	%	기업 수	%
■ 전 체 ■	502	322	64.1	62	12.4	47	9.4	25	5.0	25	5.0	9	1.8
◆ 지역 별 ◆													
서울	219	137	62.6	27	12.3	23	10.5	8	3.7	14	6.4	6	2.7
인천/경기	142	79	55.6	19	13.4	15	10.6	14	9.9	7	4.9	2	1.4
경상도	70	60	85.7	3	4.3	3	4.3	1	1.4	2	2.9	0	0.0
전라도	17	12	70.6	4	23.5	0	0.0	0	0.0	1	5.9	0	0.0
충청도	49	30	61.2	8	16.3	6	12.2	2	4.1	1	2.0	1	2.0
강원/제주	5	4	80.0	1	20.0	0	0.0	0	0.0	0	0.0	0	0.0
◆ 업종 별 ◆													
첨단제조업	178	126	70.8	21	11.8	12	6.7	10	5.6	3	1.7	2	1.1
일반제조업	144	96	66.7	18	12.5	14	9.7	9	6.3	4	2.8	0	0.0
SW/통신서비스	142	75	52.8	17	12.0	20	14.1	2	1.4	16	11.3	7	4.9
기타서비스	20	13	65.0	3	15.0	0	0.0	2	10.0	2	10.0	0	0.0
농/임/어업	2	1	50.0	1	50.0	0	0.0	0	0.0	0	0.0	0	0.0
기타 산업	16	11	68.8	2	12.5	1	6.3	2	12.5	0	0.0	0	0.0
◆ 벤처기업 확인연도 ◆													
1998년	13	7	53.8	4	30.8	0	0.0	0	0.0	0	0.0	1	7.7
1999년	53	35	66.0	8	15.1	3	5.7	3	5.7	1	1.9	1	1.9
2000년	140	85	60.7	14	10.0	17	12.1	8	5.7	8	5.7	5	3.6
2001년	296	195	65.9	36	12.2	27	9.1	14	4.7	16	5.4	2	0.7
◆ 자본금규모 ◆													
1억원 미만	28	21	75.0	4	14.3	2	7.1	0	0.0	0	0.0	1	3.6
1~ 5억원 미만	174	116	66.7	18	10.3	15	8.6	12	6.9	7	4.0	2	1.1
5~ 10억원 미만	107	65	60.7	17	15.9	15	14.0	1	0.9	5	4.7	1	0.9
10~ 50억원 미만	157	99	63.1	22	14.0	12	7.6	9	5.7	10	6.4	4	2.5
50~100억원 미만	10	5	50.0	0	0.0	1	10.0	0	0.0	2	20.0	1	10.0
100억원 이상	9	5	55.6	0	0.0	1	11.1	2	22.2	0	0.0	0	0.0
모름/무응답	17	11	64.7	1	5.9	1	5.9	1	5.9	1	5.9	0	0.0
◆ 매출액규모 ◆													
1억원 미만	16	10	62.5	4	25.0	1	6.3	1	6.3	0	0.0	0	0.0
1~ 5억원 미만	80	51	63.8	11	13.8	7	8.8	3	3.8	4	5.0	1	1.3
5~ 10억원 미만	56	38	67.9	1	1.8	3	5.4	4	7.1	6	10.7	2	3.6
10~ 50억원 미만	185	112	60.5	27	14.6	21	11.4	11	5.9	8	4.3	4	2.2
50~100억원 미만	44	31	70.5	4	9.1	3	6.8	2	4.5	2	4.5	2	4.5
100억원 이상	59	39	66.1	9	15.3	5	8.5	3	5.1	2	3.4	0	0.0
모름/무응답	62	41	66.1	6	9.7	7	11.3	1	1.6	3	4.8	0	0.0

<부표 28>의 계속

	KOTRA		지방 자치단체		과학기술부		에너지 관리공단		모름/ 무응답		계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
■ 전 체 ■	4	0.8	3	0.6	2	0.4	1	0.2	2	0.4	100.0
◆ 지역 별 ◆											
서울	2	0.9	1	0.5	0	0.0	0	0.0	1	0.5	100.0
인천/경기	2	1.4	2	1.4	1	0.7	1	0.7	0	0.0	100.0
경상도	0	0.0	0	0.0	0	0.0	0	0.0	1	1.4	100.0
전라도	0	0.0	0	0.0	0	0.0	0	0.0	0	0.0	100.0
충청도	0	0.0	0	0.0	1	2.0	0	0.0	0	0.0	100.0
강원/제주	0	0.0	0	0.0	0	0.0	0	0.0	0	0.0	100.0
◆ 업 종 별 ◆											
첨단제조업	2	1.1	0	0.0	1	0.6	1	0.6	0	0.0	100.0
일반제조업	0	0.0	1	0.7	1	0.7	0	0.0	1	0.7	100.0
SW/통신서비스	2	1.4	2	1.4	0	0.0	0	0.0	1	0.7	100.0
기타서비스	0	0.0	0	0.0	0	0.0	0	0.0	0	0.0	100.0
농/임/어업	0	0.0	0	0.0	0	0.0	0	0.0	0	0.0	100.0
기타 산업	0	0.0	0	0.0	0	0.0	0	0.0	0	0.0	100.0
◆ 벤처기업 확인연도 ◆											
1998년	1	7.7	0	0.0	0	0.0	0	0.0	0	0.0	100.0
1999년	0	0.0	0	0.0	2	3.8	0	0.0	0	0.0	100.0
2000년	1	0.7	1	0.7	0	0.0	0	0.0	1	0.7	100.0
2001년	2	0.7	2	0.7	0	0.0	1	0.3	1	0.3	100.0
◆ 자본금규모 ◆											
1억원 미만	0	0.0	0	0.0	0	0.0	0	0.0	0	0.0	100.0
1~ 5억원 미만	3	1.7	1	0.6	0	0.0	0	0.0	0	0.0	100.0
5~ 10억원 미만	0	0.0	2	1.9	1	0.9	0	0.0	0	0.0	100.0
10~ 50억원 미만	0	0.0	0	0.0	1	0.6	0	0.0	0	0.0	100.0
50~100억원 미만	1	10.0	0	0.0	0	0.0	0	0.0	0	0.0	100.0
100억원 이상	0	0.0	0	0.0	0	0.0	1	11.1	0	0.0	100.0
모름/무응답	0	0.0	0	0.0	0	0.0	0	0.0	2	11.8	100.0
◆ 매출액규모 ◆											
1억원 미만	0	0.0	0	0.0	0	0.0	0	0.0	0	0.0	100.0
1~ 5억원 미만	1	1.3	1	1.3	0	0.0	0	0.0	1	1.3	100.0
5~ 10억원 미만	2	3.6	0	0.0	0	0.0	0	0.0	0	0.0	100.0
10~ 50억원 미만	0	0.0	1	0.5	1	0.5	0	0.0	0	0.0	100.0
50~100억원 미만	0	0.0	0	0.0	0	0.0	0	0.0	0	0.0	100.0
100억원 이상	1	1.7	0	0.0	0	0.0	0	0.0	0	0.0	100.0
모름/무응답	0	0.0	1	1.6	1	1.6	1	1.6	1	1.6	100.0

<부표 29> 벤처기업 관련 기능과 역할 강화가 필요한 기관

	중소 기업청			중소기업 진흥공단		기술신용 보증기금		정보 통신부		산업 자원부		지방자치 단체	
	기업 수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 전 체 ■	502	281	56.0	70	13.9	58	11.6	26	5.2	23	4.6	17	3.4
◆ 지역 별 ◆													
서울	219	119	54.3	33	15.1	27	12.3	14	6.4	9	4.1	2	0.9
인천/경기	142	75	52.8	26	18.3	16	11.3	7	4.9	8	5.6	6	4.2
경상도	70	50	71.4	3	4.3	7	10.0	4	5.7	3	4.3	3	4.3
전라도	17	8	47.1	1	5.9	2	11.8	0	0.0	1	5.9	2	11.8
충청도	49	25	51.0	7	14.3	6	12.2	1	2.0	2	4.1	3	6.1
강원/제주	5	4	80.0	0	0.0	0	0.0	0	0.0	0	0.0	1	20.0
◆ 업종 별 ◆													
첨단제조업	178	94	52.8	31	17.4	22	12.4	7	3.9	8	4.5	9	5.1
일반제조업	144	98	68.1	18	12.5	10	6.9	3	2.1	6	4.2	3	2.1
SW/통신서비스	142	63	44.4	20	14.1	24	16.9	14	9.9	5	3.5	3	2.1
기타서비스	20	14	70.0	1	5.0	0	0.0	2	10.0	1	5.0	1	5.0
농/임/어업	2	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 산업	16	10	62.5	0	0.0	2	12.5	0	0.0	3	18.8	1	6.3
◆ 벤처기업 확인연도 ◆													
1998년	13	7	53.8	2	15.4	0	0.0	0	0.0	2	15.4	1	7.7
1999년	53	31	58.5	6	11.3	6	11.3	2	3.8	2	3.8	2	3.8
2000년	140	78	55.7	17	12.1	16	11.4	10	7.1	7	5.0	3	2.1
2001년	296	165	55.7	45	15.2	36	12.2	14	4.7	12	4.1	11	3.7
◆ 자본금규모 ◆													
1억원 미만	28	13	46.4	6	21.4	3	10.7	0	0.0	0	0.0	1	3.6
1~ 5억원 미만	174	105	60.3	17	9.8	15	8.6	10	5.7	10	5.7	8	4.6
5~ 10억원 미만	107	57	53.3	17	15.9	16	15.0	8	7.5	3	2.8	4	3.7
10~ 50억원 미만	157	87	55.4	22	14.0	21	13.4	6	3.8	10	6.4	3	1.9
50~100억원 미만	10	6	60.0	0	0.0	1	10.0	2	20.0	0	0.0	0	0.0
100억원 이상	9	5	55.6	3	33.3	0	0.0	0	0.0	0	0.0	1	11.1
모름/무응답	17	8	47.1	5	29.4	2	11.8	0	0.0	0	0.0	0	0.0
◆ 매출액규모 ◆													
1억원 미만	16	8	50.0	1	6.3	4	25.0	1	6.3	0	0.0	2	12.5
1~ 5억원 미만	80	38	47.5	13	16.3	10	12.5	5	6.3	3	3.8	6	7.5
5~ 10억원 미만	56	33	58.9	4	7.1	5	8.9	5	8.9	2	3.6	0	0.0
10~ 50억원 미만	185	103	55.7	29	15.7	20	10.8	10	5.4	12	6.5	6	3.2
50~100억원 미만	44	23	52.3	6	13.6	3	6.8	2	4.5	3	6.8	1	2.3
100억원 이상	59	39	66.1	8	13.6	8	13.6	1	1.7	2	3.4	0	0.0
모름/무응답	62	37	59.7	9	14.5	8	12.9	2	3.2	1	1.6	2	3.2

<부표 29>의 계속

	소프트웨어 진흥원		과학 기술부		수출보험 공사		KOTRA		모름/ 무응답		계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
■ 전 체 ■	9	1.8	7	1.4	5	1.0	4	0.8	2	0.4	100.0
◆ 지역 별 ◆											
서울	6	2.7	3	1.4	3	1.4	2	0.9	1	0.5	100.0
인천/경기	1	0.7	1	0.7	0	0.0	2	1.4	0	0.0	100.0
경상도	0	0.0	0	0.0	0	0.0	0	0.0	0	0.0	100.0
전라도	1	5.9	0	0.0	1	5.9	0	0.0	1	5.9	100.0
충청도	1	2.0	3	6.1	1	2.0	0	0.0	0	0.0	100.0
강원/제주	0	0.0	0	0.0	0	0.0	0	0.0	0	0.0	100.0
◆ 업 종 별 ◆											
첨단제조업	0	0.0	3	1.7	1	0.6	2	1.1	1	0.6	100.0
일반제조업	1	0.7	1	0.7	3	2.1	1	0.7	0	0.0	100.0
SW/통신서비스	8	5.6	3	2.1	1	0.7	0	0.0	1	0.7	100.0
기타서비스	0	0.0	0	0.0	0	0.0	1	5.0	0	0.0	100.0
농/임/어업	0	0.0	0	0.0	0	0.0	0	0.0	0	0.0	100.0
기타 산업	0	0.0	0	0.0	0	0.0	0	0.0	0	0.0	100.0
◆ 벤처기업 확인연도 ◆											
1998년	1	7.7	0	0.0	0	0.0	0	0.0	0	0.0	100.0
1999년	1	1.9	1	1.9	1	1.9	0	0.0	1	1.9	100.0
2000년	2	1.4	3	2.1	1	0.7	2	1.4	1	0.7	100.0
2001년	5	1.7	3	1.1	3	1.0	2	0.7	0	0.0	100.0
◆ 자본금규모 ◆											
1억원 미만	2	7.1	1	3.6	0	0.0	1	3.6	1	3.6	100.0
1~ 5억원 미만	3	1.7	2	1.1	2	1.1	2	1.1	0	0.0	100.0
5~ 10억원 미만	1	0.9	1	0.9	0	0.0	0	0.0	0	0.0	100.0
10~ 50억원 미만	2	1.3	2	1.3	3	1.9	1	0.6	0	0.0	100.0
50~100억원 미만	1	10.0	0	0.0	0	0.0	0	0.0	0	0.0	100.0
100억원 이상	0	0.0	0	0.0	0	0.0	0	0.0	0	0.0	100.0
모름/무응답	0	0.0	1	5.9	0	0.0	0	0.0	1	5.9	100.0
◆ 매출액규모 ◆											
1억원 미만	0	0.0	0	0.0	0	0.0	0	0.0	0	0.0	100.0
1~ 5억원 미만	1	1.3	0	0.0	1	1.3	2	2.5	1	1.3	100.0
5~ 10억원 미만	3	5.4	1	1.8	1	1.8	2	3.6	0	0.0	100.0
10~ 50억원 미만	2	1.1	3	1.6	0	0.0	0	0.0	0	0.0	100.0
50~100억원 미만	3	6.8	0	0.0	3	6.8	0	0.0	0	0.0	100.0
100억원 이상	0	0.0	1	1.7	0	0.0	0	0.0	0	0.0	100.0
모름/무응답	0	0.0	2	3.2	0	0.0	0	0.0	1	1.6	100.0

<부표 30>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활용 방식

	자체적으로 활용한다			위탁 (세무대리인: 세무사 등) 하여 활용 한다		두가지 방법을 병행한다		모름/ 무응답		계
	기업 수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 전 체 ■	502	208	41.4	231	46.0	57	11.4	6	1.2	100.0
◆ 지역 별 ◆										
서울	219	96	43.8	98	44.7	22	10.0	3	1.4	100.0
인천/경기	142	52	36.6	76	53.5	12	8.5	2	1.4	100.0
경 상 도	70	40	57.1	16	22.9	13	18.6	1	1.4	100.0
전 라 도	17	5	29.4	8	47.1	4	23.5	0	0.0	100.0
충 청 도	49	14	28.6	29	59.2	6	12.2	0	0.0	100.0
강원/제주	5	1	20.0	4	80.0	0	0.0	0	0.0	100.0
◆ 업 종 별 ◆										
첨단제조업	178	67	37.6	89	50.0	22	12.4	0	0.0	100.0
일반제조업	144	55	38.2	65	45.1	22	15.3	2	1.4	100.0
SW/통신서비스	142	67	47.2	62	43.7	9	6.3	4	2.8	100.0
기타서비스	20	10	50.0	8	40.0	2	10.0	0	0.0	100.0
농/임/어업	2	0	0.0	1	50.0	1	50.0	0	0.0	100.0
기타 산업	16	9	56.3	6	37.5	1	6.3	0	0.0	100.0
◆ 벤처기업 확인연도 ◆										
1998년	13	3	23.1	6	46.2	4	30.8	0	0.0	100.0
1999년	53	24	45.3	25	47.2	3	5.7	1	1.9	100.0
2000년	140	57	40.7	64	45.7	18	12.9	1	0.7	100.0
2001년	296	124	41.9	136	45.9	32	10.8	4	1.4	100.0
◆ 자본금규모 ◆										
1억원 미만	28	8	28.6	20	71.4	0	0.0	0	0.0	100.0
1~ 5억원 미만	174	60	34.5	93	53.4	21	12.1	0	0.0	100.0
5~ 10억원 미만	107	43	40.2	47	43.9	16	15.0	1	0.9	100.0
10~ 50억원 미만	157	77	49.0	59	37.6	18	11.5	3	1.9	100.0
50~100억원 미만	10	7	70.0	2	20.0	1	10.0	0	0.0	100.0
100억원 이상	9	7	77.8	1	11.1	1	11.1	0	0.0	100.0
모름/무응답	17	6	35.3	9	52.9	0	0.0	2	11.8	100.0
◆ 매출액규모 ◆										
1억원 미만	16	5	31.3	7	43.8	3	18.8	1	6.3	100.0
1~ 5억원 미만	80	31	38.8	41	51.3	8	10.0	0	0.0	100.0
5~ 10억원 미만	56	21	37.5	31	55.4	4	7.1	0	0.0	100.0
10~ 50억원 미만	185	74	40.0	88	47.6	22	11.9	1	0.5	100.0
50~100억원 미만	44	18	40.9	17	38.6	7	15.9	2	4.5	100.0
100억원 이상	59	29	49.2	18	30.5	12	20.3	0	0.0	100.0
모름/무응답	62	30	48.4	29	46.8	1	1.6	2	3.2	100.0

<부표 31> 중소기업 조세특례 지원제도 활용

	중소기업의 특별세액 감면		기업어음 제도 개선 세액공제		중소기업 지원 설비에 대한 손급산업 특례		적자 중소 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확대		
	기업 수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 전 체 ■	502	217	43.2	26	5.2	24	4.8	14	2.8
◆ 지역 별 ◆									
서울	219	82	37.4	7	3.2	5	2.3	4	1.8
인천/경기	142	60	42.3	15	10.6	11	7.7	8	5.6
경 상 도	70	35	50.0	3	4.3	3	4.3	0	0.0
전 라 도	17	5	29.4	0	0.0	0	0.0	0	0.0
충 청 도	49	33	67.3	1	2.0	5	10.2	2	4.1
강원/제주	5	2	40.0	0	0.0	0	0.0	0	0.0
◆ 업 종 별 ◆									
첨단제조업	178	97	54.5	9	5.1	15	8.4	7	3.9
일반제조업	144	59	41.0	13	9.0	6	4.2	4	2.8
SW/통신서비스	142	46	32.4	3	2.1	1	0.7	3	2.1
기타서비스	20	8	40.0	0	0.0	2	10.0	0	0.0
농/임/어업	2	1	50.0	0	0.0	0	0.0	0	0.0
기타 산업	16	6	37.5	1	6.3	0	0.0	0	0.0
◆ 벤처기업 확인연도 ◆									
1998년	13	8	61.5	1	7.7	1	7.7	2	15.4
1999년	53	25	47.2	4	7.5	5	9.4	2	3.8
2000년	140	60	42.9	9	6.4	3	2.1	2	1.4
2001년	296	124	41.9	12	4.1	15	5.1	8	2.7
◆ 자본금규모 ◆									
1억원 미만	28	10	35.7	0	0.0	0	0.0	0	0.0
1~ 5억원 미만	174	83	47.7	7	4.0	11	6.3	4	2.3
5~ 10억원 미만	107	46	43.0	5	4.7	4	3.7	2	1.9
10~ 50억원 미만	157	66	42.0	12	7.6	7	4.5	8	5.1
50~100억원 미만	10	5	50.0	1	10.0	1	10.0	0	0.0
100억원 이상	9	2	22.2	0	0.0	0	0.0	0	0.0
모름/무응답	17	5	29.4	1	5.9	1	5.9	0	0.0
◆ 매출액규모 ◆									
1억원 미만	16	7	43.8	1	6.3	2	12.5	1	6.3
1~ 5억원 미만	80	32	40.0	0	0.0	1	1.3	3	3.8
5~ 10억원 미만	56	23	41.1	1	1.8	2	3.6	1	1.8
10~ 50억원 미만	185	85	45.9	12	6.5	11	5.9	7	3.8
50~100억원 미만	44	19	43.2	3	6.8	3	6.8	1	2.3
100억원 이상	59	33	55.9	8	13.6	4	6.8	1	1.7
모름/무응답	62	18	29.0	1	1.6	1	1.6	0	0.0

<부표 31>의 계속

	세액 공제액의 이월공제		기업 합리화 적립금 적립의무 배제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기술 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 전 체 ■	64	12.7	24	4.8	102	20.3	19	3.8
◆ 지역 별 ◆								
서울	18	8.2	12	5.5	38	17.4	5	2.3
인천/경기	30	21.1	7	4.9	31	21.8	10	7.0
경상도	5	7.1	3	4.3	10	14.3	2	2.9
전라도	0	0.0	0	0.0	2	11.8	0	0.0
충청도	10	20.4	1	2.0	19	38.8	2	4.1
강원/제주	1	20.0	1	20.0	2	40.0	0	0.0
◆ 업 종 별 ◆								
첨단제조업	22	12.4	12	6.7	50	28.1	6	3.4
일반제조업	27	18.8	8	5.6	23	16.0	7	4.9
SW/통신서비스	11	7.7	3	2.1	19	13.4	5	3.5
기타서비스	2	10.0	1	5.0	6	30.0	1	5.0
농/임/어업	0	0.0	0	0.0	1	50.0	0	0.0
기타 산업	2	12.5	0	0.0	3	18.8	0	0.0
◆ 벤처기업 확인연도 ◆								
1998년	3	23.1	2	15.4	8	61.5	1	7.7
1999년	7	13.2	5	9.4	13	24.5	2	3.8
2000년	13	9.3	6	4.3	24	17.1	4	2.9
2001년	41	13.9	11	3.7	57	19.3	12	4.1
◆ 자본금규모 ◆								
1억원 미만	3	10.7	2	7.1	6	21.4	0	0.0
1~ 5억원 미만	25	14.4	9	5.2	29	16.7	7	4.0
5~ 10억원 미만	9	8.4	6	5.6	21	19.6	2	1.9
10~ 50억원 미만	22	14.0	7	4.5	40	25.5	10	6.4
50~100억원 미만	2	20.0	0	0.0	4	40.0	0	0.0
100억원 이상	0	0.0	0	0.0	2	22.2	0	0.0
모름/무응답	3	17.6	0	0.0	0	0.0	0	0.0
◆ 매출액규모 ◆								
1억원 미만	2	12.5	1	6.3	4	25.0	1	6.3
1~ 5억원 미만	8	10.0	1	1.3	15	18.8	1	1.3
5~ 10억원 미만	4	7.1	3	5.4	5	8.9	1	1.8
10~ 50억원 미만	29	15.7	10	5.4	43	23.2	8	4.3
50~100억원 미만	5	11.4	3	6.8	10	22.7	3	6.8
100억원 이상	11	18.6	6	10.2	23	39.0	5	8.5
모름/무응답	5	8.1	0	0.0	2	3.2	0	0.0

<부표 32> 중소기업 투자촉진 지원세제 활용

	중소기업 투자세액			연구 및 인력 개발을 위한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정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기업수	기업수	%	기업수	%	기업수	%	기업수	%	기업수	%	기업수	%
■ 전 체 ■	502	114	22.7	93	18.5	19	3.8	23	4.6	6	1.2	19	3.8
◆ 지역 별 ◆													
서울	219	34	15.5	30	13.7	3	1.4	5	2.3	0	0.0	5	2.3
인천/경기	142	40	28.2	36	25.4	6	4.2	8	5.6	4	2.8	6	4.2
경상도	70	17	24.3	14	20.0	6	8.6	6	8.6	1	1.4	5	7.1
전라도	17	2	11.8	1	5.9	1	5.9	1	5.9	0	0.0	0	0.0
충청도	49	21	42.9	11	22.4	2	4.1	3	6.1	1	2.0	3	6.1
강원/제주	5	0	0.0	1	20.0	1	20.0	0	0.0	0	0.0	0	0.0
◆ 업 종 별 ◆													
첨단제조업	178	48	27.0	50	28.1	10	5.6	10	5.6	3	1.7	9	5.1
일반제조업	144	39	27.1	21	14.6	8	5.6	7	4.9	3	2.1	7	4.9
SW/통신서비스	142	23	16.2	15	10.6	1	0.7	4	2.8	0	0.0	2	1.4
기타서비스	20	2	10.0	3	15.0	0	0.0	0	0.0	0	0.0	1	5.0
농/임/어업	2	0	0.0	1	50.0	0	0.0	0	0.0	0	0.0	0	0.0
기타 산업	16	2	12.5	3	18.8	0	0.0	2	12.5	0	0.0	0	0.0
◆ 벤처기업 확인연도 ◆													
1998년	13	5	38.5	5	38.5	1	7.7	1	7.7	1	7.7	0	0.0
1999년	53	10	18.9	16	30.2	4	7.5	4	7.5	0	0.0	3	5.7
2000년	140	27	19.3	23	16.4	5	3.6	6	4.3	2	1.4	4	2.9
2001년	296	72	24.3	49	16.6	9	3.0	12	4.1	3	1.0	12	4.1
◆ 자본금규모 ◆													
1억원 미만	28	3	10.7	3	10.7	0	0.0	3	10.7	0	0.0	1	3.6
1~ 5억원 미만	174	39	22.4	30	17.2	8	4.6	7	4.0	2	1.1	5	2.9
5~ 10억원 미만	107	16	15.0	16	15.0	3	2.8	5	4.7	1	0.9	2	1.9
10~ 50억원 미만	157	48	30.6	39	24.8	7	4.5	6	3.8	3	1.9	10	6.4
50~100억원 미만	10	2	20.0	3	30.0	1	10.0	1	10.0	0	0.0	0	0.0
100억원 이상	9	1	11.1	1	11.1	0	0.0	1	11.1	0	0.0	1	11.1
모름/무응답	17	5	29.4	1	5.9	0	0.0	0	0.0	0	0.0	0	0.0
◆ 매출액규모 ◆													
1억원 미만	16	2	12.5	3	18.8	0	0.0	1	6.3	0	0.0	0	0.0
1~ 5억원 미만	80	19	23.8	13	16.3	2	2.5	2	2.5	0	0.0	2	2.5
5~ 10억원 미만	56	8	14.3	5	8.9	2	3.6	2	3.6	0	0.0	2	3.6
10~ 50억원 미만	185	41	22.2	38	20.5	9	4.9	11	5.9	3	1.6	8	4.3
50~100억원 미만	44	10	22.7	8	18.2	3	6.8	2	4.5	1	2.3	1	2.3
100억원 이상	59	25	42.4	19	32.2	2	3.4	3	5.1	1	1.7	5	8.5
모름/무응답	62	9	14.5	7	11.3	1	1.6	2	3.2	1	1.6	1	1.6

<부표 33> 중소기업 재무구조개선 및 구조조정 지원세제 활용

	중소기업 통합시 양도 소득세 이월과세			법인 전환시 양도 소득세 이월과세		사업전환 중소기업 양도 소득세 감면		사업전환 중소기업 법인세 또는 소득세감면	
	기업 수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 전 체 ■	502	26	5.2	38	7.6	6	1.2	16	3.2
◆ 지역 별 ◆									
서울	219	5	2.3	6	2.7	0	0.0	2	0.9
인천/경기	142	19	13.4	26	18.3	4	2.8	5	3.5
경 상 도	70	1	1.4	3	4.3	1	1.4	3	4.3
전 라 도	17	0	0.0	0	0.0	0	0.0	1	5.9
충 청 도	49	1	2.0	3	6.1	1	2.0	3	6.1
강원/제주	5	0	0.0	0	0.0	0	0.0	2	40.0
◆ 업 종 별 ◆									
첨단제조업	178	5	2.8	9	5.1	3	1.7	7	3.9
일반제조업	144	10	6.9	16	11.1	2	1.4	7	4.9
SW/통신서비스	142	8	5.6	9	6.3	0	0.0	0	0.0
기타서비스	20	1	5.0	0	0.0	1	5.0	2	10.0
농/임/어업	2	0	0.0	0	0.0	0	0.0	0	0.0
기타 산업	16	2	12.5	4	25.0	0	0.0	0	0.0
◆ 벤처기업 확인연도 ◆									
1998년	13	1	7.7	2	15.4	0	0.0	1	7.7
1999년	53	1	1.9	5	9.4	1	1.9	1	1.9
2000년	140	6	4.3	6	4.3	2	1.4	5	3.6
2001년	296	18	6.1	25	8.4	3	1.0	9	3.0
◆ 자본금규모 ◆									
1억원 미만	28	0	0.0	1	3.6	0	0.0	2	7.1
1~ 5억원 미만	174	11	6.3	17	9.8	4	2.3	9	5.2
5~ 10억원 미만	107	3	2.8	3	2.8	0	0.0	1	0.9
10~ 50억원 미만	157	11	7.0	15	9.6	2	1.3	4	2.5
50~100억원 미만	10	0	0.0	0	0.0	0	0.0	0	0.0
100억원 이상	9	0	0.0	0	0.0	0	0.0	0	0.0
모름/무응답	17	1	5.9	2	11.8	0	0.0	0	0.0
◆ 매출액규모 ◆									
1억원 미만	16	1	6.3	1	6.3	0	0.0	1	6.3
1~ 5억원 미만	80	2	2.5	4	5.0	1	1.3	2	2.5
5~ 10억원 미만	56	1	1.8	3	5.4	0	0.0	4	7.1
10~ 50억원 미만	185	14	7.6	18	9.7	3	1.6	5	2.7
50~100억원 미만	44	1	2.3	2	4.5	0	0.0	2	4.5
100억원 이상	59	4	6.8	7	11.9	1	1.7	1	1.7
모름/무응답	62	3	4.8	3	4.8	1	1.6	1	1.6

<부표 33>의 계속

	채매사업장의 이전시 양도 소득세 감면		중소사업자 경영지원시 양도 소득세 감면		법인의 채무구조 개선시 특별부가세 감면		주주 등 자산 증여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위탁기업체의 주주의 자산 증여에 대한 과세특례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 전 체 ■	2	0.4	2	0.4	8	1.6	13	2.6	1	0.2
◆ 지역 별 ◆										
서울	0	0.0	0	0.0	1	0.5	4	1.8	0	0.0
인천/경기	1	0.7	2	1.4	6	4.2	7	4.9	1	0.7
경상도	0	0.0	0	0.0	1	1.4	0	0.0	0	0.0
전라도	0	0.0	0	0.0	0	0.0	0	0.0	0	0.0
충청도	1	2.0	0	0.0	0	0.0	2	4.1	0	0.0
강원/제주	0	0.0	0	0.0	0	0.0	0	0.0	0	0.0
◆ 업 종 별 ◆										
첨단제조업	2	1.1	1	0.6	2	1.1	7	3.9	1	0.6
일반제조업	0	0.0	1	0.7	5	3.5	3	2.1	0	0.0
SW/통신서비스	0	0.0	0	0.0	1	0.7	3	2.1	0	0.0
기타서비스	0	0.0	0	0.0	0	0.0	0	0.0	0	0.0
농/임/어업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 산업	0	0.0	0	0.0	0	0.0	0	0.0	0	0.0
◆ 벤처기업 확인연도 ◆										
1998년	1	7.7	1	7.7	1	7.7	2	15.4	0	0.0
1999년	0	0.0	0	0.0	1	1.9	2	3.8	0	0.0
2000년	1	0.7	0	0.0	2	1.4	4	2.9	1	0.7
2001년	0	0.0	1	0.3	4	1.4	5	1.7	0	0.0
◆ 자본금규모 ◆										
1억원 미만	0	0.0	0	0.0	0	0.0	0	0.0	0	0.0
1~ 5억원 미만	0	0.0	0	0.0	2	1.1	8	4.6	0	0.0
5~ 10억원 미만	1	0.9	0	0.0	0	0.0	1	0.9	0	0.0
10~ 50억원 미만	1	0.6	2	1.3	5	3.2	4	2.5	1	0.6
50~100억원 미만	0	0.0	0	0.0	1	10.0	0	0.0	0	0.0
100억원 이상	0	0.0	0	0.0	0	0.0	0	0.0	0	0.0
모름/무응답	0	0.0	0	0.0	0	0.0	0	0.0	0	0.0
◆ 매출액규모 ◆										
1억원 미만	0	0.0	0	0.0	0	0.0	0	0.0	0	0.0
1~ 5억원 미만	1	1.3	0	0.0	1	1.3	2	2.5	0	0.0
5~ 10억원 미만	0	0.0	0	0.0	0	0.0	4	7.1	0	0.0
10~ 50억원 미만	1	0.5	1	0.5	4	2.2	5	2.7	1	0.5
50~100억원 미만	0	0.0	0	0.0	0	0.0	1	2.3	0	0.0
100억원 이상	0	0.0	1	1.7	3	5.1	1	1.7	0	0.0
모름/무응답	0	0.0	0	0.0	0	0.0	0	0.0	0	0.0

<부표 34> 중소기업 지방이전 촉진 지원세제 활용

	공장의 지방 이전시 양도 소득세 등 감면			법인 본사의 지방 이전시 양도 소득세 등 감면		지방이전 기업의 설비투자 세액공제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업 수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 전 체 ■	502	12	2.4	10	2.0	3	0.6	11	2.2
◆ 지역 별 ◆									
서울	219	3	1.4	1	0.5	2	0.9	2	0.9
인천/경기	142	8	5.6	7	4.9	0	0.0	7	4.9
경상도	70	0	0.0	0	0.0	0	0.0	0	0.0
전라도	17	0	0.0	0	0.0	0	0.0	1	5.9
충청도	49	1	2.0	1	2.0	1	2.0	1	2.0
강원/제주	5	0	0.0	1	20.0	0	0.0	0	0.0
◆ 업 종 별 ◆									
첨단제조업	178	4	2.2	4	2.2	3	1.7	5	2.8
일반제조업	144	6	4.2	4	2.8	0	0.0	4	2.8
SW/통신서비스	142	2	1.4	2	1.4	0	0.0	1	0.7
기타서비스	20	0	0.0	0	0.0	0	0.0	0	0.0
농/임/어업	2	0	0.0	0	0.0	0	0.0	0	0.0
기타 산업	16	0	0.0	0	0.0	0	0.0	1	6.3
◆ 벤처기업 확인연도 ◆									
1998년	13	0	0.0	0	0.0	0	0.0	0	0.0
1999년	53	1	1.9	0	0.0	1	1.9	2	3.8
2000년	140	3	2.1	2	1.4	2	1.4	2	1.4
2001년	296	8	2.7	8	2.7	0	0.0	7	2.4
◆ 자본금규모 ◆									
1억원 미만	28	0	0.0	0	0.0	0	0.0	0	0.0
1~ 5억원 미만	174	5	2.9	4	2.3	1	0.6	2	1.1
5~ 10억원 미만	107	3	2.8	2	1.9	0	0.0	4	3.7
10~ 50억원 미만	157	4	2.5	4	2.5	2	1.3	5	3.2
50~100억원 미만	10	0	0.0	0	0.0	0	0.0	0	0.0
100억원 이상	9	0	0.0	0	0.0	0	0.0	0	0.0
모름/무응답	17	0	0.0	0	0.0	0	0.0	0	0.0
◆ 매출액규모 ◆									
1억원 미만	16	0	0.0	0	0.0	0	0.0	0	0.0
1~ 5억원 미만	80	3	3.8	1	1.3	0	0.0	1	1.3
5~ 10억원 미만	56	0	0.0	2	3.6	1	1.8	2	3.6
10~ 50억원 미만	185	4	2.2	5	2.7	2	1.1	4	2.2
50~100억원 미만	44	3	6.8	1	2.3	0	0.0	2	4.5
100억원 이상	59	2	3.4	1	1.7	0	0.0	1	1.7
모름/무응답	62	0	0.0	0	0.0	0	0.0	1	1.6

<부표 34>의 계속

	법인공장, 본사의 지방 이천시 임시특별 세액 감면		농공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5년이상 가동공장 이천시 양도소득세 감면		법인, 지방 이천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공장, 지방 이천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 전 체 ■	6	1.2	6	1.2	1	0.2	19	3.8	9	1.8
◆ 지역 별 ◆										
서울	1	0.5	1	0.5	1	0.5	1	0.5	1	0.5
인천/경기	3	2.1	2	1.4	0	0.0	15	10.6	4	2.8
경 상 도	1	1.4	1	1.4	0	0.0	0	0.0	1	1.4
전 라 도	0	0.0	0	0.0	0	0.0	0	0.0	0	0.0
충 청 도	1	2.0	1	2.0	0	0.0	2	4.1	3	6.1
강원/제주	0	0.0	1	20.0	0	0.0	1	20.0	0	0.0
◆ 업 종 별 ◆										
철단제조업	3	1.7	2	1.1	1	0.6	3	1.7	4	2.2
일반제조업	3	2.1	2	1.4	0	0.0	9	6.3	4	2.8
SW/통신서비스	0	0.0	0	0.0	0	0.0	4	2.8	0	0.0
기타서비스	0	0.0	1	5.0	0	0.0	1	5.0	0	0.0
농/임/어업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 산업	0	0.0	1	6.3	0	0.0	2	12.5	1	6.3
◆ 벤처기업 확인연도 ◆										
1998년	0	0.0	1	7.7	0	0.0	0	0.0	0	0.0
1999년	1	1.9	0	0.0	0	0.0	1	1.9	1	1.9
2000년	0	0.0	1	0.7	0	0.0	5	3.6	3	2.1
2001년	5	1.7	4	1.4	1	0.3	13	4.4	5	1.7
◆ 자본금규모 ◆										
1억원 미만	0	0.0	0	0.0	0	0.0	0	0.0	0	0.0
1~ 5억원 미만	2	1.1	2	1.1	0	0.0	11	6.3	4	2.3
5~ 10억원 미만	1	0.9	1	0.9	1	0.9	3	2.8	3	2.8
10~ 50억원 미만	3	1.9	3	1.9	0	0.0	4	2.5	1	0.6
50~100억원 미만	0	0.0	0	0.0	0	0.0	1	10.0	1	10.0
100억원 이상	0	0.0	0	0.0	0	0.0	0	0.0	0	0.0
모름/무응답	0	0.0	0	0.0	0	0.0	0	0.0	0	0.0
◆ 매출액규모 ◆										
1억원 미만	0	0.0	0	0.0	0	0.0	0	0.0	0	0.0
1~ 5억원 미만	2	2.5	1	1.3	0	0.0	4	5.0	2	2.5
5~ 10억원 미만	0	0.0	1	1.8	1	1.8	4	7.1	1	1.8
10~ 50억원 미만	1	0.5	1	0.5	0	0.0	7	3.8	5	2.7
50~100억원 미만	0	0.0	0	0.0	0	0.0	0	0.0	1	2.3
100억원 이상	2	3.4	2	3.4	0	0.0	3	5.1	0	0.0
모름/무응답	1	1.6	1	1.6	0	0.0	1	1.6	0	0.0

<부표 35> 중소기업 준비금 제도 활용

	중소기업 투자 준비금의 손금산입			상장 또는 등록법인에 대한 사업손실 준비금의 손금산입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의 손금산입	
	기업 수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 전 체 ■	502	32	6.4	13	2.6	47	9.4
◆ 지역 별 ◆							
서울	219	10	4.6	3	1.4	14	6.4
인천/경기	142	11	7.7	8	5.6	19	13.4
경 상 도	70	3	4.3	1	1.4	4	5.7
전 라 도	17	2	11.8	0	0.0	0	0.0
충 청 도	49	6	12.2	1	2.0	8	16.3
강원/제주	5	0	0.0	0	0.0	2	40.0
◆ 업 종 별 ◆							
첨단제조업	178	17	9.6	5	2.8	27	15.2
일반제조업	144	8	5.6	3	2.1	12	8.3
SW/통신서비스	142	4	2.8	2	1.4	5	3.5
기타서비스	20	3	15.0	1	5.0	1	5.0
농/임/어업	2	0	0.0	0	0.0	0	0.0
기타 산업	16	0	0.0	2	12.5	2	12.5
◆ 벤처기업 확인연도 ◆							
1998년	13	2	15.4	0	0.0	3	23.1
1999년	53	3	5.7	1	1.9	5	9.4
2000년	140	12	8.6	4	2.9	15	10.7
2001년	296	15	5.1	8	2.7	24	8.1
◆ 자본금규모 ◆							
1억원 미만	28	2	7.1	0	0.0	2	7.1
1~ 5억원 미만	174	11	6.3	4	2.3	20	11.5
5~ 10억원 미만	107	5	4.7	4	3.7	8	7.5
10~ 50억원 미만	157	12	7.6	4	2.5	15	9.6
50~100억원 미만	10	2	20.0	1	10.0	1	10.0
100억원 이상	9	0	0.0	0	0.0	1	11.1
모름/무응답	17	0	0.0	0	0.0	0	0.0
◆ 매출액규모 ◆							
1억원 미만	16	1	6.3	0	0.0	1	6.3
1~ 5억원 미만	80	4	5.0	2	2.5	11	13.8
5~ 10억원 미만	56	1	1.8	0	0.0	4	7.1
10~ 50억원 미만	185	14	7.6	6	3.2	20	10.8
50~100억원 미만	44	2	4.5	2	4.5	3	6.8
100억원 이상	59	8	13.6	2	3.4	7	11.9
모름/무응답	62	2	3.2	1	1.6	1	1.6

<부표 36> 창업벤처 중소기업 지원세제 활용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등록세 면제 및 중과배제		취득세 면제 및 중과배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재산세 중과배제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		인지세 감면	
	기업수	기업수	%	기업수	%	기업수	%	기업수	%	기업수	%	기업수	%	기업수	%
■ 전 체 ■	502	173	34.5	58	11.6	52	10.4	27	5.4	12	2.4	11	2.2	35	7.0
◆ 지역 별 ◆															
서울	219	64	29.2	20	9.1	16	7.3	4	1.8	1	0.5	3	1.4	16	7.3
인천/경기	142	52	36.6	17	12.0	22	15.5	16	11.3	9	6.3	3	2.1	17	12.0
경상도	70	22	31.4	6	8.6	3	4.3	0	0.0	0	0.0	2	2.9	1	1.4
전라도	17	6	35.3	2	11.8	0	0.0	0	0.0	0	0.0	0	0.0	0	0.0
충청도	49	26	53.1	12	24.5	11	22.4	7	14.3	2	4.1	2	4.1	1	2.0
강원/제주	5	3	60.0	1	20.0	0	0.0	0	0.0	0	0.0	1	20.0	0	0.0
◆ 업 종 별 ◆															
첨단제조업	178	65	36.5	28	15.7	28	15.7	11	6.2	5	2.8	7	3.9	4	2.2
일반제조업	144	45	31.3	18	12.5	19	13.2	13	9.0	6	4.2	3	2.1	10	6.9
SW/통신서비스	142	48	33.8	9	6.3	2	1.4	2	1.4	1	0.7	0	0.0	17	12.0
기타서비스	20	9	45.0	1	5.0	1	5.0	0	0.0	0	0.0	0	0.0	1	5.0
농/임/어업	2	1	50.0	0	0.0	0	0.0	0	0.0	0	0.0	1	50.0	0	0.0
기타 산업	16	5	31.3	2	12.5	2	12.5	1	6.3	0	0.0	0	0.0	3	18.8
◆ 벤처기업 확인연도 ◆															
1998년	13	7	53.8	2	15.4	1	7.7	1	7.7	1	7.7	0	0.0	0	0.0
1999년	53	20	37.7	8	15.1	10	18.9	5	9.4	3	5.7	2	3.8	1	1.9
2000년	140	49	35.0	17	12.1	18	12.9	9	6.4	1	0.7	4	2.9	9	6.4
2001년	296	97	32.8	31	10.5	23	7.8	12	4.1	7	2.4	5	1.7	25	8.4
◆ 자본금규모 ◆															
1억원 미만	28	7	25.0	4	14.3	1	3.6	0	0.0	0	0.0	1	3.6	0	0.0
1~ 5억원 미만	174	71	40.8	24	13.8	20	11.5	11	6.3	6	3.4	5	2.9	15	8.6
5~ 10억원 미만	107	34	31.8	12	11.2	12	11.2	5	4.7	2	1.9	1	0.9	5	4.7
10~ 50억원 미만	157	48	30.6	14	8.9	16	10.2	10	6.4	4	2.5	3	1.9	11	7.0
50~100억원 미만	10	3	30.0	2	20.0	2	20.0	0	0.0	0	0.0	0	0.0	0	0.0
100억원 이상	9	4	44.4	1	11.1	1	11.1	0	0.0	0	0.0	1	11.1	1	11.1
모름/무응답	17	6	35.3	1	5.9	0	0.0	1	5.9	0	0.0	0	0.0	3	17.6
◆ 매출액규모 ◆															
1억원 미만	16	5	31.3	3	18.8	2	12.5	0	0.0	1	6.3	1	6.3	1	6.3
1~ 5억원 미만	80	32	40.0	14	17.5	9	11.3	4	5.0	2	2.5	2	2.5	5	6.3
5~ 10억원 미만	56	23	41.1	8	14.3	9	16.1	3	5.4	1	1.8	2	3.6	1	1.8
10~ 50억원 미만	185	63	34.1	20	10.8	19	10.3	14	7.6	8	4.3	2	1.1	17	9.2
50~100억원 미만	44	14	31.8	3	6.8	3	6.8	1	2.3	0	0.0	2	4.5	2	4.5
100억원 이상	59	23	39.0	6	10.2	8	13.6	4	6.8	0	0.0	2	3.4	4	6.8
모름/무응답	62	13	21.0	4	6.5	2	3.2	1	1.6	0	0.0	0	0.0	5	8.1

<부표 37> 창업중소기업 공장설립 부담금 감면제도 활용

	개발이익 부담금 감면			농지전용 부담금 및 산림전용 부담금 감면	
	기업 수	기업 수	%	기업 수	%
■ 전 체 ■	502	32	6.4	9	1.8
◆ 지역 별 ◆					
서울	219	8	3.7	1	0.5
인천/경기	142	11	7.7	5	3.5
경상도	70	9	12.9	0	0.0
전라도	17	2	11.8	1	5.9
충청도	49	2	4.1	1	2.0
강원/제주	5	0	0.0	1	20.0
◆ 업 종 별 ◆					
첨단제조업	178	14	7.9	3	1.7
일반제조업	144	10	6.9	4	2.8
SW/통신서비스	142	8	5.6	0	0.0
기타서비스	20	0	0.0	0	0.0
농/임/어업	2	0	0.0	0	0.0
기타 산업	16	0	0.0	2	12.5
◆ 벤처기업 확인연도 ◆					
1998년	13	0	0.0	1	7.7
1999년	53	1	1.9	0	0.0
2000년	140	9	6.4	1	0.7
2001년	296	22	7.4	7	2.4
◆ 자본금규모 ◆					
1억원 미만	28	3	10.7	0	0.0
1~ 5억원 미만	174	12	6.9	5	2.9
5~ 10억원 미만	107	8	7.5	0	0.0
10~ 50억원 미만	157	9	5.7	3	1.9
50~100억원 미만	10	0	0.0	0	0.0
100억원 이상	9	0	0.0	0	0.0
모름/무응답	17	0	0.0	1	5.9
◆ 매출액규모 ◆					
1억원 미만	16	1	6.3	0	0.0
1~ 5억원 미만	80	8	10.0	2	2.5
5~ 10억원 미만	56	5	8.9	0	0.0
10~ 50억원 미만	185	9	4.9	5	2.7
50~100억원 미만	44	4	9.1	0	0.0
100억원 이상	59	3	5.1	1	1.7
모름/무응답	62	2	3.2	1	1.6

<부표 38> 벤처기업 스톱옵션 관련 조세감면제도 활용

	기업 수	활용했다		활용하지 않았다		계
		기업 수	%	기업 수	%	
■ 전 체 ■	502	30	6.0	472	94.0	100.0
◆ 지역 별 ◆						
서울	219	13	5.9	206	94.1	100.0
인천/경기	142	4	2.8	138	97.2	100.0
경 상 도	70	12	17.1	58	82.9	100.0
전 라 도	17	0	0.0	17	100.0	100.0
충 청 도	49	1	2.0	48	98.0	100.0
강원/제주	5	0	0.0	5	100.0	100.0
◆ 업 종 별 ◆						
철단제조업	178	10	5.6	168	94.4	100.0
일반제조업	144	7	4.9	137	95.1	100.0
SW/통신서비스	142	12	8.5	130	91.5	100.0
기타서비스	20	1	5.0	19	95.0	100.0
농/임/어업	2	0	0.0	2	100.0	100.0
기타 산업	16	0	0.0	16	100.0	100.0
◆ 벤처기업 확인연도 ◆						
1998년	13	1	7.7	12	92.3	100.0
1999년	53	2	3.8	51	96.2	100.0
2000년	140	11	7.9	129	92.1	100.0
2001년	296	16	5.4	280	94.6	100.0
◆ 자본금규모 ◆						
1억원 미만	28	1	3.6	27	96.4	100.0
1~ 5억원 미만	174	6	3.4	168	96.6	100.0
5~ 10억원 미만	107	4	3.7	103	96.3	100.0
10~ 50억원 미만	157	15	9.6	142	90.4	100.0
50~100억원 미만	10	2	20.0	8	80.0	100.0
100억원 이상	9	0	0.0	9	100.0	100.0
모름/무응답	17	2	11.8	15	88.2	100.0
◆ 매출액규모 ◆						
1억원 미만	16	0	0.0	16	100.0	100.0
1~ 5억원 미만	80	6	7.5	74	92.5	100.0
5~ 10억원 미만	56	3	5.4	53	94.6	100.0
10~ 50억원 미만	185	8	4.3	177	95.7	100.0
50~100억원 미만	44	3	6.8	41	93.2	100.0
100억원 이상	59	6	10.2	53	89.8	100.0
모름/무응답	62	4	6.5	58	93.5	100.0

<부표 39>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정비 정도

	① 매우 잘 정비되어 있다.			② 대체로 잘 정비되어 있다		①+②		③ 아직 보완되어야 할 점이 더러 있다	
	기업 수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수	%
■ 전 체 ■	502	10	2.0	127	25.3	137	27.3	299	59.6
◆ 지역 별 ◆									
서울	219	10	4.6	40	18.3	50	22.8	132	60.3
인천/경기	142	0	0.0	36	25.4	36	25.4	87	61.3
경상도	70	0	0.0	21	30.0	21	30.0	43	61.4
전라도	17	0	0.0	5	29.4	5	29.4	10	58.8
충청도	49	0	0.0	24	49.0	24	49.0	23	46.9
강원/제주	5	0	0.0	1	20.0	1	20.0	4	80.0
◆ 업 종 별 ◆									
첨단제조업	178	6	3.4	62	34.8	68	38.2	98	55.1
일반제조업	144	1	0.7	34	23.6	35	24.3	93	64.6
SW/통신서비스	142	3	2.1	25	17.6	28	19.7	84	59.2
기타서비스	20	0	0.0	3	15.0	3	15.0	15	75.0
농/임/어업	2	0	0.0	1	50.0	1	50.0	1	50.0
기타 산업	16	0	0.0	2	12.5	2	12.5	8	50.0
◆ 벤처기업 확인연도 ◆									
1998년	13	1	7.7	2	15.4	3	23.1	9	69.2
1999년	53	1	1.9	13	24.5	14	26.4	38	71.7
2000년	140	5	3.6	40	28.6	45	32.1	79	56.4
2001년	296	3	1.0	72	24.3	75	25.3	173	58.4
◆ 자본금규모 ◆									
1억원 미만	28	0	0.0	8	28.6	8	28.6	17	60.7
1~ 5억원 미만	174	1	0.6	46	26.4	47	27.0	103	59.2
5~ 10억원 미만	107	2	1.9	30	28.0	32	29.9	61	57.0
10~ 50억원 미만	157	6	3.8	35	22.3	41	26.1	96	61.1
50~100억원 미만	10	1	10.0	3	30.0	4	40.0	6	60.0
100억원 이상	9	0	0.0	4	44.4	4	44.4	4	44.4
모름/무응답	17	0	0.0	1	5.9	1	5.9	12	70.6
◆ 매출액규모 ◆									
1억원 미만	16	0	0.0	5	31.3	5	31.3	9	56.3
1~ 5억원 미만	80	1	1.3	22	27.5	23	28.8	41	51.3
5~ 10억원 미만	56	0	0.0	14	25.0	14	25.0	37	66.1
10~ 50억원 미만	185	3	1.6	46	24.9	49	26.5	110	59.5
50~100억원 미만	44	1	2.3	10	22.7	11	25.0	30	68.2
100억원 이상	59	5	8.5	20	33.9	25	42.4	31	52.5
모름/무응답	62	0	0.0	10	16.1	10	16.1	41	66.1

<부표 39>의 계속

	④ 전혀 정비가 되어있지 않다		③+④		모름/무응답		계	평균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	점
■ 전 체 ■	64	12.7	363	72.3	2	0.4	100.0	38.83
◆ 지역 별 ◆								
서울	37	16.9	169	77.2	0	0.0	100.0	36.8
인천/경기	19	13.4	106	74.6	0	0.0	100.0	37.29
경 상 도	6	8.6	49	70.0	0	0.0	100.0	40.44
전 라 도	1	5.9	11	64.7	1	5.9	100.0	41.62
충 청 도	1	2.0	24	49.0	1	2.0	100.0	49.26
강원/제주	0	0.0	4	80.0	0	0.0	100.0	39.96
◆ 업 종 별 ◆								
첨단제조업	11	6.2	109	61.2	1	0.6	100.0	45.16
일반제조업	16	11.1	109	75.7	0	0.0	100.0	37.93
SW/통신서비스	29	20.4	113	79.6	1	0.7	100.0	33.77
기타서비스	2	10.0	17	85.0	0	0.0	100.0	34.97
농/임/어업	0	0.0	1	50.0	0	0.0	100.0	49.95
기타 산업	6	37.5	14	87.5	0	0.0	100.0	24.98
◆ 벤처기업 확인연도 ◆								
1998년	1	7.7	10	76.9	0	0.0	100.0	40.99
1999년	1	1.9	39	73.6	0	0.0	100.0	42.1
2000년	16	11.4	95	67.9	0	0.0	100.0	41.39
2001년	46	15.5	219	74.0	2	0.7	100.0	36.93
◆ 자본금규모 ◆								
1억원 미만	2	7.1	19	67.9	1	3.6	100.0	40.7
1~ 5억원 미만	23	13.2	126	72.4	1	0.6	100.0	38.11
5~ 10억원 미만	14	13.1	75	70.1	0	0.0	100.0	39.53
10~ 50억원 미만	20	12.7	116	73.9	0	0.0	100.0	39.03
50~100억원 미만	0	0.0	6	60.0	0	0.0	100.0	49.96
100억원 이상	1	11.1	5	55.6	0	0.0	100.0	44.4
모름/무응답	4	23.5	16	94.1	0	0.0	100.0	27.42
◆ 매출액규모 ◆								
1억원 미만	2	12.5	11	68.8	0	0.0	100.0	39.54
1~ 5억원 미만	15	18.8	56	70.0	1	1.3	100.0	37.09
5~ 10억원 미만	4	7.1	41	73.2	1	1.8	100.0	39.35
10~ 50억원 미만	26	14.1	136	73.5	0	0.0	100.0	37.98
50~100억원 미만	3	6.8	33	75.0	0	0.0	100.0	40.11
100억원 이상	3	5.1	34	57.6	0	0.0	100.0	48.55
모름/무응답	11	17.7	52	83.9	0	0.0	100.0	32.76

<부표 40>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활용 정도

	①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② 비교적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①+②		③ 활용이 부진하다		④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		③+④		계	평균 점
	기업수	기업수	%	기업수	%	기업수	%	기업수	%	기업수	%	기업수	%	기업수		
■ 전 체 ■	502	14	2.8	125	24.9	139	27.7	221	44.0	142	28.3	363	72.3	100.0	34.0	
◆ 지역 별 ◆																
서울	219	9	4.1	38	17.4	47	21.5	101	46.1	71	32.4	172	78.5	100.0	31.0	
인천/경기	142	2	1.4	39	27.5	41	28.9	57	40.1	44	31.0	101	71.1	100.0	33.1	
경상도	70	2	2.9	19	27.1	21	30.0	30	42.9	19	27.1	49	70.0	100.0	35.2	
전라도	17	0	0.0	6	35.3	6	35.3	8	47.1	3	17.6	11	64.7	100.0	39.2	
충청도	49	1	2.0	21	42.9	22	44.9	23	46.9	4	8.2	27	55.1	100.0	46.2	
강원/제주	5	0	0.0	2	40.0	2	40.0	2	40.0	1	20.0	3	60.0	100.0	40.0	
◆ 업 종 별 ◆																
첨단제조업	178	8	4.5	58	32.6	66	37.1	82	46.1	30	16.9	112	62.9	100.0	41.5	
일반제조업	144	1	0.7	35	24.3	36	25.0	62	43.1	46	31.9	108	75.0	100.0	31.2	
SW/통신서비스	142	3	2.1	29	20.4	32	22.5	58	40.8	52	36.6	110	77.5	100.0	29.3	
기타서비스	20	1	5.0	1	5.0	2	10.0	11	55.0	7	35.0	18	90.0	100.0	26.7	
농/임/어업	2	1	50.0	0	0.0	1	50.0	1	50.0	0	0.0	1	50.0	100.0	66.7	
기타 산업	16	0	0.0	2	12.5	2	12.5	7	43.8	7	43.8	14	87.5	100.0	22.9	
◆ 벤처기업 확인연도 ◆																
1998년	13	0	0.0	5	38.5	5	38.5	7	53.8	1	7.7	8	61.5	100.0	43.6	
1999년	53	1	1.9	20	37.7	21	39.6	22	41.5	10	18.9	32	60.4	100.0	40.8	
2000년	140	6	4.3	33	23.6	39	27.9	66	47.1	35	25.0	101	72.1	100.0	35.7	
2001년	296	7	2.4	67	22.6	74	25.0	126	42.6	96	32.4	222	75.0	100.0	31.6	
◆ 자본금규모 ◆																
1억원 미만	28	0	0.0	4	14.3	4	14.3	13	46.4	11	39.3	24	85.7	100.0	25.0	
1~ 5억원 미만	174	2	1.1	39	22.4	41	23.6	90	51.7	43	24.7	133	76.4	100.0	33.3	
5~ 10억원 미만	107	4	3.7	22	20.6	26	24.3	49	45.8	32	29.9	81	75.7	100.0	32.7	
10~ 50억원 미만	157	7	4.5	49	31.2	56	35.7	57	36.3	44	28.0	101	64.3	100.0	37.3	
50~100억원 미만	10	1	10.0	4	40.0	5	50.0	3	30.0	2	20.0	5	50.0	100.0	46.6	
100억원 이상	9	0	0.0	3	33.3	3	33.3	4	44.4	2	22.2	6	66.7	100.0	37.0	
모름/무응답	17	0	0.0	4	23.5	4	23.5	5	29.4	8	47.1	13	76.5	100.0	25.5	
◆ 매출액규모 ◆																
1억원 미만	16	0	0.0	2	12.5	2	12.5	9	56.3	5	31.3	14	87.5	100.0	27.1	
1~ 5억원 미만	80	2	2.5	18	22.5	20	25.0	39	48.8	21	26.3	60	75.0	100.0	33.7	
5~ 10억원 미만	56	1	1.8	10	17.9	11	19.6	28	50.0	17	30.4	45	80.4	100.0	30.3	
10~ 50억원 미만	185	7	3.8	45	24.3	52	28.1	83	44.9	50	27.0	133	71.9	100.0	34.9	
50~100억원 미만	44	1	2.3	15	34.1	16	36.4	20	45.5	8	18.2	28	63.6	100.0	40.1	
100억원 이상	59	3	5.1	23	39.0	26	44.1	17	28.8	16	27.1	33	55.9	100.0	40.6	
모름/무응답	62	0	0.0	12	19.4	12	19.4	25	40.3	25	40.3	50	80.6	100.0	26.3	

<부표 41>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활용 때 도움받는 경로

	세무 대리인			회사 내 세무전문 인력		신문·방송 인터넷		세무서			조세관련 전문지		정부부처	
	기업수	기업수	%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수	%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전 체 ■	139	81	58.3	28	20.1	7	5.0	6	4.3	6	4.3	6	4.3	
◆ 지역 별 ◆														
서울	47	27	57.4	13	27.7	1	2.1	3	6.4	2	4.3	1	2.1	
인천/경기	41	24	58.5	10	24.4	1	2.4	1	2.4	2	4.9	0	0.0	
경상도	21	7	33.3	2	9.5	5	23.8	1	4.8	1	4.8	4	19.0	
전라도	6	4	66.7	1	16.7	0	0.0	0	0.0	0	0.0	0	0.0	
충청도	22	17	77.3	2	9.1	0	0.0	1	4.5	1	4.5	1	4.5	
강원/제주	2	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 업 종 별 ◆														
첨단제조업	66	38	57.6	14	21.2	2	3.0	2	3.0	2	3.0	5	7.6	
일반제조업	36	22	61.1	7	19.4	2	5.6	2	5.6	1	2.8	0	0.0	
SW/통신서비스	32	20	62.5	5	15.6	2	6.3	2	6.3	2	6.3	1	3.1	
기타서비스	2	0	0.0	1	50.0	0	0.0	0	0.0	1	50.0	0	0.0	
농/임/어업	1	0	0.0	0	0.0	1	100.0	0	0.0	0	0.0	0	0.0	
기타 산업	2	1	50.0	1	50.0	0	0.0	0	0.0	0	0.0	0	0.0	
◆ 벤처기업 확인연도 ◆														
1998년	5	4	80.0	0	0.0	0	0.0	1	20.0	0	0.0	0	0.0	
1999년	21	11	52.4	4	19.0	0	0.0	2	9.5	2	9.5	1	4.8	
2000년	39	19	48.7	10	25.6	3	7.7	1	2.6	2	5.1	2	5.1	
2001년	74	47	63.5	14	18.9	4	5.4	2	2.7	2	2.7	3	4.1	
◆ 자본금규모 ◆														
1억원 미만	4	3	75.0	0	0.0	0	0.0	0	0.0	0	0.0	1	25.0	
1~ 5억원 미만	41	26	63.4	4	9.8	3	7.3	3	7.3	1	2.4	3	7.3	
5~ 10억원 미만	26	18	69.2	3	11.5	1	3.8	2	7.7	0	0.0	1	3.8	
10~ 50억원 미만	56	31	55.4	13	23.2	3	5.4	1	1.8	4	7.1	1	1.8	
50~100억원 미만	5	1	20.0	3	60.0	0	0.0	0	0.0	1	20.0	0	0.0	
100억원 이상	3	1	33.3	2	66.7	0	0.0	0	0.0	0	0.0	0	0.0	
모름/무응답	4	1	25.0	3	75.0	0	0.0	0	0.0	0	0.0	0	0.0	
◆ 매출액규모 ◆														
1억원 미만	2	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5억원 미만	20	12	60.0	2	10.0	0	0.0	2	10.0	1	5.0	3	15.0	
5~ 10억원 미만	11	6	54.5	4	36.4	1	9.1	0	0.0	0	0.0	0	0.0	
10~ 50억원 미만	52	30	57.7	10	19.2	3	5.8	2	3.8	2	3.8	3	5.8	
50~100억원 미만	16	11	68.8	1	6.3	3	18.8	0	0.0	1	6.3	0	0.0	
100억원 이상	26	16	61.5	6	23.1	0	0.0	2	7.7	1	3.8	0	0.0	
모름/무응답	12	4	33.3	5	41.7	0	0.0	0	0.0	1	8.3	0	0.0	

<부표 41>의 계속

	조합 등 경제단체		회계사		감사		법률 사무실		계
	기업수	%	기업수	%	기업수	%	기업수	%	%
■ 전 체 ■	2	1.4	1	0.7	1	0.7	1	0.7	100.0
◆ 지역 별 ◆									
서울	0	0.0	0	0	0	0.0	0	0.0	100.0
인천/경기	1	2.4	0	0	1	2.4	1	2.4	100.0
경상도	1	4.8	0	0	0	0.0	0	0.0	100.0
전라도	0	0.0	1	16.7	0	0.0	0	0.0	100.0
충청도	0	0.0	0	0	0	0.0	0	0.0	100.0
강원/제주	0	0.0	0	0	0	0.0	0	0.0	100.0
◆ 업 종 별 ◆									
첨단제조업	2	3.0	1	1.5	0	0.0	0	0.0	100.0
일반제조업	0	0.0	0	0	1	2.8	1	2.8	100.0
SW/통신서비스	0	0.0	0	0	0	0.0	0	0.0	100.0
기타서비스	0	0.0	0	0	0	0.0	0	0.0	100.0
농/임/어업	0	0.0	0	0	0	0.0	0	0.0	100.0
기타 산업	0	0.0	0	0	0	0.0	0	0.0	100.0
◆ 벤처기업 확인연도 ◆									
1998년	0	0.0	0	0	0	0.0	0	0.0	100.0
1999년	0	0.0	0	0	1	4.8	0	0.0	100.0
2000년	0	0.0	1	2.6	0	0.0	1	2.6	100.0
2001년	2	2.7	0	0	0	0.0	0	0.0	100.0
◆ 자본금규모 ◆									
1억원 미만	0	0.0	0	0	0	0.0	0	0.0	100.0
1~ 5억원 미만	0	0.0	1	2.4	0	0.0	0	0.0	100.0
5~ 10억원 미만	1	3.8	0	0	0	0.0	0	0.0	100.0
10~ 50억원 미만	1	1.8	0	0	1	1.8	1	1.8	100.0
50~100억원 미만	0	0.0	0	0	0	0.0	0	0.0	100.0
100억원 이상	0	0.0	0	0	0	0.0	0	0.0	100.0
모름/무응답	0	0.0	0	0	0	0.0	0	0.0	100.0
◆ 매출액규모 ◆									
1억원 미만	0	0.0	0	0	0	0.0	0	0.0	100.0
1~ 5억원 미만	0	0.0	0	0	0	0.0	0	0.0	100.0
5~ 10억원 미만	0	0.0	0	0	0	0.0	0	0.0	100.0
10~ 50억원 미만	1	1.9	0	0	1	1.9	0	0.0	100.0
50~100억원 미만	0	0.0	0	0	0	0.0	0	0.0	100.0
100억원 이상	0	0.0	0	0	0	0.0	1	3.8	100.0
모름/무응답	1	8.3	1	8.3	0	0.0	0	0.0	100.0

<부표 42>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이유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용하지 않음			제도가 복잡하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하여 이용하기 어려움		지원 대상이 아님		최저한 세로 일부만 감면		현재 개발 단계라 조세지원 관련부문 파악 안됨		모름/무응답		계
	기업수	기업수	%	기업수	%	기업수	%	기업수	%	기업수	%	기업수	%	
■ 전 체 ■	363	124	34.2	103	28.4	94	25.9	21	5.8	18	5.0	3	0.8	100.0
◆ 지역 별 ◆														
서울	172	66	38.4	35	20.3	54	31.4	10	5.8	5	2.9	2	1.2	100.0
인천/경기	101	28	27.7	38	37.6	25	24.8	2	2.0	7	6.9	1	1.0	100.0
경상도	49	15	30.6	19	38.8	11	22.4	3	6.1	1	2.0	0	0.0	100.0
전라도	11	4	36.4	3	27.3	0	0.0	0	0.0	4	36.4	0	0.0	100.0
충청도	27	10	37.0	7	25.9	4	14.8	5	18.5	1	3.7	0	0.0	100.0
강원/제주	3	1	33.3	1	33.3	0	0.0	1	33.3	0	0.0	0	0.0	100.0
◆ 업 종 별 ◆														
첨단제조업	112	40	35.7	29	25.9	27	24.1	9	8.0	7	6.3	0	0.0	100.0
일반제조업	108	34	31.5	37	34.3	24	22.2	8	7.4	5	4.6	0	0.0	100.0
SW/통신서비스	110	38	34.5	31	28.2	32	29.1	3	2.7	4	3.6	2	1.8	100.0
기타서비스	18	4	22.2	6	33.3	7	38.9	1	5.6	0	0.0	0	0.0	100.0
농/임/어업	1	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100.0
기타 산업	14	7	50.0	0	0.0	4	28.6	0	0.0	2	14.3	1	7.1	100.0
◆ 벤처기업 확인연도 ◆														
1998년	8	3	37.5	3	37.5	0	0.0	2	25.0	0	0.0	0	0.0	100.0
1999년	32	17	53.1	3	9.4	10	31.3	1	3.1	1	3.1	0	0.0	100.0
2000년	101	30	29.7	32	31.7	32	31.7	4	4.0	2	2.0	1	1.0	100.0
2001년	222	74	33.3	65	29.3	52	23.4	14	6.3	15	6.8	2	0.9	100.0
◆ 자본금규모 ◆														
1억원 미만	24	11	45.8	4	16.7	3	12.5	2	8.3	3	12.5	1	4.2	100.0
1~ 5억원 미만	133	43	32.3	43	32.3	30	22.6	11	8.3	5	3.8	1	0.8	100.0
5~ 10억원 미만	81	23	28.4	28	34.6	19	23.5	4	4.9	6	7.4	1	1.2	100.0
10~ 50억원 미만	101	38	37.6	23	22.8	35	34.7	3	3.0	2	2.0	0	0.0	100.0
50~100억원 미만	5	3	60.0	0	0.0	2	40.0	0	0.0	0	0.0	0	0.0	100.0
100억원 이상	6	2	33.3	1	16.7	3	50.0	0	0.0	0	0.0	0	0.0	100.0
모름/무응답	13	4	30.8	4	30.8	2	15.4	1	7.7	2	15.4	0	0.0	100.0
◆ 매출액규모 ◆														
1억원 미만	14	5	35.7	7	50.0	1	7.1	1	7.1	0	0.0	0	0.0	100.0
1~ 5억원 미만	60	19	31.7	17	28.3	16	26.7	7	11.7	0	0.0	1	1.7	100.0
5~ 10억원 미만	45	15	33.3	16	35.6	8	17.8	1	2.2	5	11.1	0	0.0	100.0
10~ 50억원 미만	133	46	34.6	30	22.6	39	29.3	10	7.5	6	4.5	2	1.5	100.0
50~100억원 미만	28	8	28.6	11	39.3	6	21.4	1	3.6	2	7.1	0	0.0	100.0
100억원 이상	33	19	57.6	6	18.2	8	24.2	0	0.0	0	0.0	0	0.0	100.0
모름/무응답	50	12	24.0	16	32.0	16	32.0	1	2.0	5	10.0	0	0.0	100.0

<부표 43>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효과 정도

	기업 수	① 매우 효과가 있다		② 비교적 효과가 있다		① + ②		③ 별로 효과가 없다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 전 체 ■	502	18	3.6	165	32.9	183	36.5	247	49.2
◆ 지역 별 ◆									
서울	219	8	3.7	65	29.7	73	33.3	109	49.8
인천/경기	142	3	2.1	42	29.6	45	31.7	74	52.1
경 상 도	70	5	7.1	20	28.6	25	35.7	33	47.1
전 라 도	17	0	0.0	10	58.8	10	58.8	7	41.2
충 청 도	49	2	4.1	25	51.0	27	55.1	22	44.9
강원/제주	5	0	0.0	3	60.0	3	60.0	2	40.0
◆ 업 종 별 ◆									
첨단제조업	178	11	6.2	69	38.8	80	44.9	90	50.6
일반제조업	144	3	2.1	43	29.9	46	31.9	72	50.0
SW/통신서비스	142	2	1.4	46	32.4	48	33.8	65	45.8
기타서비스	20	1	5.0	3	15.0	4	20.0	11	55.0
농/임/어업	2	1	50.0	0	0.0	1	50.0	1	50.0
기타 산업	16	0	0.0	4	25.0	4	25.0	8	50.0
◆ 벤처기업 확인연도 ◆									
1998년	13	0	0.0	6	46.2	6	46.2	7	53.8
1999년	53	1	1.9	21	39.6	22	41.5	26	49.1
2000년	140	6	4.3	47	33.6	53	37.9	67	47.9
2001년	296	11	3.7	91	30.7	102	34.5	147	49.7
◆ 자본금규모 ◆									
1억원 미만	28	0	0.0	9	32.1	9	32.1	16	57.1
1~ 5억원 미만	174	9	5.2	49	28.2	58	33.3	95	54.6
5~ 10억원 미만	107	3	2.8	41	38.3	44	41.1	46	43.0
10~ 50억원 미만	157	6	3.8	53	33.8	59	37.6	72	45.9
50~100억원 미만	10	0	0.0	6	60.0	6	60.0	3	30.0
100억원 이상	9	0	0.0	3	33.3	3	33.3	5	55.6
모름/무응답	17	0	0.0	4	23.5	4	23.5	10	58.8
◆ 매출액규모 ◆									
1억원 미만	16	0	0.0	6	37.5	6	37.5	7	43.8
1~ 5억원 미만	80	1	1.3	28	35.0	29	36.3	38	47.5
5~ 10억원 미만	56	2	3.6	18	32.1	20	35.7	30	53.6
10~ 50억원 미만	185	8	4.3	57	30.8	65	35.1	98	53.0
50~100억원 미만	44	1	2.3	18	40.9	19	43.2	20	45.5
100억원 이상	59	6	10.2	20	33.9	26	44.1	24	40.7
모름/무응답	62	0	0.0	18	29.0	18	29.0	30	48.4

<부표 43>의 계속

	④ 전혀 효과가 없다		③ + ④		모름/ 무응답		계 %	평균 점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 전 체 ■	68	13.5	315	62.7	4	0.8	100.0	42.20
◆ 지역 별 ◆								
서울	37	16.9	146	66.7	0	0.0	100.0	39.99
인천/경기	19	13.4	93	65.5	4	2.8	100.0	40.30
경상도	12	17.1	45	64.3	0	0.0	100.0	41.87
전라도	0	0.0	7	41.2	0	0.0	100.0	52.89
충청도	0	0.0	22	44.9	0	0.0	100.0	53.01
강원/제주	0	0.0	2	40.0	0	0.0	100.0	53.28
◆ 업 종 별 ◆								
첨단제조업	7	3.9	97	54.5	1	0.6	100.0	49.11
일반제조업	24	16.7	96	66.7	2	1.4	100.0	39.16
SW/통신서비스	28	19.7	93	65.5	1	0.7	100.0	38.50
기타서비스	5	25.0	16	80.0	0	0.0	100.0	33.31
농/임/어업	0	0.0	1	50.0	0	0.0	100.0	66.65
기타 산업	4	25.0	12	75.0	0	0.0	100.0	33.30
◆ 벤처기업 확인연도 ◆								
1998년	0	0.0	7	53.8	0	0.0	100.0	48.67
1999년	4	7.5	30	56.6	1	1.9	100.0	45.47
2000년	20	14.3	87	62.1	0	0.0	100.0	42.58
2001년	44	14.9	191	64.5	3	1.0	100.0	41.15
◆ 자본금규모 ◆								
1억원 미만	2	7.1	18	64.3	1	3.6	100.0	41.93
1~ 5억원 미만	20	11.5	115	66.1	1	0.6	100.0	42.35
5~ 10억원 미만	17	15.9	63	58.9	0	0.0	100.0	42.64
10~ 50억원 미만	25	15.9	97	61.8	1	0.6	100.0	41.84
50~100억원 미만	1	10.0	4	40.0	0	0.0	100.0	49.95
100억원 이상	1	11.1	6	66.7	0	0.0	100.0	40.70
모름/무응답	2	11.8	12	70.6	1	5.9	100.0	37.46
◆ 매출액규모 ◆								
1억원 미만	3	18.8	10	62.5	0	0.0	100.0	39.54
1~ 5억원 미만	13	16.3	51	63.8	0	0.0	100.0	40.38
5~ 10억원 미만	6	10.7	36	64.3	0	0.0	100.0	42.82
10~ 50억원 미만	21	11.4	119	64.3	1	0.5	100.0	42.72
50~100억원 미만	4	9.1	24	54.5	1	2.3	100.0	45.69
100억원 이상	9	15.3	33	55.9	0	0.0	100.0	46.29
모름/무응답	12	19.4	42	67.7	2	3.2	100.0	36.63

<부표 44>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중 가장 도움이 된 제도

	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창업중소기업의 장설립시 부담금 감면		스톡옵션 관련 조세감면 제도		기타		모름/무응답		평균
	기업수	기업수	%	기업수	%	기업수	%	기업수	%	기업수	%	
■ 전 체 ■	183	129	70.5	29	15.8	16	8.7	2	1.1	7	3.8	100.0
◆ 지역 별 ◆												
서울	73	52	71.2	8	11.0	10	13.7	1	1.4	2	2.7	100.0
인천/경기	45	32	71.1	7	15.6	3	6.7	1	2.2	2	4.4	100.0
경상도	25	17	68.0	4	16.0	3	12.0	0	0.0	1	4.0	100.0
전라도	10	4	40.0	5	50.0	0	0.0	0	0.0	1	10.0	100.0
충청도	27	21	77.8	5	18.5	0	0.0	0	0.0	1	3.7	100.0
강원/제주	3	3	100.0	0	0.0	0	0.0	0	0.0	0	0.0	100.0
◆ 업종 별 ◆												
첨단제조업	80	47	58.8	18	22.5	8	10.0	2	2.5	5	6.3	100.0
일반제조업	46	36	78.3	6	13.0	3	6.5	0	0.0	1	2.2	100.0
SW/통신서비스	48	39	81.3	3	6.3	5	10.4	0	0.0	1	2.1	100.0
기타서비스	4	3	75.0	1	25.0	0	0.0	0	0.0	0	0.0	100.0
농/임/어업	1	1	100.0	0	0.0	0	0.0	0	0.0	0	0.0	100.0
기타 산업	4	3	75.0	1	25.0	0	0.0	0	0.0	0	0.0	100.0
◆ 벤처기업 확인연도 ◆												
1998년	6	3	50.0	1	16.7	2	33.3	0	0.0	0	0.0	100.0
1999년	22	19	86.4	3	13.6	0	0.0	0	0.0	0	0.0	100.0
2000년	53	40	75.5	7	13.2	4	7.5	1	1.9	1	1.9	100.0
2001년	102	67	65.7	18	17.6	10	9.8	1	1.0	6	5.9	100.0
◆ 자본금규모 ◆												
1억원 미만	9	5	55.6	4	44.4	0	0.0	0	0.0	0	0.0	100.0
1~ 5억원 미만	58	46	79.3	7	12.1	3	5.2	0	0.0	2	3.4	100.0
5~ 10억원 미만	44	28	63.6	9	20.5	4	9.1	1	2.3	2	4.5	100.0
10~ 50억원 미만	59	41	69.5	7	11.9	8	13.6	1	1.7	2	3.4	100.0
50~100억원 미만	6	4	66.7	1	16.7	1	16.7	0	0.0	0	0.0	100.0
100억원 이상	3	1	33.3	1	33.3	0	0.0	0	0.0	1	33.3	100.0
모름/무응답	4	4	100.0	0	0.0	0	0.0	0	0.0	0	0.0	100.0
◆ 매출액규모 ◆												
1억원 미만	6	6	100.0	0	0.0	0	0.0	0	0.0	0	0.0	100.0
1~ 5억원 미만	29	21	72.4	4	13.8	3	10.3	0	0.0	1	3.4	100.0
5~ 10억원 미만	20	13	65.0	6	30.0	1	5.0	0	0.0	0	0.0	100.0
10~ 50억원 미만	65	48	73.8	9	13.8	5	7.7	0	0.0	3	4.6	100.0
50~100억원 미만	19	15	78.9	2	10.5	2	10.5	0	0.0	0	0.0	100.0
100억원 이상	26	14	53.8	5	19.2	3	11.5	2	7.7	2	7.7	100.0
모름/무응답	18	12	66.7	3	16.7	2	11.1	0	0.0	1	5.6	100.0

<부표 45>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효과가 없는 이유

	벤처기업 조세지원 제도의 지원내용이 미흡하다			벤처기업 일반지원 제도를 이용하지 않았다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로도 충분하다			업력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 제도 미비		기타		계
	기업 수	기업 수	%	기업 수	기업 수	%	기업 수	기업 수	%	기업 수	기업 수	%		
■ 전 체 ■	315	153	48.6	145	46.0	12	3.8	1	0.3	4	1.3	100.0		
◆ 지역 별 ◆														
서울	146	64	43.8	76	52.1	5	3.4	1	0.7	0	0.0	100.0		
인천/경기	93	43	46.2	40	43.0	6	6.5	0	0.0	4	4.3	100.0		
경상도	45	28	62.2	16	35.6	1	2.2	0	0.0	0	0.0	100.0		
전라도	7	4	57.1	3	42.9	0	0.0	0	0.0	0	0.0	100.0		
충청도	22	12	54.5	10	45.5	0	0.0	0	0.0	0	0.0	100.0		
강원/제주	2	2	100.0	0	0.0	0	0.0	0	0.0	0	0.0	100.0		
◆ 업종 별 ◆														
첨단제조업	97	46	47.4	45	46.4	5	5.2	0	0.0	1	1.0	100.0		
일반제조업	96	54	56.3	35	36.5	4	4.2	1	1.0	2	2.1	100.0		
SW/통신서비스	93	43	46.2	47	50.5	2	2.2	0	0.0	1	1.1	100.0		
기타서비스	16	5	31.3	10	62.5	1	6.3	0	0.0	0	0.0	100.0		
농/임/어업	1	1	100.0	0	0.0	0	0.0	0	0.0	0	0.0	100.0		
기타 산업	12	4	33.3	8	66.7	0	0.0	0	0.0	0	0.0	100.0		
◆ 벤처기업 확인연도 ◆														
1998년	7	6	85.7	1	14.3	0	0.0	0	0.0	0	0.0	100.0		
1999년	30	20	66.7	9	30.0	1	3.3	0	0.0	0	0.0	100.0		
2000년	87	39	44.8	44	50.6	3	3.4	1	1.1	0	0.0	100.0		
2001년	191	88	46.1	91	47.6	8	4.2	0	0.0	4	2.1	100.0		
◆ 자본금규모 ◆														
1억원 미만	18	9	50.0	9	50.0	0	0.0	0	0.0	0	0.0	100.0		
1~ 5억원 미만	115	66	57.4	44	38.3	2	1.7	0	0.0	3	2.6	100.0		
5~ 10억원 미만	63	28	44.4	32	50.8	3	4.8	0	0.0	0	0.0	100.0		
10~ 50억원 미만	97	43	44.3	49	50.5	3	3.1	1	1.0	1	1.0	100.0		
50~100억원 미만	4	2	50.0	2	50.0	0	0.0	0	0.0	0	0.0	100.0		
100억원 이상	6	2	33.3	2	33.3	2	33.3	0	0.0	0	0.0	100.0		
모름/무응답	12	3	25.0	7	58.3	2	16.7	0	0.0	0	0.0	100.0		
◆ 매출액규모 ◆														
1억원 미만	10	4	40.0	5	50.0	0	0.0	0	0.0	1	10.0	100.0		
1~ 5억원 미만	51	27	52.9	20	39.2	4	7.8	0	0.0	0	0.0	100.0		
5~ 10억원 미만	36	16	44.4	19	52.8	0	0.0	0	0.0	1	2.8	100.0		
10~ 50억원 미만	119	61	51.3	54	45.4	3	2.5	0	0.0	1	0.8	100.0		
50~100억원 미만	24	15	62.5	9	37.5	0	0.0	0	0.0	0	0.0	100.0		
100억원 이상	33	14	42.4	15	45.5	2	6.1	1	3.0	1	3.0	100.0		
모름/무응답	42	16	38.1	23	54.8	3	7.1	0	0.0	0	0.0	100.0		

<부표 46>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활용 제고 방안

	지원 대상의 범위 확대			신청서류 및 절차의 간소화		지원제도 홍보, 교육강화		감면요건 완화	
	기업 수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 전 체 ■	502	180	35.9	86	17.1	79	15.7	65	12.9
◆ 지역 별 ◆									
서울	219	71	32.4	37	16.9	32	14.6	40	18.3
인천/경기	142	59	41.5	19	13.4	29	20.4	13	9.2
경 상 도	70	30	42.9	12	17.1	3	4.3	8	11.4
전 라 도	17	4	23.5	4	23.5	5	29.4	2	11.8
충 청 도	49	15	30.6	12	24.5	9	18.4	2	4.1
강원/제주	5	1	20.0	2	40.0	1	20.0	0	0.0
◆ 업 종 별 ◆									
첨단제조업	178	47	26.4	37	20.8	30	16.9	20	11.2
일반제조업	144	63	43.8	24	16.7	20	13.9	15	10.4
SW/통신서비스	142	55	38.7	20	14.1	22	15.5	24	16.9
기타서비스	20	7	35.0	4	20.0	4	20.0	2	10.0
농/임/어업	2	1	50.0	0	0.0	0	0.0	0	0.0
기타 산업	16	7	43.8	1	6.3	3	18.8	4	25.0
◆ 벤처기업 확인연도 ◆									
1998년	13	2	15.4	2	15.4	4	30.8	3	23.1
1999년	53	16	30.2	8	15.1	8	15.1	10	18.9
2000년	140	52	37.1	25	17.9	23	16.4	18	12.9
2001년	296	110	37.2	51	17.2	44	14.9	34	11.5
◆ 자본금규모 ◆									
1억원 미만	28	6	21.4	9	32.1	5	17.9	3	10.7
1~ 5억원 미만	174	68	39.1	27	15.5	26	14.9	14	8.0
5~ 10억원 미만	107	37	34.6	22	20.6	16	15.0	17	15.9
10~ 50억원 미만	157	55	35.0	19	12.1	27	17.2	25	15.9
50~100억원 미만	10	4	40.0	3	30.0	1	10.0	1	10.0
100억원 이상	9	3	33.3	2	22.2	1	11.1	2	22.2
모름/무응답	17	7	41.2	4	23.5	3	17.6	3	17.6
◆ 매출액규모 ◆									
1억원 미만	16	5	31.3	4	25.0	1	6.3	2	12.5
1~ 5억원 미만	80	27	33.8	16	20.0	13	16.3	11	13.8
5~ 10억원 미만	56	21	37.5	13	23.2	13	23.2	1	1.8
10~ 50억원 미만	185	71	38.4	27	14.6	29	15.7	23	12.4
50~100억원 미만	44	16	36.4	4	9.1	4	9.1	3	6.8
100억원 이상	59	19	32.2	11	18.6	8	13.6	12	20.3
모름/무응답	62	21	33.9	11	17.7	11	17.7	13	21.0

<부표 46>의 계속

	감면율, 감면기간 확대		최저한 세율 인하		모름/ 무응답		계 %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 전 체 ■	63	12.5	27	5.4	2	0.4	100.0
◆ 지역 별 ◆							
서울	29	13.2	10	4.6	0	0.0	100.0
인천/경기	11	7.7	9	6.3	2	1.4	100.0
경상도	13	18.6	4	5.7	0	0.0	100.0
전라도	2	11.8	0	0.0	0	0.0	100.0
충청도	8	16.3	3	6.1	0	0.0	100.0
강원/제주	0	0.0	1	20.0	0	0.0	100.0
◆ 업종 별 ◆							
첨단제조업	28	15.7	14	7.9	2	1.1	100.0
일반제조업	16	11.1	6	4.2	0	0.0	100.0
SW/통신서비스	15	10.6	6	4.2	0	0.0	100.0
기타서비스	2	10.0	1	5.0	0	0.0	100.0
농/임/어업	1	50.0	0	0.0	0	0.0	100.0
기타 산업	1	6.3	0	0.0	0	0.0	100.0
◆ 벤처기업 확인연도 ◆							
1998년	2	15.4	0	0.0	0	0.0	100.0
1999년	8	15.1	2	3.8	1	1.9	100.0
2000년	20	14.3	2	1.4	0	0.0	100.0
2001년	33	11.1	23	7.8	1	0.3	100.0
◆ 자본금규모 ◆							
1억원 미만	3	10.7	2	7.1	0	0.0	100.0
1~ 5억원 미만	25	14.4	13	7.5	1	0.6	100.0
5~ 10억원 미만	12	11.2	3	2.8	0	0.0	100.0
10~ 50억원 미만	22	14.0	8	5.1	1	0.6	100.0
50~100억원 미만	1	10.0	0	0.0	0	0.0	100.0
100억원 이상	0	0.0	1	11.1	0	0.0	100.0
모름/무응답	0	0.0	0	0.0	0	0.0	100.0
◆ 매출액규모 ◆							
1억원 미만	2	12.5	2	12.5	0	0.0	100.0
1~ 5억원 미만	12	15.0	1	1.3	0	0.0	100.0
5~ 10억원 미만	6	10.7	2	3.6	0	0.0	100.0
10~ 50억원 미만	24	13.0	10	5.4	1	0.5	100.0
50~100억원 미만	9	20.5	7	15.9	1	2.3	100.0
100억원 이상	5	8.5	4	6.8	0	0.0	100.0
모름/무응답	5	8.1	1	1.6	0	0.0	100.0

<부표 47>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

	제도를 단순화 하고 지원 내용을 강화함으로써 활용도를 제고			연구 개발에 대한 조세 지원 확대		창업 과정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투자조합의 출자자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기업 수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 전 체 ■	502	364	72.5	68	13.5	46	9.2	13	2.6
◆ 지역 별 ◆									
서울	219	151	68.9	26	11.9	31	14.2	7	3.2
인천/경기	142	108	76.1	16	11.3	9	6.3	5	3.5
경상도	70	49	70.0	15	21.4	3	4.3	0	0.0
전라도	17	13	76.5	3	17.6	0	0.0	1	5.9
충청도	49	39	79.6	7	14.3	3	6.1	0	0.0
강원/제주	5	4	80.0	1	20.0	0	0.0	0	0.0
◆ 업 종 별 ◆									
첨단제조업	178	125	70.2	27	15.2	18	10.1	4	2.2
일반제조업	144	121	84.0	15	10.4	5	3.5	1	0.7
SW/통신서비스	142	98	68.9	19	13.4	21	14.8	6	4.2
기타서비스	20	11	55.0	4	20.0	2	10.0	2	10.0
농/임/어업	2	1	50.0	1	50.0	0	0.0	0	0.0
기타 산업	16	13	81.3	2	12.5	0	0.0	0	0.0
◆ 벤처기업 확인연도 ◆									
1998년	13	10	76.9	3	23.1	0	0.0	0	0.0
1999년	53	37	69.8	12	22.6	3	5.7	0	0.0
2000년	140	106	75.7	13	9.3	15	10.7	2	1.4
2001년	296	211	71.3	40	13.5	28	9.5	11	3.7
◆ 자본금규모 ◆									
1억원 미만	28	22	78.6	3	10.7	1	3.6	1	3.6
1~ 5억원 미만	174	130	74.7	27	15.5	9	5.2	6	3.4
5~ 10억원 미만	107	78	72.9	11	10.3	14	13.1	3	2.8
10~ 50억원 미만	157	108	68.8	23	14.6	18	11.5	3	1.9
50~100억원 미만	10	6	60.0	1	10.0	2	20.0	0	0.0
100억원 이상	9	6	66.7	1	11.1	1	11.1	0	0.0
모름/무응답	17	14	82.4	2	11.8	1	5.9	0	0.0
◆ 매출액규모 ◆									
1억원 미만	16	10	62.5	2	12.5	3	18.8	1	6.3
1~ 5억원 미만	80	54	67.5	16	20.0	6	7.5	3	3.8
5~ 10억원 미만	56	43	76.8	5	8.9	6	10.7	1	1.8
10~ 50억원 미만	185	138	74.6	25	13.5	12	6.5	5	2.7
50~100억원 미만	44	29	65.9	8	18.2	4	9.1	2	4.5
100억원 이상	59	45	76.3	8	13.6	5	8.5	0	0.0
모름/무응답	62	45	72.6	4	6.5	10	16.1	1	1.6

<부표 47>의 계속

	스톡옵션에 대한 조세 감면 확대		엔젤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대표자 이외의 종업원에 대한 신용불량 적용배제		모름/ 무응답		계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기업 수	%	
■ 전 체 ■	8	1.6	1	0.2	1	0.2	1	0.2	100
◆ 지역 별 ◆									
서울	4	1.8	0	0.0	0	0.0	0	0.0	100
인천/경기	2	1.4	1	0.7	0	0.0	1	0.7	100
경 상 도	2	2.9	0	0.0	1	1.4	0	0.0	100
전 라 도	0	0.0	0	0.0	0	0.0	0	0.0	100
충 청 도	0	0.0	0	0.0	0	0.0	0	0.0	100
강원/제주	0	0.0	0	0.0	0	0.0	0	0.0	100
◆ 업 종 별 ◆									
첨단제조업	2	1.1	0	0.0	1	0.6	1	0.6	100
일반제조업	2	1.4	0	0.0	0	0.0	0	0.0	100
SW/통신서비스	3	2.1	0	0.0	0	0.0	0	0.0	100
기타서비스	0	0.0	1	5.0	0	0.0	0	0.0	100
농/임/어업	0	0.0	0	0.0	0	0.0	0	0.0	100
기타 산업	1	6.3	0	0.0	0	0.0	0	0.0	100
◆ 벤처기업 확인연도 ◆									
1998년	0	0.0	0	0.0	0	0.0	0	0.0	100
1999년	0	0.0	0	0.0	0	0.0	1	1.9	100
2000년	3	2.1	0	0.0	1	0.7	0	0.0	100
2001년	5	1.7	1	0.3	0	0.0	0	0.0	100
◆ 자본금규모 ◆									
1억원 미만	0	0.0	0	0.0	1	3.6	0	0.0	100
1~ 5억원 미만	1	0.6	1	0.6	0	0.0	0	0.0	100
5~ 10억원 미만	1	0.9	0	0.0	0	0.0	0	0.0	100
10~ 50억원 미만	4	2.5	0	0.0	0	0.0	1	0.6	100
50~100억원 미만	1	10.0	0	0.0	0	0.0	0	0.0	100
100억원 이상	1	11.1	0	0.0	0	0.0	0	0.0	100
모름/무응답	0	0.0	0	0.0	0	0.0	0	0.0	100
◆ 매출액규모 ◆									
1억원 미만	0	0.0	0	0.0	0	0.0	0	0.0	100
1~ 5억원 미만	0	0.0	0	0.0	1	1.3	0	0.0	100
5~ 10억원 미만	1	1.8	0	0.0	0	0.0	0	0.0	100
10~ 50억원 미만	5	2.7	0	0.0	0	0.0	0	0.0	100
50~100억원 미만	0	0.0	0	0.0	0	0.0	1	2.3	100
100억원 이상	0	0.0	1	1.7	0	0.0	0	0.0	100
모름/무응답	2	3.2	0	0.0	0	0.0	0	0.0	100

<국문요약>

벤처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김진수 · 김재진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벤처기업 지원 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요 선진국의 벤처 기업 지원제도를 살펴보고, 벤처기업 지원제도의 활용실태를 조사해 보았으며, 벤처기업 지원제도의 유효성에 관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먼저 주요 선진국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벤처기업에 대해 다른 중소기업과 구분하여 별도의 일반지원제도나 조세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중소기업의 주주나 투자자에 대한 지원에 그치고 있었다.

다음으로 벤처기업 지원제도의 활용실태 조사결과에서는 벤처기업의 일반지원제도 및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도가 매우 낮았음을 알 수 있었다. 벤처기업 지원제도의 활용도가 낮은 이유 중의 하나는 많은 벤처기업들이 지원제도가 매우 복잡해서 활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 및 조세지원제도를 단순화함으로써 이 제도들을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벤처기업 지원제도의 유효성에 관한 실증분석에서는 벤처기업의 일반지원제도 및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도가 높을수록 기업의 이윤이 높다는 실증적인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기업의 이윤은 일반지원제도 및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도와 정(+)의 상관관계가 없는 반면 매출액규모나 수출액 규모와는 정(+)의 상관

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벤처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이 기업의 경쟁력 제고나 이윤창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우리나라 벤처기업 지원제도의 기본방향은 기술혁신에서 발생하는 외부성(externalities)을 보정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구분하여 벤처기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벤처정책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벤처기업에 대해 직접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벤처기업이 많이 탄생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데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의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현행 벤처기업 일반지원제도 및 조세지원제도가 2005년 폐지되어야 함을 감안하여 향후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구별없이 적용될 중소기업 일반지원제도를 단순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대학·연구소의 창업보육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며, 중소·벤처기업 집적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사이언스파크의 효율적인 조성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 중에서 기술개발 및 기술인력에 대한 지원은 이 부문에서 시장의 실패가 일어남을 감안하여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장기적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은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수준으로 낮추고 벤처캐피탈을 통한 간접 지원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섯째, 투자조합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연·기금의 적극적인 투자조합 참여가 필요하다. 여섯째, 코스닥시장의 제도를 선진화함으로써 코스닥시장을 건전하게 육성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벤처기업이 조세지원제도의 내용도 단순

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둘째, 벤처기업의 창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동성의 제한으로 인한 자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지원 대상기업을 일반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술개발부문과 기술인력부문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투자조합을 통해 벤처산업에 시종자금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벤처산업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도 투자조합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인수·합병과 관련한 과세제도를 시급히 정비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Venture Backed Company and Policy Implications

Jin-Soo Kim, Jae-Jin Kim

This study reviews the current tax system that is relevant to venture backed company and attempts to offer tax policies that can promote the progress of venture backed company. For this purpose, the intensive systems for venture backed company in some advanced countries have been examined and the utilization and effectiveness of incentive systems of Korea have been analyzed.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major advanced countries, they do not separate venture backed company from small and medium company(SMC), and do not apply the different incentive system to venture backed company. Also, they do not support the company directly but to support the stockholder or investor of SMC.

Second, it has been found that the general and tax incentive systems for venture backed company are not effectively used. One of the reasons for this is that the general and tax systems are too complex to be used easily. Simplifying the general and tax incentive systems will be one of the best way to improve

the utilization of those systems.

Third, there has been no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profits of the company and the extent of utilization of the general and tax incentive systems, while there has been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profits of the company and the amount of sales or the amount of export. This result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an unconditional support to venture backed company significantly promotes the competitiveness of a company and the extent of profit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e suggest that incentive systems for Korea's venture backed company should be those to complement the externalities occurred in R&D. The existing policies, which support venture backed company more than SMC, separating venture backed company from SMC, should be changed. And it is desirable to cultivate basic circumstances which give birth to more venture backed companies.

In this study, following suggestions are proposed for improving the general incentive system for venture backed company. First, as we consider existing general and tax incentive systems for venture backed company will be abolished in 2005, we have to make an effort to simplify the general incentive system that will be applied to SMC. Second, the function of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to help starting a new enterprise should be reinforced, the integrated facilities of SME and venture backed company should be effectively used, and the science park should be formed effectively. Third, it is

desirable that supports to R&D investment and R&D manpower should be extended, considering the market failure in relation to those factors. Fourth, in the long run, it is desirable that direct supports to venture backed company should be reduced to the same level for SME, and indirect supports to venture backed company through venture capitals should be actively utilized instead. Fifth, in order to induce an activation of venture capital partnerships, it is necessary for pensions and funds to be participated in venture capital partnerships. Sixth, we should foster the KOSDAQ stock market by advancing the system of KOSDAQ stock market.

This study also proposes following suggestions as ways to improve tax incentive systems for venture backed company. First, the system should be revised simply for venture backed company to understand the contents of tax incentive systems easily. Second, it is necessary that the company eligible for tax incentive system should be generalized in order to solve the financial difficulties from shortage of enterprising funds generated in the process of starting a new enterprise. Third, it is desirable that tax incentives to R&D investment and R&D manpower should be extended. Fourth, tax incentives to venture industry should be focused on investment partnerships in order to induce more funding to venture industry through investment partnerships. Fifth, it is urgent to revise current tax system connected with M&A.

<著者略歷>

金 珍 洙

韓國外國語大學校 貿易學科 卒業
美國 University of North Carolina-Chapel Hill, 經濟學 碩·博士
現, 韓國租稅研究院 前任研究委員

金 栽 鎭

西江大學校 經濟學科 卒業
美國 Michigan State University 經濟學 碩·博士
現, 韓國租稅研究院 研究委員

政策報告書 02-07

벤처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2002年 12月 28日 印刷

2002年 12月 31日 發行

著 者 김진수·김재진

發行人 宋大熙

發行處 韓國租稅研究院

138-774 서울特別市 松坡區 可樂洞 79-6

電話 : 2186-2114(代), 팩시밀리 : 2186-2179

登 錄 1993年 7月 15日 第21-466號

組版및
印 刷 (주) 천 세

© 韓國租稅研究院 2002

ISBN 89-8191-219-×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값 14,000원